
농안법_을
알면
농산물 유통이
보인다

2013. 1

발 간 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통해 신체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듯,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전국에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심장이 제대로 뿔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고 부족한 점은 지원하는 역할을 농안법을 통해 정부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33개 공영도매시장은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으며, 농안법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신선농수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은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만 하더라도, 봄에는 예산·당진·나주 등, 여름에는 강원도, 겨울에는 해남·진도가 주산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식탁에 올라가는 농수산물에 대해 일일이 산지를 찾아다녀 구매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모두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을 통해서는 다양한 품목의 농수산물을 절약된 비용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이 집하·분산됨에 따라, 누구나 원하는 물건을 판·구매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며 거래 총수 최소화에 따라 거래비용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한 거래 가격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33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연간 680만톤의 농수산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채소·과일의 경우 우리나라 최종소비자 구매량의 50% 남짓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유통비용 감소를 위한 거래단계 축소 및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직거래,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한 새로운 거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농수산물의 유통경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농산물 유통은 경로간 경쟁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도매시장도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취급규모 확대와 물류효율화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물류비용 감축 등을 통해 도매시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 거래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 책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지의 규모화, 도매단계의 효율화, 소비지 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 책이 농안법과 도매시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도매시장 유통인을 비롯한 관계자가 합심하여 도매시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오 정 규

제1장 농산물 유통

■ 제1절 농산물 유통의 개념과 비용	10
1. 농산물 유통의 개념	10
2. 유통경로와 유통주체	12
3. 생산지 및 소비지 유통	20
4. 유통비용	24
5. 주요국 농산물유통 체계	27
■ 제2절 도매시장 유통과 거래	29
1. 도매시장의 역할	29
2. 도매시장 거래자	31
3. 도매시장 운영 제도	39
4. 도매시장 유통	43
5. 경매 및 입찰 매매	48
6. 정가 및 수의 매매	54

제2장 도매시장과 농안법

- 제1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8
 - 1. 농안법의 역사 58
 - 2. 농안법의 개정 63
 - 3. 농안법의 구성 78
 - 4.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 79
 - 5. 대형 유통업체 규제 해외 사례 83
 - 6.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현황 88

- 제2절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및 농안기금 91
 - 1.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91
 -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93
 - 3. 계약생산 96
 - 4. 가격예시 99
 - 5.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100
 - 6. 정부비축사업 105
 - 7.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109
 -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14
 - 9. 농안기금의 조성 116
 - 10. 기금의 운용·관리 117
 - 11. 기금의 용도 118

■ 제3절 농수산물도매시장	119
1. 도매시장의 분류	120
2.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125
3. 도매시장의 개설	126
4.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131
5.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133
6.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136
7.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139
8.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140
9. 중도매인의 허가	141
10.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148
11.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154
12. 매매참가인의 신고	156
13. 경매사의 임면	158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161
15. 출하자 신고	164
16.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165
17. 거래의 특례	172
18. 수탁의 거부금지 가능사유	174
19. 출하대금결제	176
20.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180
2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183
22. 하역업무	186
23.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189
24. 도매시장 등의 평가	190

■ 제4절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92
1. 공판장의 개설·운영	192
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운영	197
3. 산지유통제도	201
4.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	204
5.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206
6.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208
7.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	210
■ 별첨	211
1. 농안법 판례	212
2. 농안법 유권해석(농림수산식품부)	231
3. 농안법 질의답변(서울시)	257
4.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용요령(고시)	274
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고시)	277
6.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서(고시)	278
7. 포전매매 서면계약 대상품목(고시)	284
8.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고시)	285
9. 시장도매인 지침(2000. 10)	286
10. 농협공판장 업무취급 준칙	305
11. 일본 도매시장 제도의 변화	327
12. 농수산물 시장유통용어	350
13. 경매사 국가자격증 시험문제	373
14. (서울시) 소송업무 절차	383
15. 농산물유통정보 제공처	393
16. 정가수의매매 추진방법(도매시장법인협회)	394

제1장 | 농산물 유통



제1절 농산물 유통의 개념과 비용

제2절 도매시장 유통과 거래



제1장 농산물 유통

제1절 농산물 유통의 개념과 비용¹⁾

1. 농산물 유통의 개념

유통(Marketing)의 정의²⁾

- ☞ 상품의 소유권을 교환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물리적 또는 가상적 장소(places)를 일컫는 시장(market)과 달리 상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는 시간과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activities) 또는 기능(functions)

농산물 유통의 정의

- ☞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손을 떠나는 시점(출발지)과 최종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시점(종착지)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간격 또는 장애물들에 대하여 수많은 매개자들과 시설, 수단들이 개입하여 해결하는 과정, 절차(process)
- ☞ 농산물의 유통은 전체 농식품 유통산업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관련된 요소분야, 즉 다양한 유통경로(도매시장경로, 직거래 등), 유통주체(중간상), 유통기능(물적, 상적 기능)이 상호 연결고리로 연계되어 상품의 수집, 분산, 운송, 저장 등 물리적 역할과 부가가치 제고, 교환 촉진 등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흔히 농식품 유통시스템이라 함

유통 서비스와 유통비용

- ☞ 자급자족 경제 하에서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신이 소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과 유통이라는 개념이 없었음. 그러나 소비가 생산에서 분리되어 소비만 하는 그룹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삶의 수준과 욕구가 커지면서 다양한 중간서비스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유통의 중요

1) 해당 내용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농산물 유통현황과 과제(2012.11)」의 수록내용을 인용하였으며, 통계 수치는 최근연도치로 수정하였음

2) 미국마케팅학회(AMA,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는 마케팅이란 개인적이거나 조직적인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개념정립, 가격결정, 촉진, 그리고 유통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일컫음



성이 더 커짐

- ☞ 선진국일수록 유통마진이 커지는 이유는, 고도의 대중소비 확대로 저장, 가공, 포장, 운송 등의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중간유통서비스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임
- ☞ 미국의 농산물 유통마진은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70%를 차지하고, 일본도 50%가 넘어 우리나라의 44%보다 높음. 이는 미국, 일본이 유통과정의 운송, 가공, 포장 등 중간물류 서비스와 비용이 우리보다 많이 부가되고 있기 때문임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간격

- ☞ 장소적 간격 : 사회적 분업의 심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생산과 소비의 장소가 보다 분명하게 분리되면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까지 운송하고 하역하는 물류기능이 필요해짐
- ☞ 시간적 간격 :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이 다른 '시간적 간격'을 해소하고자 보관·저장하는 시설과 기능이 필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다양화되어, 채소, 과일 등을 연중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와 요구가 커지면서 수확 후 신선도를 연중 유지하기 위한 저온 저장 수요 증대
- ☞ 품질적 간격 : 소비자들은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품질 또는 등급, 크기 등이 다르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재배기술, 생육조건, 품종 등의 영향으로 일정한 품질이나 등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산지유통센터나 도매, 소매 주체들이 선별, 등급포장, 가공 등의 유통기능 수행
- ☞ 수량적 간격 : 생산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묶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판매하기를 원하지만,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먹을 양만큼의 소량구매, 심지어 절단제품을 원하고 있음. 이러한 간격을 소분포장, 절단포장 등의 기능을 통해 해결
- ☞ 소유의 간격 :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는 한 가격변동이나 상품의 품질변화에 따른 가치 하락 등 소유위험을 농민이 부담하게 됨.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위험기피적인 농민의 소유위험이 이전되는 반면 소유권 행사를 통해 가격 상승 혜택 등 부가가치 제고효과를 얻을 수도 있음. 즉 소유권 거래를 통한 소유이전으로 간격이 메워짐

유통기능의 효용성

- ☞ 농산물 유통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격을 중간유통주체의 유통기능을 통해 해결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효용(utility)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유통은 생산적임(Marketing is productive). 즉 중간유통주체의 유통기능은 장소적, 시간적, 형태적, 소유권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생산적임

- ☞ 장소적 효용(place utility)은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장소에서 소비지로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용임. 농산물을 생산한 장소에 쌓아두면 가격과 가치가 낮으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를 탐색하여 운송비용을 들이더라도 운송하여 판매한다면 가격과 가치가 높아지게 됨
- ☞ 시간적 효용(time utility)은 농산물의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이 달라 생산 후 필요한 물량을 저온저장 등을 통해 보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만족도를 높여 효용을 증대하는 것임. 배추, 무 등 채소와 과일, 쌀 등은 대부분 1년에 한번 수확하여 연중 소비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확 후 홍수출하 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시장가격이 폭락하여 농가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만일 저장 후 공급 조절을 통해 연중 출하한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음
- ☞ 형태적 효용(form utility)은 농산물을 원물 형태로 공급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소분포장을 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임. 핵가족화, 독신가구 증가,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외식이 늘고 가정식도 조리가 간편한 상태(ready-to-cook)를 선호하며, 배추·수박 등 통 단위 구매보다 2분절, 4분절, 심지어 8분절 포장단위 구매가 늘어나, 절임배추 등 1차 가공이나 소분포장 등 형태적 변경을 통해 효용을 높이게 됨
- ☞ 소유권적 효용(possession utility)은 소유권이 농민에게서 산지유통인, 생산자조직, 도매상, 소매상 등으로 이전됨으로써 소유위험의 부담 또는 분담, 최적 소유자 탐색과 거래를 통해 효용이 창출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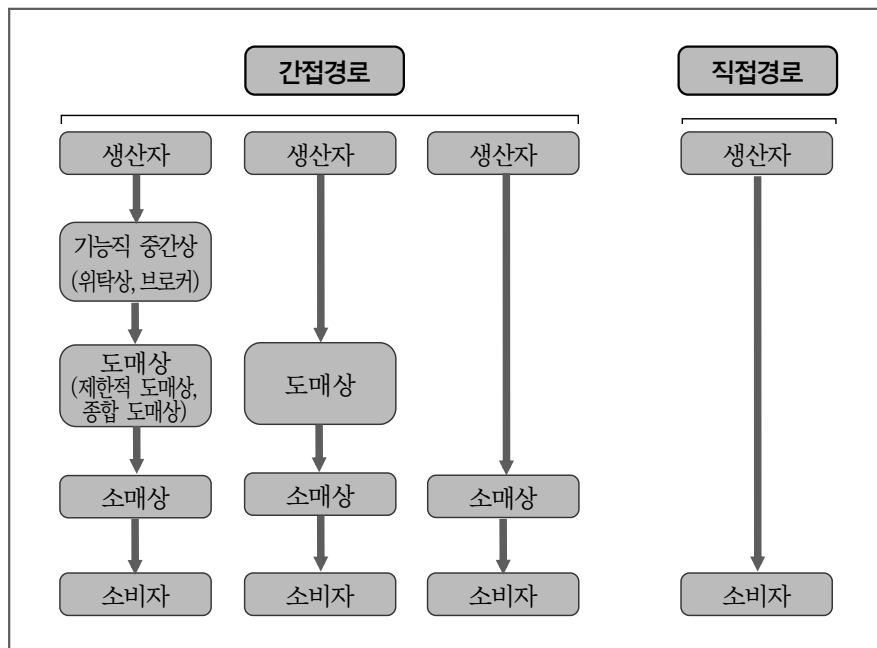
2. 농산물 유통경로와 유통주체

농산물 유통경로

- ☞ 농산물 유통경로(marketing channel 또는 distribution channel)는 농산물의 매매과정에 관계되는 유통기구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시스템으로, 쉽게 표현하면 농산물이 이전, 유통되어가는 경로를 말함. 예컨대 배추 유통경로는 고랭지, 해남 등 배추산지의 농가로부터 산지유통인 또는 생산자조직을 통해 도매시장이나 마트, 가공업체 등의 소비지로 전달



- 되어 소비지에서 배추 또는 공장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함
- ☞ 유통단계가 없는, 즉 0단계 유통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유통업자가 없는 것으로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direct marketing)를 나타냄
 - ☞ 국토가 광대한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도매단계와 소매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농산물은 운송비용 등 중간유통비용이 많이 들어 지역단위로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이 직접 대면거래하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이 성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노령농민, 취미농가, 영세농가들이 생산해 상품성은 떨어지나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도로변 판매장(노변직판), 조시(早市) 등에 진열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직거래가 많은 편임
 - ☞ 우리나라에도 배, 포도, 복숭아 산지의 농가직판장, 도로변 직판장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음. 그밖에도 직거래에는 소비자가 농장에서 직접 수확 구매하는 수확구매(Pick-Your-Own), 생산자의 직접 방문판매, 차량판매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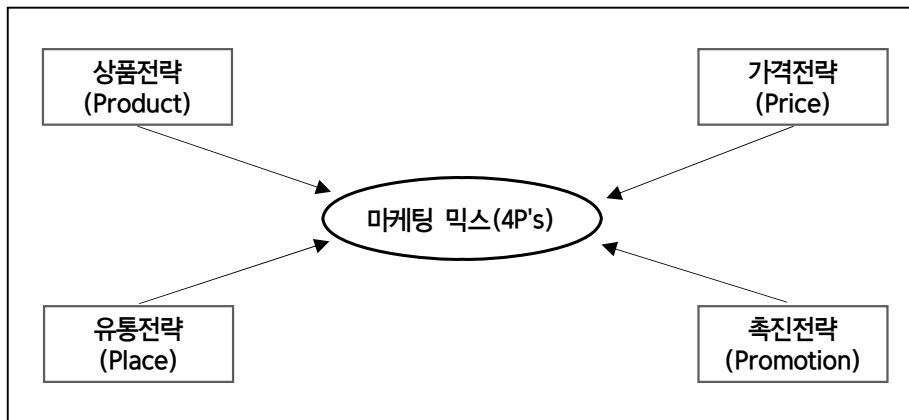
Ⅰ 그림 Ⅱ - 1 전형적인 유통경로구조 Ⅰ



- ☞ 1단계 유통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매상이 관여해 판매하는 경로이며, 2단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과 소매상이 개입하는 경로임. 3단계는 생산자와 도매상 사이에 산지유통인 또는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중간상이 관여하는 경로를 말함. 품목에 따라 3단계 이상의 복잡한 경로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배추의 경우 농가로부터 산지유통인이 포전거래(밭떼기)해 매입한 후 도매시장에 출하하여 법인 상장-중도매인 경매 과정을 거쳐 중간납품상이 매입하고 소매식료품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쉽게 4~5단계가 됨
- ☞ 이와 같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어 중간상이 없는 0단계 유통경로구조를 직접유통경로(direct channel)라 하며, 도매상과 소매상 등 중간상이 하나 이상 개입하는 경로구조를 간접유통경로(indirect channel)라고 함

유통경로간 경쟁성과 효율성

- ☞ 유통경로의 길이가 짧은 직접경로(직거래)와 간접경로 중에서 어느 경로가 더 경쟁력이 있다거나 효율적이거나 성공적인가 하는 것은 해당 경로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얼마나 편익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음
- ☞ 중간유통기능을 수행하면서 비용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효용,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면 그 유통경로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대적인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유통경로는 지속될 수 없음



Ⅱ 그림Ⅱ -2 4P 전략Ⅱ



☞ 그동안 유통경로는 초기에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생산중심단계에서 얼마나 많이 판매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판매지향단계로 발전하여 마케팅믹스 전략, 즉 4P's(상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촉진전략)가 중시되는 단계로 이행하였음. 그 후 고객을 중시하는 고객중심마케팅단계로 발전하고 결국 판매자가 고객과 대화하면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관계마케팅(RM ; Relationship Marketing)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음. 이제는 고객을 위한 전사적 품질관리(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고객 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가 중요해짐

중간유통주체

- ☞ 농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단계에는 중간유통기구, 즉 중간상(middleman)이 개입하여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제품의 본질을 가치의 총합으로 볼 때, 유통경로는 가치가 흘러가는 통로로 이해할 수 있음. 유통경로 상의 수집상, 도매상, 소매상 등 중간상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제품의 원활한 흐름을 도우며, 제품 고유의 가치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 새로운 가치, 즉 부가가치와 효용을 창출함으로써 유통경로 시스템의 전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물론 중간상 중에는 비정상적으로 제품의 전달과정에 개입하여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음
- ☞ 유통경로상 중간상은 생산과 소비의 양 극점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존재의의를 가짐

※ 유통경로와 중간상이 존재하는 경제적 원리

- 1) 소비자 효용을 높이기 위해 가치 창출
- 2) 유통기구들이 유통의 과정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품교환과정에서 거래비용과 거래회수를 줄여 거래효율성을 높임
- 3) 상품의 분류기능(등급화, 수집적재, 배분, 구색맞춤)을 수행하여 물량과 구색을 조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기대 차를 채워주는 역할을 함. 도매상과 소매상들은 다양한 생산자들의 상품을 취급, 비교하여 “사회적 구색갖추기”를 형성하고 거래위험을 부담함
- 4) 거래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transaction)를 통해 반복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 표준화, 자동주문체계를 유도하는 등 판매, 구매를 수월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함
- 5)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래정보의 탐색과정을 촉진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필요한 정보탐색 노력과 시간, 비용을 감소시킴



중간상과 유통기능의 배제 가능성

- ☞ 농산물유통과정에 중간상이 과다하게 개입하면 경제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상을 없애고 직거래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 예를 들어 소비자가 토마토 값으로 1,000원을 지불하고 생산자는 400원을 수취했다면 운송, 저장 등 비용과 이윤을 합쳐 중간상의 유통마진은 600원이 되어 중간상을 없애면 사회경제적으로 600원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토마토 생산농가를 찾아 원하는 토마토를 직접 구매할 경우 농가탐색과 방문, 품질확인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수반됨.³⁾ 농가도 생산된 토마토들에 대해 일일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탐색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공급해야 하는 거래비용이 수반됨. 따라서 직거래의 경우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중간상이 개입해 전문성을 갖고 생산자와 구매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운송, 선별포장, 저장 등 물류활동을 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제반 비용과 이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거래비용을 줄이는 중간상 거래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음
- ☞ 또한 실제로 유통은 오랜 기간 조정과정을 거쳐 관행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유통단계나 기능을 임의로 줄이기는 쉽지 않음. 유통단계를 줄인다 해서 유통기능과 마진이 쉽게 없어지지 않음. 중간상을 없앨 경우 그들이 수행하던 중간유통기능을 유통단계상 직전 또는 직후의 주체가 유통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비용을 부담해야 함

사례 1 : 오랜 세월 농가들과 포전거래(밭떼기)를 하여 농가를 대신해 가격위험을 부담하고, 심지어 농가가 수행하던 농약방제, 시비 등 재배관리를 하고 전문수확단을 통해 수확해 출하하던 산지유통인이 비용을 발생하는 주범이라 하여 제도적으로 활동을 막는다면 산지유통인이 담당하던 재배대행활동과 유통활동이 사라져 오히려 농가들이 수확할 때까지 재배관리를 하고 수확작업을 하여 판매함으로써 가격위험을 부담하고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사례 2 : 상장거래를 위주로 하는 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됨. 청과물 유통량의 50%가 경유하는 도매시장을 없애고 모두 다 직거래한다면 ‘거래총수 최소화’의 원리’에 의해 도매시장의 존재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던 판·구매거래 수가 직거래 수준의 수로 늘어나 거래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임⁴⁾

3) 거래비용에는 운송비, 저장비, 판구매자 탐색비용 및 협상관련비용, 상품의 품질증명과 쌍방의 진실성 증명 비용, 거래 계약 비용, 거래 미성립 시 잠재적 비용 등이 있음



- ☞ 결국 중간상과 도매시장의 존재는 인정하되, 물류효율을 높이거나 중복 또는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한국의 농산물 유통경로구조

- ☞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경로구조는 과거 원시적인 단계의 생산농민-소비자 직거래 (Direct Sales) 단계에서 지역의 재래시장(5일장 등)을 통한 직거래 및 1단계 유통경로가 성행한 시대가 있었음.
- ☞ 그 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80~1990년대에 걸쳐 소비지 도매시장의 대량유통분산경로 (Mass-Marketing Distribution)가 주된 유통경로로 자리잡았음
- ☞ 이후 농산물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도매시장경로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각종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이 확산되는 복합적인 유통경로구조(Matrix Distribution)로 변모하고 있음

主流유통과 細流유통

- ☞ 유통단계와 경로는 국가의 농산물 유통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단계의 축소 또는 확대나 경로 비중의 변화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의 요구와 유통 주체간 자유경쟁에 의해 조정과정을 거치게 됨
- ☞ 산지의 출하농민 또는 출하조직과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간 직거래는 중간물류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나, 비용절감이 출하농민의 수취가격 제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오히려 거래교섭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소비지 유통업체의 이윤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거래교섭력이 취약한 영세한 농가의 경우 단계 축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 반면 규모화 된 산지 출하조직의 경우 거래교섭력이 발휘되어 도매시장 뿐 아니라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대량거래처와 직거래하는 것이 유리하여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의 다양화에 노력할 것임

4) 거래총수 최소화(去來總數 最小化)의 원리는 판매자(n명), 구매자(m명)들이 모두 각자 거래상대자를 찾을 경우 거래 수는 nm이며, 양자 사이에 중간상(도매시장)이 존재할 경우 거래 수는 n+m이 되어 유통채널은 길어지지만 거래 수가 감소한다는 원리임(Hall, 1948, cha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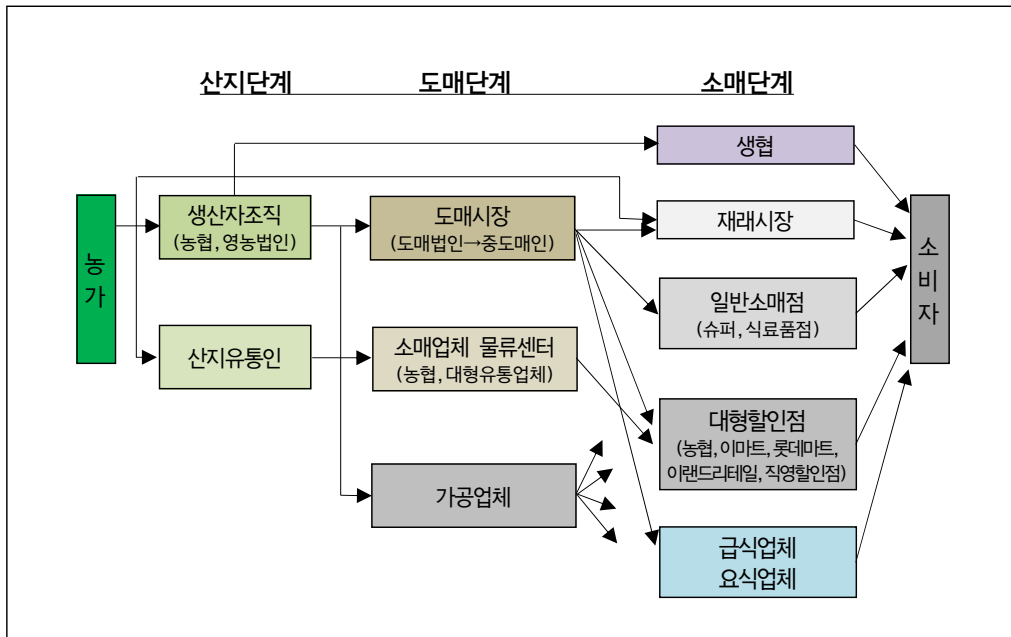


그림 II - 3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단계와 경로

특히 영세한 농가와 출하자가 많은 우리나라(일본도 마찬가지)의 경우, 청과물유통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시장 유통이 ‘主流유통(main channel)’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소비유통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산지-소비유통업체간 거래는 ‘亞流유통(second channel)’이라 할 수 있으며, 생협 직거래나 농장직판, 도로변 직판, 파머스마켓, 수확체험 등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는 유통단계가 가장 짧지만 실제 유통비중은 극히 낮은 ‘細流유통(streamlet channel)’이라 할 수 있음

유통경로구조의 결정원리

- 유통경로구조는 농산물의 최종소비자의 수요에 기초해 판매자, 중간상들이 상품의 단위, 시장 분산, 제품 차별화 등 서비스 산출 수준을 정하여 마케팅기능을 조직함으로써 경로구조가 결정되는 것임
- 농산물 유통경로구조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흔히 인용되는 이론으로 ‘연기-투기 원리’(Postponement-Speculation Principle)가 있음. 연기(延期)는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서비스나 포장 단위 등 형태 및 동질성의 변화와 재고 위치를 구매시점에 가깝게 연기함으로써 유통경로 구성원이 농산물 소유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급적 소비자에 가까운 구성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임. 예컨대 농산물 생산자, 산지유통인, 생산자조직 등 산지 출하주체에서 가급적 대용량 포장하고 등급화 정도를 낮게 하고, 가공을 덜 하고, 저장보관도 가급적 하지 않아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소유기간을 줄여 위험을 전가하고자 함

- ☞ 반면 투기(投機)는 농산물의 형태 변화와 재고 위치를 가급적 마케팅 흐름상 빠른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유통시스템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임. 즉 투기적 성향의 상인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재고 설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포장, 가공, 저장, 구색 등의 유통기능을 수행하게 됨
- ☞ 이런 원리로 볼 때 산지수집상, 유통영농법인들의 포전거래와 산지 저온저장, 가공 등 유통기능은 투기 원리가 적용되며,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에서 산지유통활동을 통해 농산물을 수집 또는 위탁받아 산지유통센터에서 저장, 가공, 선별포장 등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투기 원리가 적용됨
- ☞ 과거에는 산지의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고 설정을 통해 저장, 포장, 가공 등의 기능을 하기보다, 생산 후 출하하고 소비지에서도 소매점에서 일정 재고를 보유하고 소분포장 판매하는 경향이 강해 연기 원리가 주로 적용됨으로써 유통마진이 소매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었음
- ☞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산지의 협동조합, 유통영농법인, 산지유통인들에 대한 저온저장, 상품화 요구가 커지고 실제로 정책의 초점이 협동조합의 산지유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산지에 가까운 유통주체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할 처지가 되었음. 대형유통업체에서 벤더들에게 재고 부담을 맡기고 소비자구매 단위 상품을 적기에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재고보유의 위험과 상품화 비용을 전가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정됨. 결국 소매업체보다는 산지 출하주체, 도매, 납품업체들의 재고위험 부담과 가격위험 등이 커지게 되며 물류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



3. 생산지 및 소비지 유통

산지유통

- ☞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에서 대표적인 중간유통기구로 산지단계에는 농산물을 수집해 소비지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는 산지유통인과 협동조합이 있음
- ☞ 농산물의 산지유통은 농산물을 파종하기 이전, 파종 후 수확하기 이전, 그리고 수확한 후 논과 밭 또는 농장의 창고에서 보관 중에 산지유통인(수집상)에게 판매되거나 작목반,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통해 소비지로 공동출하되어 1차적인 교환기능이 수행됨. 산지에서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위탁받는 상인을 ‘1차 거래자(first handler)’라고 함
- ☞ 농산물 산지에서 활동하는 중간유통주체는 산지유통인과 생산자조직이며 거래방식은 포전거래, 정전거래, 계약재배, 공동판매 등이 있음. 포전거래(圃田去來)는 ‘밭떼기’ 또는 ‘입도선매’라고도 하며 배추·무·양파·양배추·대파·당근 등 주로 엽근채류와 수박에서 이루어지며, 사과·배·감귤 등 과일에서도 수확 전 과일이 나무에 달린 채 과수원 단위로 선도거래가 이루어짐. 정전거래(庭前去來)는 농가가 마늘·양파·고추·과일 등을 수확하여 창고에 보관한 상태로 산지유통인에게 판매하는 거래방식임
- ☞ 이 중에서 포전거래는 위험기피적인 농가들의 가격변동위험을 수확 전에 위험선호적인 상인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함. 최근 들어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재배관리(농약방제, 시비 등)가 어렵고, 특히 수확기 수확인력 확보가 어려워 개별농가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산지유통인에게 파종 후에 판매하는 성향이 강함. 5) 결국 포전거래는 농가들의 위험관리수단인 셈임6)
- ☞ 계약재배는 주로 농가와 협동조합, 산지유통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배계약 방식으로 협동조합이나 산지유통인들이 가공업체나 납품업체, 도소매 유통업체에 일정한 물량과 품질, 가격으로 거래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생산농가에 판로, 품질, 가격 등 조건을 제시하고 서면이나 구두로 재배약정을 하는 것임
- ☞ 계약재배는 계약영농(contract farming) 또는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이라고도 하며,

5)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고랭지배추 재배의 경우 1개월 육묘 후 농가들이 인력을 조달하여 밭에 파종한 후 보통 1개월 전후로 산지유통인들에게 밭떼기로 넘겨 산지유통인들이 전문관리인들을 고용하거나 혹은 직접 농약, 시비 등 필요한 관리를 전담한 후 1개월 지난 후 전문수확단을 고용하여 수확하여 소비지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고 있음

6) 농가들은 가격변동위험에 대해 기피적인 성향이 강하며(risk averter), 반면 상인들은 투기적 성향이 강해 위험선호적인(risk lover) 행위를 함. 한편 협동조합은 이윤추구보다는 조합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농산물을 위탁판매해 주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여 위험중립적(risk neutral) 성향이 강함



수직적 통합 중에서 계약통합 또는 계열화(contract integration)에 속함

- ☞ 대표적인 산지유통주체인 산지유통인은 가격변동위험이 큰 엽근채류의 50~90%를 수확 전 농가로부터 받떼기(포전거래)하여 소비지에 출하하며, 우리나라는 1995년에 ‘수집상 등록제’ (현재는 산지유통인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초기에는 1만여 명이 등록해 활동 하였으나, 2011년 9,743명이며, 현재 실제 활동하는 산지유통인은 3~4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Ⅱ 표Ⅱ-1 주요 품목의 포전거래율(2011년) Ⅱ

포전거래율	품 목 (%)
81% 이상	봄배추(99), 봄무(96), 고랭지무(87), 고랭지배추(75)
51~80%	대파(78), 수박(78), 양파(68), 당근(64), 콩(63), 가을무(56), 한지형마늘(55), 봄감자(54), 고랭지감자(53), 가을배추(51)
31~50%	감귤(47), 생강(45), 가을감자(38)
30% 이하	단감(20), 배(17), 사과(12), 난지형마늘(11)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농산물 유통실태」, 2012

- ☞ 협동조합은 전국의 농산물 산지에 1,165개소('12년 기준, 지역농협 967, 지역축협 117, 품목조합 81)의 조직을 중심으로 회원농가의 농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취하여 규모화된 공동출하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발휘하고 있음. 협동조합 유통은 기초조직인 작목반, 작목회, 최근에는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1차적인 수집이 이루어지고 청과물의 경우 저장, 가공, 선별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센터(APC), 쌀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산의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LPC)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소비지 도매시장과 소매업체, 가공공장 등으로 출하되고 있음. 협동조합, 산지유통인 외에도 산지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어 생산과 유통을 겸하거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 확산되고 있음
- ☞ 협동조합은 농민들의 다양한 개별경제활동을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수직적 통합 또는 수평적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매상, 수집상, 가공업자, 소매업자들과의 거래에서 교섭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⁷⁾



도매유통

- ☞ 도매상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조달하여 이를 소매상 또는 다른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도매단계의 유통기구임. 도매상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집과 분산임
- ☞ 미국의 경우 농산물 생산 및 거래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형도매회사들이 도매를 주도하며, 유럽은 주로 중규모의 도매회사들이 도매를 담당하고 있음.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주로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개인 또는 소규모 도매회사에서 도매를 담당하고 있음. 물론 도매시장 외에서 도매행위를 하는 상인들도 많음
- ☞ 도매상에는 제조업자 도매상, 상인 도매상(Merchant Wholesaler), 대리인, 중개인(브로커) 등이 있음. 여기서 도매상은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는데 비해 대리인, 중개인은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능을 담당함
- ☞ 소비지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 정부지원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33개의 공설 공영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 11개, 지방도매시장 22개)과 그밖에 일반법정도매시장 13개, 민영도매시장 2개가 있음. 공영도매시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설립하여 당초 유사도매시장 위탁도매상들의 위탁도매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일본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경매제도를 거래원칙으로 받아들여 경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 ☞ 경매의 종류는 수지식, 전자식, 기계식(시계식)으로 구분하거나 하향식(네덜란드, Dutch auction), 상향식(영국, English auction) 경매로 구분하기도 함. 경매방식은 이동식 경매, 고정식 경매, 차상경매 등으로 나뉘어짐. 우리나라는 무선응찰기를 통한 전자식으로, 이동식 경매와 배추, 무 등의 차상경매를 하고 있음
- ☞ 도매시장 거래방식에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 방식과 또다른 방식인 상대매매 방식이 있음. 물론 경매·입찰방식과 상대매매 방식 사이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 미국과 유럽의 경우 거래규모가 크고 산지출하자와 도매업자들이 규모가 큰 기업 형태로 상호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교섭력이 발휘되는 상대매매 방식을 주로 쓰고 있음. 반면 출하자들이 영세하고 개별적이어서 거래교섭력이 도매상보다 취약한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과

7) 거래교섭력(Bargaining Power)은 농산물 거래상황에서 거래조건(품질관리, 계약, 배달서비스, 지불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대적인 힘의 강도를 말함.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데, 시장력은 시장구조, 시장행위 또는 시장성숙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함(Kohls, R.L. and Joseph N. Uhl,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1990)



같은 경우 상대매매보다 경매·입찰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음. 최근 일본에서는 협동조합 중심의 출하로 거래교섭력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상대매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Ⅱ 표Ⅱ-2 세계의 농산물 도매시장 유형화와 비교 Ⅱ

구 분	미국, 유럽형	일본형	한국형	중국형
생산자 판매, 위탁	산지유통기업, 협동조합과 계약재배	협동조합 계통출하위탁 또는 직접출하	농민, 산지유통인 개별출하, 출하위탁	시장 직출하, 수집상 판매
산지출하 주체	민간유통기업 (Packer), 협동조합	농협, 산지유통회사, 농민	농민, 산지유통인, 농협, 영농법인	농민, 수집상
도매주체 (집하)	대형 도매회사	도매회사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법인	도매상 (위탁상)
분산주체	중간도매상	중도매업자 (중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상 (위탁상)
도매거래 방식	상대매매	(구)경매 위주 (현)수의매매, 매수집하, 경매 등 다양	(구)경매 위주 (현)경매+정가·수의매매, 상대매매 (위탁, 매취)	상대매매(위탁)

소매유통

- ☞ 소매상은 유통경로상 최종점에 위치하며 최종소비자와 접점에 있음. 소매상의 형태는 흔히 ‘업태(format)’라고 하며, 업태는 상품구성, 가격대, 입지, 점포규모, 판매방식, 영업 방식, 서비스 수준과 같은 소매믹스(retail mix)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하게 됨. 예전에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만 하면 판매되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조업자 편의 위주로 영업을 하여 신발가게, 옷가게, 생선가게와 같은 업종별 소매상이 주된 형태였음
- ☞ 그러나 최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상품판매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매상 형태가 소비자의 편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소비자들이 원하는 일괄구매(one-stop shopping)를 충족하기 위해 백화점 등 종합점이 발전하게 되었고, 저가격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할인점이라는 신업태가 도입되었음



- ☞ 소매상 업체에는 구멍가게, 재래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전문점, 할인점, 편의점을 비롯해 자동판매기, 방문판매, 통신판매, 인터넷판매, TV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가 있음

4. 유통비용

- ☞ 유통마진(marketing margin)은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한 가격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농산물의 중간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용 부가 활동과 기능에 대한 비용과 이윤의 합임
- ☞ 유통마진은 유통비용과 중간상 이윤으로 구성되며, 유통비용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 포장, 운송, 보관 등의 물류비용, 점포임대비용, 감모 손실 비용 등임
- ☞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최종소비자가 수취하는 가격 중에서 중간유통마진은 평균적으로 42.3%이며, 나머지 57.7%는 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임.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마진은 2001년 이후 10년간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45%로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와 변동이 있으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II -3 연도별 농산물 유통마진 추이(2001~2011) I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통마진율	43.7	45.0	43.7	40.8	45.0	44.0	43.4	44.5	44.1	42.3	41.8	
구성별	비용	30.4	29.6	27.5	28.0	29.7	28.3	28.1	30.8	31.0	28.5	29.3
	이윤	13.3	15.4	16.2	12.8	15.3	15.7	15.3	13.7	13.1	13.8	12.5
단계별	출하	11.7	10.3	11.5	8.3	11.2	11.7	11.8	10.3	12.2	11.1	10.0
	도매	9.4	10.2	9.6	9.1	10.2	9.1	9.6	9.6	9.3	7.9	8.6
	소매	22.6	24.5	22.6	23.4	23.6	23.2	22.0	24.6	22.6	23.3	23.2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2012

- ☞ 유통마진은 농가가 판매한 이후 소비자가 구매하기 직전까지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과 중간상인들이 거래 대가로 얻는 이윤으로, 농산물의 경우 전체 유통마진 중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이 출하단계와 도매단계를 합친 마진보다 많음
- ☞ 소매단계 유통마진이 다른 단계보다 높은 이유는 재래시장 식료품점이나 소형슈퍼 등 소



형소매점에서는 영세한데다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크고 날개판매와 부패성으로 인해 상품손실과 감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반면 대형소매점에서는 개별 소비자 구매권역에서 지역적 독과점력을 발휘하여 마진폭이 채소의 경우 25~35%로 높은 것으로 추정됨⁸⁾

- ☞ 한편 단계별로 도매단계의 마진율은 출하단계보다도 적으며 소매단계보다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이는 출하농산물이 도매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감모와 품질저하가 적은데다, 도매단계의 마진이 주로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수수료이고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유통마진 조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여 매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조사대상 품목별로 성출하기와 저장시기에 주산지 2~3개 지역과 서울 기준 소비지까지 유통경로 중 출하단계, 도매단계, 최종소비단계 등 각 단계별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면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음. 유통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 상인이윤으로 구분조사하고 있음
- ☞ 2011년 유통마진 조사 결과, 30개 품목(세부품목 42개)의 평균 유통마진율은 41.8%이며, 농가수취율은 58.2%로 나타났음. 유통마진 41.8% 중에 직접비 및 간접비가 29.3%, 상인이윤이 12.5%로 조사되었으며, 단계별로는 소매단계가 가장 많은 23.2%, 출하단계가 10.0%, 그리고 도매단계는 8.6%로 나타났음

농가수취율	58.2%				
유통마진	41.8%				
	구성별		단계별		
	비 용	29.3%		출 하	10.0%
		직접비용 13.4	간접비용 15.9%	도 매	8.6%
	이 윤	12.5%		소 매	23.2%
소비자지불가격	100%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2012)을 토대로 제작성

▮ 그림 Ⅱ - 4 농산물 유통비용구조 (2011) ▮

8) 2010년 3대 민간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유통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 채소품목에 있어서 물류비와 장려금, 하역비를 포함한 직접이윤은 평균적으로 10%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직접비를 제외한 마진율은 15~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유통비용 중에서 운송비, 포장비, 상하차비, 수수료 등 직접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품목 중에서 상품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큰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직접비가 유통마진의 4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유통단계별 마진 중에서 소매단계 마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상품 손실과 감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 ☞ 부류별로 유통마진율을 비교해 보면 저온저장이 아닌 일반저장으로도 저장성이 높고 상품손실이 적은 쌀·콩·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26.7%에 불과하며, 시설온실에서 연중 재배하며 여러 번에 걸쳐 수확한 후 영농조합, 작목반, 농협 등 생산자조직을 통해 즉시 도매시장이나 소매점에 계통출하되고 규격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과채류는 41.5%, 출하 후 도축장 또는 도계장을 거쳐 정육점에서 소비자가 구매하여 유통단계가 비교적 짧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은 41.9%임
- ☞ 반면 상품 단가에 비해 부피가 커서 운송·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부패가 심한 배추·무 등 엽근채류의 유통마진은 69.6%로 소비자 지불가격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장출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저장비용이 높은 고추·마늘·양파의 양념채소는 48.0%, 저장출하가 많은 과일류는 저장비용 등으로 50.4%의 유통마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II-4 농산물 부류별 유통마진 구조 (2011)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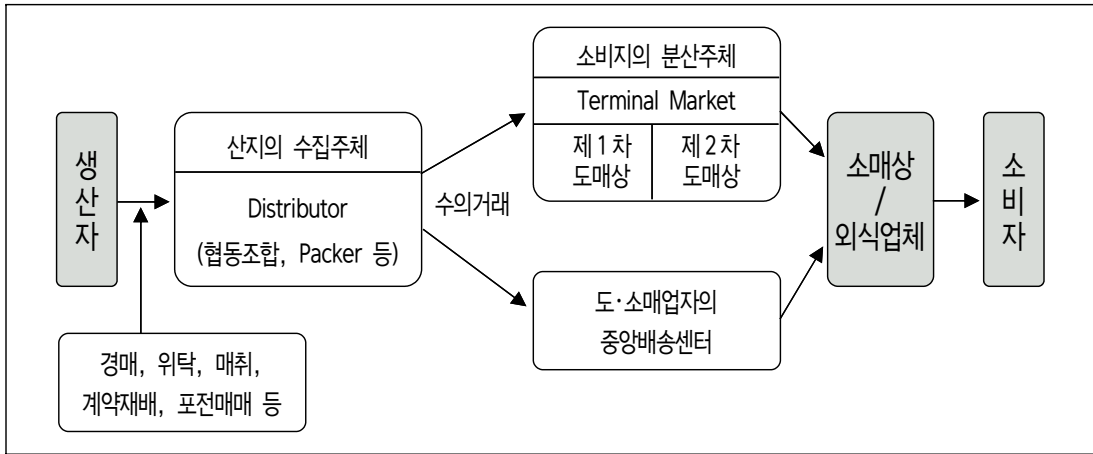
부 류	마진율(%)	품 목
식량작물	26.7	쌀, 콩, 감자, 고구마
엽 근 채	69.6	배추, 무, 상추, 당근
양념채소	41.5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과 일	48.0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복숭아
과 채	50.4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딸기
화 훼	56.3	장미, 국화
축 산	41.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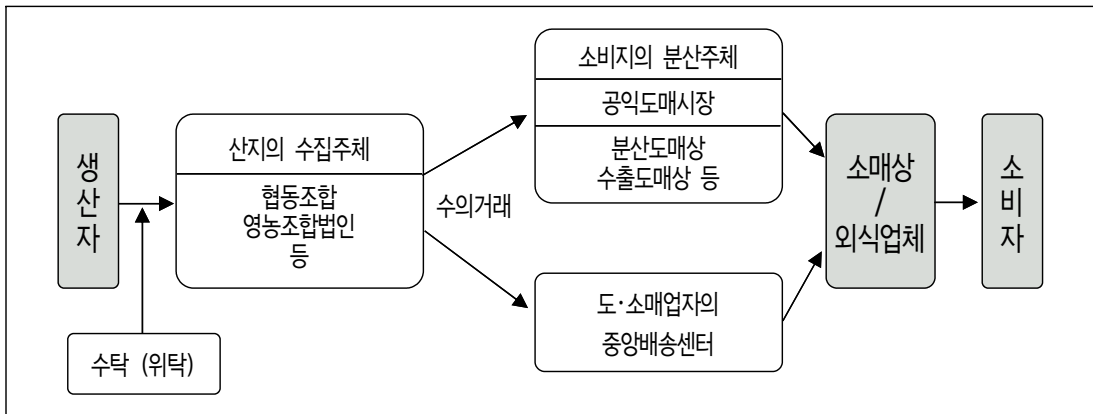


5. 주요국 농산물유통 체계

Ⅵ 미국 농산물 유통경로 및 체계 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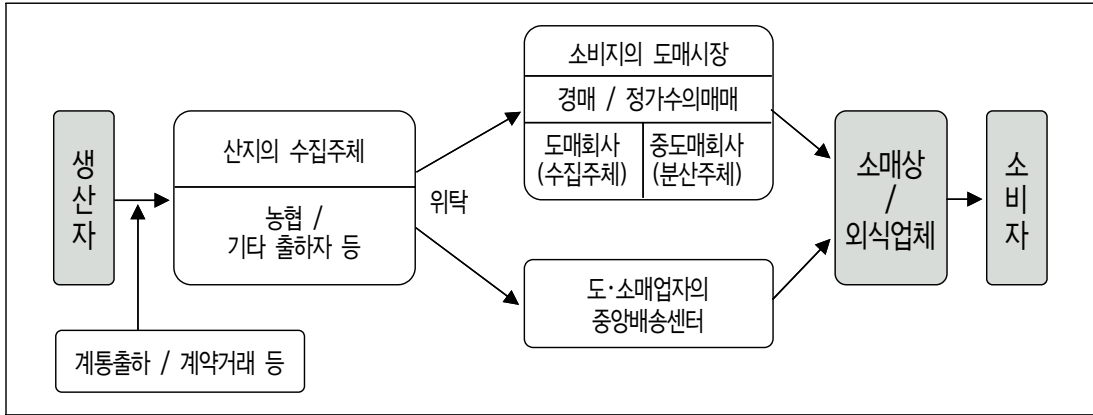


Ⅶ 프랑스의 농산물 유통경로 및 체계 Ⅶ





일본의 농산물 유통경로 및 체계





제2절 도매시장 유통과 거래⁹⁾

1. 도매시장의 역할

(1) 의의

도매시장이란 생산자와 판매업자, 판매업자 상호간, 또는 판매업자와 산업용 수요자간에서의 거래, 즉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말함. 이것은 가장 광의의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이라 함은 구체적 시설과 제도하에서 항상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구체적 시장)를 말함. 장소적 의미에서의 도매시장은 개설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 구성됨

개설자는 시장의 시설을 보유 관리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함. 개설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등 지방자치단체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하고, 개설자가 민간인 일때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임.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국고 지원에 의한 공공투자로 건설한 시장을 공영도매시장이라고 함.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 등 출하자(出荷者)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경매거래를 주재하고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상품을 판매함. 중도매인은 다시 시장안의 점포에서 매입하러 나온 소매상에게 판매하며, 매매참가인은 점포가 없는 상인으로 도매시장 내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시장 외부에서만 판매가능

도매시장의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서 하지만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비상장거래(상장예외품목)도 허용하고 있음. 경매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지의 출하자(出荷者)로부터 상품을 맡아 출하자 대신 경매에 붙이는 위탁판매의 방법이며, 경매를 통해 판매된 상품의 대금은 결산방식으로 출하자에게 돌아가고,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수수료를 받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우리 나라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이 있으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농수산물의 물류활동 등 도매시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17세기 후반에 파리에서 곡물거래를 위한 도매시장이 탄생한 것이 시발이었음.

9) 해당 내용은 「新 농산물 유통」(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9)의 내용을 인용함



우리나라는 농안법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각 시도에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음. 서울 가락동(可樂洞)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1985년에 개설)이 대표적이며, 2012년도 현재까지 전국에 48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2) 도매시장의 기능

최근에는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정책적으로 권장 유도하고 있고, 대형할인점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유통 경로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수의 중개업자, 다수의 구매업자가 존재하는 도매시장임

출하자들이 일시에 생산되는 많은 물량을 믿고 판매를 의뢰할 수 있고, 거래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1) 가격 형성 기능 :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적정한 균형가격 형성
- 2) 수급 조절 기능 : 대량집하·대량분산이 가능하므로 수급조절과 신속한 거래 가능
- 3) 분산 기능 : 집하된 농수산물을 소매시장에 적절히 배분(분산)기능
- 4) 유통비용 절감 기능 : 한 장소에 출하하고 구매가 가능하므로 경비절감 가능
- 5) 거래상 안전 기능 : 도매시장의 거래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거래가 안전함
- 6) 국가 세입 증대 및 물가정책 수행 기능 : 도매시장의 거래정보가 투명하여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신고율을 제고하여 국가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물자 부족시 도매시장을 통해 수집, 분산 시장을 간접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물가정책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 7) 유통정보 제공 및 농업관측 기능 : 거래되는 물량과 가격 등을 공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출하조절의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구매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농업관측을 가능하게 함
- 8) 위험 전가 기능을 통한 보험 기능 수행 : 거래방법 개선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해지면 실물거래가 아닌 선물거래를 통해 미래시세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거래를 통한 위험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전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험작용을 할 수 있음



2. 도매시장 거래자

도매시장의 거래 관계자라 함은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기타 소비자 등을 말하는데,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1) 출하자 및 산지유통인

1) 출하자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도매시장에 위탁하는 자를 말함. 출하자는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음. 넓은 의미의 출하자에는 개별 출하자는 물론 산지에서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도 포함됨

농어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출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지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거나 산지유통인들을 통하여 출하하는 경우도 많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시장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가격교섭력이 과거보다는 좋아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조직적으로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고 개인보다는 시장정보가 풍부한 산지유통인이나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를 대행해 주는 주재하주¹⁰⁾를 통해서 출하하는 것이 유리한 면도 있음

또한 2009년 1월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2) 산지유통인

농안법 제2조 제11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함

농안법 제29조에는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산지유통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출입 금지·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산지유통인 업무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농안법 제86조)

10) 주재하주란 도매시장내 상주하면서 농어민들이 의뢰한 상품을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를 대행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출하 대행자로서, 산지 출하자들과 친인척이거나 연고를 맺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만일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농안법 제88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농안법 제29조 제2항),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농안법 제88조 제5호)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1) 지정 절차

도매시장법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하며(농안법 제2조 제7호), 시장도매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함.(농안법 제2조 8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지정 절차는 농안법 제23조(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사업시작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2) 의무 사항

농안법 및 도매시장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의무는 출하자들이 위탁(매수)한 농수산물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출하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형성해주고 대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핵심임. 거래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지정조건 준수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음. 또한 임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



어야 함(농안법 제23조).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해당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농안법 제36조)

-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승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에 농안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③ 자본금, 순자산액, 거래보증금, 출하손실보전금 등 확보 : 도매시장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④ 경매사 임면 : 도매시장법인은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임명하여야 함. 물론 시장도매인은 경매를 하지 않으므로 경매사가 필요 없음
- ⑤ 매매 방법의 준수 :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음
- ⑥ 판매원표 관리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양식에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⑦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영업 및 겸영금지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또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함.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제빙, 보관, 후숙, 저장, 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 ⑧ 수탁거부 금지 및 불매농수산물 보관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한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매수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수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음



- ⑨ 수수료 등 징수 제한 :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 정산조직은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됨. (농안법 제42조)
- ⑩ 휴·폐업 신고 : 조례(업무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휴·폐업 신고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⑪ 거래대금 결제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매매 즉시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결제하여야 함. (농안법 제41조) 단, 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름
- ⑫ 표준하역비 부담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부담하여야 함
- ⑬ 각종 장부 비치 및 영업실적 보고 : 조례(업무규정)에서 정한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등의 영업실적과 업무집행 현황, 임원 변동 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⑭ 지시사항 이행 및 공시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처리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도매시장공판장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농안법 제2조 제5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안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농안법 제43조)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는데(농안법 제44조),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며, 산지유통인은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함.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면함

농수산물 거래 관련 규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공판장의 규모,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공판장은 대부분 농협과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 구리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에도 공판장이 입주하여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3) 중도매인

1) 중도매업 허가 및 기능

중도매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과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중도매인을 모집하였으나, 개설자가 직접 모집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음

보통 중도매인들은 과거부터 수십 년간 판매망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일정 이윤을 취하고 거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농어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경우도 많지만 판로 개척이 어렵고 시간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중간 유통인들을 이용하는 것임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사람과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따라서 중도매인 같은 중간 유통인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임

2) 거래 방법 및 절차

농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음.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 받거나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판매하는 방법이 있음



3) 의무 사항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매수 판매하여야 하며(농안법 제31조 제2항),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경우 즉시 인수하여야 하고(농안법 제39조),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할 경우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대금을 즉시 결제해야 하며(농안법 제41조), 중개수수료의 징수 한도를 준수해야 하고(농안법 제42조 제4호),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실적을 초과해야 하며(도매시장조례), 그 밖에 개설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거래 방해 금지 등 :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농안법 제25조 제4항)
- ② 도매시장 내에서의 산지유통인 업무 금지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농안법 제29조 제2항)
- ③ 위탁 금지 의무 :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개설자의 허가를 얻어 상장예외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농안법 제31조 제2항)
- ④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 영업 금지 :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마찬가지로 허가받은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해서는 아니됨. (농안법 제35조 제1항)
- ⑤ 수탁거부 금지 : 상장예외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수탁 받아 판매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입화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됨. (농안법 제38조)
- ⑥ 매수 농수산물의 즉시 인수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수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함.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안법 제39조)
- ⑦ 표준하역비 부담 :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듯이 중도매인이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할 경우에는 표준하역비를 부담하여야 함. (농안법 제40조 제2항)
- ⑧ 출하자 대금 즉시 결제 : 경매에 참여하여 농수산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계약 관계에 따라 물품대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상장 예외품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출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결제해야 함. 다만, 지급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됨. (농안법 제41조)

- ⑨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준수 : 중도매인이 상장 예외품목을 거래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사항으로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징수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4) 매매참가인

1) 정 의

매매참가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2) 거래참여 방법

개설자에게 신고한 후 거래참가증을 교부받아 도매시장법인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에 참여함

3) 중도매인과의 차이점

매매참가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만 하면 되며, 도매시장 내에 상주하지 않고 점포가 없다는 것 등이 중도매인과 다른 점이며,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 내에서는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5) 경매사

경매사란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즉, 농어민이 출하한 농수산물의 가격을 흥정하여 적정가격에 판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 물론 경매사는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시험을 거쳐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소속 도매시장법인이 임명하며, 임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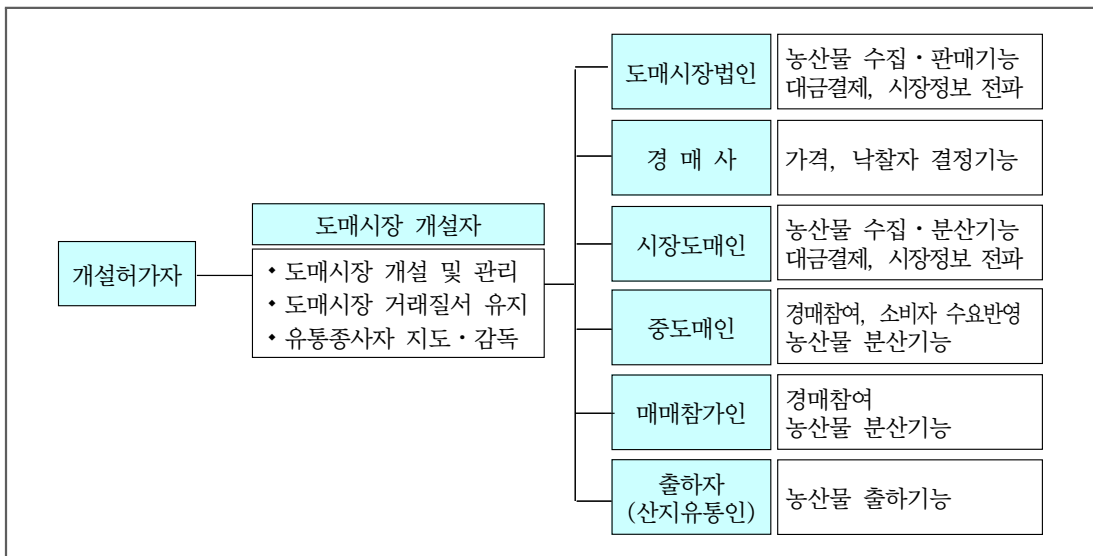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는 물론 적정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매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하고 있음

경매사 역할은 농안법 제28조에서 ①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②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③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외에도 농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매시 최초가격 즉,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함

경매사는 농수산물의 출하물량과 전일가격, 산지 동향, 상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매시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매매가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Ⅱ 도매시장 관계자 및 주요 역할 Ⅱ





3. 도매시장 운영 제도

도매시장 관련 제도란 도매시장 개설부터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법적인 기준 및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지원사항 등을 말함. 도매시장 개설과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취소, 중도매업 허가 및 취소, 거래보증금, 거래대금 정산 방법 등 앞에서 설명한 사항들은 생략하고, 개설자나 개설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공사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도매시장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제도와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1) 출하물품 대금 결제 제도

농안법 제41조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출하 대금 결제를 위한 별도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직접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거래 중도매인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하자가 개설자에게 대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도매시장조례에 의하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 하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산창구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대금 결제로 인하여 발생된 보증금 부족분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보충하도록 하여야 함

(2) 각종 수수료 징수 제도

수수료란 일정 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함. 따라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징수절차, 징수자, 징수방법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야 함. 농안법 제42조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징수할 수 있는 금원을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로 한정하고 다른 어떤 명목으로도



금원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시장사용료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 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금원으로 도매시장사용료의 총액은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금액의 1000분의 3(0.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시장사용료의 부과는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시설사용료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시설(필수시설,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도체등급판정사무실 제외)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으로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5%)[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개설자가 정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음

3) 위탁수수료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가장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대상임. 1976년 농안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고, 1994년 5월 3일 농안법 파동 이후 도매시장 정보가 언론을 통하여 출하자에게도 공개되면서부터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음

4) 중개수수료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중개를 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가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한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부류별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5) 정산수수료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이 대금 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임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정률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최고한도 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3) 상장 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 제도

상장 예외품목이란 농안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원칙인 수탁판매 방법의 예외적 거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로부터 수탁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함

상장 예외품목 거래는 거래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으므로 농안법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함

(가) 상장 예외품목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

- ①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 ②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 ③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나) 상장 예외품목 지정 절차

상장 예외품목은 중도매인들이 직접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안법 제31조 제 2항에 의거하여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조례에 따라 별도로 거래 중도매인 허가를 실시함

상장예외 거래가 지정된 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상장 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하게 됨. 상장 예외 품목 거래 허가를 얻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탁거부 금지, 대금 전액 즉시 결제 등 농안법상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상장 예외품목 지정 사례

가락시장을 포함하여 전국 33개 공영 도매시장 중에서 상장 예외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시장으로는 서울가락, 부산 엄궁동과 반여동, 대구 북부, 수원, 구리, 울산·안산(수산부류) 등 8개 도매시장임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1995년에 처음으로 채소류 30개 품목이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1996년도에는 61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1998년도부터는 과일류로 확대되어 13개 과일류가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채소류까지 총 90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2000년도에 채소류 85개, 과일류 28개 등 총 11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채소류 87개, 과일류 28개 등 총 115개 품목으로 지정되었음. 채소류의 경우 해마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거래량이 소량인 이유로 인해 앞으로도 상장 예외품목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수산부류는 가락시장의 경우 2001년도에 처음으로 패류가 12개 경매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2007년도에 젓갈류 5개, 건어류 7개, 패류 26개 등 총 38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며, 2012년도 현재 총 4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음. 수산부류의 경우에는 많은 물량이 가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거나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선어류나 냉동 수산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 법정도매시장인 양곡시장의 경우에는 1995년도부터 쌀, 찹쌀, 보리쌀, 밀,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콩, 팥, 녹두, 참깨, 들깨, 땅콩 등 15개 전 품목이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었음

(4)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제도

잔류농약,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 위해 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한 반응과 가격이 비싸더라도 신선하고, 당도가 높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고품질의 농산물을 선호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여 검사 결과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같다)

(5) 기타 제도

앞에서 설명한 제도 이외에도 도매시장 관련 제도에는 표준하역비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상장 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부담 제도, 대량입하품 우대 제도, 제3자 판매 제도, 유통종사자 교육 제도, 도매시장 평가 제도, 거래분쟁 조정 제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일부 언급하였고, 농안법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어 별도의 설명은 생략함



4. 도매시장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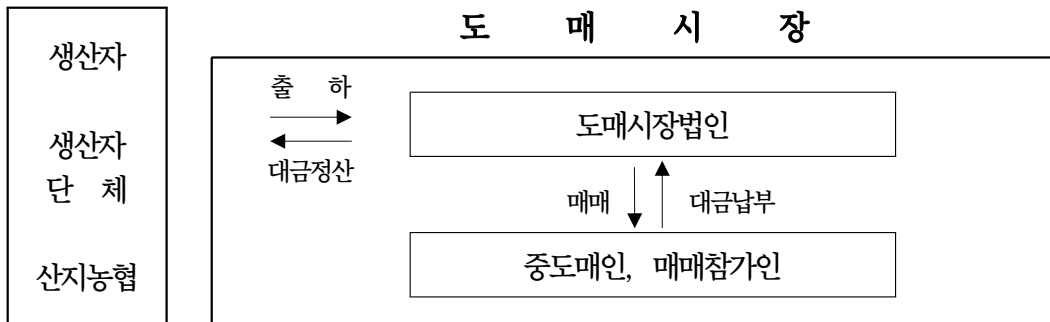
도매시장 내에서의 유통경로라 함은 출하 농수산물의 위탁 및 상장, 하역, 경매, 분산, 대금정산 등을 의미함.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양곡별로 출하에서부터 거래방법, 분산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부류별로 별도로 설명하고자 함

(1) 출하 및 위탁

생산 농어민이나 산지 수집상이 농수산물 판매를 의뢰하는 것을 위탁이라 함. 부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1) 농산물

대부분 개인이나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하여 경매품목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상장예외 품목은 중도매인에게 직접 판매를 위탁하게 됨. 따라서 농산물은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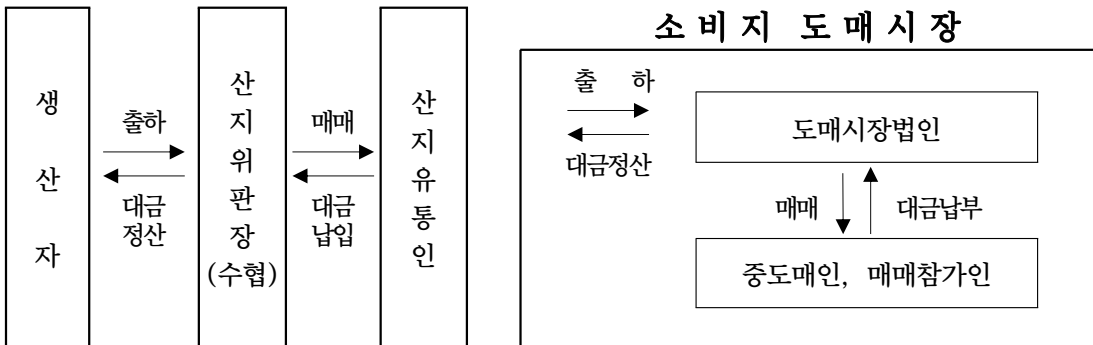
2)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입찰을 통해 가격이 결정됨. 이를 산지 수집상들이 매수하여 대량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함. 수입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입가격과 관세가 책정된 상태에서 도매시장에 출하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은 가격 결정보다는 대량의 물품들이 판로가 넓은 곳으로 모여들어 판매되는 분산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공정한 거래를 통한 적정 가격 결정이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가격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도매



시장에서 2차 경매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유통경비만 증가시키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산물같이 가격이 결정되어 출하되는 농수산물은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던지 정가·수의매매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3) 축산물

산지나 전문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지육상태로 출하되든지 살아있는 소나 돼지를 직접 출하하고 있음.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시장 구조는 살아있는 생축을 거래하는 가축시장, 식육의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소비지의 식육시장으로 구분됨. 축산물은 도축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지육으로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생적이어야 함. 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유통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법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음

4) 양곡

과거에는 생산농민들이 출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에서 추곡수매제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데, 세계 무역 추세가 농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책을 폐지하여 완전경쟁에 맡기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 우리 나라도 2005년도부터 정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필수 물량만 매입하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게 되었음. 이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쌀이 일반 시장에 출하되어야 하는데, 1990년도부터 쌀 생산지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생산자들로부터 조곡을 매입·도정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물론 일부 생산 농민들이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도 있음. 쌀 이외의 콩, 참깨, 조, 수수 등 잡곡과 수입 양곡도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판매과정을 거치면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



거나 공매를 통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2) 하역 및 선별

도매시장에 입하된 농수산물은 경매절차를 거쳐 판매하든 상장 예외 거래를 통하여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하든 운송차량에서 내려 경매장이나 중도매인 점포로 이송해야 하고, 경매된 농수산물은 다시 낙찰받은 중도매인 점포로 이송해야 함

이를 통틀어 하역이라 말함. 하역 후 비슷하거나 동일한 등급끼리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을 선별이라 하는데, 이는 보다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로 경매장에 진열할 때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1) 하역의 중요성 : 출하된 농수산물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내리던지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내리던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 비용이 수반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의 중요한 과정임. 가락시장의 경우 2011년도 말 기준으로 하역인력이 1,324명에 이르고 있음. 물론 하역장비가 100% 기계화되더라도 그 수는 줄어들겠지만, 하역장비 운영 인력 등 일정 수는 반드시 필요함
- 2) 하역장비 : 과거 또는 현재도 재래시장이나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하역작업에 지게, 손수레, 핸드카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매시장에서는 전동차, 지게차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2004년도에 개장한 강서시장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하역 장비를 자동화하여 전통적인 하역장비는 사라졌음
가락시장의 경우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지게차 64대, 하역 작업의 주력장비인 전동차가 352대 등으로 상당부분 자동화되었음
- 3) 하역 노조 : 대부분 도매시장마다 또는 도매시장법인마다 하역노조를 구성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장비가 자동화되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가락시장의 경우 1,324명의 노조원이 하역노조를 구성하여 농수산물의 하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과는 별도의 단체이며 매년 부류별로 하역료를 협상하고 있음. 반면, 강서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자회사 형태로 2개 조합이, 도매시장법인과 별도로 2개의 하역회사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38명임
- 4) 선별 : 선별은 상품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물론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한 것임. 최근에는 사과, 배 등과 같이 크기가 일정한 상품끼리 선별하는 등 출하 단계에서부터 등급을 구분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내에서는 특별



한 선별 작업이 필요 없으며, 수박, 황어 등과 같이 산물로 출하되는 농수산물은 하역 후 별도의 선별작업에 의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산물 중 특히 과일이나 채소류는 대부분이 포장되어 출하되고 있어 별도의 선별작업이 필요 없음

(3) 도매시장법인 상장 또는 중도매인 위탁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뜻함. 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상장거래라 하고, 직접 중도매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비상장(상장예외) 거래라 칭하고 있음.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품목은 상장품목, 중도매인에게 직접 출하하는 품목은 비상장(상장예외) 품목이라 함

위탁이란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누구에게나 판매를 의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의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특히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상장거래해야 할 품목을 상장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중도매인에게 직접 판매해 줄 것을 의뢰하는 불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4) 경매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2단계 과정으로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의뢰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 또는 정가·수의매매를 통하여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말함. 경매는 도매시장 내에서의 농수산물의 유통과정 중에서 적정가격을 형성하는 절차이므로 농안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그 구체적인 과정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매시장조례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음

- 1) 하역 및 선별 : 출하주별 · 품목별 · 등급별 · 개수별로 선별 작업함
- 2) 수탁증 발부 : 상장일자 · 출하자성명 · 품목 · 등급별 수량 기재
- 3) 판매원표 작성 : 상장 · 경매순서에 의거하여 출하자 성명 · 품목 · 수량 등 기재
- 4) 경매 실시(경매 절차)
 - ① 경매사의 신호에 의해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집
 - ② 판매원표 순서에 의한 경매 실시
 - ③ 견본 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 해체, 산물 출하품은 진열)
 - ④ 경매사가 출하자, 품목, 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 ⑤ 경매참가자가 희망 구매가격 제시
- ⑥ 경매사가 경락가격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5) 물품 인수 및 분산(중도매인 또는 시장도매인)

경매가 끝나면 낙찰받은 농수산물을 즉시 판매하거나 자기점포로 이송하는데, 이는 마지막 소비자 판매를 위한 절차임. 경락 받은 물품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인수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상품성이 저하되어 가격이 떨어지므로 농안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농안법 제38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상장예외 거래 허가 중도매인의 수탁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에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중도매인은 매수 즉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매수된 농수산물은 마지막 소비자인 시민이나 소매상인들에게 판매됨. 이를 유통과정 중 분산이라 함. 출하자들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이유는 가격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분산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함

(6) 대금 결제

농수산물이 판매되면 경매절차를 거치는 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예외 절차를 통하는 경우에 중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여야 함. 과거에는 상관습에 따라 1달 또는 15일 내에 산지 출하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였지만, 농안법에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 또는 판매 즉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안법에서는 물품대금 결제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전액을 출하자에게 결제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히 결제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지급방법일 뿐이지 결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한편, 인터넷이 개별 농어촌까지 보급되면서 도매시장 및 상인 정보가 공개되어 상거래가 투명화 됨에 따라 관리 감독 및 출하자들의 감시도 한층 강화되어 신용거래 정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5. 경매 및 입찰 매매

(1) 경매제도의 이해

1) 법적 근거

농안법 제32조(매매방법)에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함.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의의

경매는 노예거래 제도에서 발달하여 부동산 매매, 중고가구, 농수산물 거래로 발달하였고 전함.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산지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특정 농수산물의 가격을 제시한 후, 구매자와 흥정에 의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합의될 경우 매매됨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 내에서의 매매방법인 경매제도는 농어민이 출하한 농수산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하기 위한 매매방법으로 경매사가 적정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 참가자(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들의 여러 차례 흥정에 의하여 최고가에 낙찰하는 매매방법임. 결국 경매사가 흥정을 붙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경매는 입찰과는 달리 동일인이 몇 번이라도 가격신청을 할 수 있고, 구매인이 경쟁적으로 공개적으로 호가할 수 있고, 신속한 매매방법이지만 실제로 까다롭고 복잡함

입찰은 경매에 비해 신중은 기할 수 있으나, 거래과정의 신속성을 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음

도매시장의 가격수준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공정한 경매방법에 의한 신속한 가격 결정은 공정한 거래의 필수 조건임. 경매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음

3) 경매제의 장점

- 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할 수 있어 부패가 쉬운 농수산물의 유통이 원활함
- ② 저급품의 농수산물도 충분한 시장가치를 제공함
- ③ 대량판매를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 판매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④ 짧은 시간에 대량 판매가 가능함
- ⑤ 생산자가 시장가격 추이를 관찰 할 수 있어 출하량 조절을 할 수 있음
- ⑥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가격이 결정됨



⑦ 공개판매와 거래정보 공개로 거래투명성을 제고함

4) 경매제의 단점

- ① 낮은 가격 또는 불안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음
- ② 구매자가 수적으로 제한되어(허가를 득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만이 경매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경쟁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
- ③ 지나치게 많은 거래자, 취급자, 투기꾼들이 모여 시장을 투기장화 하고 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음
- ④ 경매는 일정 공간에 상품을 정리한 후 매매를 함으로 시설 미비로 상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유찰될 경우에는 차기 매매시 까지의 기간동안 상품성이 떨어져 가격이 하락할 우려도 있음
- ⑤ 많은 사람들(출하자)이 전문적인 경매방법을 이해하지 못함
- ⑥ 중도매인들간에 담합하여 특정 출하자의 농수산물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낮게 낙찰 받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5) 경매의 방법

실제로 우리 나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방법은 상장 농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이나 시장의 경매 시설 또는 그 지역 도매시장의 거래관행 등에 따라 도매시장마다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 가격 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

- ① 영국식(상향식 경매 : **the English auction**) : 최초 가격에서 점차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최고가에 낙찰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매수 희망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② 네덜란드식(하향식 경매 : **the Dutch auction**) : 경매사가 경매시작 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가격을 내리면서 경매를 진행하면서 최저가에 낙찰하는 방법으로 각 가격단계마다 한 번만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음
- ③ 한·일식 경매(동시호가식 경매 : **the Korea-Japan auction**) : 기본적으로 영국식의 경우와 같은 상향식 경매이지만, 영국식과는 달리 경매참가자들이 거의 동시에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점에서 독특함. 영국식은 경매사가 경매시작 가격을 제시



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이 가격을 제시하며, 다시 경매사가 더 높은 가격 제시자가 있는지 신호를 보내면서 마지막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구매자로 결정하는데 비해, 동시호가식은 경매 참가자가 동시에 경쟁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며 경매사는 그 중 최고가를 공개하면서 또 다른 최고가격 제시자를 찾으면서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임

(나) 경매의 기술적 방법에 의한 분류

- ① **현물경매** : 출하된 상품의 전량을 진열하거나 일부만 개봉하여 놓고 경매하는 방법임
- ② **견본경매** : 일정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놓고 경매하는 방법이며 견본품이 거래되면 전부 거래된 것으로 봄. 농안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의4에서 견본거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음
- ③ **번호경매** : 판매자 측이 현물이나 견본에 의해 경매순서를 정해놓고 구매자 측이 예비조사를 하게 한 후 견본을 꺼내 보이면서 번호를 호명하며 경매하는 방법임

(다) 경매의 진행방법(경매 참여자의 이동여부)에 의한 분류

- ① **이동식** : 상품의 무더기마다 경매사와 구매자가 이동하면서 경매를 하는 방식임. 가락시장의 경우 무, 배추, 수박, 대중선어 등의 매매에 사용됨. 산지 수협공판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② **고정식** : 롤러가 달린 전시대 위로 견본품이 회전하면서 이동하면 경매 참여자들이 경매대에서 그 형질을 살피고 나서 경매에 붙이는 방법임 가락시장의 과일 경매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6) 경매 응찰 방법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대한 응찰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등급이 표시되면 경매 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입력 또는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임. 그리고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낙찰 총금액 등이 표시됨



- ②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 경매수지도에 의거 경매 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임. 이 때 경매 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 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 ③ 기록식 : 경매 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임.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함
- ④ 서면입찰식 : 입찰 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등급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Ⅱ 수지식 경매와 전자식 경매의 비교 Ⅱ

구 분	수지식	전자식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비용이 필요 없음 ▸ 경매에 흥이 있음 ▸ 기존의 중도매인은 별도의 적응과정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에 대한 불신 해소 ▸ 업무의 신속화 · 간소화 ▸ 안목경매 가능 ▸ 유통종사자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 ▸ 경매 참가자 저변 확대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과정에 담합 등 불신 상존 ▸ 업무과정의 복잡성 · 후진성 ▸ 눈치 경매 조장 ▸ 경매참가에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비용 등 투자비용 과다 ▸ 유지 보수비용 발생 ▸ 노령화된 중도매인 적응 불편

7) 경매 진행 절차

(1) 전자식 경매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전자식 경매 진행절차를 살펴 보면 출하자 등록(송품장)작성 ⇒ 하역 및 수탁증 발급 ⇒ 상장번호 기입 ⇒ 등급판정 ⇒ 상장신청서 전산입력 ⇒ 구매자 암호 및 코드입력 ⇒ 경매실시 ⇒ 낙찰자 결정 ⇒ 낙찰품 이송 ⇒ 반출 ⇒ 정산 ⇒ 판매대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짐. 이들 단계별 경매 진행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준비단계

- ① 출하자등록(송품장) 작성 - ② 하역 및 수탁증 발급 -
- ③ 상장번호 부여 및 등급판정 - ④ 송품장을 보면서 전산 입력

(나) 경매단계

- ① 중도매인 번호(암호) 및 코드 입력 - ② 경매 실시 - ③ 낙찰자 결정

(다) 경매 후 단계

- ① 낙찰 물품 이송 및 반출 - ② 정산(출하자에게 판매정산서 송부, 중도매인정산서 발급) - ③ 판매대금 지급

(2) 수지식 경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수지식 경매 진행절차는 경매시설과 취급부류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부류에 대한 수지식 경매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 : 출해주별 · 품목별 · 등급별 · 갯수별로 선별 진열

(나) 수탁증 발부 : 상장일자 · 출하자 성명 · 품명 · 등급별 수량 기재

(다) 판매원표 작성 : 상장 · 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 · 품명 · 등급 · 수량 등 기재

(라) 경매실시

- ①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 참여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집합
- ②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 ③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체, 미포장품은 진열)
- ④ 경매사가 출하지역 · 출하자 · 품목 · 품종 · 수량 · 품위등급 및 필요한 사항 호창
- ⑤ 경매 참여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 ⑥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마) 경매기록 : 작성된 판매원표에 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2) 입찰

1) 의의

- ① 동일인이 최초 구매 희망가격을 경매사에게 비밀리에 한 번만 제시하여 경매사가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낙찰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여러 번 제시하는 경매와는 다름
- ② 원료 농산물, 수입 농수산물 재판매 시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수입잡곡 공매시에 입찰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③ 농안법시행규칙 제31조에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 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와 기타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입찰 방법의 장단점

- ① 정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비공개적이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임
- ② 가장 중요한 단점은 가격 결정이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할 수 없다는 점임



6. 정가 및 수의 매매

(1) 정 의

정가매매란 백화점이나 할인매점에서 가격을 붙여 반드시 그 가격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가격 정찰제를 말하며, 수의매매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1대 1로 상대하여 흥정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매매방법임

(2) 의 의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경매 또는 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정가매매, 수의매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개정 농안법('12. 8. 23시행)에서는 정가매매, 수의매매도 동등하게 거래원칙화 하였음. 이와 같은 거래방법의 규제완화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도매시장을 둘러싼 산지와 소비지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도매시장이 앞으로도 중요한 농수산물 유통경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음

경매방식은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정가 또는 수의매매는 사전 가격조정 기능 발휘로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고 산지 출하조직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조달과 소비자 유통업체의 구매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임

(3)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경우(시행규칙 제28조)

- ①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 ③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 ④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 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⑥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 ⑦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 ⑧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수의매매의 장단점

거래당사자간 교섭에 의한 매매로써 경매가 공정성·투명성에 장점이 있는 거래방법이라면, 수의매매는 효율성, 신속성을 장점으로 들 수 있음.

저장성이 있고 안정적이며 품질 또는 등급화를 통해 규격화된 상품 거래에 적합하며, 생산자의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가격 결정이 비공개적이고 거래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5) 정가 또는 수의매매 관련 조치 사항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함

※ 정가수의매매추진절차·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첨 16 정가수의매매의 이해” 참조

제2장 | 도매시장과 농안법



제1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절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및 농안기금

제3절 농수산물도매시장

제4절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2장 도매시장과 농안법

제1절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농안법의 역사

국내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농협 및 수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당시 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고급화의 요구가 커지면서 시장거래가격도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중심의 필수양념류의 가격이 일반 물가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정부차원에서의 농수산물가격안정 시행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에 그동안 시행되어온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축산법, 양곡관리법 등 농산물유통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유통개선사업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연 혁	변천과정
●	1951년 6월 22일 「중양도매시장법」 제정 - 전문 16개,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 상공부에서 시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
●	1973년 2월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전문 37개 조문)
●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 (전문 68개,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정

STORY	“결혼반지 대신 고추를...”
	1970년대 후반에는 고추를 비롯한 마늘, 양파 등 필수 양념류의 가격 폭등이 아주 심하였는데, 고추값이 600g당 1만원으로 당시 자장면 한 그릇 값이 2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격이었다. 이렇게 가격이 치솟다 보니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 대신 고추를 끼워주는 만화가 신문에 등장할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는 고추를 ‘금(金)추’라고 불렀다.



해방이후 한국 시장사

Ⅰ 해방 후 농산물도매시장 경쟁구조의 변화 Ⅰ

1945~1950	1950년대	1960년대와 그 이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20px;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 무수한 위탁상에 의한 위탁도매시장 구조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20px;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 무수한 위탁상에 의한 유사도매시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 margin: 5px auto;"> 법정도매시장 (1도시1시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20px; padding: 10px; width: 80%; margin: 0 auto;"> 무수한 위탁상에 의한 유사도매시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 margin: 5px auto;"> 법정도매시장 (1도시1시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 margin: 5px auto;"> 농협공판장 </div>
무법·혼란	2원적 경쟁구조	3원적 경쟁구조

1) 혼란과 모방시대(1945.8~1951.6)

- 도매시장에 관한 법 없음, 행정력도 없었던 공백의 무법혼란의 기간
- 일제에 의해 개설·운영되던 중앙도매시장이 일제의 관행을 승계하여 모방·운영
- 경성중앙도매시장(1939년 중립동, 합동 일대)
 - 경성수산물배급주식회사 → 서울수산물주식회사('47년)
 - 경성중앙청과주식회사 → 중앙청과주식회사('46년) → 서울청과주식회사('63년)
- 주요상권

- 일제 중앙도매시장(중립동, 합동)
- 청과(북창동 일대, 남대문시장) 위탁도매시장권 형성

2) 중앙도매시장법 적용시대(1951.6~1973.1)

(1) 중앙도매시장법과 동법의 특징



- 일제의 “시장규칙” 준용하여 「중앙도매시장법」 법률 제정('51. 6. 22)
-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 공포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골자는 「일본의 중앙도매 시장법(1923년)」 모방법

(2) 1950년대

- 일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도매회사를 승계한 부분만을 양성화
- 도매시장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부재

(3) 1960년대와 그 이후

- 3원화 경쟁체제(중앙도매시장/농협공판장('61년~)/위탁상)
 - 농협이 농수산물도매기능에 능동적으로 참여(1961년~)
 - 시장점유율(서울, '72년) : 중앙도매시장 15%, 농협공판장 20%, 유사도매시장 65%
 - 상공부는 공판활동을 배제하려고 하고 농수산부는 공판활동 보호
- 중앙도매시장 소관부서 이관 노력('67년) : 상공부 → 농수산부
- 염천교 중앙도매시장(중매인) 중심으로 독자적 위탁도매시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
 - 서울청과 경영쇄신 일환으로 상장물품만을 중개/위탁수수료 7% 중 3% 납부 압력('63년)
 - 시설임대업자가 나진산업주식회사 설립, 용산 시장시설 임대 시작('67년)
- 주요상권 : 용산시장 시대(1969~1985)

법정도매시장(서울청과/농협공판장) / 유사도매시장(나진시장/태양시장)

3)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시대(1973. 2~1976. 12)

(1) 농수산물도매시장법('73년)과 동 법의 특징

- 농수산부의 관장을 제도적으로 실현
- 공적시장으로서의 성격 강화 : 유사도매행위 금지와 벌칙 강화

(2) 무정책과 불법시장의 번창

-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미흡
- 정책부재가 불법적인 위탁상들의 발호 촉진
 - “불법”도매시장을 “유사”도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줌
- 법 제정 전후('72년/'77년) 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 비교(서울)



- 유사도매시장(65%⇒73.7%), 법정도매시장(15%⇒19.4%), 농협공판장 (20%⇒16.9%)

4) 농안법과 유통개혁정책 추진시대(1976. 12. 31이후)

(1) 농안법의 제정·공포와 동 법의 특징 및 정책의 변화

- 비현실적인 조항은 피하고 현실에 접근함으로써 유통개선을 유도하려는 적극적, 실천적 의지를 보여줌(ex. 1도시 1시장 원칙 폐기, 복수법인 제도 채택)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적시장으로 건설·육성하고자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건설을 적극 추진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

가. 도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법정도매시장이 취약한 상태 하에서 유사도매시장에 의해 압도되어 도매시장 기능이 크게 위축
- 법정도매시장 소유현황 : 개설자 소유(14%), 도매회사 소유(65%), 임차(21%)

나. 가락동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

- 1977. 08. 03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 방침 결정
- 1979. 08. 06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결정
- 1980. 04. 01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건설계획 수립
- 1982. 04. 13 건설 공사 착공
- 1984. 04. 10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립인가
- 1985. 06. 19 청과, 수산시장 개장
- 1988. 05. 15 직판시장 개장

5) 가락동 도매시장의 개장당시 유통현실

(1) 현대적 유통실현의 좌절과 그 원인

- 대규모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개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내에서 유통은 과거 용산청과 도매시장의 전근대적, 비능률적 상관행을 유지
- 원인 : 법을 무시한 채 불합리하게 상인조직 구성/배치
 - 도매법인/중도매인 → 지정도매인/중매인/보조중매인/소매인
 - 도매기능을 담당할 유통주체와 법에 의한 유통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는



잡상인들을 도매시장에 모두 함께 입주

- 상인들에 의해 불법적 위탁거래량이 법인에 의한 상장거래량을 훨씬 초과하고 도매기능 업무분담에 대한란이 야기
⇒ 1988년 불합리한 상인조직을 직판시장동 강제입주의 미봉책

(2) 농안법과 도매시장의 조직 및 기능

- 농수산물유통의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허가받은 상인들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업무를 잘 수행하여 도매기능 원활히 함
- 현실은 농안법에도 없는 보조중매인, 소매인을 잔품처리명분으로 입주시켜(개장당시 3,885명) 생업유지 어려움에 따라 불법영업을 하게 됨
- “기록상장제” : 불법위탁판매에 의한 거래량의 일부를 상장경매한 것처럼 서류처리
 - 지정도매인 입장 : 상상수수료 취할 수 있음
 - 중매인 입장 : 불법 위탁판매 영업 외, 자격을 유지하기위해 상장된 물품 구매 실적 필요, 1인당 매달 20만원~50만원 범위 금액을 납부

(3) 가락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실태

- ① 중도매인 불법행위 : 불법위탁판매/거래실적 노출 안됨
 - 기록상장, 서류상장(법인, 중도매인간 상호협력)
 - 차명출하(출하주세탁: 8% 위탁수수료 5% 법인, 출하장려금 중도매인 취득)
 - 중도매인 선취매매(경매 전 상품 빼기, 품질하락으로 경락값이 떨어짐)
 - 중도매인 장외거래(경매참가→산지 물품 수집하여 직접 납품)
 - 중도매인 폭리
 - 중도매인 조직적 경매방해 : 고의적 저가응찰, 응찰불참
 - 중도매인 명의대여 : 경매참가자들이 종업원이나 차명중도매인
 - 중도매인 점포 불법매매. 임대
- ② 법인 불법행위
 - 기록상장 : 경매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 경매비리 : 부득이한 낙찰가격 재수정 외(ex. 숙박이로 인한 품질불일치) 중도매인에게 유리하도록 관행적 경락가격 조작하여 부당이득 공유
- ③ 앞자리상의 존재와 기능



- 앞자리상 : 중매인 점포 앞에 하매인. 앞자리상인이라고 통칭
- 위탁판매업시 물품 인수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을 전담하고 중도매인은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음(유통단계 추가)

2. 농안법의 개정

(1) 중앙도매시장법

■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1951.6.22 법률 제207호 상공부]

지방공공단체가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일상식료품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의 적정등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① 생선어류·패개류·염건어개류·염장어개류·과실류·소채류·조수육류·조란류 기타 일용식료품중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도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함.
- ② 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규정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③ 상공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개설하고자 하는 중앙도매시장이 그 업무규정에 제출된 취급물품의 운반·저장·판매 기타에 관한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한 설비가 구비되거나 또는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함.
- ④ 개설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⑤ 개설자는 다음에 계기(揭記)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중앙도매시장의 취급물품 및 그 소속부류
 - 중앙도매시장의 수수할 사용료·보관료 및 수수료
 - 도매업무를 행할 자의 수수할 사용료·보관료 및 수수료
- ⑥ 상공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중앙도매시장개설자 또는 도매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⑦ 중앙도매시장의 폐지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중앙도매시장법 [일부개정 1952.12.16 법률 제267호 상공부]

- 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② 상공부장관이 중앙도매시장을 허가할 때에 도매시장유사업무 또는 도매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 또는 폐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개설자는 폐쇄 또는 폐업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2) 농수산물도매시장법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1973.2.6 법률 제2483호 농림부1]

상공부장관이 관장하던 도매시장업무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함으로써 주로 농수산물을 다루는 도매시장과 농협 및 수협이 개설하는 공판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도매시장과 공판장간의 불합리한 경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중앙도매시장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① 도매시장의 개설은 부류별로 1도시 1시장제로 함.
- ② 농수협이 개설하는 공판장은 원칙적으로 1도시 1시장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함.
- ③ 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기금을 적립하게 함.
- ④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자의 도매시장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구역내에서 겸업행위를 할 수 없게 함.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1976.12.31 법률 제2962호 농수산부]

농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①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약생산, 출하조정, 보상, 비축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함.
- ②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운영과 도매시장에 두는 지정도매인, 중매인 및 경매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③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의 농수산물유통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④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600억원 규모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함.
- ⑤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⑥ 법률 제2483호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법률 제1815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이를 폐지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8. 12. 5 법률제3118호 농수산부]

[주요골자]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신선식료품 및 기호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하여 농수산물은 공급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수요의 불균형으로 그 가격이 불안정하므로 농수산물의 증산을 지속화하여 공급의 안정을 기하고 가격진폭이 큰 농수산물은 그 수요조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품목의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한 최소물량을 상시비축하며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매 적절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기동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금의 운용관리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① 농수산부장관은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자단체와 선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채소류등 비저장성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수출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③ 용자 또는 대하(貸下)만 인정하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필요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0. 1. 4 법률 제3248호 농수산부]

축산물등 농수산물의 수급원활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수협 이외의 축산진흥회등 공익상 필요한 법인도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양곡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양곡류를 추가하여 양곡부류도매시장의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② 농수협만이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공판장을 축산물등 농수산물등의 수급원활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도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이용, 우선제공대상에 농수협 이외의 공익법인도 추가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6. 12. 31 법률제3885호 농림수산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도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 ① 종전에는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부류마다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도매시장에는 그 시설규모·거래액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함.
- ②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시설관리·거래질서유지 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③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 6. 11 법률 제4554호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가 여러단계로서 중간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도 문란하여 반사회적 거래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여, 중앙도매시장중심의 종합유통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② 지정도매법인·중매인등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정함.
→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으로 '94년 5월 농안법 파동 발생
- ③ 일정수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하게 하고 경매사의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명정대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 ④ 대량입하품목·규격포장품목의 우선판매제도, 도매시장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제도, 과징금제도등을 도입함.



- ⑤ 소비자단체·소매상·협동조합·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공판장의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1.1 법률 제4785호 농림수산부]

[주요골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에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①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안법 파동으로 인한 중도매업의 업무범위 재조정 반영
- ② 산지유통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전매매(발떼기)를 제도화하고, 산지 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함.
- ③ 지정도매법인의 명칭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④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등이 공동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⑤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설자나 다른 도매시장법인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등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⑥ 도매시장의 집하·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외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삼가인외의 자에 대한 판매를 인정하고, 중도매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직접 집하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⑦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제시제와 출하손실보전제를 도입함.
- ⑧ 개설자가 하역업무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하역전문업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⑨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⑩ 도매시장 이용자에게 환경·위생등 질서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⑪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의 중도매인허가나 매매참가인등록은 도매시장 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도매인이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⑫ 산지농어민과 도시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물류센타와 유통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47호 농림수산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함.
- ②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함.
- ③ 농산물의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 1. 28 법률 제6223호 농림부]**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하는등 농수산물유통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사업목적의 중복·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5조).
- 나. 농림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당해농산물의 농업관측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 다. 생산자등은 농수산물의 자률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에 대하여 그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 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하여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용방법등을 정함(법 제36조 및 제37조).
- 마.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절감 및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유도함(법 제40조).
- 바. 민간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용방법등을 정함(법 제47조 및 제48조).
- 사.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제도·보증금납부제도·폐업허가제도·휴업승인제도 및 매매 참가인의 등록제도등을 폐지함(현행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 삭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 2005.1.1] [법률 제7275호, 2004.12.3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던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수산부문의 기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07.7.4] [법률 제8178호, 2007.1.3,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규정을 완화하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매사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매사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 마련(법 제23조제2항, 법 제23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 (1) 유통환경의 변화로 도매시장법인의 대형화가 필요함.
- (2)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으면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
- (3)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의 규모화 및 도매시장의 정비축진이 기대됨.

나. 경매사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법 제27조의2 신설).

- (1) 경매사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관리의 업무의 위탁 및 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2) 경매사 자격취득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경매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거부금지의무의 완화(법 제38조)

- (1)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의무로 인하여 도매시장에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 및 유해농산물 등이 유입되어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발생 등이 초래됨.
- (2) 유통명령 위반 출하품,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품, 안전성검사결과 기준 미달 출하품 및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출하품 등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고품질 농수산물의 출하 확대 및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법 제38조의2 신설)

- (1)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2)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법 제78조의2 신설)

- (1)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유통주체 간 또는 거래당사자 간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2)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출하자 간, 유통인 간 또는 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도매시장 내 민원의 외부확산 방지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법 제90조제1항 신설).

- (1) 유통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2) 유통명령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09.6.27] [법률 제9178호, 2008.12.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법 제5조 및 제7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책임행정 실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를 폐지함.

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법 제27조의2)

현행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경매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거래물품의 도매시장 반입 예외(법 제35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양벌규정과 과태료 절차조항의 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 현행 제91조 삭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의 과태료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0.7.26] [법률 제9954호, 2010.1.25,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 기준 국내의 전자거래 규모는 630조원에 달하고 이 중 기업간 거래(B2B)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분야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 기업 간의 거래는 표준화·규격화, 제도 미비 등 인프라 부족과 기존 거래관행의 선호 등으로 전자거래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므로,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함(법 제2조 제14호 신설).

나.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0조의2 신설).



다.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70조의3 신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2.1.22] [법률 제10886호, 2011.7.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3] [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류(部類)에 대해서만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물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는 한편,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도매인제 확대의 제약요인 해소(안 제22조)

현행 중앙도매시장에 부류(部類)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만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시장도매인에 의한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안 제23조)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물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함.



- 다.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3조의2, 제25조 및 제47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 중도매업의 허가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함.
- 라.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안 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함.
- 마.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출하대금과 판매대금의 결제를 위한 정산 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 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 바. 포전매매 계약 관련 개선(안 제53조제3항 및 제9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을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으며,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사.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 권고(안 제7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및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함.



| 주요 개정사항 요약 |

구 분	주요 내용
조선총독부가 시장규칙 제정(19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사업 실시(1913 ~ 1917년) □ 시장을 4종류로 구분하고 시장의 개설과 감독, 상권 장악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시장 : 한국의 전통시장(정기시장) - 2호시장 : 공설시장(일용품시장) - 3호시장 : 청과물, 수산물의 경매식 시장 및 땀나무 시장→오늘날 도매시장 - 4호시장 : 곡물과 유가증권 거래시장 □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나라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부산중앙도매시장 개설(1935년) * 일본은 1923년에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중앙도매시장법」 제정(1951.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만 허용 - 개설 : 시청소재지에 개설(1도시 1시장체제), 상공부장관의 개설허가 필요 - 운영 : 공익상 인정되는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1973.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 상공부 → 농수산부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 지방정부 - 개설 : 1도시 1시장 원칙 명문화, 농수산부장관의 개설허가 필요 - 기금 : 시설기금 적립의무화(수수료 및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의 재투자, 정부의 재정지원 명문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76.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 □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 1도시 1시장제 폐지 - 운영 : 도매업무 대행제 → 지정업체 - 농수산물 가격 및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판매·비축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충 운영
제7차 일부개정 (1993. 6. 11, 법률 제455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도매법인에 수탁판매외에 매취판매를 허용 - 소매상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구성과 경매참여 허용 - 모든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판매토록 의무화 - 경매방식을 거수수지식과 전자식으로 한정 - 산지경매식 집하장의 공판장 전환허용 조항 신설 -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 소위 「농안법 파동」의 직접적 계기가 됨



구 분	주요 내용
제8차 일부개정 (1994. 11. 1, 법률 제478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파동」이후 마련된 유통개혁대책을 반영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개영업 허용 - 포전매매의 제도화 및 산지수집상 등록제 도입 - 지정도매인의 명칭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변경하고, 지정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출자법인제도 도입으로 관리·운영 일원화를 가능하게 함 -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제도 및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거래 허용 - 출하자의 경락 최저가격제시제 도입
제9차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4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 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음 -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 - 농산물의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14차 전문개정 (2000. 1. 28, 법률제62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측, 가격예시,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등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수급안정 프로그램 반영 -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 -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 - 민간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도매시장 개설 허용 -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제도·보증금납부제도·폐업허가제도·휴업승인제도 및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 등을 폐지
제23차 일부개정 (2007. 1. 3, 법률제817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 마련 - 수탁거부금지 의무의 완화,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구 분	주요 내용
제26차 일부개정(2008. 12. 26, 법률 제917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 -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 -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으로 거래한 물품의 도매시장 반입 예외 허용
제30차 일부개정(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곡물 수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곡물관측사업 실시 - 안전성검사 결과 미달품의 도매시장 출하제한
제35차 일부개정(2012. 2. 22, 법률 제1134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거래방식 다양화, 대금정산조직 설립, 포전매매 방식의 개선 등 제도 보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방식을 경매입찰 원칙에서 정가·수의매매로 확대 -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 마련 - 중앙도매시장 소속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 -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계약 및 과태료 기준 마련 - 부진한 도매시장 관리위탁 권고



3. 농안법의 구성

농안법은 현재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은 91개 조문,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은 58개 조문으로 되어있다.

농안법의 구성

-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
 -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적용배제 등)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제4조 ~ 제16조)
 -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계약생산, 자조금 제도, 가격예시,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물수농수산물 관리, 유통명령, 비축사업, 수입추천, 수입이익금의 부과 등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제17조 ~ 제42조)
 - 도매시장의 개설, 개설구역, 허가기준, 개설자의 의무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인수·합병, 공공출자법인
 - 중도매업허가, 매매참가인신고, 경매사임면 및 신고, 산지유통인등록, 출하자신고
 - 수탁판매원칙, 매매방법, 경매 또는 입찰방법, 거래의 특례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수탁 거부금지 등
 -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하역업무, 대금결제, 수수료징수제한, 지방도매시장 운영 특례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제43조 ~ 제53조)
 - 공판장의 개설 및 운영,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특례, 민영도매시장
 - 집하장, 산지유통센터, 포전매매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제54조 ~ 제61조)
-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제62조 ~ 제78조)
 - 정비기본방침, 소매유통개선, 종합유통센터 설치
 - 유통자회사, 교육훈련, 평가실시, 도매시장관련 위원회 등
- 제7장 보칙(제79조 ~ 제85조)
 - 보고, 검사, 명령, 허가취소 등
- 제8장 벌칙(제86조 ~ 제91조)



4.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¹¹⁾

□ 목 적¹²⁾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대규모점포, 체인사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등의 기준 설정 및 육성, 지도

- 유통표준코드, 유통표준전자문서, 판매시점정보관리, 물류설비 등의 촉진

※ 1997년4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제정

□ 법의 구성

○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적용배제¹³⁾

참 고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11) 농안법은 유통산업 중에서 농수산물을 다루는 특별법적 성격

12)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3)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제5조~제7조의4)

-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자체의 사업시행, 유통산업 실태조사,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 제3장 대규모점포 등(제8조~제14조)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개설계획 예고, 등록취소, 개설자의 의무, 영업시간 제한, 휴업·폐업 신고,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영업정지, 임시시장 개설

참 고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제15조~제20조)

- 분야별 발전시책,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우수체인사업자 지정,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 지원, 상점가진흥조합 지원, 전문상가단지 건립지원 등

○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제21조~제25조)

- 유통정보화 시책, 유통표준전자문서, 유통전문인력 양성, 유통관리사, 유통산업 국제화 촉진 등



-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제26조~제35조의2)
 -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물류설비 인증,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공동집배송센터 등

-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제36조~제43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고, 상거래의 투명화 등

- 제8장 보칙(제44조~제48조)
 - 보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수수료 등 등

- 제9장 벌칙(제49조~제52조)



국가별 도매시장 제도

구 분	일 본	프랑스	미 국	한 국
법·제도	도매시장법	법령, 정령	PACA	농안법
법 제정의 목적	도매시장의 계획적 정비, 개설 및 거래 규제	거래의 투명성과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매시장 중 공익시장을 지정	농산물 유통 전체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 금지, 업자의 면허제, 거래위반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개설 및 거래 규제
행정기관	농림수산성	농업부, 재경부, 내무부	농무부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농림수산식품부
시장의 구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기타	공익시장, 공익시장 이외의 시장	법률이 아닌 관례로 구분 Terminal Market, Wholesale Market 등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개설·운영	중앙(지방공공단체), 지방(지방공공단체 및 민간)	<공익시장> 개설: 국무원의 정령 관리·운영: 지방공공단체, 혼합경제회사, 국무원의 정령에 의한 기관 <공익시장 이외의 시장> 개설·관리·운영: 지방공공단체, 지방의 상공회의소, 민간업자 감독: 지방공공단체	법률과 무관, 개설·운영은 주, 시장조합, 민간 등 (건설자본과 소유권은 상이)	중앙(특별시, 광역시) 지방(특별시, 광역시, 시) 민영(민간인)
거래제도	일대 다(소수와 다수)의 경매입찰, 정가·수의	상대매매의 일반화 (다수와 다수)	상대매매의 일반화 (다수와 다수) (법률과 무관)	일대 다(소수와 다수)의 경매입찰(정가·수의, 비상장, 시장도매인)
거래 관계자	도매회사, 중도매회사, 매매참가인	도매상 (매취판매업자, 위탁판매업자, 위탁 겸 매취업자, 중매인, 생산자)	도매상(면허제) (도매하수업자, 위탁판매상인, 중매업자, 도매서비스업자, 식재구매업자, 대리점, 중매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 경유율	약 70%	약 40% (형지스도매시장)	약 20~30% 추정	약 50%
위탁상장 수수료	채소(8.5), 과일(7.0), 수산(5.5), 축산(3.5)	수수료 자유 일반적(8~15%)	수수료 자유 일반적(15% 내외)	청과(7.0), 수산(6.0), 축산(2.0)

- 주 : 1)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Act, 신선농산물법)
 2) 법령(1967년, 공익도매시장에 관한 규칙을 법전화)
 3) 정령(1968년, 공익도매시장의 기본적인 조직을 규정)
 4)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 기타국가 : 영국-농산물 및 원예법, 중국-농업부 관리지침, 대만-농산물시장거래법



5. 대형 유통업체 규제 해외 사례¹⁾

(1) WTO 규범 주요 내용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법안들은 해당 지역 지정과 SSM 신청에 대한 허가와의 관련된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외관상 일견 “지방자치단체 구역정비(Zoning Regulation)”의 형태를 띠고 있음.²⁾

일반적으로 이러한 Zoning Regulation의 경우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간주되어 서비스 무역협정(GATS³⁾)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WTO는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국가정책 목표(지역중소유통업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규제, 새로운 규정도입은 인정

시장접근 방식으로 양허표에 기재된 것은 제한이 가능하나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제한할 수 없음

국내 규제에 있어 대형 유통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시장접근 중 상업적 주체에 대해 대형 유통업 종류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시간 규제(의무휴일, 폐점시간의 제한), 품목제한, 제재조치(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개설허가 취소 등)를 취할 수 있음

- 국내외 기업 구분없이 적용 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시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음

(2) 일본의 규제 사례

일본은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제정하여 500㎡ 이상의 대형소매점의 매장 면적, 영업일수, 폐점시간 등을 사전 심사하는 형태로 점포 출점을 규제하였음

1993년에는 자민당이 「대규모소매점포의소매업활동조정예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형 유통업체 설립을 제한하며 소매상 보호에 나섰음

1) 대형 유통업체 규제 해외 사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2007에서 일부 발췌함.

2) 이재민, 2009, “전통상업보존 구역 도입 법안과 WTO 서비스 협정”, 법학논의, 제4호.

3)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기존 대점법은 외국 소매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받아 미국에 의해 WTO에 제소(1997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유통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중소형 소매점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2000년에 폐지되었음

2000년 제정된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에 따라 1,000㎡ 이상의 점포개설 시 절차상 제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생활환경문제(교통혼잡, 소음, 폐기물)로 제한 가능함

1,000㎡ 이상의 점포개설시 신고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설명회, 출점의 제반문제 조정,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 배치와 운영을 조정, 출점계획서 및 지역공헌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000년 이후 대형 소매점들이 도심내 유지, 운영 비용 증가의 이유로 교외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중심시까지 공동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2007년 기존의 도시계획법을 개정 하여 대형소매점의 교외 지역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직접적인 출점규제정책을 다시 도입

영업시간은 시장 및 마케팅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소음방지법에 의해 야간 소 음방지를 위해 영업 시간 제한 가능

(3) 영국의 규제 사례

영국은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하고 있음

도시계획정책가이드(Planning Policy Guidance)에 의해 중심시가지의 대형소매점 개발은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총매장 20,000㎡ 이상의 대형 소매점은 반드시 기존 상권의 「중소소매업에 대한 영향 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주중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Sunday Trading Act와 Christmas Day Trading Act에 의해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함

- 영업시간 제한 위반시 5만 파운드 벌금 부과

(4) 미국의 규제 사례

일부 지방 정부에서 용도지역제(Zoning System)를 실시하여 도시계획차원에서 대형 유통 업체를 규제함. 미국의 대형소매점 규제는 상품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 경제적 규제보다는 용도지역제(zoning)에 의한 입지규제가 기본임.

- 용도지역제(zoning)는 미국 주정부의 도시계획정책 중 대표적 규제로서, 교통혼잡, 소음 방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부지·건물의 용도와 부지 내의 건물의



- 위치·규모·형태 등의 측면에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전반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
- 반드시 유통시설의 규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공공의 복리 및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유통시설 설립을 규제
- 도시환경 측면으로 접근하여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Smart Growth"를 천명함

대형유통점의 개점, 운영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은 없으며, 대형유통점 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용도지역제와 같은 도시계획법이 전부임

독과점 금지, 배타적 거래, 판매지역 제한 등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

(5) 프랑스의 규제 사례⁴⁾

르와이에법은 대형마트의 무차별 성장정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신규 점포 개설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장관이던 르와이에가 제안하여 채택한 법으로 1974년부터 적용하였음

인구 4만 이상 지역에 면적 1,500㎡ 이상의 점포를 개점, 혹은 4만명 이하 지역에는 1,000㎡ 이상의 점포를 개점하려면 "상업 도시계획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지역구 의원 9명, 업계 대표 9명, 소비자 대표 2명으로 구성되었음

대형할인점인 하이퍼마켓은 성장이 억제된 반면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슈퍼마켓 규모가 더 커졌음. 또한 신규 개점이 어렵게 되자 기존의 업체를 매수하여 대형화하였으며,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됨

라파랭법은 1971년에 제정된 르와이에법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자 1996년에 동법을 수정 강화한 법임. 300㎡ 이상의 신규매장 개점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의 1,000㎡에서 300㎡으로 요건 강화)는 것으로 하드디스크카운트 매장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하드디스크카운트 매장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업종변경 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300㎡ 이상의 매장 부속 주유소 개점은 규모에 상관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점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실행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받아야 함

4) 프랑스의 규제 사례는 김동환 외, 2012, "EU의 농산물 유통정책"에서 일부 발췌하였음



- 사실상 2000~2006년간 프랑스의 하이퍼마켓 출점은 거의 슈퍼마켓이 하이퍼마켓으로 변환된 것임

프랑스 전지역에서 300㎡ 이상의 대형마트 입점 시 엄격한 허가절차와 재래상가가 있는 도시 내 상권지역에는 대형마트가 아예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재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전무함

-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에는 120여개의 소규모 상가와 전통시장들 뿐임

프랑스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진입장벽은 소매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⁵⁾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 이후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임.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통하여 허가 대상 기준을 종전 3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상인대표 비중을 축소하였음

프랑스의 대형소매점 규제는 상인 보호를 위한 경제적 규제 성격이 약화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노동권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노동법 상 근로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중에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가능하고 일요일에는 영업을 금지되어 있음

(6) 독일의 규제 사례

1996년 제정된 도시 건설법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일정한 연면적 이상의 시설은 개설 허가가 의무화되어있으며 마트가 들어서고 난 후의 교통, 환경, 주거, 상권의 영향을 예상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개설이 가능함

- 주거시설과 촌락지역을 제외한 도심부와 특별상업지구 등의 소비지 시장의 경우, 연면적 1,200㎡, 전용면적 800㎡의 소매시설

대형 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상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면 10%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입점을 불허하고 있음

5) Citigroup Global Markets. 2007. "French Food Retailing". 「Retailing - Supermarkets(Citi)」.



입점한 대형 마트에 대해서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 휴점으로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유통업체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은 평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폐점

- 예외규정 :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에 대한 특례규정

(7) 이탈리아의 규제 사례

1998년에 Decree Legislative법에 의해 소매점은 규모에 따라 시 또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함

- 중규모 소매점은 시의 허가, 대규모 소매점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구 1만명 이하 시의 경우 1,500m², 인구 1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2,500m² 이하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금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



6.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현황

※ 자료출처 : 한국제이스토어협회 「2011년 유통업체 연감」

(1) 대형마트 현황

업체	설립 년도	홈페이지	점포수	전화	팩스
그랜드백화점(주)	1979	www.granddept.co.kr	마트3, 백화점1	02-2657-2032	02-2657-2021
농협유통(주)	1995	www.kacm.co.kr	마트6, 슈퍼20	02-3498-1000	02-3498-1498
뉴월드(주)	1994	www.nwmart.com	마트7	064-726-6900	064-726-6901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1998	www.lottemart.com	마트197 (국내92, 해외105)	02-2145-8000	02-2145-8991
메가마트(주)	1975	www.megamart.com	마트9, (중국포함) 슈퍼7, 백화점1, 전문점1	02-820-8500	02-820-8685
빅마트(주)	1994	www.bigmart.co.kr	마트2	062-650-2114	062-650-2288
신성통상(주)	1997	www.richmart.co.kr	마트1	031-864-7200	031-868-4921~2
이랜드리테일(주)	1978	www.eland.co.kr	마트 32, 아웃렛31, 백화점9	02-323-0456	02-2029-9067
이마트(주)	1993	www.emart.com	마트134, 슈퍼23, 회원제창고형3	02-380-5678	02-380-5677
코스트코코리아(주)	1998	www.costco.co.kr	마트7	02-2679-1234	02-2630-2633
홈플러스(주)	1999	www.homeplus.co.kr	마트123, 슈퍼248	02-3459-8000	02-3459-8003



(2) 대형마트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업 체	총매출		점당 일평균 매출		신선농수산물	
	매출액(A)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B)	B/A
그랜드백화점(주)	128,083	5.8	71	5.8	21,831	17.0
농협유통(주)	844,252	2.8	390	1.8	479,361	56.7
뉴월드(주)	30,652	-12.0	-	-	-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5,879,486	21.6	215	4.1	1238,977	21.1
메가마트(주)	640,770	7.0	-	-	163,571	26.0
빅마트(주)	-	-	-	-	-	-
신성통상(주)	23,874	-	-	-	8,620	36.1
이랜드리테일(주)	871,290	8.0	81	2.5	275,190	31.6
이마트(주)	12,600,000	8.7	-	-	-	-
코스트코코리아(주)	-	-	-	-	-	-
홈플러스(주)	10,730,000	8.8	-	-	-	-

주) 2010년 1-12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기준



(3) 대형마트 물류센터 현황

업체	소재지	소유형태	연면적	배송상품	배송지역
그랜드백화점(주)	경기 용인시	자가	9,834㎡	생식품, 생활잡화	수도권
농협유통(주)	서울시(양재)	임차	19,419㎡	과일, 채소, 축산, 수산, 특산 양곡, 과일, 채소 양곡, 과일, 채소	강남 강북 전북
	서울시(창동)	임차	5,427㎡		
	전북 전주시	임차	4,235㎡		
뉴월드(주)	제주 제주시	자가	1,495㎡	신선	제주시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경기 오산시	자가	85,547㎡	신선·가공식품, 공산품 신선·가공식품, 공산품 의류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제주 전남, 경남 단독배송 없음
	경남 김해시	자가	54,949㎡		
	경기 안성시	임차	21,780㎡		
메가마트(주)	서울시(시흥)	자가	2,536㎡	공산품, 생식품 공산품 공산품, 농산품 수축산, 일배 패션(의류)	수도권, 영남권 일부 영남권, 수도권 일부 영남권, 수도권 일부 전점 전점
	울산시(연양)	자가	6,218㎡		
	경남 양산시	임차	3,273㎡		
	부산시(감천)	임차	4,609㎡		
	경기 광주시	임차	1,322㎡		
빅마트(주)	-	-	-	-	-
신성통상(주)	-	-	-	-	-
이랜드리테일(주)	경기 오산시	임대	14,001㎡	하이퍼 의류, 잡화, 스타크 모던(생활용품) 주류	-
	경기 평택시	임대	66,116㎡		
	경기 이천시	임대	15,098㎡		
	서울시(시흥)	임대	1,322㎡		
이마트(주)	경기 광주시	자가	17,509㎡	축산 식품, 공산품 식품, 공산품 식품, 공산품	- 경상도, 전라도 경기, 충청 서울, 경기, 강원
	대구시	자가	33,194㎡		
	경기 시흥시	자가	43,649㎡		
	경기 여주시	자가	196,346㎡		
코스트코코리아(주)	-	-	-	-	-
홈플러스(주)	충남 천안시	자가	55,060㎡	상온상품 상온상품 신선식품, 신선가공/냉동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영남권 수도권
	경남 밀양시	임차	29,746㎡		
	안성시 (신선물류) 용인시 (신선물류)	임차	7,422㎡	신선식품, 신선가공/냉동	수도권
		임차	6,757㎡		
	경남 함안군	자가	22,149㎡	신선식품, 신선가공/냉동 해외구매상품	영남권, 호남, 충청, 제주 Trunking(목천, 밀양) Trunking(목천, 밀양)
		위탁	15,936㎡		
	경남 진해시	위탁	15,593㎡	해외구매상품 신선식품, 상온식품	수도권, 충청
		위탁	9,075㎡		
	경남 밀양시	위탁	2,079㎡	신선식품, 상온식품	영남
	안성시(일죽)	위탁	6,600㎡	신선식품, 상온식품	수도권, 중부
용인시(온라인)	임차	10,932㎡	온라인비식품	전국	



제2절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및 농안기금

1.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관련 조항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주산지 제도 운영목적

- 농수산물의 집단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과 생산성 증대
 - 농림수산부 고시 제84-11호('84. 3. 14), 소득작목 주산단지 지정고시
 - 채소류 위주로 주산단지 추가지정·변경 등 실시

□ 산지와 주산지 관계

- 산지는 주산지의 전단계로서 산지간의 경쟁을 통한 지역우위성에 의해 주산지가 형성 (*는 산지단계)



-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농가가 한데 모여서 존재(생산의 집단화)*
- 그 생산농가의 대부분이 당해 농산물을 기간, 생산부문으로 취급(생산의 집단화)*
- 그 지역의 총판매량은 거래하는 판매시장으로부터 명산품으로 인정될 정도로 많음
(판매시장의 점유 및 확대)*
- 그 지역의 생산농가가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에 있어서 기능적 조직을 형성(생산, 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 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시행령 제4조)

-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주산지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시행령 제5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

□ 주산지 운영효과

- 생산측면 : 개별생산의 지역적인 집단생산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규모 확대와 대규모 생
산의 장점 추구
- 유통측면 : 유통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상품유통 비용의 절감효과, 생산 및 출하의
계획화,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관련 조항

제5조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제5조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수산물의 공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주요 곡물의 공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업관측업무·수산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농업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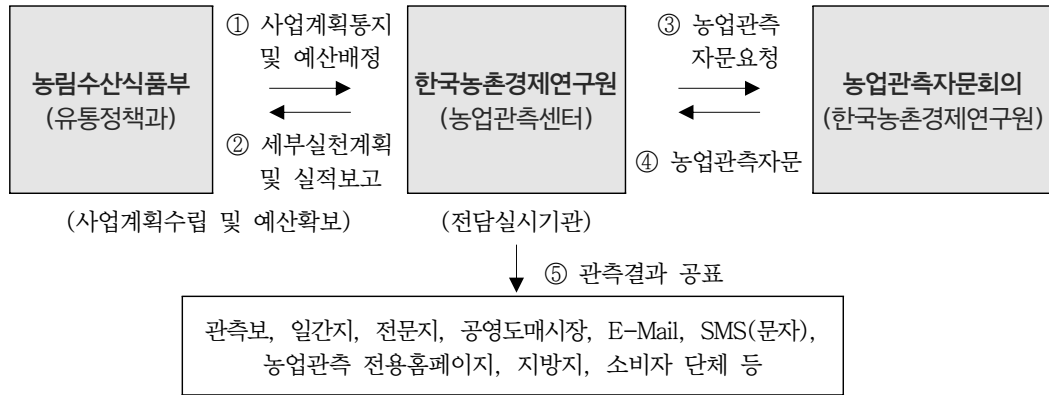
가. 농업관측사업의 연혁

□ 법률적 연혁

- 「농업기본법」(1967) 및 「농업농촌기본법」(1999) : 정부의 농업관측 의무화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 농업관측협의회 구성
- 「농안법」(2000) : 농업관측위원회로 격상, 농업관측전담기구 설치
- 「농안법시행규칙」(2000) : 농경연을 관측전담기구로 지정
- 「관측사업실시요령」(2000) : 농업관측센터 설치, 출연금으로 지원
- 관측전담기구 명칭 변경(2002. 9. 10) : 농업관측센터 ⇨ 농업관측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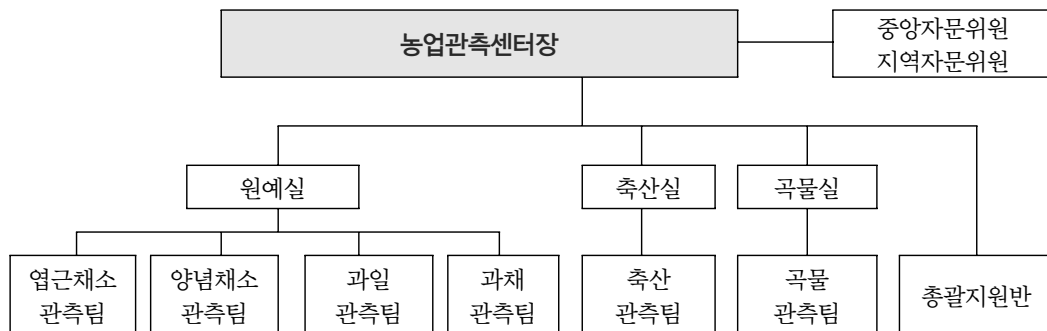


□ 농업관측 사업체계



나. 농업관측센터 현황

- 주요 기능 : 연차·분기·월간 동향 및 전망
 - 거시경제, 농업경제, 국내외 수급 및 가격동향 분석과 중장기 수급전망
- 조직(2012말 현재)



<수산업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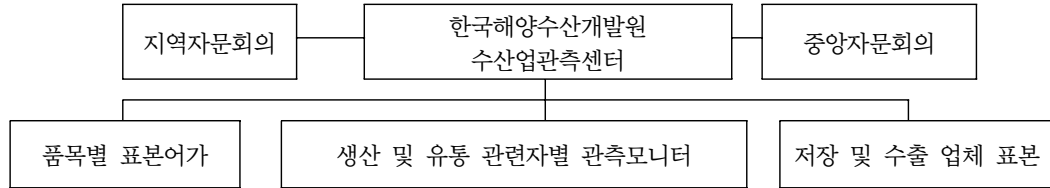
가. 수산업관측사업의 연혁

- 법률적 연혁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권고(2002)
 - 「농안법」 및 「어업인지원특별법」에 의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수산업관측 전담기구로 양식어업관측센터 설치(200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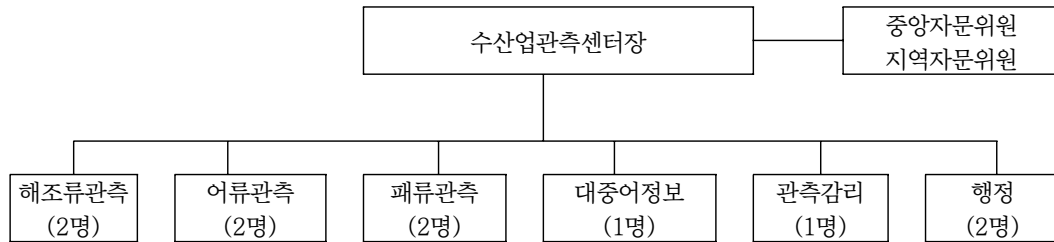
□ 양식어업관측센터에서 수산업관측센터로 명칭 변경(2004. 10)

□ 수산업관측 사업체계



나. 수산업관측센터

□ 조직(2012년말 현재)



※ 정규직 5명, 위촉직 6명(총 11명)



3. 계약생산

관련 조항

제6조(계약생산)

제6조 【계약생산】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협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 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가. 현 황

- 1995년 정부·농협 공동으로 수급안정사업자금을 조성(정부 80%, 농협 20%), 이를 재원으로 계약재배 실시(농안법 제57조)
 - 노지채소 7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당근), 과실 2(사과·배), 감자 등 총 10품목 대상
 - * '10년 수급안정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품목 수 축소(17개 품목 → 10개 품목)
 -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 등이 파종기(생육전반기) 농가에 계약금 지급 및 물량 확보

(단위 : 천톤, 억원, '10. 3. 1 기준)

구 분	품 목	'11		'12		조합수	농가수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노지채소 계약재배	8 (감자포함)	770	4,712	1,400	6,321	462	46,186
과실계약 출하사업	2	183	2,385	90	1,500	67	7,650
계	10	953	7,097	1,490	7,821	529	53,836

* 국내 생산량대비 계약재배율 : 채소 13.1%, 과수 15.8%

조성액 중 정부자금(80%)은 5년간 융자, 무이자 조건

과실계약출하사업 : ('11) 사과·배·감귤·단감 등 4개 품목 → ('12) 사과·배 등 2개 품목



나. 제도운용

□ 계약재배 및 출하

- 계약주체 : 사업대상자(농협, 유통법인, 저장업체 등)
- 계약대상자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 등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가 원칙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관리가능
- 대금지급 : 분할(예약금,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또는 일괄 지급
 - * 예약금 : 파종·정식기 이전에 계약재배를 예약하기 위해 농가에 지원되는 보증금

□ 출하 및 판매 등

- 사업대상자가 수급 및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하되,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급락 시 출하조절 실시
- 사업대상자가 계약대상자와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

□ 가격 급등·급락시 수급안정 대책

- 장관 또는 농협중앙회장·유통공사장은 사업대상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출하의무(출하처, 출하기간 등)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
- 농협중앙회는 직영물량과 지역농협 등과 출하계약한 물량으로 출하조절
- 무·배추 출하조절용 물량 저온저장
 - 소비자 가격 급등락 예상시,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 추진
- 유통공사장은 공급과부족시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출하의무 부과, 수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공급부족시 산지유통법인, 저장업체에게 출하의무 부과
 - 공급과잉시 김치제조업체에 해당작기 수매계획물량 이상 추가 수매

□ 가격 폭락시 시장격리

- (시기) 산지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보장 가격 이하로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한 때
- (물량) 생산과잉으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물량
- (재원) 농안기금(필요시 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의 적립금 활용 가능)



수급조절 적립금

- ◆ 농협이 계약재배 수급조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운용수익(이자), 농가의 계약위약금 등을 자체 적립·운용
- ◆ 규모 : 1,052억원(노지채소 603, 시설채소 174, 과실 275)

다. 계약재배 확대 필요성

- 노지채소는 저장성이 낮고 가격 변동이 매우 큰 품목
 - 전년 가격에 따라 매년 재배면적 변동이 크고, 장기간 비축이 어려워 기상 및 병해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지대
- '95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10년 고랭지배추와 같이 생산부족 현상에 대응수단 미흡
 - 현재 계약재배 사업으로 일정수준의 계절 진폭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절대적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해결 곤란
 - 현 사업에서는 가격하락시 품질규제, 산지폐기 등, 가격상승시 특관행사 실시, 대체 작물 소비유도 등의 수단에 불과
 - 10% 안팎의 계약재배 물량으로는 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불안에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

라. '13년 추진계획

- 중앙회가 자금관리, 판매 등을 하고, 지역농협 및 산지유통법인은 계약과 출하전까지 품질관리하는 「출하계약 사업」도입
 - 지역조합(품목조합)의 판매역량 미흡 등 사업 확대의 제약요인을 중앙회 기능 강화로 극복(대상품목 : 배추·무, 마늘)

Ⅱ 출하계약 사업체계 Ⅱ

농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선급금 및 잔금 지급 * 포전 및 품질 관리 * 수확작업, 선별·저장 등 출하전까지 품질관리 	지역조합 · 유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조합과 계약 * 지역조합에 계약자금 및 수수료 지원 * 판매 및 정산 	중앙회
------------	---	----------------------------	--	------------

주) 중앙회와 지역조합·산지유통법인과 계약단가의 5%수준을 기본수수료로 책정



4. 가격예시

관련 조항

제8조(가격예시)

제8조 【가격 예시】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양곡류(콩, 옥수수) : 수매가격

- 수매가격 산정기준 : 생산비, 물가 등 감안 파종기 이전 예시

- 콩은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수매('02년 도입) 등 실시



5.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관련 조항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가. 정의

□ 유통협약(농안법 제10조 제1항)

□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이 물량규제, 품질규제 등에 대한 유통협약을 맺고 이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98도입)

* 유통협약 주체 : 유통조절추진위원회(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



□ **유통조절명령(농안법 제10조 제2항)**

-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물량규제, 품질규제 등의 공동 활동을 하기로 합의후
 -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 발령('03도입)
 - * 유통조절명령 요청 주체 : 유통조절추진위원회, 생산자 단체

- ◆ 물량규제(출하물량을 조절하는 조치)
 - 과잉물량 시장격리(산지폐기 등), 출하시기 조절 등
- ◆ 품질규제(저급품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
 - 숙기, 크기, 당도 등이 미달하는 저급품 유통제한 등

나. 사업추진경과

□ **(유통협약·유통조절명령 도입)**

- 생산자·소비자·유통인 중심의 자율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통협약 실시('98년)

□ **(유통협약)**

- '98년도에 양파, 무·배추 유통협약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도입
- 「농안법」에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을 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00, 농안법 제10조)

□ **(유통조절명령)**

- '03년도에 최초 실시하였으며 '03~'07기간 중 감귤에 대해서만 실시

□ **(정부지원)**

- 생산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제도 도입('00, 농안법 제12조)

□ **유통조절명령 조항 구체화**

- 발동요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계기관·단체간 이견 발생에 따라 근거 마련 추진
-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등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 개정('07. 1, 농안법 제10조 제5항)

□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마련)**

-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림부 장관고시('07. 9)
 - 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물량기준 및 가격기준 등 마련
 - * 고시개정 : (별첨8)농림수산물부 고시 제2012-160호('12. 8)



참고 1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계약재배·수매비축 등 정부주도의 수급 및 가격안정 시책만으로는 「농산물 제값 받기」에 한계
-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조절 정책이 어려워 農·消·商·政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정책이 새롭게 대두

□ 근거법령 : 「농안법」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사업추진내용

- 점차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개정된 「농안법」에 의거 유통협약·명령제 도입
- '99. 11 :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0. 7~12 : 유통명령 도상연습실시(2회)
 - 1차('00. 7. 24~26) : 강원도 고랭지 배추
 - 2차('00. 12. 5~7) : 제주도 감귤
- '01. 2. 15~28(14일간) : 대과유통협약 실시
 - 협의회 주도로 전체면적의 △9%(449ha)감축 하여 가격지지
 - 정부는 산지폐기 비용 일부(12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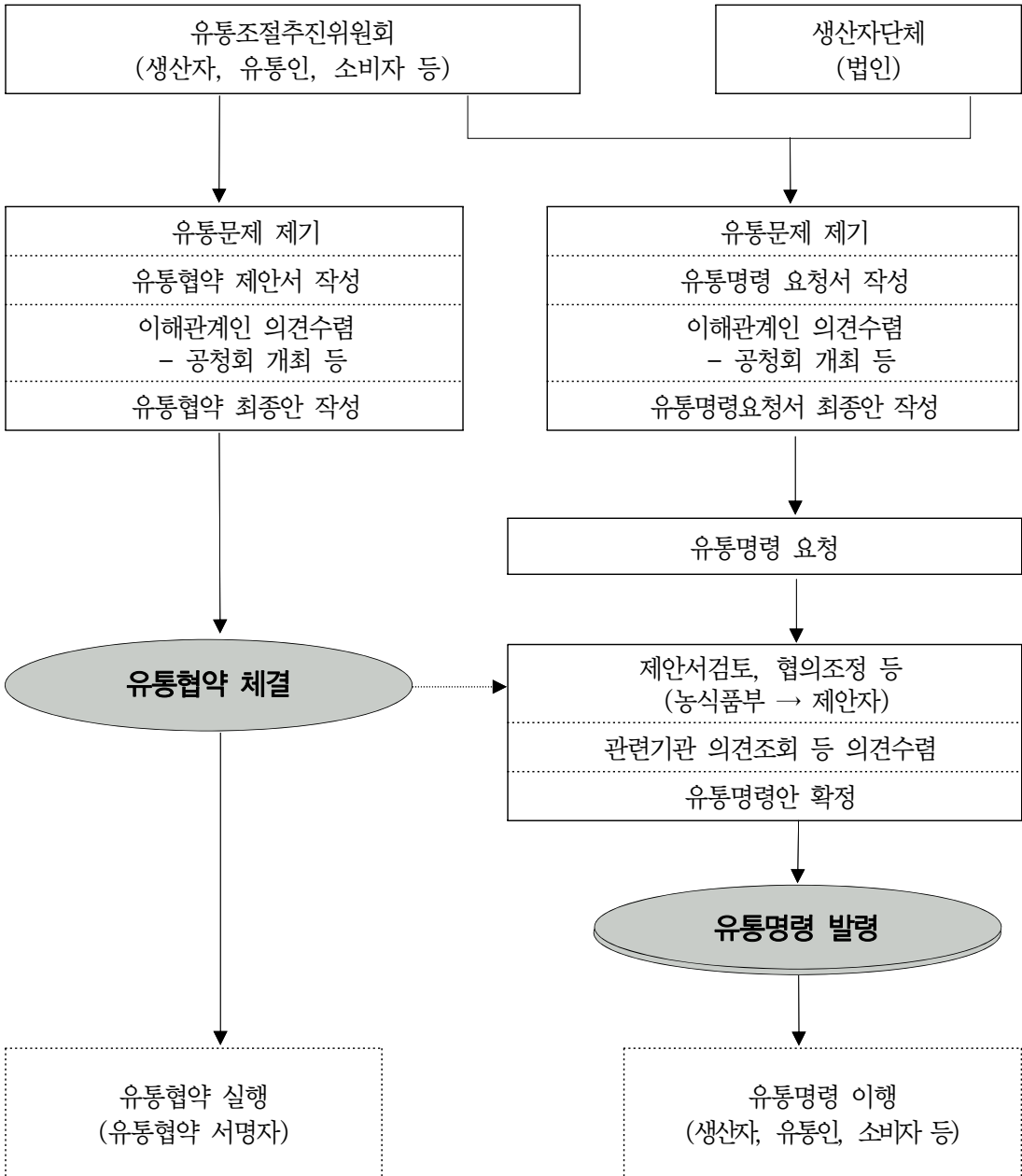
※ 유통협약·명령 실시상황

- '98 : 양파, 무·배추 - 유통협약
- '99 : 마늘·양파, 고추 - 유통협약
- '00 : 방울토마토, 마늘 - 유통협약
- '01 : 대과, 양파 - 유통협약
- '02 : 양파 - 유통협약
- '03 : 감귤 - 유통협약 및 명령, 김 - 유통협약
- '04 : 감귤 - 유통협약 및 명령, 김 - 유통협약
- '05 : 양파, 대과 - 유통협약, 감귤 - 유통명령
- '07 : 겨울배추·대과·사과 - 유통협약, 감귤 - 유통명령
- '08 : 감귤, 배, 가을배추 - 유통협약
- '09 : 가을배추, 마늘 - 유통협약
- '11 : 봄배추, 가을무·배추 - 유통협약
- * '06, '10, '12 : 협약실적 없음
- * 지원실적 : ('01) 1,430백만원 → ('02) 4,681 → ('03) 4,672 → ('04) 50 → ('05) 7,097 → ('07) 3,612 → ('08) 4,987 → ('09) 1,948 → ('11) 7,385



참고 2

유통협약 · 유통명령 절차도





참고 3

외국 사례

- 대상국 : 미국 · 프랑스

- (도입배경)
 -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가격폭락, 과잉생산 및 소비침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1937)
 - 프랑스는 1975년에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자국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도입

- (정책목적)
 - 수급불안해소로 유통시장 안정화를 통해 생산자 ·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양국 유통명령제의 정책목적임

- (정책수단)
 - 수급불안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지원 등의 분야로 나눠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유통명령제 정책수단
 - * 물량규제 : 시장격리, 출하량 · 출하시기 조절 등
 - * 품질규제 : 속도, 크기, 당도, 숙성도 등의 저급품 출하제한 등
 - * 시장지원 : 소비촉진 · 홍보광고 등



6. 정부비축사업

관련 조항

제8조, 제9조, 제13조

제8조 【가격 예시】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수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13조 【비축사업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1) 정부비축사업 연혁 및 정의

□ 연 혁

- '76. 12. 3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 '78. 8. 23 :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공사에 설치
- '82. 11. 29 :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을 공사가 수행(공사법 개정)
- '95. 1. 1 :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협정이행을 위해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협상내용 반영

□ 정 의

- 정부비축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사업

□ 사업대상 품목

- 구매비축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배추, 사과, 배 등
- 수입비축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 등

* 품목선정기준

-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증산유도가 필요한 품목

(2)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가. 국영무역의 연혁

- 1948. 1. 1 발족된 GATT 체제하에서부터 국영무역기업은 수십년동안 존재하여 왔으며, 1993. 12. 15 UR 다자간 농산물협상이 타결되어 1994. 4. 15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GATT 회원국들은 UR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

-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MFN) 원칙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1948. 1. 1 발족하였음

- 국영무역 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GATT 1994, 농업 협정문 등을 부속서로 하는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농산물 관세쿼터 관리방안 등을 WTO에 제출후 품목별 국영무역기관을 제시하여 회원국의 검증을 거친 후 현행 국영무역을 유지해오고 있음

나. 국내법령 반영 및 제정

- UR협상결과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각 회원국은 협정이행을 위해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공포('95. 1)
- 상기 특별법은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 원정책 시행 등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협정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국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등 농업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비하였음

다. 국영무역의 정의 및 역할

□ 국영무역의 정의

-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을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 국영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함

□ 국영무역의 역할

- ① 국내 수매업무를 수행하고 수입계획을 담당하는 여러국가들의 국영무역기관의 설립은 낮은 비용의 식량공급, 안정적 농산물 가격의 보장과 같은 정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 ② 국영무역은 공공기관이 수입창구가 되어 수입·판매하는 제도로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량의 수입시기, 수입물량, 판매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입농산물이 국내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③ 가격동향에 따른 매점매석, 유통왜곡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안정 저해, 원산지 표시 문제 등 민간업체가 수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④ 수입개방시 민간업체에 귀속될 수입이익금을 농안기금 등 정부기금에 귀속시켜 농업 투자자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7.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관련 조항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13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오렌지·감귤류

[전문개정 2012. 8. 23]



□ 수입비축사업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활용하여 수급안정을 기하면서 국내물량과 생산능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 자급도가 높고 수급에 민감한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 과일생산 시 방출 중단, 건조품으로 대체수입 등 시장격리
 - 적정·과소생산 시 신선형태로 도입 비축 후 국내단경기 위주로 방출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 팥, 참깨 등
 - TRQ규모 증량을 통해 두부, 장류, 참기름 등 식품가공업체에 안정적 공급
 - 국민식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식량으로서 상시비축제를 통해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및 비상사태 시 식량안보 기능 수행

□ TRQ 설정배경

- 1995년 WTO 농산물협정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과 국내 수급상 절대부족 품목을 증량하여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설정하고 정부지정 공공기관이 수입·관리하게 하여 국내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허안을 이행토록 함
 -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63개 품목을 해당 지정기관이 분산·관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공사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땅콩, 콩, 팥, 녹두, 메밀 등 ● 농림수산식품부 : 쌀, 보리 ● 한국사료협회 : 옥수수 등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감귤류 등
--

□ TRQ 관리방식 : 국영무역(지정기관 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

- 국영무역
 -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고 수입·비축하여 판매하는 방식
- 수입권공매
 -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 실수요자배정
 -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신청 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로 추천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하는 방식



TRQ 관리방식별 사업추진 절차

가. 국영무역(지정기관배정방식)

□ 국영무역 운영상 준수사항

- 국영무역 근거규범 : WTO협정 부속서 GATT1994 제 17조(국영무역 기업)
- 무차별 대우의 원칙, 상업적 고려에 의한 구매 또는 판매행위, 무역관행에 따라 구매와 판매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부여 등

□ 품목(9개)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메밀

□ 수입관리

- 국영무역 양허관세 수입추천계획 시달(농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 국내수급상황 및 수출국 동향등 분석후 시기별 수입물량 결정
- 수입시기는 품목별 시장동향을 감안, 최적시기에 전량 이행하여 통상마찰 방지
 - 시기 : (고추) 12~5월, (마늘·양파) 9~12월, (콩·참깨) 연중수입
- 낙찰자 결정방식은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예정가격이상) 낙찰제
- 주요절차
 -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 등록 → 입찰시행 및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 L/C개설 → 선적지 물품확인 → 물품선적 및 출항 → 국내도착 및 국정검사 → 대금결제 → 수입신고 및 통관 → 내륙운송 → 구상처리 및 계약이행 완료(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기지 입고)

□ 판매관리

□ 판매방법 및 대상

방 법	대 상	비 고
공 매	농수산물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자	등록업체 : 1,275개소
상 장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농·수협공판장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도매시장 : 38개소 공 판 장 : 21개소
직 배	농수산물대량실수요업체, 실수요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	14개 조합·단체·업체

※ 직배대상 : 총 2,384개(연식품조합 2,220, 장유조합 110, 식품공업협회10, 메주조합 44등)



□ 판매가격 결정

- 공매·상장 :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 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 수준에서 시중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결정
- 직 배 : 최근일 공매·상장 평균가격 또는 정부지정가격 적용
 - 공매·상장 평균가격 : 마늘, 참깨, 콩나물콩
 - 정부지정가격(가공용) : 콩, 팥

□ 판매시기

- 특작류 및 두류
 - 국내자급도가 낮은 참깨, 대두, 팥 등은 상시비축물량을 유지하고 연중 방출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
 - 상시비축규모(2개월 평균 재고) : 콩 40~45천톤, 팥 3천톤, 참깨 7~8천톤
- 양념류
 - 국내 자급도가 높은 고추, 마늘, 양파등 양념류는 판매예고제를 실시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유도
 - 국내 성출하기 판매 지양 및 단경기(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심하게 적어지는 시기), 가격상승기에 판매하여 농가보호

나. 수입권공매

□ 대상품목 :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참기름, 인삼, 메밀(7품목)

□ 공매시기

- 품목별 국내가격 및 수급동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 결정
 - 통상적으로 계획물량의 50%씩 연 2~3회(상·하반기) 실시
 - 참깨, 땅콩 : 연 2회 실시 / 양파, 생강, 참기름, 인삼, 메밀 : 연1회
 - 국내 수급여건 및 입찰미이행 물량 발생 등에 따라 추가입찰 실시

□ 공매참가자격

- 대외무역법관리규정 제24호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 낙찰자 결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고가(예정가격이상) 제시자 순으로 결정



다. 실수요자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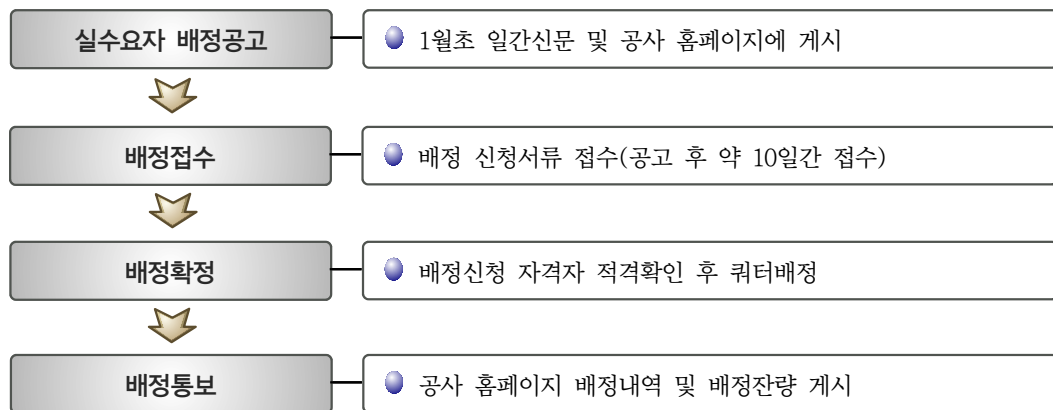
□ 대상품목 : 10품목

□ 고추, 대두, 팥, 참기름, 감자, 감자분,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 녹차,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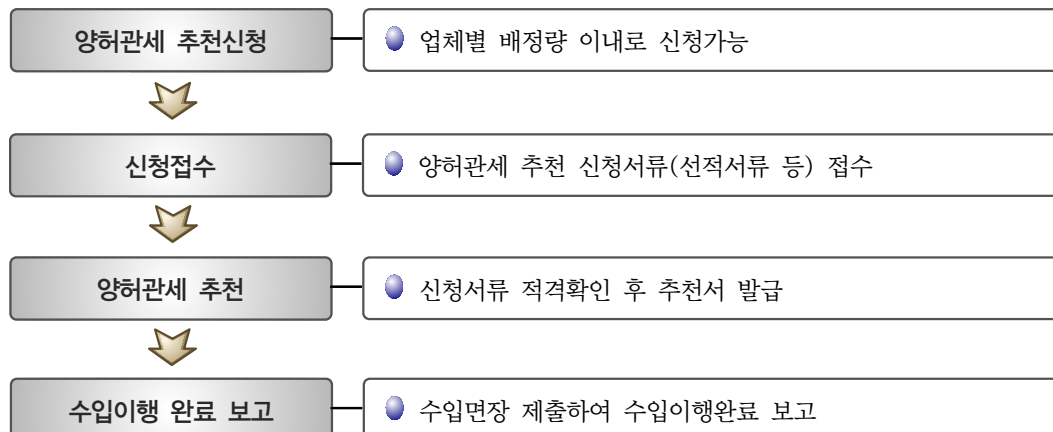
□ 배정시기 및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년 고시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계획에 의거 공사는 연초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배정계획을 공고 하여 품목별 용도에 따라 해당 자격자에게 쿼터 배정

□ 배정절차



□ 양허관세 추천절차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조항

제54조(기금의 설치)

제54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설치배경

- 정부는 '61. 6월에 곡물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취약해진 농업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제정하고 '66년에 270억원 규모의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양곡의 정부매상정책과 미곡담보용 자제도를 실시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유지제도를 확립하기는 하였으나 운영이나 집행 면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발생
- 이에 따라 '66. 8월에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농가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1815호)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산물의 수출지원과 농산물 저장 등의 농업발전 사업에 활용토록 함
- 농안기금은 '68년에 정부출연 51억원으로 기금운용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6차례에 걸친 추가 출연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하여 2011년말 현재 4조 1,339억의 기금을 조성(정부출연금 1,656억원, 기금운용수익금 3조9,683억원)하고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식품산업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중

□ 법령 및 기금의 변천

- '66. 8월 제정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70. 8월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으로 법률 제명을 개정하고 기금 명칭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
- '76. 12월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
- '00년 6월에는 「중자산업법」개정(법률 제6190호) 및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제6189



호)으로 종자기금 및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안기금으로 통합하고 농안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국립종자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 위임·위탁

- ‘국민의 정부’ 당시 국정과제중 하나로써 유사기금 통합방침에 따라 통합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7개 기금이 4개 기금으로 정비
 - '00년 인삼기금의 경우 연간 운용규모는 92억원 수준이나 농안기금에서 490억원을 지원받는 등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종자보급사업과 인삼수매가공수출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토록 3개 기금을 통합
- '04. 12월에 「농안법」에 의거 수산분야에 지원되었던 기금을 '05년 1월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하고 농안기금의 설치 근거인 「농안법」 제54조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중

□ 기금계정의 설치(시행령 제21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함
 - ※ 기금설치관련 타 법령 : 「국가재정법」 제5조 ①항
 -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 운용



9. 농안기금의 조성

관련 조항 제55조(기금의 조성)

제55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1. 3>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제9조의2 제3항·제16조 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2008. 2. 29>

□ 농안기금 조성현황

□ '11년말 현재 총 조성액은 4조 1,339억원, (정부출연금 4.0%, 운용수익금 96.0%)

(단위 : 억원)

구 분	'10까지	'11	누 계
정부출연금	1,656	-	1,656 (4.0%)
운용수익금	37,907	1,776	39,683 (96.0%)
합 계	39,563	1,776	41,339 (100%)

참 조

- 정부의 출연금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가능(국가재정법 제12조)
-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재정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금
정부 비축 농산물 등의 판매수입,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등
- 법 제9조의2 제3항·제16조 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물수농산물 등의 매각·공매대금 납입금 및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징수(부담금)하게 되는 납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및 「인삼산업법」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 납입금(국가재정법 제13조)



10. 기금의 운용·관리

관련 조항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탁 가능한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범위(시행령 제22조)

-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1. 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07. 1. 3, 2008. 2. 29>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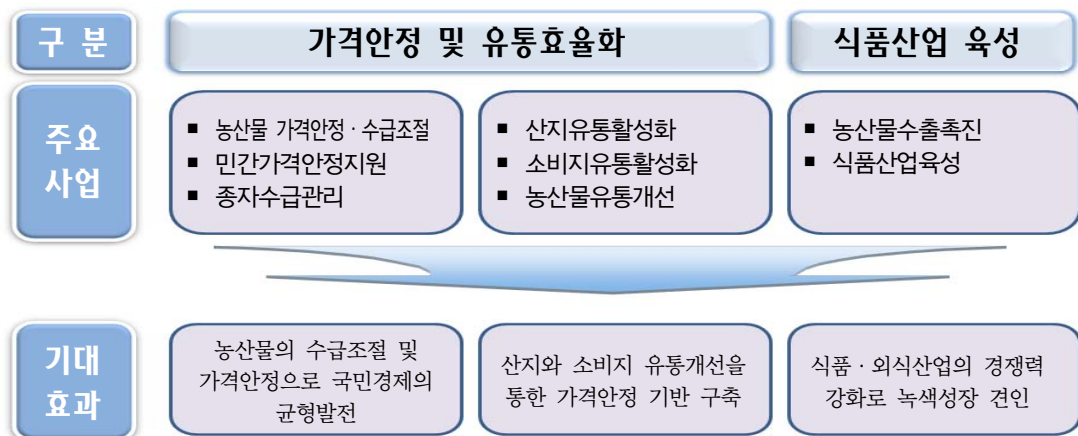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4. 12. 31, 2007. 1. 3>

1.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 12. 31, 2008. 2. 29>

④ 기금을 용자 또는 대출받은 자는 용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외의 목적에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 기금의 용도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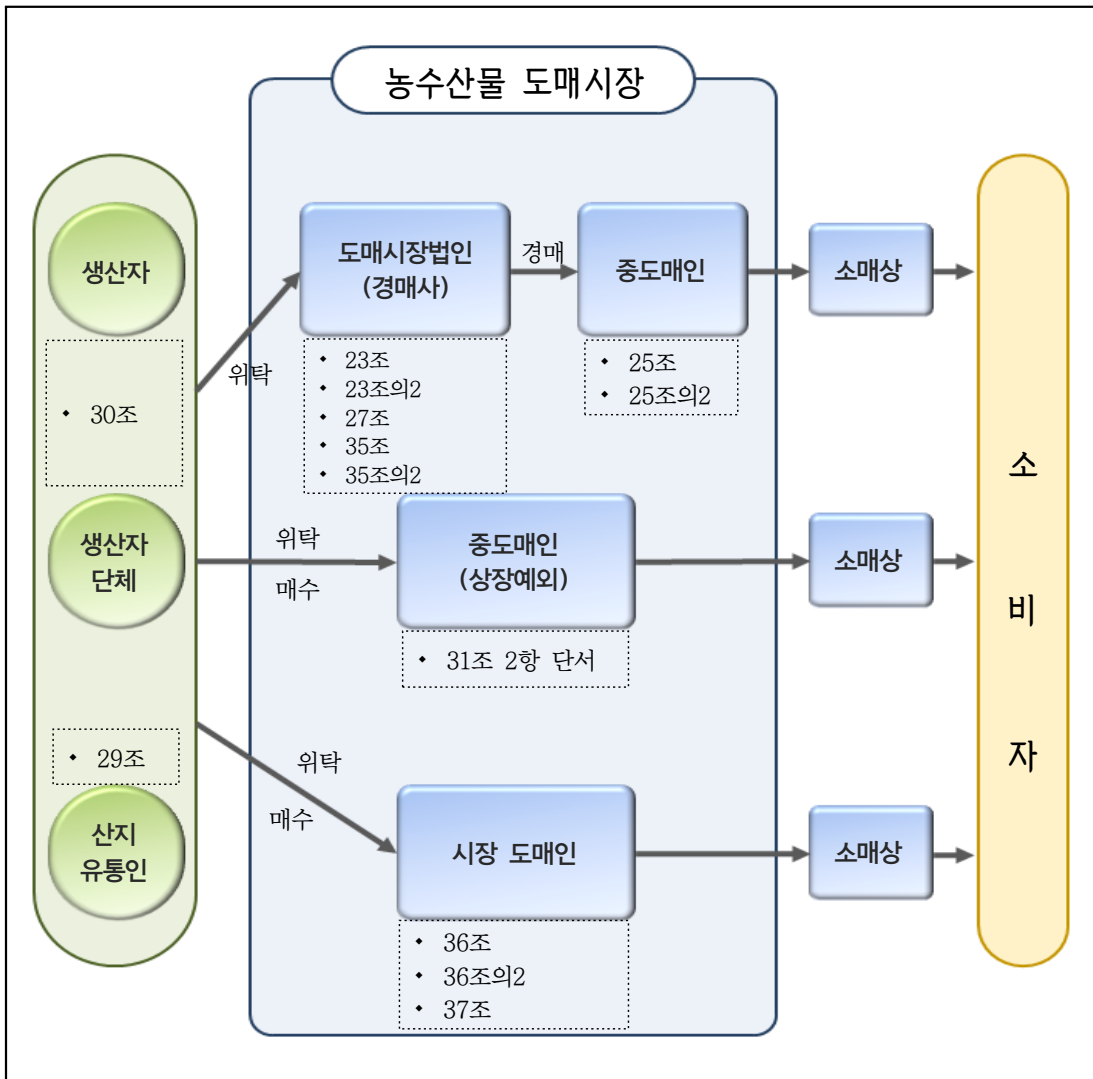




제3절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안법상의 도매시장 유통체계 (농안법 제17~42조)

※ : 농안법 관련조항





1. 도매시장의 분류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4. 12. 31, 2007. 1. 3, 2008. 2. 29>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 중앙도매시장을 특별시·광역시가 개설한 도매시장 중 도매의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권역별 도매 거래의 중심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부각

□ 종전의 중앙도매시장은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도매시장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것과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한 시장을 뜻하였으나 국고지원이라는 조건과 소재지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도매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기능별 분류를 함

참 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 중앙도매시장

- | | | |
|-----------------------|---|----------------------|
|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 |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
|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 / |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
|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 / | 6.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
|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 / |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
| 9.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 / | 10.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
|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 |

STORY**최초의 공영도매시장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공적시장으로 건설·육성코자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79년부터 서울특별시 가락동에 933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166천평, 건물 60천평의 대규모 도매시장을 건설하였으며 1985년 6월에 개장하여 용산, 중부, 남대문, 청량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전 수용하였다.

정부는 '85년 6월 가락동도매시장을 개장한 이래 대전, 대구, 청주시 도매시장이 80년대말까지 완공 개장하였고, '92년부터 천안, 안양, 안산, 충주 등 인구 20만이상의 중소도시에도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Ⅱ 하늘에서 내려다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Ⅱ**ISSUE****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재분류 요구**

- 중앙·지방도매시장 구분에 따른 실익미미
- 지방도매시장의 경영난 반영필요
- 1개도시내 2개 도매시장이 개설된 경우 중앙·지방시장 분류 모호



참고 1

농수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의 지위

가. 농수산물 유통의 초기단계

-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농수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충분히 분리되지 않고, 자가소비도 많아 유통량이 적음
- 자가 소비후 남은 농수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규모 “장터”에서 직접 만나는 직거래가 주요한 유통형태임
-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산지와 소비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유통량의 증가에 따라 전문상인에 의한 유통 발전

나. 도매시장의 대두

- 공산품은 생산자(기업)가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보유하거나 도매상이 수집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하나 도매상의 집합공간으로써의 “도매시장”은 거의 없음
 - 아이스크림 공장 - (물류기지) - (대리점) - 소매점
 - 음반·서적 출판사 - 도매상 - (중간도매상) - 소매점
 - * 소규모기업이 주형태인 공산품은 일부 도매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예 : 동대문 평화시장의 의류도매시장 역할) 쇠퇴하는 추세임
- 농수산물, 특히 청과물은 공산품과는 다른 유통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수많은 품목을 거의 매일 대다수 소비자에게 공급
 - 저장성이 약해 유통과정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1회 유통량이 1~2일내 판매가능한 양으로 제한됨
 - 공산품에 비해 생산의 독과점 정도가 낮고 규모도 작아 생산자가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유지하기 곤란
- 따라서 농수산물은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산지에서 대량 집하한 농수산물을 많은 소매상에 소량씩 분산하기 위해 품목별 도매상이 군집한 도매시장이 불가피함
 - 일반적으로 산지 반입을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규모가 큰 소매시장 인근에 도매시장이 발달
- 세계 어느 나라나 예외없이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도매시장유통이 농수산물유통의 주류를 형성하게 됨

다. 도매시장제도 이전의 농수산물 유통

- 산업화·도시화로 농수산물 유통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재래 시장 형태인 유사시장(위탁도매상 집합)이 형성되어 변창
- 규모가 확대된 위탁도매상은 자체 물량을 확보하고 출하조절로 이익을 극대화
 - 시장정보에 취약한 농민이 직접 출하할 경우 적정금액 미 지급 등 생산자의 자유로운 시장출하를 방해하고 거래 미공개로 세금포탈 등의 문제발생



- 유사 도매시장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점유 영업, 교통난유발, 쓰레기문제, 소음공해 문제 등 발생
- 농수산물은 풍흉이 심하고 부패성이 강하여 유통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시장정보에 유리한 소수의 위탁상과 다수의 생산자가 거래하게 되므로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이 약해 거래에서 생산자가 불리

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제도의 목적

-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세력과 분산하는 세력 등 두 세력이 도매시장에서 공개·경쟁적인 거래방식을 통하여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여 위탁상의 자의적인 가격결정을 견제
- 전액 공공투자자로 건설한 공영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과 중도매인을 시설비 부담없이 입주시키는 대신 「농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확보
- 종합유통센터나 직거래사업, 그리고 민간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등과 상호 경쟁속에 유통효율을 제고

마. 유통여건 변화와 도매시장의 미래

- 생산규모가 대형화되고, 소매점의 체인화·규모화가 이루어질수록 소매체인 사업자에 의한 도·소매의 통합, 산지 직구입 및 소매점 직공급 체계가 발전
-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 대형 소매점의 유통비중이 확대
- 그러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다양한 구색을 갖춰 신속하게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산지 수집비용, 재래시장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도매시장 유통이 주 형태로 역할

Ⅰ 도매시장의 변화 Ⅰ

구 분	1987년	2000년	2011년
도매시장 수	55개소(2)	48(23)	48(33)
도매법인 수	62개소(9)	108(83)	118(104)
도매법인 임직원 수	- 명	3,427(2,414)	3,416(2,879)
중도매인 수	- 명	7,837(6,901)	8,187(7,631)
거래물량	2,125천톤(1,316)	6,130(5,645)	7,096(6,797)
거래금액	14,189백만원(5,889)	61,549(50,657)	116,226(106,477)

- 주 1) '87년 임직원수, 중도매인 수 통계 미비
 2) ()는 전체 도매시장 중 공영도매시장의 현황 표시임
 3) 도매법인에는 도매시장내 입주한 도매시장공판장 실적 포함



참고 2

일본 도매시장법에서 도매시장 정의와 요건

- 제2조 【정의】 ① 본 법률에 있어서[농수산물 등]이란 야채, 과일, 어류, 육류 등의 농수산물 및 기타일반소비자가 일상생활의 용도로 공급받는 식료품 및 화훼 기타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농수산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 ② 본 법률에 있어서[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 등의 도매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으로서 도매장, 자동차주차장 기타 농수산물 등의 거래 및 물류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장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 ③ 본 법률에 있어서[중앙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 등의 유통 및 소비 상 특히 중요한 도시 및 그 주변의 지역에 있어서 농수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한 도매의 중추적 거점이 됨과 동시에 해당지역 외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농수산물 등의 유통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을 말한다.
- ④ 본 법률에 있어서[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그 시설이 정령에서 정해진 규모이상의 것을 말한다.

구 분	요 건	개설자 인가 등
중 앙 도매시장	都,道,府,縣 인구20만 이상의 시 또는 이들이 소속된 일부 사무조합 혹은 광역연합조합이 농림수산성 장관의 인가를 얻어 개설한 도매시장	<input type="checkbox"/>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장관의 인가) <input type="checkbox"/> 도매업자 : 주식회사 등(장관의 허가) <input type="checkbox"/> 중매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허가) <input type="checkbox"/> 관련사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허가) <input type="checkbox"/> 매매참가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승인)
지 방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장(경매장)의 면적이 일정규모(도매시장법 시행령 규모 : 청과시장 330㎡, 수산 200㎡(산지시장은 330㎡, 식육 150㎡, 화훼 200㎡) 이상으로 하고 都,道,府,縣의 장(지사)의 허가를 얻어 개설된 시장.	<input type="checkbox"/>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농협, 수협 등(都,道,府,縣의 장의 허가) <input type="checkbox"/> 도매업자 : 개설자의 경우와 동일(都,道,府,縣의 장의 허가) <input type="checkbox"/> 중매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일반적으로 개설자가 승인, 지사에 제출) <input type="checkbox"/> 매매참가자 : (중매업자의 경우와 동일)



2.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관련 조항

제2조, 시행령 제2조

- 법 제2조의 2에 의거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
 -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 ※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이라 함은 가공의 상태를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로 양곡부류인 두류 및 잡곡이전의 상태를 의미
 -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젓갈류
 -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
 -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 ※ 다만, 「약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함
 -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 법 제2조의 1에 의거 임산물중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
 - 목과류 : 밤·잣·대추·호도·은행 및 도토리
 - 버섯류 :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 한약재용 임산물

ISSUE

도매시장 취급가능 농수산물의 범위를 식품까지 확대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 영세가공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가공식품 판매 허용 요구
- 현실적으로 유자청, 포장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어묵 등이 도매시장에서 판매중



3. 도매시장의 개설

관련 조항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삭제 <2012. 2. 22>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

- 개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
 - 지방도매시장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는 경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직접, 시가 개설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을 개설하면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

-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제16조)

-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시행령 제15조)

□ 도매시장 개설구역(법 제18조)

-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월전에 도지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17조 제6항)

-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시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전에 이를 공고

※ 도매시장을 폐쇄할 경우 허가 또는 공고기간은 도매시장 거래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임

□ 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할 때에도 같음(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7조제4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한 경우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수산물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함
-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함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7조 제5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기준(법 제19조 제1항)
 -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도지사는 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할 수 있음(법 제19조 제2항)
 -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법 제20조)

-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6조)**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예약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에 따른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27.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29.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0.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3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2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7조)**

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 그 밖에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해당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상황과 거래전망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관련 조항

제21조 및 제22조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시행규칙 제18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
 -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 관리
 -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공영도매시장 관리유형별 현황

- 관리사무소 형태 : 부산염곡 등 28개 도매시장
- 관리공사(지방공기업) 관리 : 3개 도매시장(가락 · 강서 · 구리시장)
- 공공출자법인 관리 : 1개 도매시장(강릉 도매시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리 : 1개 도매시장(춘천 도매시장)

외국의 도매시장 운영현황

- 미국(뉴욕 헌츠포인트 농산물도매시장)
 - 도매상으로 구성된 도매상조합(COOP)에 관리권 위탁
 - COOP는 시설물관리회사에 용역을 주어 시장관리업무 수행
- 일본(쓰끼지 농수산물도매시장)
 - 개설자인 동경도 소속 공무원이 직접관리
- 네델란드(알스미어 화훼경매장)
 - 화훼생산자조합 소속 관리회사(DFWB)에 의해 관리 · 운영
- 프랑스(헝기스 도매시장)
 - 관리주체는 SEMMARIS(관리공사)로 개설자 감독하에 운영

□ 도매시장의 운영

□ 도매시장의 운영 유형

- ①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②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3가지 유형이 모두 가능
- 중앙도매시장(청과부류, 수산부류)의 경우 ①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2가지 유형이 가능함(법 제22조 단서, 시행규칙 제18조의2)

□ 도매시장법인 등의 적정수

- 적정수 지정의 취지는 주어진 시설여건하에서 거래효율을 높이고 과다지정에 따른 기능수행의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함



5.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관련 조항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도매시장법인의 정의(법 제2조 제7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 법 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
- 도매시장법인은 물량의 집하기능이 그 주요 기능이며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는 것’이 생산농가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임
 -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이 생명인 도매시장제도에서는 수탁주체와 분산주체의 역할분담 필요
 -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 중도매인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료” 이를 지정함
 - 이 경우 5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
 - 지정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에게 영업의 지속성을 보장
 - 개설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시장운영의 공공성 제고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시행령 제17조)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개설자에게 제출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여야 함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 정관
-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 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를 거쳐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
- 임원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배제요건외에 지정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자격요건중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라 함은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해당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겸비할 것을 말하며 회사외에 있으면서 회사의 이사회에만 참여하는 비상임 이사는 해당되지 않음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 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음

참 고

허가·등록·지정의 의미

● 허 가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후 국민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허가로 인한 이익은 통상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 등 록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 지 정

지정은 사람·사업활동·상품 등을 특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활동 허가에 준하는 의미로 사용



6.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관련 조항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2. 6. 1>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產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함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95퍼센트 이하일 것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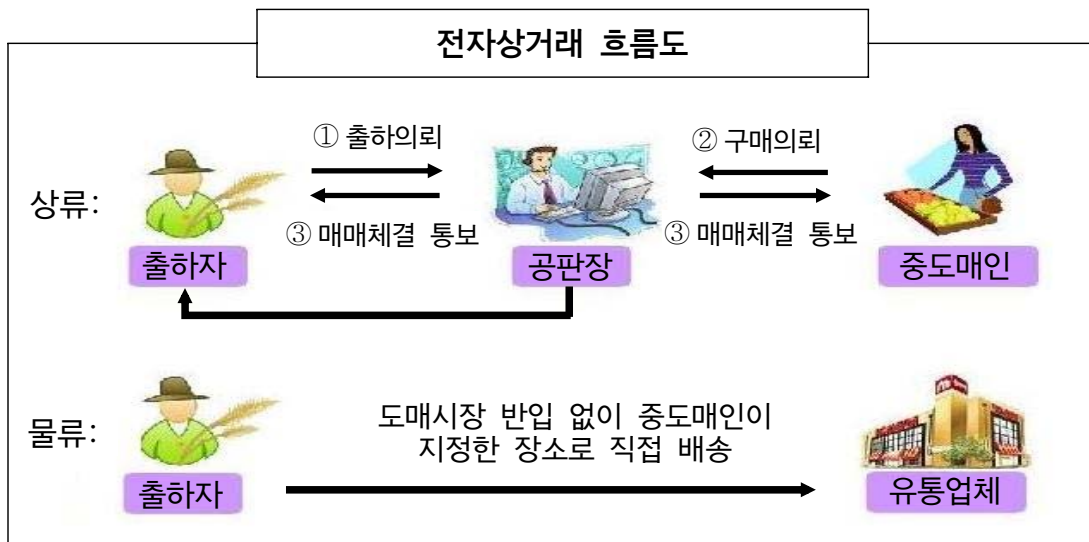
□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의 제한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경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음
 - : 1. 제1차 위반 : 보완명령 / 2. 제2차 위반 : 1개월 금지 / 3. 제3차 위반 : 6개월 금지 / 4. 제4차 위반 : 1년 금지
- 경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나. 전자거래

□ 전자거래 개요 및 도입취지

- 정가·수익매매에 한해 해당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07년 1월 농안법 개정시, 농안법 제35조 2항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전자거래를 허용
- 그동안은 모든 거래물량의 도매시장 반입으로 시장내 혼잡 가중 및 상하차비 발생으로 물류비용 증가





□ 거래주체별 역할

〈출하자〉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출하주 등록) 및 전자거래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 설치
- ② 출하예약 등록
 - 출하품목, 품종, 규격, 등급, 중량, 수량, 단가, 출하예정일 등 선택
- ③ 거래성사 여부 파악
- ④ 중도매인이 의뢰한 배송지로 물품 배송
- ⑤ 표준정산서 내역 및 입금확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경매사)〉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접수된 출하예약 사항 및 구매의뢰 사항 확인
- ② 거래단가 등 조율을 통해 거래성사 유도 및 최종 단가 입력
- ③ 중도매인으로부터 물품검수상 이상여부 확인
- ④ 출하자에게 표준정산서, 중도매인에게 낙찰명세서 발송
- ⑤ 중도매인 대금 입금 확인 및 출하자 대금 송금
- ⑥ 전자거래결과 개설자에게 보고

〈중도매인〉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중도매인 등록) 및 전자거래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후 설치
- ② 구매의뢰 등록
 - 품목, 원산지, 품종, 등급, 규격 등 선택
 - 중량, 수량, 단가 등 선택
 - 배송지, 수령인, 연락처, 구매희망일자 등 선택
- ③ 거래성사 여부 파악
- ④ 구매의뢰내역과 실제 배송내역의 일치여부 검수후 도매법인에 통보
- ⑤ 낙찰명세서 확인

□ 전자거래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 2011년 전자거래 실적(청과물) : 52천톤, 1,107억원
- 상·물류 분리로 인한 물류비(수수료, 시장내 배송비, 하역비 등) 감소
- 유통시간 단축으로 상품 신선도가 향상되어 품질경쟁력 강화
- 거래물품의 시장 미반입으로 시장혼잡 예방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



7.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관련 조항

제35조의 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5조의 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도입배경

- 도매시장 운영·관리의 투명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지도기능 강화 필요
- 출하자, 산지유통인, 대형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 요구 증대
- 도매시장 정보제공의 의무, 제공방법·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서비스 개선 필요
 - 도매시장은 공정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정부가 건설한 공영시장이므로 출하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 운영주체에게 정보의 공개를 유도

□ 공시정보의 종류, 방법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
 -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함



8.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관련 조항

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24조 【공공출자법인】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1]

□ 공공출자법인제도 도입배경

□ 관리·운영 분리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출자법인 도입

-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등의 관리와 도매시장법인이 운영을 분리 담당함으로써 업무가 중복되고 유통비용 과다 발생

※ 현재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공출자법인체제 운영



9. 중도매인의 허가

관련 조항

제25조(중도매인의 허가)

제25조 【중도매인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2. 22>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⑤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 중도매인의 정의(법 제2조 제9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아래의 영업을 하는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중도매인의 역할

- 가격형성기능 : 소비자(소매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매에 참가
- 물량분산기능 :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판매 및 중개

연 혁	중도매인 제도의 연혁
------------	--------------------

- '51. 6 :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중매인에 관한 규정 없음
 -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누구든지 구입가능
- '73. 2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서 처음으로 중매업 허가제도 도입
 - 중매업의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 없음
- '76. 12 : 「농안법」제정시 중매업제도 유지
 - 중매업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25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
- '86. 12 : 「농안법」개정시 중매업의 정의 명확화
 - “.매수를 중개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업”
- '93. 6 : 「농안법」개정시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 '94. 11 : 「농안법」개정시 중도매인을 도매거래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함



STORY

농안법 파동!

1993년 6월 의원입법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공포되었는데, 개정 내용 가운데에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고 수탁판매, 수집판매, 도매행위 등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일체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중개행위만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매인의 위탁판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중매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소위 “농안법 파동”이다.



중도매인은 단순 중개만 할 뿐 현지 수집·도매 행위를 못한다고 정한 1994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은 '농안법 파동'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한겨레신문)

당시 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누누이 설명하였으나 당시 사회전체의 개혁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1993년 5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6월 11일 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예상한 대로 관련 단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5월 21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중매인조합연합회는 정부에 개정 「농안법」시행 전에 문제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매시장지정도매인협회도 중매인 거래를 중개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개를 하고 남은 매잔품에 대해서 만이라도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 개정 심의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농림수산식품부도 1993년 6월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지정도매인 및 중매인 대표 등 12명으로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의 영업 범위를 중개업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잔품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어, 중매인의 잔품 처리를 위한 도매행위에 대해서 중개행위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내용을 「농안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담은 조항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상 상위법인 「농안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한 채 1994년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최종 통과되었다.



“잔품처리의 중개행위 인정”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자 도매시장 중매인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법 시행 첫날인 5월 1일은 일요일이어서 별일 없이 지나갔으나, 5월 2일 청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매수하지 않아 상장된 야채, 과일 220톤 가운데 67톤만 낙찰되고 153톤이 유찰되어 잔품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거래가격은 전날보다 60~90% 수준까지 폭락하였으며, 20여명의 출하 농민들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행정당국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전국 중매인이 집단 시위에 들어갔고 도매시장은 큰 혼란을 맞았다. 5월 4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아예 경매에 참가하지 않아 도매시장 건설 이래 처음으로 경매 없는 날이 발생하였고, 일부 농수산물만 출하자의 직판으로 거래되었다. 이처럼 도매시장이 마비되자 산지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의 서울 반입이 어려워져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지에서는 물량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중매인 도매행위금지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떠한 해결 실마리도 찾지 못하다 결국 5월 4일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즉 개정 「농안법」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홍보 및 계도 준비기간을 당초 1개월로 설정했던 것을 6개월로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에 도매시장제도 및 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수산물 유통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새로운 유통개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장관의 발표가 나온 후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기관의 유통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1994년 9월 1일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에는 재차 개정된 「농안법」이 공포되었다.

□ 중도매업의 허가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중도매업의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5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개설자가 허가유효기간 설정(다만, 개인인 중도매인은 3년이상 10년의 범위)
 - 부류별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함
 - 농수산물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함(법 제44조 제2항)
 -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공판장에서 업무할 수 있음.
(법 제26조)
-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중도매인이 제25조 제3항의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는 중도매업 영업을 위한 필요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다만 법 제25조 제3항 제2호의 “실형의 선고”라 함은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업을 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법 제86조 제3호)



- 중도매업 허가의 법적 성질
 - 중도매업 허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제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허가에 해당함
 - 중도매업 허가는 대상자의 능력 등 주관적 요소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대인허가이므로 임의적인 양도·양수가 제한되는 성질을 가짐
- 중도매업 허가절차(시행규칙 제19조)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인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이력서, 은행의 잔고증명서
 - 법인의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개설자는 중도매업 허가시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중도매인의 거래(법 제31조 제2항)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요건
 -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비상장허가 농수산물 거래 중도매인의 준수사항(도매시장법인 준용규정)



- 제35조 제1항 :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 제38조 : 수탁, 위탁 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됨
- 제39조 :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농수산물을 인수
- 제40조 제2항·제4항 : 표준하역비 부담, 하역전문업체 등과 하역 용역계약 체결
-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 : 정산창구를 통한 대금결제
- 제42조 제1항 제1호·제3호 : 시장사용료, 위탁수수료
- 제81조 :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

□ 중도매인의 의무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39조 제1항)
-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법 제25조 제4항)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88조 제3호)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업무집행상황 보고의무(법 제79조 제2항)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보고 제외,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법 제82조제5항)
 - 제25조 제3항 제1호 부터 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84조)



10.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관련 조항

제36조, 제37조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 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것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시장도매인의 정의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법 제2조제8호)
 - 통상 “도매상” 이라고 하나 기존도매상과 자격, 정산방법, 영업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용어로 “시장도매인”이라고 함

Ⅱ 시장도매인과 일반위탁상의 비교 Ⅱ

구 분	시 장 도 매 인	일반 위탁상(도매상)
운영주체의 법인격	법 인	대부분 개인 위탁상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규모 등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정산의무	정산제도 이용 의무화	없 음
지정기간	5~10년 사이에서 개설자가 지정	없 음
영업활동규제	정당한 이유없는 수탁거부 금지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수탁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없 음

□ 도입형태

〈지방도매시장〉

- 「농안법」 시행일인 2000. 6. 1부터 도입
-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중앙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 → 시행령 부칙 개정('05. 6. 23)으로 2005년 7월 1일로 명시
- 청과부류, 수산부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 시장도매인의 지정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등)로 5년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시행령 제18조)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 정관,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 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함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6호)
 - 적정수는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류별로 상한수를 정함
 - 임원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배제요건외에 지정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최저거래금액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시장도매인의 영업

-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



- 도매인이 거래한 내역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허위 기재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함
 - 시장도매인은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매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생한 차손금은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를 정함
 -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
 -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시장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출하자에게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



참고 1

시장도매인 관련 운영규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 지정유효기간 설정,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 시장도매인의 영업(제37조)
 - 매수 또는 수탁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
 - 해당 도매시장내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외의 자에게 판매
- 수탁의 거부금지 등(제38조)
 -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자는 즉시 인수(제39조)
- 하역업무(제40조)
 - 표준하역비 부담, 하역업무는 용역체결 운영 가능
- 대금결제(제41조)
 - 매매된 경우 즉시 결제, 정산제도 이용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
- 시장도매인이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경우 산지유통인등록 면제(제29조)
- 민영도매시장에서도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 가능(제48조)
- 유사도매시장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구역내의 농수산물 도매업자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가능(제64조)
-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제77조)
- 시장도매인에 대한 기장사항, 거래내역보고 지시(제79조)
- “ 업무처리의 개선 등 명령(제81조)
- “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제82조)



시장도매인제 도입경위

□ 추진경과

- 국민의 정부출범후 농산물유통개혁을 위하여 「농산물유통개혁대책위」를 구성, 유통개혁과제를 논의('98. 3 ~ '99. 6)
 - * 직거래의 제도화, 공영도매시장개혁, 산지유통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물류 및 정보체계개선, 수급안정 등 과제 논의
 - 건의된 개혁대책을 바탕으로 '98. 7. 23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보고
- 입법과정에서도 도매시장 개혁과제로 선정된 도매상제(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농안법 개정안 마련
 - 도매상제의 도입범위(중앙·지방), 영업범위(매수·수탁 등) 등에 대하여 논의
- '98. 12. 2에 국회에 농안법 개정안 제출, '99. 12. 16에 개정안 의결
 - * 주요내용 : 시장도매인제도입, 표준하역비 등 도매시장개혁대책과 유통명령, 자조금 등 수급안정제도 도입
- 농안법 공포('00. 1. 28)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00. 6에 완료하고 시행

Ⅱ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과정 Ⅱ

- '98. 3. 각계 전문가 30인으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및 총괄반 등 5개 실무대책반 발족
- '98. 5. “도매상제 도입” 전국중도매인 성명서 발표
- '98. 6. 농수축산물유통개혁 정책기획단 회의개최(국민회의)
- '98. 6. “농업인 동의없는 수탁매매 도입 반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발표
- '98. 6. “도매상제 도입 반대” 농협공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 '98. 6.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3차 공청회(프레스센터 19층)
- '98. 7. “도매상제 도입 요구” 시설채소 생산자연협회 호소문 발표
- '98. 8. 국민회의 “농축산물유통개혁안” 발표, 서남권 도매시장에 도매상제 도입
- '98. 9.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한농연 시위집회
- '98. 10. 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 '98. 10. 중도매인 과천청사앞 집단시위
- '98. 11. 농안법 개정안 2차 입법예고
- '98. 12. 농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99. 1. 농안법 개정안 4차 공청회 실시(국회의원 회관)
- '99. 3. 국회농림해양위 주관 농안법개정 공청회 개최
- '99. 12. 농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0. 1. 농안법 개정안 공포
- '00. 6.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11.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관련 조항

제23조의 2, 제25조의 2, 제36조의 2

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 2. 22>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제25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36조의2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1]

□ 도입배경

□ 도매시장법인 등은 인적구성, 자산 규모면에서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시급

□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유도로 도매시장 구조 개선 촉진

-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으로 경영 효율 증대 및 전국 단위의 경영규모 실현

- 부실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퇴출 경로 마련으로 규모화 및 법인화 유도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절차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 「상법」 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계약서 사본

-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년도
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음
-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임원중 제82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
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
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법인인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의 인수·합병의 승인절차**
-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절차로 실시
- **인수·합병을 통한 기대효과**
- 도매시장 거래관계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유도로 도매시장정비 촉진
 - 부실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퇴출 경로 마련으로 규모화 및 법인화 유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으로 경영 효율 증대 및 전국 단위의 경영규모 실현
 - 거래관계자의 경영성과 제고를 통하여 도매시장 출하자 및 구매자 편의 제고
 - 도매시장거래의 투명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규모화된 산지와와의 거래능력 제고
 - 거래규모 확대로 대형유통업체 등 도매시장 고객을 유치 가능



12. 매매참가인의 신고

관련 조항 제25조의 3(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5조의 3 【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매매참가인의 정의(법 제2조 제10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 매매참가인 제도의 의의

매매참가인 제도는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입찰에 참가시킴으로써 경매를 활성화시키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매매참가인 제도의 연혁

- '73. 2 : 매매참가인 승인제도 도입
- '76. 12 : 매매참가인 등록제로 변경, 등록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
 - 도매시장 거래품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 대량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구입하는 자
- '94. 5 : 매매참가인 정의 규정 신설
 - 가공업자, 농수산물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실수요자로 한정
- '94. 11 : 매매참가인의 정의를 수요자로 확대
- '00. 1 : 매매참가인의 등록제 폐지
 -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폭넓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매활성화 도모
- '07. 1 : 매매참가인의 신고제 도입



□ **매매참가인의 신고(시행규칙 제19조의3)**

-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증명사진(2.5cm×3.5cm) 3매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13. 경매사의 임면

관련 조항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 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 경매사의 정의(법 제2조 제13호)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경매사의 업무

□ 경매사의 임무

- 생산자(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주는 매매자의 역할
-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 도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수행
 - ※ 도매시장에 전자경매 등의 도입으로 경매사의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도매시장내 경락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능외에 품질평가, 산지집하 및 경매후 관리기능 등의 중요성 증대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 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 : 제3자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 : 수뢰후 부정퇴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

□ 경매사의 임면제도

-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함(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 자격요건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 제4호)
-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은 경매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경매사 면직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 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경매사 자격시험

- 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법 제27조의2)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위탁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경매사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의 일부면제 등(시행령 제17조의3)



-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행
 - 제1차시험은 도매시장 관계 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평가로 하며, 제2차 시험은 모의경매진행으로 함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의 제1차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 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함
 -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음
 -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 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함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 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cm×4cm) 1매



Ⅵ 제1회 경매사 자격시험실시(1990.8.16) Ⅵ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관련 조항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 산지유통인의 정의(법 제2조 제11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연 혁

- '94. 11 : 수집상등록제 도입('95. 7. 1 제도 시행)
- '00. 1 : 수집상에서 산지유통인으로 용어변경



□ 산지유통인 등록제의 취지

- 농산물유통에 있어서의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인정하여 유통효율성 제고와 농수산물 출하 조절과 가격안정 도모
- 산지유통인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중도매인의 불법수탁, 수집행위 근절

□ 산지유통인의 등록(시행규칙 제24조)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의 등록예외(시행규칙 제25조)

-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산지유통인에 대한 벌칙

-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 제5호)
-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산지유통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 제6호)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 업무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5항)
 - 이러한 도매시장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90조 제3항 제2호)



□ **산지유통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개설자는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



15. 출하자 신고

관련 조항

제30조(출하자 신고)

제30조 【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 산지유통인 등록제에 부가하여 출하자(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도 신고제를 실시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및 품질의 안정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자(산지유통인)는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함(법 제29조)

- 출하예약을 통하여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별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약출하를 유도

출하자가 사전에(2,3일전) 도매시장법인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출하할 품목·수량·시기 등을 예약한 후 출하

- 출하자 신고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운영중



16.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관련 조항

제31조 ~ 제33조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제32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 수탁판매의 원칙(법 제31조 제1항)

-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함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음
 - ※ 수탁판매의 예외 (시행규칙 제26조)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9조 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 매매방법(시행규칙 제28조)

- 제1호 : 경매 또는 입찰
 -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제2호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 경매 또는 입찰방법(법 제33조)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함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개경매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음.
 -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으로 경매 또는 입찰할 수 있는 경우(시행규칙 제31조)
 -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의 판매
 - 그 밖에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입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음
 - 우선판매 대상품목(시행규칙 제30조)
 - 대량입하품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예약 출하품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농산물
 -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참고 1

외국도매시장의 거래방법

일 본

□ 중앙도매시장의 매매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

※ '99년 법 개정 시 경매원칙 폐지

□ 매매거래의 방법

□ 경매 또는 입찰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업무규정으로 정해진 것(제1호)

□ 도매예정수량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상대거래에 의한 것으로 업무규정에 정해진 것(제2호)

□ 기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거래(제3호)

□ 거래방법 지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상대거래 실시

□ 경매 또는 입찰 지정 거래라도 상대거래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재해의 발생, 입하의 지연, 도매의 상대방이 소수인 경우, 경매 또는 입찰에도 잔 품의 도매를 하는 경우, 예약수의거래의 경우, 도매개시시작전 도매를 하는 경우, 제3자 판매의 경우

□ 상대거래 지정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입찰해야 하는 경우

- 입하량의 현저한 감소, 수요의 현저한 증가가 발생한 경우

□ 선취거래는 개설자가 인정한 경우에 가능

개설구역내 다른 시장의 입하량 조정, 개설지역 외 도매시장과의 도매거래, 예약상대거래를 하는 경우 등



대 만

- 거래방식은 경매거래, 협의가격거래(상대거래), 표시가격거래, 투표거래(입찰)가 있으며, 시장별로 거래방식을 정하나 협의가격거래 제도 운영시장이 대부분 차지
 - ※ 표시가격거래 : 출하자가 시장직원을 대동하여 물품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시장내 모든 유통주체(도매업자, 중매인, 가공업자등)가 표시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

프랑스

- 도매상제 정착으로 거래방법은 전통적으로 상대거래가 지배적이며,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시장내 직접 판매하는 제도 병행

미 국

-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통상 출하자와 사전 계약에 의한 상대거래 실시



참고 2

일본 「도매시장법」의 거래관련 규정

제34조 【매매거래의 원칙】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제35조 【매매거래의 방법】 ① 도매업자가 중앙도매시장에서 하는 도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농수산물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기재하는 매매거래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경매 또는 입찰방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한 농수산물 등으로써 업무규정으로 정해진 것 : 경매 또는 입찰방식
2. 매일의 도매예정수량중 적어도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 것이 적당한 농수산물 등으로써 규정으로 정해진 것. 그리고 매일의 도매 예정수량중, 개설자가 농수산물 등의 품목마다 정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에 의한 거래방법(하나의 도매업자와 하나의 도매상대방이 개별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상대거래])
3. 전2호 이외의 농수산물로써 업무규정으로 정해진 것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 거래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하는 농수산물 등(동항 제2호에 기재하는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동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재해의 발생 기타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설자가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한 방식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상대거래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기재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해당시장으로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줄거나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개설자가 지시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개설자는 제1항 제2호의 일정한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표해야만 한다.



⑤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개설자가 제1항 제2호의 일정한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9조 【시장밖에 있는 물품의 도매금지】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도매업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제15조[도매업무의 허가]제1항의 허가를 받아서 도매업무를 하는 시장 내에 있는 농수산물 등 이외의 농수산물 등의 도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도매시장과 관련된 개설구역 내에 있어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장소(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해당개설구역의 주변지역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있는 농수산물 등의 도매를 할 경우
2. 개설자가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에 의하여 해당 중앙도매시장과 관련된 개설지구 내에 도매업자가 신청한 장소에 있는 농, 수산물 등의 도매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거래방법 그 외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거래방법에 의해 신선식료품 등의 도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도매거래를 위해 필요하며, 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힐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을 경우

제40조 【도매업자에 대한 도매상대방으로서의 구입금지】 도매업자(그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그 당사자가 제15조(도매업무의 허가)제1항의 허가를 받아 도매업무를 하는 시장에서 그 허가과 관련된 취급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도매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농수산물 등을 구입해서는 아니된다.



17. 거래의 특례

관련 조항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 제도의 내용

- 도매시장법인은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음

□ 시행방안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은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거래특례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개설자에게 제출
 -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 판매한 사유



□ 거래특례(제3자 판매) 허용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탁거부금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반면, 출하량은 기복이 크고 사전예측이 어려워 수급상 일시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도매시장법인에 따라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간 가격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출하자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우려
- 그리고 중도매인이 특정법인의 경매에 불참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에게 막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폭락을 방지



18. 수탁의 거부금지 가능사유

관련 조항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1]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거부 금지

- 수탁의 거부금지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 거래 교섭력이 부족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수탁거부 금지 규정에 따라 하품(下品), 비규격품, 유해농산물 유입으로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 발생

- 안전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산지 규격화 선도 기능 미흡
- 도매시장의 환경규제 강화로 비규격 농산물 출하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증가



□ 수탁거부 가능 사유

-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19. 출하대금결제

관련 조항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 창구(窓口)(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대금결제원칙 : 정산창구 이용

□ 예외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직접결제 가능

□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시행규칙 제36조)

- ①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송품장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 ④ 정산창구는 출하자에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출하·판매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정산창구의 기본 개념

□ 정산창구의 개념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의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 정산창구 방식별 개념

< 정산회사방식 >

-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
- 출하자는 시장관계자(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등)로 하는 방식

< 정산조합방식 >

-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직접 지는 방식임

< 금융기관(농·수협 등)이용 방식 >

- 개설자가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별도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 개설자 관리방식 >

-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정산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공사 체제에 적합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금융기관 이용방식과 유사
하나 두가지제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 정산창구의 유형

- 정산창구의 유형은 크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정산회사방식, 대금결제전용계좌관리방식, 개인지불방식등이 있으며,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방식은 관리주체에 따라 정산조합방식, 금융기관 이용방식, 개설자 관리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정산창구는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 상기의 유형중에서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공사) 관리방식 등을 검토

□ 송품장, 판매원표 등 농산물 거래서식을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구축 및 표준규격 출하 유도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규격화 촉진의 핵심인 표준송품장 내용용 구체화함으로써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표준송품장의 사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기재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표준송품장을 제출받은 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판매원표 관리(시행규칙 제37조의3)

-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 품명, 등급, 수량, 경락가격, 매수인, 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함
-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함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 표준정산서(시행규칙 제38조)에 포함될 사항

- 표준정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자 명
- 출하자 명
- 출하자 주소
- 거래방법(매수·위탁·중개) 및 매매방법(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 판매내역(품목·품종·등급별 수량·단가 및 거래 단위당 수량 또는 중량), 판매대금 총액 및 매수인
- 공제내역(위탁수수료·운임선급금·하역비·선별비·쓰레기유발부담금 등 비용) 및 공제 금액 총액
- 정산금액
- 송금내역(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20.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관련 조항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2. 22>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③ 삭제 <2012. 2. 22> [전문개정 2011. 7. 21]

□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 할 수 없음

- 도매시장 사용료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
- 시설사용료 :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인의 점포 등 도매시장의 시설중 농림수산물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
- 위탁수수료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



※ 위탁수수료란?

위탁자(출하자)가 위탁의뢰한 농산물을 수탁자(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가 자기책임 하에 판매, 대금정산을 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출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 중개수수료 :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

※ 중개수수료란?

매수자 또는 판매자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자가 중개를 시키고 그 용역의 대가로 매수자와 판매자로 부터 받는 수수료

- 정산수수료 :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

□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개설자가 정하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음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만,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각각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 기준으로는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

□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징수는 개설자가 정하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음

- 징수대상시설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의 부수 시설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 시설사용료 : 연간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함
 -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 :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 이내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한도 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 정산수수료 다음 최고한도내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정률의 경우 :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 정액의 경우 : 1개월에 70만원



2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관련 조항

제38조의 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38조의 2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농안법상 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전무

- 2000년 법 개정시 “개설자는 유해 농산물에 대한 조치가능”규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 중복 규정 사유로 삭제

□ 일부 도매시장에서 개설자가 자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 미흡

- 출하자 등록 관리 부실 및 수탁거부 금지 규정에 위반
- 위반자의 차·가명 출하시 제재 불가

□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출하 제한을 받은 자도 같음



□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 미달 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 곡류·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 1kg 이상 2kg 이하
- 채소류 및 과일류 자연산물 : 2kg 이상 5kg 이하
- 묶음단위 농산물의 한 묶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묶음씩 수거하고, 한 묶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묶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묶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함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묶음단위 전체를 수거할 수 있음

Ⅰ 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Ⅰ

종 류	수거량
초대형어류(2kg 이상/마리)	1마리 또는 2kg 내외
대형어류(1kg 이상~2kg 미만/마리)	2마리 또는 2kg 내외
중형어류(500g 이상~1kg 미만/마리)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500g 미만/마리)	5마리 또는 2kg 내외
소형어류(200g 미만/마리)	10마리 또는 2kg 내외
패 류	1kg 이상 2kg 이하
그 밖의 수산물	1kg 이상 2kg 이하

□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수거 시기

-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 방법

-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함
-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단위당 무게,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거지점(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함
- 시료수거 대상 농수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외관 및 냄새,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음



- 시료 수거 시에는 반드시 출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 안전성 검사 방법

-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함

□ 안전성검사결과 미달품 출하자 출하제한

- 도매시장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 3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함



22. 하역업무

관련 조항

제40조(하역업무)

제40조 【하역업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 하역의 개념

- 출하자가 농산물을 도매시장내에 반입하면 “상품하차 ⇒ 선별 ⇒ 진열 ⇒ 경매 ⇒ 이적 (중도매인 점포까지) ⇒ 상차(반출차량)” 등의 과정이 이루어짐
 - 이때 경매를 제외한 부분은 넓은 의미의 하역이라 하며
 - 하차, 선별, 진열 등 경매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좁은 의미의 하역 또는 경매를 위한 작업이라고 함

□ 하역과정에서의 하역비 부담 주체

- 하차, 선별, 진열비 : 출하자
- 이적, 상차비 : 중도매인

□ 표준하역비 도입

- 개념 : 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 비용부담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 시행시기 : 2002년 1월 1일



□ 도입취지

- 하역비 부담주체가 불특정다수(출하자)로서 하역비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없었는데 표준하역비 도입으로 하역기계화 촉진
- 하역비를 점진적으로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운영주체가 부담하게 하여 하역체계 개선의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 하역자를 도매시장법인 직원화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 하여 하역기계화 촉진 유도

□ 하역업무 개선 등 조치명령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하역용역계약 근거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참고

공영도매시장별 하역인력 및 하역비 현황('11년, 청과)

(단위 : 명, 백만원)

시장명	계		노동조합		용역		법인직원		자체하역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201	87,535	1,761	48,815	695	18,731	-	-	745	19,989
서울가락	1,166	29,717	1,163	29,690	-	-	-	-	3	27
서울강서*	238	6,449	80	2,837	95	2,262	-	-	63	1,350
부산염곡	101	3,635	101	3,635	-	-	-	-	-	-
부산반여	85	3,531	-	-	35	1,391	-	-	50	2,140
대구북부	134	4,439	-	-	-	-	-	-	134	4,439
인천구월	94	2,614	76	1,991	-	-	-	-	18	623
인천삼산	72	2,739	24	889	24	933	-	-	24	917
광주각화	112	3,331	112	3,331	-	-	-	-	-	-
광주서부	89	2,806	-	-	67	2,027	-	-	22	779
대전오정	82	3,044	82	3,044	-	-	-	-	-	-
대전노은	47	1,775	34	1,319	13	456	-	-	-	-
울 산	40	1,497	-	-	17	700	-	-	23	797
수 원	59	1,286	39	733	20	553	-	-	-	-
안 양	36	1,072	-	-	36	1,072	-	-	-	-
안 산	47	1,456	-	-	47	1,456	-	-	-	-
구 리	257	5,853	-	-	257	5,853	-	-	-	-
춘 천	6	113	-	-	6	113	-	-	-	-
원 주	19	462	-	-	-	-	-	-	19	462
강 릉	12	207	-	-	-	-	-	-	12	207
청 주	57	1,233	-	-	-	-	-	-	57	1,233
충 주	20	419	-	-	-	-	-	-	20	419
천 안	34	1,094	-	-	-	-	-	-	34	1,094
전 주	46	1,151	-	-	46	1,151	-	-	-	-
익 산	37	904	-	-	27	650	-	-	10	254
정 읍	18	104	-	-	-	-	-	-	18	104
순 천	38	1,044	18	513	5	114	-	-	15	417
포 향	15	430	-	-	-	-	-	-	15	430
안 동	120	2,085	-	-	-	-	-	-	120	2,085
구 미	12	300	-	-	-	-	-	-	12	300
창원팔용	32	833	32	833	-	-	-	-	-	-
창원내서	37	990	-	-	-	-	-	-	37	990
진 주	39	922	-	-	-	-	-	-	39	922



23.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관련 조항

제42조의 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2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② 삭제 <2012. 2. 22>

□ 도매시장규모 및 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지방도매시장의 운영난 심화

- 지방도매시장의 소량 구색 품목 부족으로 도매시장 거래 왜곡 현상 발생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영세화 심화로 지속적인 취급물량 감소

□ 중앙·지방도매시장에 대한 이원적 접근의 필요성

- 지방도매시장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 부여 필요
- 지방도매시장의 도매 업무의 선별·포장·직판 등 기능 복합화로 시장 활성화

□ 운영특례 가능 조항

- 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사유를 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음
- 법 제31조 제2항 단서외의 사유를 정하는 경우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음.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4. 도매시장 등의 평가

관련 조항

제77조(평가의 실시)

제77조 【평가의 실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 등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평가목적

- 도매시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정착과 도매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
-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도매시장 운영개선 정책에 반영

□ 평가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평가절차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다음년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개설자에게 통보(12월 31일까지)
 - *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자체평가 실시
- 평가대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자체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자체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제4절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 공판장의 개설·운영

관련 조항 제43조(공판장의 개설)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①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67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공판장 정의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시행령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공판장 현황

- '11년말 산지공판장은 46개소가 개장·운영 중에 있으며, '02년부터 정비·용도전환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경매식집하장의 공판장 전환으로 증가
 - 공판장 수 : '02)58개소 → '04)49 → '06)47 → '07)45 → '08)44 → '12)47



(단위 : 톤, 억원)

구 분	2005		2008		2010		20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산지공판장(46)	448	4,635	410	5,062	302	5,728	319	6,517

※ 화훼공판장 4개소 제외

□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

-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설기준
 - 공판장의 시설기준은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 부령으로 정함(법 제 67조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내에 이를 갖추 것을 조건으로 개설 승인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집하장중 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음(법 제50조 제3항)
-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서에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19조)

Ⅱ 개설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 Ⅱ

● (시행규칙 제40조)

- 공판장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에는 제외
- 운영관리계획서
-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 ※ 공판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 17조를 준용



□ 농수산물공판장의 거래관계자

-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음(법 제44조)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래관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가 지정하되, 지정기준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에 관한 규정 준용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되, 등록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 등록규정을 준용
 - 공판장 경매사는 공판장개설자가 임면하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경매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다만, 도매시장 안에 입주한 공판장의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에서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46조)

□ 농수산물공판장의 운영

-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5조)
 -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
 - 제32조 : 매매방법
 - 제33조 : 경매 또는 입찰방법
 - 제34조 : 거래의 특례
 -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40조 : 하역업무
 - 제41조 제1항 : 출하자에 대한 즉시대금결제
 -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45조 단서)



□ 도매시장공판장의 관리운영

- 도매시장공판장은 도매시장안에 설치된 공판장을 말함(법 제26조)
 -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도 도매시장공판장 운영가능(법 제46조 제5항)
-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 제1항)
 - 제30조 제2항 : 출하 예약자에 대한 우대조치
 - 제31조 제1항 : 수탁판매의 원칙
 - 제32조 : 매매방법
 - 제33조 : 경매 또는 입찰방법
 - 제34조 : 거래의 특례
 - 제35조 제2항 내지 제5항 : 전자거래, 견본거래, 겸영사업
 - 제35조의2 : 물량, 가격 등의 공시
 -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40조 : 하역업무
 - 제41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제41조의2 :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 제2항)
 - 제25조 : 중도매업의 허가
 -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 중도매인의 비상장 농수산물거래
 -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제75조 : 교육훈련 등
-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 제3항)
-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 제4항)



- 제27조 : 경매사의 임면
- 제28조 : 경매사의 업무 등

□ 공판장의 지도감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법 제79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공판장의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5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판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81조)



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운영

관련 조항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1]

□ 민영도매시장의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함

□ 민영도매시장 제도 도입배경

- 도매시장개설을 민간에도 허용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부분 종합부류시장인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
- 민영도매시장의 운영은 공판장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관련규정을 준용
 - 거래체계는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거래방법과 시장도매인을 입주시켜 수의매매를 하는 방식 중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선택 가능



□ 민영도매시장 현황

- 논산, 군산, 상주 청과물도매시장 (3개소)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시설기준
 -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은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 부령으로 정함 (법 제6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내에 이를 갖추어 것을 조건으로 개설 허가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47조 제2항)
 - 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41조)
 - 민영도매시장 업무규정
 - 운영관리계획서
 -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견서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
-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 위치의 적절성, 시설기준, 운영관리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 개설자의 직접 운영 형태

- 거래관계자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할 수 있음
 -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되, 지정기준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에 관한 규정 준용
 - 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 중도매인 자격요건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민영도매시장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되, 등록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 등록규정을 준용
 - 법 제29조 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6항 : 산지유통인의 등록
-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면하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경매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법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 : 경매사 자격요건, 면직, 신고
 - 법 제28조 : 경매사의 업무 등

□ 운영 및 거래방법(법 제48조 제6항)

- 운영 및 거래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은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법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
 - 법 제32조 : 매매방법
 - 법 제33조 : 경매 또는 입찰방법
 - 법 제34조 : 거래의 특례
 - 법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 법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법 제40조 : 하역업무
 - 법 제41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법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당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운영체제(법 제48조 제5항)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되,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규정을 준용
 - 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 자격요건, 부적격 임원의 해임, 지정절차
 - 법 제37조 : 시장도매인의 영업
 - 법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 법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법 제40조 : 하역업무
- 법 제41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법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민영도매시장 지도감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법 제79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5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81조)



3. 산지유통제도

관련 조항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또는 선상경매(船上競賣)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집하장중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음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포전매매의 계약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함
- 농산물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반출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예정일이 경과되기 전에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포전매매시 생산자의 임의처분권

- '94. 10 법 개정시 포전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포전거래시의 준수사항을 법제화 하였으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행이 일시에 바뀌지 않음
- 포전매매를 하고도 반출예정일 당시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 상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계약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인이 포전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생산자가 계약준수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다른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함

〈참고〉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서(별첨) 및 포전매매 서면계약 대상품목(별첨)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음

산지유통조직 현황

구 분	중형조직(전문조직)	대형조직(공동마케팅조직)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간 사업 연합·계열화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농산물마케팅 규모화 및 전문화 촉진 □ 마케팅을 규모화·광역화·브랜드화하고 독립채산제·책임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적 경영체 육성 	
조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계산매출액 10억원 이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조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계산매출액 100억원 이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조직 등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및 조건 - 운영자금 500억원 내외, 3년, 1~3% (용자 80%, 자부담 20%) 무이자 인센티브지원(50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역 및 조건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널티 - 정부자금 지원 3년 후 승급못할 경우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널티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용도 : 유통종합자금 - 선급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용도 : 좌 동
조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수('11) : 134개소 - 농협 98, 법인 36 - '11 지원액 : 1,665억원 * 탈락조직 49개소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수('11) : 36개소 - 농협 24, 법인 12 - '12 지원액 : 2,671억원



4.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

관련 조항

제62조(정비기본방침 등)

제62조 【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7. 21]

□ 농수산물 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 운영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 소매상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유사도매시장 정비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
 -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시설개선·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도매시장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유사도매시장 정비내용

-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시·광역시
 - 국고지원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 기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유사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와 지역안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 유사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과 대책을 시행하는 때의 대상자의 선발기준



5.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관련 조항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명령)

제65조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시장의 정비명령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함
 -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입지조건, 시설현황
 -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합·이전 및 폐쇄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함

□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대행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함

□ 도매시장법인 업무대행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이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기타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경우는 도매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방안이 필요하여 '94년부터 도입
- 도매시장법인에게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여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도매시장 질서확립 미흡 우려

□ 시행방법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경우, 그 법인에 대해 판매의 위탁신청이 있는 물품에 대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
- 개설자는 도매업무를 대행시킬 도매시장법인이 없거나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대행 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스스로 또는 관리공사로 하여금 그 도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 ※ 개설자(관리공사 포함)의 직접적인 도매업무 대행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안법상의 지도를 강화하여 사태를 미연에 방지

□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의 과징금 제도(법 제83조)

- 도매시장법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



6.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경로 다원화로 농어민이 출하선택 폭을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 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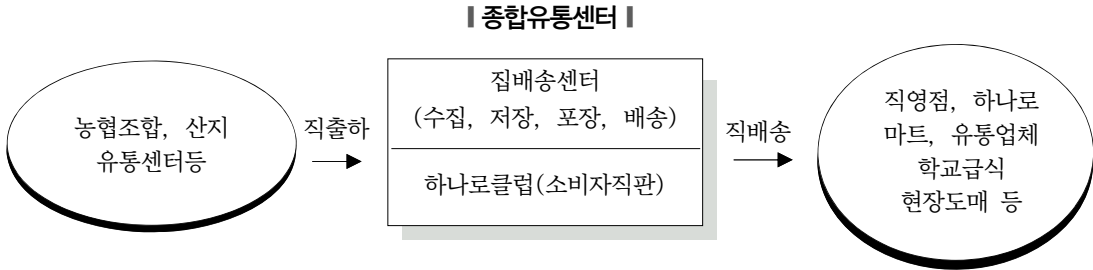
□ '94. 5 농안법파동에 따라 마련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핵심과제로서 도매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 외곽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추진

□ 지원기준

유형	'95~'98신청지역	'99~'02	'03년 이후
<공공유형> - 지자체 단독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부지구입비 : 70%용자 건설비 : 70%보조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지방비	총사업비의 50%국고보조, 50%지방비
<생산자단체유형> -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부지구입비 : 70%용자 건설비 : 70%보조	부지구입비 50%용자 시설비 50%보조	부지구입비 : 50%용자 시설비 : 50%보조



□ 종합유통센터 유통과정



□ 설립유형별

구 분	종합유통센터명
공공유형(9) 생산자단체형(5) 컨소시엄형(3)	성남, 고양, 달성, 수원, 목포, 김해, 울산, 금산, 양산 양재, 창동, 청주, 부산, 전주 천안(충남도, 농·축협), 군위(농협중앙회, 군위군), 대전(농협중앙회, 대전시)
17	17개소

□ 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까지	2008	2009	2010	2011	계
합 계	530,300	6,727	5,000	8,000	9,640	559,667
용 자	74,900	-	-	-	-	74,900
보 조	455,400	6,727	5,000	8,000	9,640	484,767



7.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

관련 조항

제70조의 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농수산물의 사이버상 직거래 구현으로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구조 개선

구 분	B2B(기업간 거래)	학교급식	B2C(쇼핑몰)
거래품목	양곡류, 청과류, 축산물, 수산물 등	학교급식 전품목 (약 400여 품목)	친환경, 지역특산명품, 전통주
거래방식	정가매매, 특약·견적거래, 경매, 역경매, 전자입찰	전자입찰	오픈마켓 직거래

○ 추진경과

- '09. 1. 3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출범
- '09. 7. 20 : B2C(친환경농산물 대상) 오픈 / '09. 10. 28 : B2B 오픈
- '09. 12. 30 : 농안법 개정(설립·운영 근거 및 주요사업 내용 명시)
- '10. 8. 20 : 학교급식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 시범거래 개시
- '11. 6. 15 : 단체급식전자조달시스템 지정정보처리장치 획득(행안부/7. 1시행)

별첨



1. 농안법 판례
2. 농안법 유권해석(농림수산식품부)
3. 농안법 질의답변(서울시)
4.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용요령(고시)
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고시)
6.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서(고시)
7. 포전매매 서면계약 대상품목(고시)
8.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고시)
9. 시장도매인 지침(2000.10)
10. 농협공판장 업무취급 준칙
11. 일본 도매시장 제도의 변화
12. 농산물 시장유통 용어
13. 경매사 국가자격증 시험문제
14. (서울시)소송업무 절차
15. 농산물유통정보 제공처
16. 정가수의매매 추진방법(도매시장법인협회)



별첨 1.

농안법 판례

1 중도매인이 상장된 농수산물을 거래하도록 한 것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 것인지 여부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06. 3. 10, 2004도6846, 수원지법, 2004. 9. 13, 2004노2003

나. 관련규정 : 법 제31조 제2항(수탁판매의 원칙)

-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의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한정시킨 조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제소

라. 쟁점 및 결론

- 농안법 제31조 제2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인지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마. 논거

-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규정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인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가 저해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큼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해서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을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역할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함

- 더구나 예외적으로 비상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중도매인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중도매인의 혜택과 제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안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된 것임

2 도매시장법인의 양벌 적용 관련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05. 6. 24, 2005도2651,

인천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3055

나. 관련규정 : 법 제2조(정의), 89조(양벌규정)

- 제2조 (정의)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제8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매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도록 기소된 사건

라. 쟁점 및 결론



-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안법 제89조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으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마. 논 거

- 중도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별도의 사업자임
 -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단지 거래편의 및 외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법인으로 정하여 놓은 것일 뿐 다른 도매법인, 공판장과 거래할 수 있고 비상장거래도 가능함
 -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에게 담보제공 이외에 명의대여료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음
 -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영업하며 세법상으로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매법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함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도매시장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는 것에 반하여 중도매인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중도매인의 법인소속여부는 허가요건이 아님

3 중도매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허가취소 여부

가. 사건번호 : 2002헌바67, 2005. 5. 26

나. 관련규정 :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중도매업의 허가)

-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서울시가 이를 이유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자 중도매인이 서울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당해사건 계속 중 「농안법」 제25조 2항에 대하여 한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당해사건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라. 쟁점 및 결론

- 「농안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 거

- 농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도매인이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직무는 공동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큰 직역이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공정을 위해서는 거래참가자들의 담합 등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고 거래의 실제 주체와 명의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제한조항이 없을 경우 형의 집행기간 동안 명의대여가 있을 수 있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4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1997. 7. 29, 농림부)

가. 관련규정 : 법 제18조 제2항(현행법률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②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의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략)



나. 사건개요 : 도매시장법인이 타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경합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농림부가 법제처에 질의

다. 쟁점 및 결론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경합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 취지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

라. 논거

□ 해당 법조항은 도매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려는 것

□ 이러한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감안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동기 및 경영에의 개입여부와 주식의 분산상황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 및 자산상태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5 도매시장법인의 영업 및 영업장소 위반 관련

가. 사건번호 : 청주지법 2006노353, 선고, 2007. 3. 21, 판결 : 상고

나. 관련규정 : 법 제35조 1항(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한 다음 적법하게 경매를 실시한 것처럼 판매원표와 낙찰명세서를 작성하고 도매법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도매인에게 입금함

□ 도매법인 경매사가 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고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라. 쟁점 및 결론



- 도매법인이 허위경매에 관련되었는지 및 중도매인의 법률부지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도매인이 산지수집한 것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도매인이 산지수집이 금지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범죄형성에는 상관없다고 함
- 경매사의 행위가 처벌대상인 도매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 거

-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한 다음 중도매인들과 도매법인 사이에 적법하게 경매를 실시한 것처럼 판매가격을 정하는 판매원표와 낙찰명세서를 작성한 점, 도매법인의 대표가 위장경매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도매법인이 경매서류를 작성해주고 중도매인들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위탁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입금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중도매인들의 위장경매를 묵인하면서 위장경매에 대한 서류작성의 대가로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라 함은, 공정한 경매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에서 출하인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 즉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경매)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나
- 매매계약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지급이 계좌송금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 판매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매수인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직접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도매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6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 여부

가. 사건번호 : 청주지법 85노180, 선고, 1985. 12. 2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나. 관련규정 : 법 제37조 제1항(현행법률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건개요

- 피고인이 충주시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전남 여수 등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소매상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허가 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 하여 형사기소됨

라. 쟁점 및 결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없음
- 「농안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 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되는 동 법률이나 동 시행령규칙에 정해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일응 참고한 후 피고인이 행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위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함은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입찰 등을 말하므로 피고인의 점포소유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에 들여와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볼 수 없음

7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에 대한 처분취소

가. 사건번호 : 대법원 98두8919, 선고, 1998. 8. 21, 판결,
서울고법 1998. 4. 17. 선고 97구38161 판결

나. 관련규정 : 법 제12조 (현행법률 기준 제22조) (도매시장의 개설·운영),

제17조(현행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구리시가 구리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상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구리시의 요청에 따라 청량리시장의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도매법인이 구리시장에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고 기존 청량리 시장에서도 영업기반을 잃게 되자 서울시의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됨

라. 쟁점 및 결론

-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라 판결
- 새로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존속 중에 도매법인의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된다고 함

마. 논 거

- 서울시가 청량리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다시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관을 붙였으나, 이러한 부제소특약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현재까지도 청량리시장에서 상당수의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상권에서 22년간이나 영업하여 온 원고에게는 도매법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리시장을 활성화하고 서울 동북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가 법



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청량리시장에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 하더라도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8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에 있어서 주주 및 임원변경에 관한 질의(법제처 1988, 농림수산부)

가. 관련규정 : 법 제17조(현행 기준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63조(현행 기준 제82조) (허가취소 등)

-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2조 (허가취소 등)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나. 사건개요

- 지정도매인(도매법인)의 주주의 주식양도 및 임원(대표자)변경에 대하여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요하는 지의 여부를 농식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

다. 쟁점 및 결론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한 지정도매인(도매시장법인)의 주주의 주식양도 및 임원(대표자)변경에 대하여 동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요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

라. 논 거

- 주식의 양도나 임원변경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의 규제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될 수 없음



- 「농안법」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은 자기자금 및 임원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가 되도록 하고(제17조)있는 외에 지정도매인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영업정지나 지정승인취소(법 제6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도매인의 주주나 임원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9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2000누16465 판결
- 나. 관련규정 : 법 제16조(현행 기준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제37조(현행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사건개요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도매인이 19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 서울시에서 허가취소를 하자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함
- 라. 쟁점 및 결론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중도매인이 유지하여야 할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거래실적이 3개월 연속 이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유효라 판결
-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원고가 거래를 재개한 등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정

마. 논 거

- 「농안법」이 중도매인에게 거래실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엄격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농안법의 취지와 더불어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중도매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중도매인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농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련한 「농안법」 제37조 등의 규정은 중도매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실적을 유지함으로써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농안법」이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방해행위에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거래실적 미달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 「농안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허가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은 「농안법」 제3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그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 한 것으로서 위임근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도 적법함.
- 서울시가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면서 IMF로 인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의 처분을, 그 외의 3~6개월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정해 놓았던 것인데 위반 중도매인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우려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 할 수는 없음

10 손해배상

가. 사건번호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97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3. 선고 90나43904 판결

나. 관련규정 : 법 제33(현행 기준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 사건개요

- 원고 중도매인은 공판장에서 새우젓을 경락받아 소매상에게 판매하였으나 이 중 일부에서 석유냄새가 나서 반품 받아 이를 다시 공판장에 반품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라. 쟁점 및 결론

- 경매물의 하자를 인수 당시 발견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부인함

마. 논 거

- 「농안법」 제33조에서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인은 매매가 성립한 즉



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공판사업규정에서 위탁물의 경락 후 매수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수를 거부코자 할 때에는 경매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수산물매매에 있어서는 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인 수산물을 수령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매현장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경매당 일 또는 직후에 하자를 식별하여 현장에서 인수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아 경매 후 여러 날이 경과한 후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즉시이의신청 규정을 위배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상법」 제69조 제1항의 숨은 하자규정이 6개월 내에 발견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농안법」이 「상법」의 특별법이므로 상법은 적용되지 않음

11 업무정지 처분 취소

가. 사건번호 : 99두16893, 행정법원, 2000. 4. 28

나. 관련규정 : 법 제28조 제2항(현행 기준 제31조 제2항)

-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사건개요

- 원고가 중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상장경매 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거래하다가 적발되어 개설자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직접 위탁받아 거래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

라. 쟁점 및 결론

-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을 위탁판매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고 패류가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마. 논 거

- 가락동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을 위탁거래 하는 일이 관행화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발제재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농수산물을 상장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농안법에 따라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로 지정된 후, 중도매인이 개설자로부터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패류의 다품종, 소량, 부패용이 등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패류를 위탁거래 한 것이 용인될 수는 없음

12 농수산물 중도매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가. 사건번호 : 98두20567, 행정법원, 1999. 6. 30

나. 관련규정 : 법 제37조 제1항(현행법률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제63조 제3항(현행 기준 제82조 제5항)(허가취소 등)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2조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청구인이 30일 이상 무단휴업하고,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한 이유로 개설자가 중도매인 허가취소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라. 쟁점 및 결론

- 무단임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
- 당해처분의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농안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며 처분 또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조례가 유효하며 처분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마. 논 거

- 청구인이 30일 이상 중 도매업의 무단휴업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1997. 10. - 1998. 2. 기간 중 청구인의 중도매인 시설을 대여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이 명백함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보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중 도매업 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참고판례(중도매업허가처분취소 98두20567)

원고가 30일 이상 무단휴업하고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한 행위는 「농안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농안법」 제37조 제1항,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례 제4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2)의 중도매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위규사항 제1호는 「농안법」 제37조 제1항에 법적위임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적법함

13 유사도매시장상인 벌칙적용에 관한 업무 질의

가. 사건번호 : 농림수산부, 1993, 민원인

나. 관련규정 : 법 제65조 제2호(현행법률 기준 제86조 제1호) (벌칙)

-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다. 사건개요

- 서울시, 영등포구,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에 영등포 소재 시장의 청과물 위탁상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되어 업무협의 형식으로 질의함

라. 질의요지

- 「농안법」 제65조 제2호에 도매시장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구역 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농안법」 제65조 제2호에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시장을 형성, 개설한 자에 국한되며 개설자가 없이 상인 개개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통칭 시장에서 점포와 상호를 가지고 청과물 위탁거래 행위를 하는 상인 개개인은 적용처벌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 민원인은 농림수산부에서 “도매시장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한 자를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고 회신한 내용은 무허가시장 내의 청과물상인도 처벌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상기 해석이 맞는지 여부

마. 회 답

- “농수산물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형성하여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여 상인 개개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개별점포와 상호를 가지고 청과물 위탁거래행위를 하는 상인 개개인은 적용 처벌되지 않음
- 다만 「농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거래제한고시를 한 경우에는 고시한 품목을 고시된 구역 안에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매수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농안법」 제65조 제2호에 의거 처벌함



14 도매시장 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

가. 사건번호 : 대법원 85누243, 선고, 1986.2.1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3구734 판결

나. 관련규정 : 법 제12조 제3항(현행 기준 제17조 제6항) (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56조(현행 기준 제65조)

□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⑥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5조 (시장의 개설·정비명령)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사건개요

□ 서울시가 종암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분장을 개설하고 도매법인을 지정하였는데 도매법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여 서울시가 시장불성립, 시설 부적합, 시설의 타목적 이용, 도매법인의 운영부실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정취소함. 이에 도매법인이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 권한 없이 이뤄졌고 법 제56조의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상고함

라. 쟁점 및 결론

□ 적법한 취소권자에 의한 취소였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

□ 「농안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폐쇄에도 위 법률 제56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러하지 않다고 판결



마. 논 거

- 「농안법」 제63조 제2항,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제2항제10호에 의하면 농수산 부장관은 도매법인의 지정승인취소 권한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지정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처분임
- 「농안법」 제56조에 규정된 도매시장폐쇄명령은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위 법률 제56조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15 보증채무금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05다33121, 선고, 2007. 10. 26, 판결,
서울고법 2005. 6. 9. 선고 2004나42618 판결

나. 관련규정 : 법 제32조 (매매방법)

- 제32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찰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출하자 겸 노량진 수산시장 내 소매업자가 자신이 출하하는 냉동일식재료를 자신이 경영하는 소매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냉동일식재료를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도매법인의 상장을 거쳐 정가 또는 수의매매 형식으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매수함

라. 쟁점 및 결론

- 거래가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정함
- 「농안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단속규정이라 해석
- 도매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대해 경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 거

-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매업자가 거래 때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게 각각 거래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농안법」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함
- 중도매인 계약의 내용,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 거래로 인하여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얻은 점, 노량진수산시장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도매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이 경매로 인한 채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도매인의 어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



별첨 2.

농안법 유권해석(농림수산식품부)

질의 1

- 1) 중도매인의 내부거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2) 중도매인이 동일시장내 타도매법인 소속중도매인에게 필요한 농산물의 중개를 부탁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 3)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1)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기 농안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간에 농수산물을 거래(매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매인의 내부거래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대상임
- 2)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개설자가 부류별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31조에 따라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거래)할 수 없음
- 3)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원칙)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 또는 산지공판장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반됨. 다만, 상장예외품목 중 도매인이 상장예외 품목을 타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

개설자의 지정공고일 기준시 A법인은 공고일 직전년도 공고일과 때를 맞추어 수산물과 전혀 무관한 업종으로 발기설립하고 당해연도 공고일과 같은날에 1년의 기간의 행하던 업종을 포기하고 수산물업종의 사업(위탁 등)으로 하여 공고일에 상호변경등기로 R법인으로 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자 할때 신청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법성 관련

- 1) R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 상호변경등기한 날을 기준한 대차대조표 제출 가능 여부
- 2) 업종은 별론으로 하고 공고일 기준시 직전회계연도이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출시 해당법인을 A 또는 R중 어느 법인인지와 업종에 상관없이 지정신청시 타업종 법인의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도 무관한지 여부
- 3) 지정 신청시 제출되는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지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서의 법적지위와 효력은 무엇인지
- 5) 지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서는 이 후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있다면 근거는

회신 내용

- 1) 상호변경등기를 한 경우 A법인과 R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登記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라면 동일법인으로 판단됨
- 2) 당해연도 공고일 기준 1년이 안된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는 A 법인것을 지칭하며, 신설법인이라면 농안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할 수 있음
- 3)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타업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원의 자격요건, 사업계획서, 개설자가 정하는 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정관은 상호변경시 정관의 기재사항도 변경되므로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 4, 5) 지정된 법인이 사업계획서 변경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개설자가 당해법인이 수행할 업무 등에 대해 지정조건을 부여하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지정이후 정관변경시에는 개설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있음



질의 3

농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1차 경고 처분을 내려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56조(별표3) 1. 일반기준의 “마” 를 적용하여 1차 주의처분을 내렸을 경우 2차 행정처분시 행정처분은?

※ 처분기준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업무정지 1개월)

회신 내용

- 1)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경고처분을 경감하여 주의 처분을 했을 경우에도 2차 처분은 업무정지 10일이 타당, 즉, 처분기준의 가중 또는 감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할 수 있는 것으로, 1차처분이 행하여진 것으로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2차 처분기준을 적용함이 타당

질의 4

중도매인이 6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3개월의 최저거래실적 미달과, 무실적은 각각 행정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도 중도매인의 업무가 가능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3개월 무실적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 가능, 다만, 3개월 무실적의 경우에도 1개월 무실적에 대한 1차 주의, 2개월 무실적에 대한 2차 경고의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 5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영업행위를 위해 제조업신고를 하여 하는데 센터내에 공장(제조업)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의 별표2에 따라 포장·가공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농안법 제2조에 따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을 수집·포장·가공·보관·운송·판매 및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같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산물의 가공·포장 등은 신선편의 농산물 등의 경우와 같이 단순 세척, 가공포장 등을 농수산물의 원형을 일정부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음

질의 6

- 1) 중도매인간 내부거래를 한 경우 행정처분대상자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적용 되는지 여부
- 2) 중도매인과 법인의 거래약정서상의 일부내용이 농안법규정과 업무조례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면 그 효력의 유무
- 3) 거래약정서 상의 일부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농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4) 전체 중도매인과 동일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거래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일부 중도매인에게 차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 5) 경매절차를 위반하여 차상경매한 경우의 처분 규정 유무 여부
- 6) 농안법 제74조 제1항 거래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행정 처분과 병행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 1) 농안법 제31조 제2항의 경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에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도매인간의 내부거래인 경우에는 양자가 모두 해당됨. 다만 매수한 자는 명백하게 거래위반을 입증할 수 있으나 판매자의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4)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과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개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사례가 없어 검토가 불가
- 5)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차상경매한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차상경매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6)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병과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7

도매시장안전성검사결과 조치를 다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37조의2에 의거 실시한 도매시장안전성검사결과 조치는 출하제한 조치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전성검사를 다른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면 해당법률에 따라 조치 가능



질의 8

- 1) 농안법상 단순가공물품의 정의 및 범위와 2차 가공식품의 도매시장의 취급 여부
- 2)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또는 제3자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내용

- 1) 농안법시행령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거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차 가공식품을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농수산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므로 농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경매, 입찰 포함)로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질의 9

농안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제30조 제1항의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 할 경우 해당 도매시장법인을 제31조 제1항의 규정(수탁판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위반하였다면 제82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88조 제7호에 의거 도매법인을 행정처분 또는 벌칙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31조 제1항의 수탁판매의 원칙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도록 규정,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또는 매수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에는 농안법 제86조(벌칙) 제4호에 제 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산지유통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안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신고를 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한 경우에는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농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매법인이 수탁판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 10

도매시장법인이 신용협동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경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도매시장법인 신용협동조합을 개설한 사례는?

회신 내용

농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에는 경영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 등의 경우에 농안법시행령 제 17조의6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신용조합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별도의 신용조합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은 경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신용조합에 자본 투자여부는 파악된 자료는 없음



질의 11

채소경매장내 중도매인점포 형태로 철조망으로 설치한 경우 중도매인점포에 해당되어 시설사용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중도매인의 점포형태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도매시장의 시설이 경매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중도매인점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사용료 부과는 타당하지 않음

질의 12

휴업중인 중도매인이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자가 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신 내용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8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임. 휴업중인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휴업종료 후 업무정지 처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가중사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어 가중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13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안법에 의하여 국가, 지자체 외에 개인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안법 제69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및 절차는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음

질의 14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의 농산물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하한 경우 농안법 위반 여부

회신 내용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때에는 농안법 제8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의 농산물 출하여부는 농산물의 실소유주(대금입금받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도매인이 농산물 출하대금을 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질의 15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이 수입과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거래물량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

회신 내용

농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비상장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이 상장예외품목 취급조건을 따르지 않았다면 상장품목 중도매인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질의 16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지임대료를 현물로 받아 소유한 경우 도매시장에 출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안법상 출하자의 개념 질의

회신 내용

농안법 제30조에서는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하자는 생산자(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축협 및 농안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회사법인 등)을 의미하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귀하께서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하 할 수 없으며, 산지유통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면허세가 있음



질의 17

대구시 도매시장운영조례의 벌점제도를 개정하여 별도지침을 마련할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허가취소, 재허가 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에는 벌점제도가 없으며, 다만 우리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표준(안)(’07.7) 제116조에 벌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규정표준안은 개설자의 무분별한 행정처분보다는 합리성과 객관적인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것으로 벌점등이 가중처분 등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자체적인 벌점규정을 근거로 한 누적점수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또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반될 수 있음

질의 18

도매시장내의 중도매인간 거래시 판매자 및 구매자의 행정처분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비상장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의 별표에 따라 농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중도매인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조치)후 농안법 제74조의 거래질서 유지에 따른 조치 후에 행정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조치 후 행정처분이 바람직, 또한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이 판매하는 경우 구입자가 중도매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19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의 별표3의 행정처분 기준의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에 대한 질의

- 시행규칙 제56조 별표의 개별기준 나의 7호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농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 질의

회신 내용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 순서는 1차, 2차, 3차 순으로 하며, 3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가중 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처분순서인 업무정지 6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한 후에는 허가취소 할 수 있음.

질의 20

농안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에 외의 자에는 도매시장내 직판상인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령에서 도매시장내 직판상인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외의 자에 도매시장 직판상인도 해당됨



질의 21

위탁자의 수탁물량을 도매시장 기여도(구매, 가공) 등에 따라 경매사가 상장 순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정가수의 매매의 경우)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에는 경매사가 상장한 농수산물
의 경매순의 결정,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매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가능함

(경매입찰의 경우) 수탁순위에 따라 판매하는 것이 원칙. 다만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
하는 물품은 우선 판매하게 할 수 있음

질의 22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약정 파기와 중도매업 허가취소와는 별개인지와 또한 3개월
무거래실적으로 허가취소 2일전에 개설자에게 휴업신청 가능 여부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3개월간 무실적인 경우 농안법 제8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허가취소에 해당됨. 다만,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약정 파기후
중도매업 허가취소와는 별개사항이며, 또한 3개월 무거래실적으로 허가취소 2일전에 개설
자에게 휴업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여부는 휴업신청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23

- 1) 우리 도매시장은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수산물은 출하자의 전품목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있는데, 타도매시장의 경우 출하자의 부적합 품목만을 제한(서울가락시장 등)하거나 출하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를 제한하는 도매시장도 있는데 적절한 조치 방법은?
- 2) 경매전 시료를 수거하였으나 물품이 도매시장 외부로 유통된 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도매시장에서는 이미 유통된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는?
- 3) 농안법에는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 폐기시 비용주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생산자와 출하자가 다를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 1) 농안법 제38조의2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35조의2에 규정은 안전성 검사결과 미달품이 발견될 경우 모든품목에 대해 출하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출하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출하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2) 도매시장 부적합농산물이 유통된 경우 농안법상에 규정된 것은 없음
- 3) 농안법상 부적합농산물 폐기는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질의 24

- 1)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것이 도매시장경영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2)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들로부터 소포장 작업을 위탁받아 소포장 할 경우 경영사업에 포함되는 지 여부
- 3)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물건을 법인이 사서 소포장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반 여부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업 행위에 해당되어 농안법 위반사항임(농안법 제2조 제7호 도매시장법인의 정의 위반)
- 2)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들로부터 소포장 작업을 위탁받아 소포장하는 사업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에 해당
- 3)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의 물건을 사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업 행위에 해당되어 농안법 위반사항임



질의 25

- 1) 공판장 장소 이전시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소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를 준용하여 개설자(조합장)가 목포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개설허가권자(전남도지사)에 신청하여도 되는 지의 여부
- 2)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장소 이전시 장소이전허가신청서,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의견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없음, 그러므로 공판장의 신규개설이 아닌 장소이전이므로 시장의견서 없이 직접 개설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도 법률적 위배가 안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1) 농안법 제43조에 따라 공판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과 달리 공판장의 이전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개설승인의 규정에 따라 이전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공판장의 경우 개설승인시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다만,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시임에 따라 도매시장 이전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질의 26

- 1) 도매시장법인 임직원이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김치 제조업 영업을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김치공장에서는 절임배추를 생산하여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일반판매만 하고 있음)
- 2) 2008년도 도매시장의 절임배추 취급허가 품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관계로 법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에 전담토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김치를 유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도매시장 법인의 취급품목인 절임배추를 유통시키는 것은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일반판매만 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에 해당될 수 있음



질의 27

- 1) 도매시장법인은 월별로 개설자에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월에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면적으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2)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 납부가 가능하다면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서 납부하여야 되는지?
- 3)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유없이 중도매인과 보증금 체결 등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 도매시장의 경우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전자거래 물량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개설자가 정한 요율로 총액을 산출하고 세부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으로 기준으로 산출함, 1개법인의 경우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총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징수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개이상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을 거래금액, 매장면적을 병행 부과 가능
- 2) 매장면적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로 동일부류 도매시장법인 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매장 전체면적 중 해당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율만큼 총액을 안분하여 사용료 부과 가능
- 3)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도매시장법인과 거래시 거래약정(보증금, 담보제공 등) 체결후 거래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음. 거래당사자 쌍방이 약정조건이 안맞을 경우 조건 불충족으로 약정체결이 안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매시장법인이 약정체결을 거부하지 못함



질의 28

중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 월간최저거래금액 7번이상 미달되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회신 내용

해당 중도매인이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농안법 제86조 제8호에 따라 형사고발조치하고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허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9

- 1) 중도매인이 같은 시장내 타 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중개를 부탁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 2)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3) 중도매인이 위반행위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및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회신 내용

- 1)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개설자가 부류별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 31조에 따라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할 수 없음
- 2)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 또는 산지공판장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반됨. 다만 상장예외품목으로 중도매인이 상장예외품목을 타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3)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에 따라야 하며,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사항등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반행위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시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년도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사후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2-3년 동안 농안법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질의 30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 상장된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사가 경매를 주관하면서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무자격자 즉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그 직원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을 때 위반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8조에서 경매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사의 업무는 경매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도매인이 그 직원을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농안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농수산물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담당자께서는 고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중도매인, 경매사 등에게 주의 등 행정지도 후 고의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 할 때에는 농안법 제74조 또는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행정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31

농안법상 중도매인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일시(이 경우는 무실적 연속 2개월 29일 진행중)에도 휴업처리 가능 여부

회신 내용

- 1) 중도매인의 휴업신청은 정당한 경우 휴업이 가능함. 다만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2호의 경우에 무실적 기간에 휴업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중도매인 3개월 무실적 거래에 2일이 부족한 경우에 휴업종료후 2일 이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3개월 무실적에 해당되어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



질의 32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을 '97.5.3 지자체인 목포시(출자비율 23.5%, 목포농협, 수협, 축협 각각 25.5%의 비율로 공공출자하여 자본금 5억으로 (주)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후 운영중 '02.2.25 지자체 출자지분만을 농협에 매각 하였는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어려움에 있어 당초 지자체(목포시)가 공공출자하였기에 일정부분 농, 수, 축협 출자지분 등을 인수 또는 추가 출자 등 시비지원(시설, 운영시스템, 간접시설, 도로 등 투자)시 법적인 문제 여부

회신 내용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지방도매시장이며, 개설자가 목포시임. 이에 따라 시설 개보수 등 투자부분은 목포시가 수행할 수 있음,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출자법인이 도매시장 관리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도매시장이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임.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공출자법인은 지자체, 관리공사, 농림수협등이 출자할 수 있음에 따라 목포시가 (주)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분을 인수 또는 출자하는 것에는 농안법상 제약이 없음



질의 33

중도매인이 8.11~9.10까지 무실적인 경우 30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는지, 개월을 기준으로 9.1~9.30까지만을 기준으로 1개월 무실적으로 처분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5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무실적인 경우 1차 주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1개월은 달력에 의하되(28~31) 1일부터 31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중도매인이 8.11부터 9.10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는 1개월 무실적에 해당됨. 만일 1개월이 1일부터 31까지만을 1개월로 한다면 무실적이 31~60일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도 처분에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음.

질의 34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매일 13%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중도매인으로서 법인과 아무런 약정없이 부과하는 13%의 이자는 법정한도를 넘어 부당하다고 생각됨.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합당 여부, 합당하지 않다면 농안법 및 다른법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 유무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상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동사항은 농안법이 아닌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연체료는 연30%이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미수금에 따른 연체이자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조정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질의 35

- 1)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약정서에는 “약정기간은 그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년간씩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그 후도 그와 같기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법인에서는 '08.12.31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인에 대해 약정해지 통보('08.11.24)하였음.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이 약정기간 만료전에 약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중도매인은 재약정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의 영업능력, 과거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약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 해당중도매인은 거래실적이 저조하여 '06-'08년 사이에 1개월 무실적 5회, 2개월 무실적 6회, 분기실적 미달 7회로 거래실적 행정처분 19회(경고 9회, 업무정지 10일 1회 등)를 받았고 거래금액도 크지 않아 이러한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이 재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여부
- 3) 또한 현재 농안법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약정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 대한 약정해지 행위가 정당한 지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련근거, 법 유무 여부
- 4) 만약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과의 약정을 연장하지 않았고 타도매시장법인도 해당 중도매인과 약정체결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도매인이 어느 법인과도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거래실적이 3개월 무실적이 되면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럴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리사무소가 직권으로 특정 도매시장법인에게 약정체결하게 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법인(갑), 중도매인(을)간의 약정서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에 연장한다고 명시되었으나 “갑”과 “을”의 타당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임, “갑”과 “을”의 약정에 관한 해석은 상호협의를 우선임
- 2) 재약정 불가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약정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불공정 계약여부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람



- 3) 약정해지시는 1번과 같이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임(통상, 상호 협의/관계법령/법원소송 순서) 결국, 농안법에 약정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소송으로 가서 약관심사(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타당성 검토가 있을 것임
- 4)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개설자가 허가를 해 준이상 주거래 법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도매시장개설자의 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6

시장도매인에게 시장사용료 부과시 농안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장도매인이 물품을 산지에서 매수 할 경우 매수금액과 판매금액 중 적용해야하는 거래금액 기준은?

회신 내용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농안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매시장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에 반입되기 이전 산지의 매수금액이 아니라 당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함



질의 37

위탁수수료를 최초 경매가격에서 징수하는 지 아니면 물품의 하자금액을 정산하고 출하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을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판매원표에 최종적으로 기입되는 가격에 기초하여 정하여지며, 판매원표의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당사자의 합의하에 판매원표를 정정한 후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동 사안의 경우 판매원표의 정정여부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실치 않으나 판매대금의 정산 및 위탁수수료의 부과는 최종적인 판매원표상의 가격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38

도매시장에서 중도매법인의 임원(이사)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였다면 농안법 제88조(벌칙)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인 그 중도매법인 임원 당사자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안법 제89조(양벌규정)에 의거 그 임원이 속한 중도매법인의 대표인 중도매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82조 제5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농안법 제8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89조의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별첨 3.

농안법 질의답변(서울시)

※ 동 자료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도매시장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회신한 내용임

1. 중도매인 경영관련 법률자문

□ 자문일시 : 2004. 6. 21

□ 사실관계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은 경매동과 시장도매인동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동은 2004.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위동의 입주자대표들이 3개의 청소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청소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바, 위 3개 업체 중 1개의 청소업체 대표가 강서시장의 중도매인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중도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 대표이사가 강서시장내 청소업체로 선정될시 중도매인이 청소업무와 겸업시 농안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질의

□ 법률자문 결과

□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중도매인의 경우 경영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소 업체의 선정이라는 판매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아니한 업무를 겸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농안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됨.

2.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신청 후 개인 중도매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중도매업 허가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 허가의 유효성 유무

□ 법률 자문 일시 : 2003. 8. 21(목)



□ 사실관계

- 중도매업 법인전환 허가 신청 : 2002. 8월 초
- 법인전환 허가 요청(공사 → 시장) : 2002. 10. 2
- 대표이사 손채화 사망 : 2002. 10. 7
- 서울시 중도매법인 허가일 : 2002. 10. 11

□ 법률 자문 내용

질의 1

상기 사실 관계와 같이 개인 중도매인이 중도매업 법인전환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중도매법인에 대한 허가가 유효한지 여부

답변 1

종전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의 주체는 당해 법인이고 피허가 대상 또한 당해 법인인 것이 명백한 것인 바, 설령 법인 구성원 일부가 사망, 자격 상실 등 적법한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존립 및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짐. 농안법제25조제3항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농안법 제25조 제3항 :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질의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시행규칙」 제20조(허가절차) 제1항을 보면

농수산물공사사장이 공개모집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상기 사안의 경우 당초 중도매업 법인전환 허가 신청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사 사장은 중도매인으로 적격하다 판단하였으나, 신청 후 허가 전에 중도매법인 허가에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결국 상기의 중도매법인 허가는 부적격자에게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2

중도매업 법인전환 허가는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적격 여부판단 또한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사망이 당해 법인의 중도매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공사의 “중도매법인관리운영지침”은 시장의 영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정한 업무처리 기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 지침의 위배를 들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행위를 무효화할 수 없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지정조건과 관련한 문제

가. 시장도매인 주주의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행위(지정조건 제7호)와 관련하여

지정조건 위반이 있게 되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82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3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처분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도매인은 해당 원인 발생 책임 임원을 해임하여야 하고(농안법 제36조 제2항,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행정처분(경고, 지정취소)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3).

이렇게 지정조건 위반과 관련하여 시장도매인 해당 임원을 해임하게 되면 그 임원이던 시장도매인 주주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귀 공사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의 현실상 법인 임원의 해임이 있게 되면 이에 의하여 법인 주주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견서에서는 시장도매인 임원 해임시 이로 인한 시장도매인 주주 변동은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지정조건 제8호 위반이 되어 농안법 제 82조 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즉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원 해임 요구와 이로 인한 주주변동으로 인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시 행정처분을 가하여야 하는지 문제).



나. 시장도매인 일부 주주가 스스로 주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시장도매인 일부 주주의 주주 포기 . 주주 포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본건에서의 그 의미는 해당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주주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주 변동이 있게 되면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농안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 질의의 요지

귀 공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전제 아래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장도매인 주주 변동이 있으면 이는 지정조건 제8호 위반에 해당하는데 조건 위반(특히 본 건의 경우에서처럼 임원해임에 의한 주주변동, 주주포기로 인한 주주변동)로 인하여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 귀 공사는 “지정조건에 따라 행정조치를 이행할 때 상위법인 농안법과의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적용 우선 순위 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질의 취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위반으로 시장도매인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또 이로 인한 주주변동을 원인으로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본 건의 사유(임원 해임, 주주포기)로 인하여 주주변동이 일어날 경우에도 지정조건 및 농안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이어서, 본 의견서에서는 따로 질의를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라.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1)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

□ 농안법 및 지정조건의 내용

지정조건 제8호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은 정관 내용에 따라 주주변동을 할 수 없고, 시장도매인 정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주를 변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에게 특별한 경우 아닌 주주변동이 있게 되면 이는 지정조건 위반에 해당되어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안법 제82조 제2항).



그러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주주포기로 인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일부 주주가 스스로 주주권을 포기할 경우가 지정조건에서 적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가 지정조건에서 적시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조건 제8호에서는 특별한 경우의 예로 ‘사망, 장기입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사망, 장기입원 등은 해당 주주가 자신의 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때로써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주도 어쩔 수 없이 주주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에서처럼 주주가 스스로 주주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정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건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가 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자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지정하여 이를 근거로 시장도매인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가함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주 개인에 대하여는 그의 자유 및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우리 헌법 제10조(인권의 보장) 및 제23조(재산권의 보장)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 자신 소유 재산권 처분에 자유를 가지며, 우리 상법 규정(제335조, 제341조 등)에 의하면 특별히 정관 규정으로 주식 양도시 이사회승인을 거치게 하는 경우나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 소유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관으로 주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태로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6판, 348쪽)



그러므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우리 헌법 및 상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주주로서의 주주 지위 이전 금지라는 내용을 시장도매인 지정조건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가함은, 위 지정조건 설정이 우리 헌법 및 행정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결부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제적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공원에 미화사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호텔건축의 허가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자체가 위헌·위법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례원칙 위반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로 인하여 시장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됨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시장도매인에게는 전혀 책임 없는 사유(예를 들어, 시장도매인 주주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농안법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가함은, 즉 시장도매인 주주의 일방적인 주식양도로 인한 해당 지정조건 위반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이를 막을 수도 없었던 시장도매인에게 도매시장 개설자가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해당되어 우리 헌법 및 행정법의 원칙인 「비례원칙」. 비례원칙이란, 행정작용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침해적이어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 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도매인 법인의 일부 주주의 주주포기가 있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하여 나머지 시장도매인에게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함은 우리 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결부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농안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여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유재량이며, 동법시행령 별표3(1. 일반기준 마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반사항의 내용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 주주가 스스로 주주포기를 하더라도 그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법령에 반드시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시장도매인 일부 주주의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

□ 시장도매인 주주의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건 지정의타당성 여부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농안법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농안법 제2조 제8호), 도매시장에서의 농수산물 영업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가진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지정조건 제7호)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라는 농안법 취지상 양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 헌법상 보장된 영업자유 원칙(제15조)에 비추어 시장도매인 주주에 대하여서까지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강서시장 개설 당시 상황 및 시장도매인 주주의 영등포시장 영업 허가시 시장도매인 아닌 다른 상인의 상대적 불이익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도매인이 책임질 수 없는 주주의 일방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시장도매인이 지정취소등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례원칙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시장도매인 주주가 영등포시장에서까지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영등포시장 내의 다른 영세상인들의 영업권 침해라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시장도매인 주주의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 제한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합당한 재량판단으로 보고 아래의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조건 제7호 위반으로 인한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장도매인이 지정조건 제7호를 위반하게 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안법 제82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경고, 업무정지3월, 지정취소 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안법 제3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도매인은 위 처분의 이유가 된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에게 임원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도매인이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게 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에게 경고, 지정취소 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별표3).

□ 임원해임으로 인한 주주변동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농안법 제3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도매인이 해당 임원을 해임하게 되면 그 임원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시장도매인 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도매인 주주의 변동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조건 제8호 위반을 이유로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본 건 임원해임으로 인한 주주변동은 지정조건 제8호의 “특별한 경우에 의한 주주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특별한 경우”라 함은 해당 주주가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때라고 할 때, 본 건 주주변동은 해당 주주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주권 행사 곤란이므로 지정조건 적시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중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조건 제7호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임원이 해임되고 시장도매인이 농안법 제82조 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시 주주변동을 이유로 하여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소 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도매인 주주가 영등포시장에서 영업을 하여 지정조건 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여야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시장도매인에게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의 해임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지정조건이 강서시장 개설 당시의 상황과 다른 영등포시장 내의 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 해임으로 인한 시장도매인 주주변동은 지정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러한 때에는 주주변동을 이유로 재차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4. 7. 12. -

4. 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기준

□ 사실관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서울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각 규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 공사는 중도매인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중도매인의 대금결제 능력의 미비 등을 우려하여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체납 여부 등)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 공사는 ①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고자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행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② 실질적 심사기준을 지침으로 제정할 경우 어떠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

□ 법률자문 결과

- 상기 허가는 법률적 성질이 ‘특허’로 판단되며, 공사 내지 서울특별시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중도매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일정요건을 자격을 추가로 심사하여(실질적 심사)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만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판단함



- 지침 제정과 관련 허가신청 공고 시 허가신청 외 실질적 심사를 위한 취지, 관련 서류 제출(과거_년간 신용불량자가 아님 등)과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공고하여야 함.

5.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위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의 요지 및 답변]

(질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반입 즉시 시장이 지정하는 반입신고소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였을 경우 불법 개인위탁행위(농안법 제31조 제2항)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질서위반행위(농안법 제74조)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농안법 제3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품목을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허가이므로, 그 기간 내에 허가된 품목을 거래하면서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래수량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에서는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에게 반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상장예외품목 허가조건 이행각서에도 반입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바, 반입신고의무의 이행은 중도매인의 준수사항일 뿐만 아니라 허가의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개설자(가락농수산물시장의 경우 서울시장)가 정한 규정이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의제할 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반입신고의무 불이행의 경우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입신고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농안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3.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반입신고의무의 이행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이는바, 반입신고의무의 위반이 지속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면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중도매인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관련

□ 사실관계

- 중도매인 A는 2004. 9경부터 2004. 10경까지 거래실적이 없어, 공사에서는 A(점포폐쇄로 인한 점포 내 부재)를 만날 수 없는 사정으로 2004. 11. 26 전화로서 A에게 2개월 무실적거래 사실과 이로 인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통보하였는바
- 중도매인 A는 2004. 11경에도 거래실적이 없어 “3개월 무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임으로 공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제82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중도매인 허가취소를 요청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장은 중도매인 A에 대하여 거래실적이 없음으로 주의 및 경고 처분할 때 A에게 주의장 및 경고장을 발송하지 못하고 전화로서 위 행정처분 내용 및 허가취소 가능성을 통보한 사정이 있는바, 현재 ADP 대한 3개월 무실적거래를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법률자문 결과

- 중도매인 ADP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농안법상 중도매인의 3개월 무실적거래를 요건으로 하고 A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와는 그 직접적인 법률적 관계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에서 A에게 위 주의나 경고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3개월 무실적거



래를 이유로 한 ADP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다만, 증도매인 A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문서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으로 판단함

7.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안 도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귀 공사는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법인을 통하여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금 증액(50~80억원)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성 자산 보유(현금 배당 제한)

귀 공사는 위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안 도입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1)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위 경영표준안 준수를 명할 수 있는지, (2) 위 경영표준안 준수를 도매시장 법인 지정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3) 위 경영표준안 내용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합니다), 그 하위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질의의 요지 및 답변]

- 도매시장법인들에게 경영표준안 준수를 명할 수 있는지

□ 관련 규정

농안법 제 81조(명령)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 질서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구체적 검토

위 조항에 의하면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장에게 업무처리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서울시장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업무처리의 개선”에는 출하자인 농어민의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가락농수산물시장의 거래 활성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농어민 보호, 거래 활성화 및 합리화를 위한 경영표준안의 도입도 “업무처리 개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할 경우 도매시장법인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반발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고지를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경영표준안 준수를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관련규정

농안법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농안법시행규칙 제16조 【업무규정】 ① 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정조건)

서울특별시장이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지정조건 부가에 대한 일반론

위 각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도매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영표준안의 내용이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경영표준안의 내용을 지정조건으로 부가하여도 무방합니다.

□ 경영표준안을 지정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귀 공사의 경영표준안은 10가지가 넘는 새로운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을 지정조건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정조건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전항에서 언급한 명령 등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귀 공사가 주로 언급한 3가지 사항을 지정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본금을 매출액에 따라 50~8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영표준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규모는 위 조례 시행규칙 제 5조에서 정한 지정조건에 해당하므로, 위 자본금 규모 유지를 지정조건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위 조례 시행규칙 제 8조 제1항 [별표2]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자본금을 50억원, 수산 및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기존 도매시장법인들은 10년 이상 위 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 조항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많은 최소 자본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침해하거나 경영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귀 공사는 수산 및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50억원 미만의 최소자본금을 적용할 수도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경영표준안이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은 더욱더 낮다 할 것입니다)



둘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영표준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의 자격은 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지정조건에 해당하므로, 임원 중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사외이사제도는 상법에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상법 제38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험업법(제15조)등 다수의 법률에서는 강제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을 투명화하여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거래의 활성화 및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외이사제도를 지정조건으로 포함시켜 이를 강제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 보유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경영표준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한 기존의 제도로는 거래보증금제도가 있고, 거래보증금은 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거래보증금은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바, 최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 부도시에 미지급 출하대금이 거래보증금의 20배 정도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출하대금 담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① 거래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채택하거나 ② 현금 보유액 유지를 채택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만 현금으로 보유하게 하고 기존의 거래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현금 보유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그 금액이 클 경우 경영권이나 재산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를 강제하는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거래보증금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 경영표준안 내용을 농안법, 그 하위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위와 같은 경영표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을 제약하는 면이 있으므로,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지정조건에 포함)으로만 규율하기보다는 농안법 시행규칙 또는 서울시 조례나 그 시



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농안법에 위 경영표준안의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기존 농안법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부적절하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쉽게 개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도 않다고 사료됩니다.

8. 시장도매인의 과세 문제와 관련

□ 질의사항

귀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고 합니다)상의 시장도매인의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 (1) 농안법상의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위탁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바, 농안법상의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도 위탁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되는지 여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정 되어야 하는지.
- (2) 농안법상의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 례가 적용되고 있는바, 농안법상의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 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위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 어야 하는지.

□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 면제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합니다) 제 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0호,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 항, 별표 10의 제20호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에 관하여는 면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시장도매인의 위탁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도매인도 위탁판매에 위탁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 행령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20호가 “농수산물유



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특례 문제

중도매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869호) 제19조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4조에 의하여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의 특례규정의 내용은 소득세법상의 특례규정과 동일합니다. 시장도매인의 경우 법인이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관하여만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은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을 이로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20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위 가산세 적용 제외법인으로 하고 있고,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4조에서 중도매인에 대하여 위 가산세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중도매인에 대한 위 가산세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도매인에 대하여서 중도매인에 대한 위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은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4조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의견들을 드리오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 판단 및 처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에 또는 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 사무소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첨 4.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212호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부고시 제2009-137호, 2009. 8.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① 법 제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를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①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설자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요청 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정한다.

④ 개설자로부터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승인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거래 관련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거래 운영방식】 ①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매매체결을 주관한다.

③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① 전자거래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전자거래에 대하여 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전자문서의 관리】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기록을 3년 이상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내역을 다른 매매방법(경매, 입찰, 일반적 정가·수의매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자거래 내역을 월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토록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전자거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를 위한 유통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운영실적을 집계하여 반영하거나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보호】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인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 조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및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는 해당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1. 출하자가 송품장을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구매요청서를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 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거래예약 등 특약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어겼을 경우

② 거래관계자 간 이해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하여 해결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 【약정서 운영】 도매시장법인인 전자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거래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거래시간 준수 의무, 물품의 인수도 의무 등 전자거래에 따른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약정서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별첨 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고시)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제2012-211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농림부고시 제2009-64호, 2009.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8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별첨 6.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서(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8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 별첨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아래 목적물을 포전매매 함에 있어 매도인(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갑)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매수인(을)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소재지 :			
품목 :	품종 :	계약면적 :	m ² (평)
파종일(또는 정식일) :	20 . . .		
총 매매대금 :	원		
계약일 :			
계약금 :	원	계약금지급일 :	
(중도금) :	원	(중도금지급일) :	
잔금 :	원	잔금지급일 :	
반출일 :			
갑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긴급연락처 :			
을의 연락처(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긴급연락처 :			
특약사항			

<주의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표시 하거나, ‘농림수산물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표시’를 사용하는 매수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조 【매매대금】 ① 총 매매대금은 위 금액이며, 잔금지급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농작물의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잔금지급기일은 위 기재일이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을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당해농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에서 정한 매매단위별 단가로서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2조 【계약금】 ① 포전매매는 선도거래의 성격으로서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30% 이상 지급되어야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형평에 맞으며 이 건 계약금은 위 기재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금이 지급된 이 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물의 확인】 ① 을이 포전매매목적물의 현황확인을 위하여 갑에게 위 목적물표시상 소재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제출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상의 명의인과 갑이 다를 경우에 그 사유를 을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직접 목적물에 대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본인이 알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농작물의 종자에 대한 정보, 위해조수출물, 농지가 맹지역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여부,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작여부 등)를 계약 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측량기를 이용해서 재배면적을 측량할 수 있다.

제4조 【목적물의 인도, 거래표지판 설치】 ① 갑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

② 갑의 인도로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며, 목적물이 을에게 인도되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실부담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팻말을 부착하는 등의 거래내용표지판을 설치하며, 그 실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하기로 한다.



③ 거래표지판에는 계약당사자의 성명, 품목, 계약면적, 계약체결일 및 반출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제5조 【목적물의 관리】 ① 갑은 약정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이 목적물을 관리하는 내용은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으로 통상적으로 당해 목적물에 대해 시행하는 정도의 관리를 그 범위로 한다.

③ 갑이 실시하는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넘어서 실시하도록 을이 요청한 경우에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을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제6조 【목적물의 반출】 ① 예상하지 못한 기상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성장이 늦어진 경우에 을의 목적물반출은 후작의 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하에 반출일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목적물의 수확·반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목적물반출일 이전에 을이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연장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갑은 1회 당 10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같음하여 제11조(통지방법)의 통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반출일 연장으로 인하여 갑에게 관리비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 연장된 반출일이 지나도록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잔존목적물은 갑이 임의로 처리한다.

제7조 【위험부담】 ①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이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충해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결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수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갑의 잔금 수령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 제2항의 경우에 위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사전 미고지로 조수피해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④ 목적물의 가격 폭락 및 폭등은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대금감액 내지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제8조 【담보책임】 계약체결 후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제9조 【계약해제】 ①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독촉)를 하지 않고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단 매수인에게 유책사유 없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제할 수 있다.

② 갑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이행거절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때(이중매매 등)
2. 갑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통지하여 을의 판단이 필요할 때 이를 게을리 하여 을에게 큰 손해를 야기케 한 경우

③ 을에게 책임 있는 계약해제 사유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관계해소 후 갑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은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로 한다.

제10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하지 아니할 때 그 기간 즉 반출약정일 후 10일이 지난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위약금,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을이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반출연장기간은 최초에 정한 반출약정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반출기간연장도 2회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11조(통지방법)의 통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반출지연에 따른 손해는 별도의 위약금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통지방법】 ① 목적물의 관리 과정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 상호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이 연락처에 2일(48시간) 내에 3회(1일 2회 이내)이상 연락하였음에도 연락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당사자 쌍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전항의 연락에 대한 수단으로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가 휴대폰문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④ 통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는 이 계약내용을 준수하는 한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제12조 【위약금】 ① 제9조(계약해제)에서 규정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으로 한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으로 한다.

②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이 계약서 전면 개별약정 기재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제1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의 표시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7.

포전매매 서면계약 대상품목(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8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 양배추 · 양파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8.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6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대비 20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2. 해당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9.

시장도매인 운영지침(2000. 10.)

본 지침은 시장도매인제 제정 당시 지침으로 향후 개정될 예정입니다.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 요약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경위

- 국민의 정부출범후 농산물유통개혁을 위하여 「농산물유통개혁대책위」를 구성, 유통개혁 과제를 논의('98. 3~'99. 6)
 - * 직거래의 제도화, 공영도매시장개혁, 산지유통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물류 및 정보체계개선, 수급안정 등 과제 논의
 - 건의된 개혁대책을 바탕으로 '98. 7. 23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보고
- 입법과정에서도 도매시장 개혁과제로 선정된 도매상제(법률용어 :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농안법 개정안 마련
 - 도매상제의 도입범위(중앙·지방), 영업범위(매수·수탁 등) 등에 대하여 논의
- '98. 12. 2에 국회에 농안법 개정안 제출, '99. 12. 16에 개정안 의결
 - * 주요내용 : 시장도매인제도입, 표준하역비 등 도매시장개혁대책과 유통명령, 자조금 등 수급안정제도 도입
- 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2000. 6에 완료되고,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적정수 등 도입방침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실시
 - * 2000. 4. 1~6. 30, 한국유통학회 오 세조 교수팀
-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을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에서 심의 : 2000. 9. 29



1. 목적 및 기본방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근거 마련

□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을 작성, 시도에 통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보완 및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보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 검토

□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 제도의 선택은 시장별 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 할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에 대해 충분한 분석 필요(연구용역 등)

□ 도매시장의 여건에 맞는 도입유형, 자본금 규모, 적정 수 등을 결정

□ 아울러 출하자의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설자가 결정(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

□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적정자본금 및 적정수 결정

□ 시장규모별 적정자본금 규모와 적정 수의 범위

□ 도매시장을 거래액과 물량을 기준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시장으로 구분, 시장규모별 유형에 따른 자본금 규모와 적정수 제시

- 대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1,500억원 이상(물량기준 20만톤 이상)

- 중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750~1,500억원 미만(물량기준 10만톤 ~20만톤)

- 소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750억원 미만(물량기준 10만톤 미만)

※ 가락시장은 초 대규모시장으로서 거래규모에서 다른 시장과 차이가 커 별도 검토 필요



□ 시장도매인의 적정자본금 규모 및 적정 수의 범위

- 각 도매시장개설자는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취급 금액 및 물량을 감안하여 결정

구 분	연구용역결과		기 준 안		비 고
	적정자본금	적정수	적정자본금	적정수	
대규모시장	15억원 이상	15-20개	10억원 이상	40개 이하	
중규모시장	10억원 이상	10-15개	7억원 이상	20개 이하	
소규모시장	5억원 이상	3-10개	5억원 이상	15개 이하	

※ 개설자가 출하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예 : 일정수준 이상의 출하대금 지급보장 보험 가입, 재무관리를 통한 경영상태의 주기적 공시 등)를 갖춘 경우 부류별 특성,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자본금과 수의 20%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 가능. 다만 적정수의 경우 시장별(부류별) 최소수는 3개 이상으로 운영

3. 대금정산창구 및 운영방안 결정

□ 정산창구의 유형 및 운영방안은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감안 결정

□ 정산 창구의 유형 결정

-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대체로 무난하나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다만 관리공사체제의 도매시장은 정산창구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안전장치

- 정산회사 : 적정자본금, 운전자금,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 정산조합 등 : 대금결제 전용계좌 최소잔고, 보증금 및 연대보증인 확보,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4. 향후 추진계획

□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 시도 통보 및 자체설명회 개최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실시



목 차

I. 추진경과	290
II. 목적 및 기본방향	291
III. 시장도매인제 개요	292
1. 시장도매인의 정의	292
2. 도입시기	292
3. 지정	293
4. 영업	294
5.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295
IV.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운영	296
1.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 결정	296
2. 시장도매인제 도입유형 결정	296
3. 시장도매인 적정자본금 및 적정수 결정	297
4. 대금정산창구 및 운영방안 결정	299
V. 향후 추진계획	302
<참 고>	
일본도매시장의 정산제도	303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

1. 추진경과

- 그동안 추진한 유통개선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외 유통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위해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설치·운영 : '98. 3
 - 종합적 농산물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 농안법개정을 추진
- 농안법개정안 입법예고 : '98. 10. 7
- 농안법개정안 국회제출 : '98. 12. 2
-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99. 12. 16
- 개정 농안법 공포 : 2000. 1. 28(법률제6223호, 2000. 6. 1 시행)
- 농안법 시행령 공포 : 2000. 6. 7(대통령령 제16834호)
- 농안법 시행규칙 공포 : 2000. 6. 23(농림부령 제1366호)
-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 시도 통보 : 2000. 6. 27
- 시장도매인제 운영방안 연구 : 2000. 4. 1~2000. 6. 30
-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안)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심의 : 2000. 9. 29



II. 목적 및 기본방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근거 마련

-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을 작성, 시도에 통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보완 및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보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

- 운영중인 시장 : 형식·이중경매, 거래부진 등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및 신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종합 검토(소비지 도매시장의 수산부류는 적극 검토)
- 건설중인 시장 : 신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주변 도매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 검토
 - ※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 제도의 선택은 시장별 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 할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에 대해 충분한 분석 필요(연구 용역 등)

□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검토 시에는 당해 도매시장의 여건에 맞는 도입유형, 적정자본금 규모, 적정 수 등을 결정

□ 아울러 출하자의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설자가 결정(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

-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개설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을 활용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 종합검토

- 도입여부 및 유형 결정
- 적정자본금 및 적정수 결정
- 정산창구의 형식과 운영 및 관리방법 결정
- 제도도입 및 운영



Ⅲ. 시장도매인제 개요

1. 시장도매인의 정의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 통상 “도매상” 이라고 하나 기존도매상과 자격, 정산방법, 영업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용어로 “시장도매인”이라고 함

Ⅱ 시장도매인과 일반위탁상 Ⅱ

	시장도매인	일반 위탁상(도매상)
운영주체의 법인격	법 인	대부분 개인 위탁상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규모 등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정산의무	정산제도 이용 의무화	없 음
지정기간	3~10년 사이에서 개설자가 지정	없 음
영업활동 규제	정당한 이유없는 수탁거부 금지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수탁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없 음

2. 도입시기

- 지방도매시장
 - 농안법 시행일인 2000. 6. 1부터 도입 가능
 -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 중앙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
 -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3. 지 정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등)로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
 - 정 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 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업자금(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업무규정에서는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규정
-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운전자금,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함
 - 적정수는 개설자가 부류별로 상한수를 정함
 - 임원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배제요건외에 지정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임원의 요건
 -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임원중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최저거래금액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보증금의 규모 및 납부방법 등은 개설자가 정함
 - 보증금의 규모는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개설자가 정하되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함
- 운전자금의 규모는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개설자가 정함

4. 영 업

-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
 -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출하자가 제시한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
 - ※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함
-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함
-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다음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함
 -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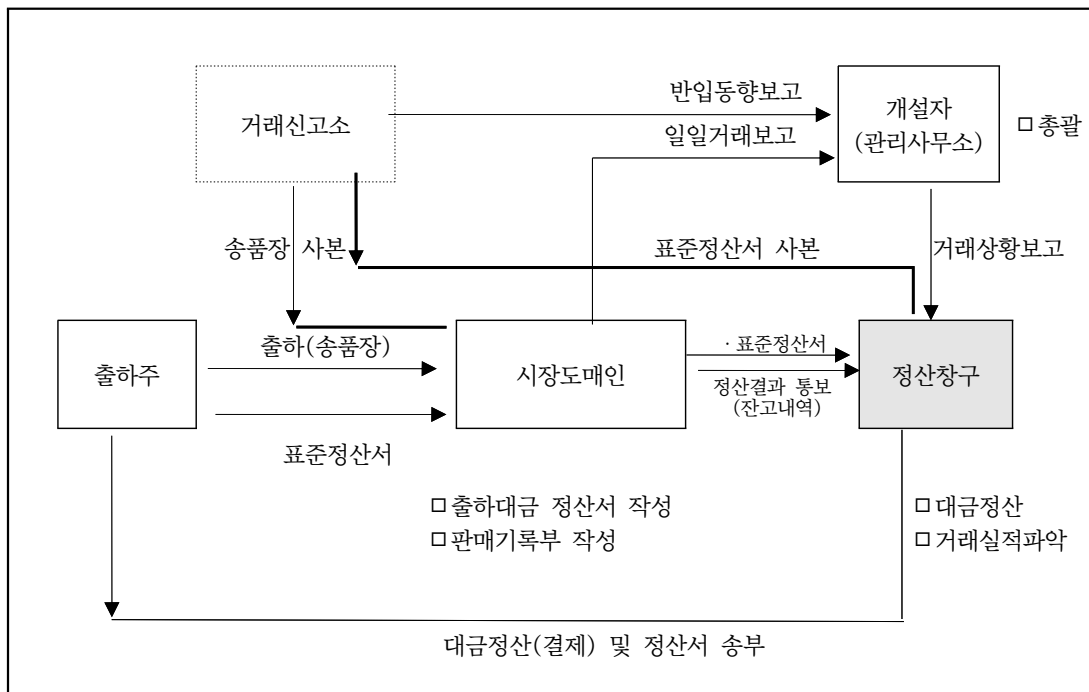
5.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시장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

□ 대금결제의 기본절차

-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 신고소에 제출
-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결제 의뢰
- 정산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거래체계도 ┆



※ 결제기간 : 1~3일

□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IV.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운영

1.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 결정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도매시장에서 도입하는 경우와, 신설 도매시장에서 도입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사항
 - 공통적으로 검토할 사항
 - 신유통업체와의 경쟁 등 장래 도매시장의 발전방향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Infra의 구비여부
 - 기존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경매제 운영성과 분석, 기존시설의 전환 가능성,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능력, 도매시장 개장년도 및 시장관계자들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요구 정도와 공감대 등을 검토
 - 신설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능력있는 신규도매시장법인 존재여부, 건설중인 도매시장 시설구조, 시장도매인제 선호도 등을 검토
-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 결정
 - 기존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제도의 성과 정도가 낮고,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약할수록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필요성 증대
 - 시장관계자들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요구와 공감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용이
 - 신규 시장일 경우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외부에서 능력있는 도매시장법인 모집이 어렵고, 시장도매인제 선호도가 높을 경우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필요성 증대

2. 시장도매인제 도입유형 결정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도입유형에는 시장도매인만을 두는 경우와,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을 함께 두는 경우의 2가지 형태가 있음
-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 상호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형 결정이 바람직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시장도매인만 두는 형태가 바람직
 - 양 형태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양 형태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만약, 기존 시설이 충분하고 쌍방간 갈등의 여지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경우, 같은 시장 내에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을 함께 둘 수도 있음
 - 이럴 경우에도, 시설등을 구분하여 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부류가 다른 경우에는 부류간 갈등요인이 없으므로 2가지 형태의 제도 도입 가능
 - 예 : 청과부류는 도매시장법인, 수산부류는 시장도매인
- 소규모 시장의 경우에는, 비용 발생 등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하나의 시장에 두 유형의 병행도입보다는 단일유형 도입이 바람직.

3. 시장도매인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결정

□ 시장도매인의 적정 자본금 규모 및 적정 수 결정시 기본방향

□ 적정자본금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는 영업 범위가 도매시장법인보다 넓어짐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보다 크고, 경쟁유통업체들과 유사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
- 단기적으로는 희망 중도매인의 흡수 등 현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별로 조정

□ 적정수

- 중장기적으로 시장도매인의 수는 부류별로 소수정예화 하여 효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단기적으로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자본금 규모와 경상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 규모에 따라 적정 수를 지정

□ 적정자본금과 적정 수의 관계 및 운영방향

- 시장도매인의 적정자본금과 적정 수는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출하자 보호 등을 위해 적정자본금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모 이상을 최소한 유지하고, 적정 수의 경우 시장별(부류별)로 최소수는 3개 이상 운영하되, 가급적 동지침에서 제시된 적정수 범위 내에서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농안법상 도매시장의 주고객인 출하자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도매인제도 운영
 - 자본금의 규모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안전성 측면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유지
 - 보증금의 규모는 시장도매인의 일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함



※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가입 권장 및 지정시 우대

- 시장도매인의 운전자금 규모와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정하여 경쟁력 제고
- 시장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해서만 대금결제 가능

□ 시장도매인의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한 시장도매인을 육성하고,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 지정과 통합을 통하여 적정 수를 관리

□ 시장규모별 적정자본금 규모와 적정 수의 범위

□ 연평균 거래액과 물량을 기준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 규모별 유형에 따른 자본금 규모와 적정수 범위 제시

- 연구용역시 검토 방법 참고
 - 적정자본금 : 적정 운전자금 및 부채 비율법, 경쟁업체 비교법, 도매시장 법인 비교법 등
 - 적정수 = 시장의 연간 거래액 / 1개 시장도매인의 연간 적정 거래금액

□ 규모별 시장분류

- 대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1,500억원 이상(물량기준 20만톤 이상)
- 중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750~1,500억원 미만(물량기준 10만톤 ~20만톤)
- 소규모시장 : 연평균 거래액 750억원 미만(물량기준 10만톤 미만)

□ 시장도매인의 적정자본금 규모 및 적정 수의 범위

- 각 도매시장개설자는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취급 금액 및 물량을 감안하여 결정

▮ 적정 자본금 및 적정수 기준안 ▮

구 분	적정자본금	적정수	비 고
대규모시장	10억원 이상	40개 이하	가락시장은 거래규모에서 다른 시장과 차이가 너무 커 별도 검토 필요
중규모시장	7억원 이상	20개 이하	
소규모시장	5억원 이상	15개 이하	

※ 개설자가 출하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예 : 일정 수준 이상의 출하대금 지급보장 보험 가입, 재무관리를 통한 경영상태의 주기적 공시 등)를 갖춘 경우 부류별 특성,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자본금과 수의 20%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 가능. 다만 적정수의 경우 시장별(부류별) 최소수는 3개 이상으로 운영



4. 대금정산창구 및 운영방안 결정

□ 정산창구의 유형

- 정산창구의 유형은 크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정산회사방식, 대금결제전용계좌관리방식, 개인지불방식등이 있으며,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방식은 관리주체에 따라 정산조합방식, 금융기관 이용방식, 개설자 관리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정산창구는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 상기의 유형중에서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공사) 관리방식 등을 검토

Ⅰ 정산 방식의 비교 Ⅰ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관리
인 격	법인(회사)	조합 또는 법인	금융기관 (법인)	-
구 성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 매매참가인 등	시장도매인 또는 별도법인	농·수협 등 금융기관	개설자(관리 사무소, 관리공사)
목 적	대금결제	대금결제	대금결제	대금결제
임 무	정산	정산관리(시장도매인 결제계좌 관리)	정산관리	정산관리
대금결제 안전장치	- 정산회사 자본금, 운전자금, 보증금 - 시장도매인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 보험제도를 통한 보완장치 강구	-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 시장도매인 결제전 용 계좌 최소잔고 * 보험제도를 통한 보완장치강구	-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 시장도매인 결제전 용계좌 최소잔고 * 보험제도를 통한 보완장치 강구	-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 시장도매인 결제 전용계좌 최소 잔고 * 보험제도를 통한 보완장치강구



□ 정산창구의 기본 개념

□ 정산창구의 개념

- 농안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의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 정산창구 방식별 개념

〈정산회사방식〉

-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
- 출하자는 시장관계자(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등)로 하는 방식

〈정산조합방식〉

-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와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직접 지는 방식임

〈금융기관(농·수협 등)이용 방식〉

- 개설자가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별도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개설자 관리방식〉

-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정산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공사 체제에 적합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금융기관 이용방식과 유사하나 두가지제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 정산창구 유형 결정

□ 정산창구 유형결정 기본방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산의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가장 용이한 정산창구 유형 결정
- 1개 도매시장에는 하나의 정산창구를 운영하되 정산창구 자체의 안전성 확보 필요
- ※ 시장도매인을 위한 정산창구가 운영되면,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업무도 정산창구를 이용하는 방안 검토

□ 정산 창구의 유형 결정

-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대체로 무난하나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다만 관리공사체제의 도매시장은 정산창구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안 병행 검토

□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

□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개설자가 정하되 다음사항에 중점

- 정산창구 유형별 설립 방법 및 절차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 안전장치
- 정산창구의 업무 영역
 - 시장도매인과 정산창구와의 관계 설정
 - 정산창구와 개설자와의 관계 설정
 - 정산창구의 운영 등 경영안정 방안

□ 정산창구 유형별 정산안전장치

□ 정산회사

- 적정자본금 = 운전자금 × 100 / (100 + 150)
 - 여기서 100은 자본금 비율, 150은 적정부채 비율
 - 운전자금 = 1일 평균거래액 × 판매대금 미결제 기간일(8일)로 산출 할 수 있음.
 - 1일 평균거래액 = 연간거래액 ÷ (365 - 52일)
여기서 52일은 휴일 날짜임
-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 ※ 1일 평균 거래액이 약 9억원일 경우 약 29억원의 자본금 소요



□ 정산조합, 금융기관이용, 개설자관리

-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 최소잔고 (최소 1천만원 이상) = 시장의 1일 평균 거래액 × 2일 ÷ 시장도매인수
- 보증금 :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0% 이상으로 하되 최저는 2천만원 이상
- 연대보증인 2명 확보 및 각서 징수
-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등

V. 향후 추진계획

□ 시장도매인제 운영지침 시도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시도에서는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내외의 관련상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 실시
- 상장예외품목을 지정 운영하는 개설자는 정산창구를 2001년 말까지 설치



일본도매시장의 정산제도

1. 정산제도의 법적 근거

- 일본의 도매시장법에서는 도매업무에 관계되는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을 업무규정에 정하도록 규정

2. 정산제도

가. 대금결제방식

□ 개인지불방식

- 도매법인과 매수인(중도매업자 및 매매참가자를 총칭함)이 개별로 거래계약을 맺고, 도매법인의 창구 또는 도매법인이 설치한 대금수납소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 대금결제에 따르는 리스크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방식

□ 조합대불방식

- 도매법인과 매수인이 소속하는 매수인조합이 거래협약을 맺고, 조합이 매수인의 도매법인에게 대금지불의 대행책임을 가지고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며,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보증인을 두고 매수인의 지불보증을 행하는 방식
- 대금결제에 따르는 리스크는 대불조합이 지는 방식

□ 정산회사 방식

- 도매법인과 매수인의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자 기관으로서 정산업무를 행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고, 정산회사에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며, 출자자로서는 시장관계자(도매법인, 매수인 및 그소속조합, 개설자, 금융기관, 기타)가 관여하며 운영하는 제3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
- 대금결제에 따르는 리스크는 계약에 의해 정산회사, 매수인 또는 매수인단체, 도매법인이 각각 가지는 경우가 있는 방식



※ 정산회사의 출자자별 자본금 구성

구 분	도매법인	중도매업자	매매참가자	개 설 자	은행 등 금융기관
구성비(%)	47	20	14	15	4

나. 대금결제방식별 장·단점

	장 점	단 점
개인지불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결제수행을 위한 별도조직 설치 필요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법인의 결제대금 회수일시 파악 곤란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 곤란 □ 도매법인의 체계적인 외상판매 대금관리의 곤란 □ 도매법인과 매수인간 대금결제로 인한 의견충돌시 조정 곤란 □ 시장의 신용도가 낮음
조합대불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신용도가 높음 □ 대금결제관리 사무의 조합 일원화로 간소화 □ 외상판매대금의 확실한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 중심의 조합업무 수행으로 자의적 의도개입 우려 □ 조합원과 미조합원간의 대우 등 관리상 문제 대두
정산회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신용도가 높음 □ 도매법인의 외상판매대금 관리사무의 대폭 경감 □ 도매법인의 외상판매대금 회수 일시파약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미속에 따른 대금결제 관리 사무의 중복과 별도조직 설립에 따른 유통경비 증가 □ 매수인의 사업규모확대시 지불능력 판정 곤란
정산회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인의 대금결제 지불업무의 신속, 정확화로 능률적인 경영관리 도모 □ 대금결제 사무의 표준화에 의한 전산처리로 도매시장 업무효율성 기여 □ 제3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으로 대금결제 사무의 공정성 보장과 차별거래방지 	

3. 대금결제방식별 중앙도매시장의 분포

□ 청과물 중앙도매시장

	계	개인지불	조합대불	정산회사	병용(개인+조합)
개소수 (구성비)	74 (100)	2 (3)	41 (55)	14 (19)	17 (23)



별첨 10.

농산물공판장업무취급준칙(중앙회)

소관부서 : 농산물도매부 (T : 8063)

- [2000. 7. 1. 제정
- 2001. 12. 21. 개정
- 2003. 11. 4. 개정
- 2008. 7. 30. 전문개정
- 2010. 10. 1. 개정
- 2012. 9. 1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농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업무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공판장 업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 등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② 이 준칙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공판장의 업무규정으로 본다.

제3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판장”이라 함은 농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거래인”이라 함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및 위탁판매인을 말한다.
3. “중도매인”이라 함은 공판장장 (도매시장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고 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 또는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공판장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5. “위탁판매인”이라 함은 공판장장의 위탁을 받아 공판장이 지정한 조건으로 농산물을 판매



하여 주고 공판장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6.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농안법에 의하여 공판장(도매시장 포함)에 등록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출하 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소정의 이자율” 또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이라 함은 경제사업규정 제44조에 의한 기한내 이자율 또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8. “경매사”라 함은 경매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공판장장 등의 임명을 받아 공판장에서 상장된 농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공판장 명칭】 ① 공판장의 명칭은 해당 공판장 소재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농협 중앙회 00공판장”이라 명기하여 표기한다.

② 농안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공판장 개설승인을 얻은 사무소에 한하여 제1항의 공판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거래품목】 공판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농산물·축산물·임산물·기타 공판장장이 정하는 품목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제6조 【영업일 및 영업시간】 공판장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은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과 시장 정기휴업일, 공판장 및 주변 도매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판장장이 정한다.

제7조 【수탁거부금지 등】 ① 공판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출하자 또는 거래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판장의 거래·물류효율화 및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하를 제한 할 수 있다.

1.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공판장장이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판장장이 정하는 공판장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 기준 등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 ② 공판장장은 해당 공판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 제3호·제4호의 최소 출하량 및 규격출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미수채권관리】 ① 상환기일이 경과한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채무확인을 실시하는 등 관리 및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일을 2월 이상 경과하고 보통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지체없이 법적 절차를 실행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2장 출 하

제9조 【출하자 신고】 ①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출하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판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출하주) : 실명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법인의 경우(출하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공판장장은 제1항의 출하자 신고가 있은후, 출하자 신고증 발급 요청시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출하자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판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2. 타 공판장에 출하자신고를 한 경우

④ 공판장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상장수수료의 인하, 경매의 우선실시, 장려금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출하자 신고를 받은 공판장은 경제통합시스템(농산물공판장)의 기준정보 화면에 등록 및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2012. 9. 17 신설>

제10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공판장이 제2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매취한 농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공판장에 상장하는 경우
4.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을 한 경우

② 공판장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판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공판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방법】 ① 농산물을 수탁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하자가 판매가격 등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건은 서면으로 제시
2.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농산물의 판매과정에 입회

제12조 【출하통지】 ① 출하자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에는 표준송품장 또는 출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판장장은 제1항의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기재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판장장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순으로 3년간 보관 관리(디스켓, CD 등 전산매체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수】 ① 출하품이 입하되었을 때에는 즉시 표준송품장 등에 의해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품이 표준송품장의 내용과 상위되거나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출하자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로 인한 손실은 출하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선별 및 개포장】 출하품의 선별 및 개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 비용 징구 항목, 사유 및 비용결정 방법을 명시한 동의서에 출하자의 동의를 얻어 행하되 비용은 출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출하선급금

제15조 【지급대상】 농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하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인
2. 회원, 준회원
3. 공판장(도매시장 포함)에 등록된 산지유통인중 당해 공판장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자



4.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연합마케팅사업조직(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등을 통한 공동출하를 포함한다)
6.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자

제16조 【받는 서류】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대상자	회원, 준회원	농업인, 기타
서류명	· 출하선급금신청서 · 출하선급금약정서 · 선급금차용한도이사회결의서 · 그 밖에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	· 출하선급금약정서 · 본인(보증인)또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

제17조 【지급한도】 ① 1인당 선급금 지급한도는 담보와 신용으로 구분하여 직제준칙에(전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 ②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선급금 지급한도는 선급금 차용한도 이사회결의서에 따른다
- ③ 동일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한도는 선급금 외의 다른 채권 또는 대출한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출하약정】 ①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하물량 및 출하금액을 약정한다.

② 출하약정금액은 선급금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속 거래 확대 등을 위하여 공판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사용기간 및 출하 약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기간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120일까지	150일까지
출하약정 금 액	선급금 해당액	선급금의 1.5배	선급금의 2.0배	선급금의 3.0배	선급금의 4.0배

- ③ 약정이행 판단은 출하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정 농산물의 가격이 약정 당시 적용한 단가보다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출하약정물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등 공판장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급금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출하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당해 공판장 외의 본회 다른 공판장에도 출하한 경우에는 출하 선급금지급 공판장은 공판장 업무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은 출하자의 본회 타 공판장 출하 내역을 확인하여 약정금액 또는 물량에 포함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에 규정된 산자유통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의 정산은 기일 내에 건별로 실시한다

제20조 【위약금】 ① 출하약정 기간 내에 약정대로 출하하였을 때에는 선급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출하약정대로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받는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공판장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출하농산물의 판매지연 또는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약정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제4장 수탁판매

제21조 【판매원칙】 출하농산물은 수탁방식으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농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립수산식품부령이 정한 경우
2. 상품성, 저장성, 시장성이 확실한 품목(포전매취를 포함한다)
3. 기타 공판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판매방법】 ① 농산물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립수산식품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2012. 9. 17 개정>

② 경매 또는 입찰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자식방법 : 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수량, 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을 표시하는 방법
2. 거수수지식방법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가슴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는 방법



3. 기록식방법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이 경우 숫자를 기재한 칠판을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
4. 서면입찰식방법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목, 수량, 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는 방법
 - ③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여 판매할 때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매 또는 입찰은 농산물을 수탁한 순서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 우수출하주출하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GAP농산물), 기타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공판장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경매할 수 있다.
 - ⑤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가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장장은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결정할 수 있다.
 - ⑥ 중도매인은 공판장이 상장한 농산물 외의 농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공판장장이 정하는 공판장에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확대를 위해 공판장장은 거래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 9. 17 신설>

제22조의2【상장예외품목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농안법 제3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판장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공판장에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공판장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공판장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보조경매 참가자】 중도매인이 본인외의 자를 경매에 참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 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에 운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경매 참가일부터 10일전까지 제출 하여 공판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거래의 특례】 공판장은 상장된 농산물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1.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잔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래인에게 판매한 후 잔품이 발생한 경우
3. 제21조의 단서조항에 따른 매취판매시 필요한 경우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기타 공판장장이 입하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경영사업】 공판장은 농산물 선별·포장·가공·제빙·보관·후숙·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을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 부서장의 승인시 경영할 수 있다.

제26조 【전자거래】 ① 공판장은 도매시장 전자거래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전자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거래를 할 수 있다.

② 공판장장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매매체결을 주관한다.

③ 전자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하자 및 거래인은 사전에 전자거래 이용신청(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 담당자는 출하자 또는 중도매인으로부터 팩스로 전자거래 요청을 받아, 전자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를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관련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판장장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출하자 및 거래인에 대하여 수수료, 장려금 등을 우대 적용할 수 있다.

⑥ 전자거래 시 해당 거래물품은 공판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 2 【견본거래】 ① 공판장은 거래물품을 공판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견본에 의해 거래 할 수 있다.



- ② 견본거래 시 공판장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 ③ 견본거래 시 견본품의 수량, 거래시간 등은 공판장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도매시장 공판장은 개설자 승인을 득하여 견본거래를 실시하며, 견본품의 수량 및 거래시간 등은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판매원표의 관리】 ① 경매에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 품명, 등급, 수량, 경락 가격, 매수인, 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 ② 수기 판매원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일련번호를 적은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전산 판매원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경매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경매 기초자료 작성 후 전자경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자경매 진행 여건 악화 등으로 수지식 경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판매원표를 출력하여 경매결과를 수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판매원표상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판매원표는 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하 상품의 변질, 부패, 속박이, 견본품과 현품의 상품성 차이가 현저하여 낙찰자(매수인)가 경락가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2. 재경매 또는 가격보전을 하는 경우
3. 판매원표 오기, 경매 진행 착오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판매원표를 정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판매원표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하자 또는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하되 공판장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공판장은 개설자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⑥ 공판장은 판매원표를 판매일자순으로 5년간 보관 관리(디스켓, CD 등 전산매체 포함) 하여야 한다.

제28조 【외상판매】 ① 외상판매는 거래인에 한한다. 다만, 신용이 확실한 대량수요처에 대하여는 거래인에 준하여 외상판매를 할 수 있다.

② 외상판매를 할 때에는 농산물의 인도와 동시에 판매내용을 거래인 통장 또는 계산서에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장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 이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외상기간위약금】 ① 외상판매 기간은 물품 인도일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공판장이 정하고 기간 내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30조에서 규정한 외상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판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 청과공판장 : 30일
2. 양곡공판장 : 45일
3. 화훼공판장 : 60일

②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외상판매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받는다. 다만, 대량수요처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30조 【외상한도】 ① 1인당 외상거래한도는 기본한도, 임시한도, 추가한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본한도와 임시한도는 거래인의 신용상태, 담보상황, 대금결제조건,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경제사업채권관리준칙에 따라 책정 운용한다.

③ 추가한도는 경제사업채권관리준칙의 기본한도 및 임시한도와는 별도로 운용한다.

④ 추가한도는 공판장 사업활성화 등 출하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장장이 거래인별 신용상태, 판매기여도, 예상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 운용할 수 있다.

⑤ 추가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 전월말(또는 마감일)에 기본한도를 초과한 거래인 또는 추가한도 운용기간 중 매월말(또는 마감일)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기본한도를 초과한 거래인에 대하여는 기본한도 이내로 감축할 때까지 추가한도를 운용할 수 없다.

⑥ 외상한도(기본한도, 임시한도, 추가한도) 책정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31조 【외상거래 면책범위】 외상취급 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외상거래에 따른 채권이 부실화 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신분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 외상거래약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외상거래 약정으로서 미수금 부실 발생일 이전



1년 기간 중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사실이 없으며, 외상한도(추가한도 포함) 이내로 운용한 경우

2. 외상거래약정 취급내용이 사후에 외상거래 약정 관련 제규정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3. 외상거래 취급관계자가 피해액 전액을 변상한 경우
4. 채권관리상의 실익을 위해 재약정, 채무인수, 담보물 교체, 연대보증인 교체 등의 방법으로 당초 외상거래약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위규 처리한 외상거래 약정을 당초 취급자가 변경한 것은 제외한다.
5. 경제사업관련 제규정 및 지도문서에 따라 적정하게 취급한 경우

제32조 【상장수수료, 중개수수료, 시설사용료 등】 ① 위탁상장수수료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출하기여도, 시장여건 및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판장장이 따로 정한다.

1.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 이내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내
3.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이내
4.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 이내
5.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내
6.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 이내

② 농산물의 상품성제고, 판매촉진, 출하확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판장장은 위탁상장수수료를 감액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도매인이 공판장에서 거래물품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공판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거래인이 공판장 소유의 점포·차량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판장장은 거래인으로부터 해당 시설물의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⑤ 공판장장은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인에게 제4항의 시설물의 사용배정 또는 사용료 부과 면제 등 우대할 수 있다.

⑥ 공판장장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인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 거래인이 사용하는 공판장 소유의 시설물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비용 입체】 ① 수탁판매품의 판매에 따른 제비용은 예상판매대금을 감안하여 입체 지급



할 수 있다.

② 당일 영업마감시간 이후 입체 지급할 경우에는 가지급금 처리하고 다음날 영업 개시 즉시 정당계정으로 대체 정리한다.

③ 수탁농산물을 경매하였으나, 출하자가 판매를 거부하여 부득이 회수하지 못한 제1항의 입체 비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하역비 등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 【판매대금 선급】 ① 공판장은 검수입고 후 판매되기 전이라도 예상판매 대금의 80% 해당액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에서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대금 선급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기한 내에는 무이자로 하며 기한 경과 시는 소정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에 의한 위약금을 받는다. 다만, 검수 입고된 농산물의 판매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판매완료일 까지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판매대금을 선급할 때에는 검수증에 선급액을 표시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제35조 【판매대금 정산】 ① 판매가 완료되면 즉시 판매대금, 입체금, 제비용, 수수료, 선도금 등을 기재한 표준정산서(수탁판매대금정산서)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송부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다만, 출하선급금의 경우 약정기간 내에 약정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선급금의 정산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판매대금의 정산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000 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의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판장에서 사용하는 제1항의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자명
2. 출하자명
3. 출하자 주소
4. 거래형태(매수·위탁·중개) 및 매매방법(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5. 판매내역(품목·품종·등급별 수량·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중량),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6. 공제내역(위탁수수료·운임선급금·하역비·선별비·쓰레기유발부담금 등 비용) 및 공제



금액 총액

7. 정산금액

8. 송금내역(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④ 공판장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5년간 보관관리(디스켓, CD 등 전산매체 포함) 하여야 한다.

⑤ 출하자 불명 또는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판매대금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영업외 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5년간 그 처리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수익처리 후, 출하자로부터 대금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업외비용(잡손실)으로 처리 후,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제35조의 2 【표준하역비의 부담】 공판장은 농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출하품을 지정·운용할 수 있으며,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공판장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단, 도매시장 공판장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한 규격출하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공판장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한다.

제5장 매취판매

제36조 【공판장매취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① 공판장장은 공판장 매취사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매취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판장매취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사무소 인력구조상 협의회 구성인원이 5인 미만 시 4급 이상 책임자 전원과 해당 품목 경매사, 해당 품목 외 경매사 1명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공판장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공판장 부장장(부장장이 있을 시 반드시 포함)
2. 공판장 기획 담당 4급 책임자(반드시 포함)
3. 해당품목 경매담당 4급 책임자와 해당품목 경매사(반드시 포함)
4. 공판장장이 지정한 해당 품목 외 경매사 1명 (반드시 포함)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매취할 품목 · 물량 · 시기 · 구매처



2. 예상 구매가격 및 판매(예정)가격

3. 해당 매취품목의 재고관리 방법

4. 기타 매취사업 시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는 위원 5인 이상 참석(제2항 규정에 의거 협의회가 4급이상 책임자 전원과 해당 품목 경매사, 해당 품목 외 경매사 1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대상위원 전원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구매방법】 공판장에서 매취하는 물품은 계통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산지유통인 등으로부터 자체구매 할 수 있다.

제38조 【매취시 구매가격의 결정】 구매가격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예상구매가격, 산지 및 소비자 시세, 수급량 등을 감안하여 구매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9조 【운송】 발주한 물품의 운송은 공급자의 책임하에 공판장이 지정하는 장소 입고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판장의 책임 하에 운송할 수 있다.

제40조 【특정업무의 위탁·운용】 매취사업 수행과정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선별·포장작업·물류 등 특정 영역의 업무를 외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 【판매방식】 매취한 물품의 판매방식, 외상거래 등에 대하여는 이 준칙 제4장 수탁판매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2조 【판매가격 결정】 ① 판매(예정)가격은 매입원가(매입에 따른 제비용 포함)에 판매제비(보관료, 조작비, 금리, 공제료 등) 및 이윤 등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공판장은 시세변동 및 판매촉진 등을 사유로 불가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조정(매입원가이하 조정 포함)할 수 있다.

제43조 【물품 관리】 ① 물품관리는 유별로 구분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별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물품은 보관장소별, 유별 또는 품목별 등 공판장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매취한 물품은 화재공제기본계약과 풍수해보상특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재고조사전이라도 물품의 변질, 진부화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폐기 처리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손실(폐기)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공판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재고조사】 ① 재고조사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포전매취의 경우 재고조사 방법 및 회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 교체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품목별 재고조사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1. 수량관리가 어려운 산물형태의 농산물 : 매입원가(수량) 또는 판매예정가격 기준
2. 수량관리가 가능한 포장농산물 : 매입원가(수량) 기준
3. 포전매취 농산물 : 협의회에서 따로 정함

③ 제1항의 재고조사는 공판장장이 담당자 외의 자를 조사자와 확인자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재고조사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45조 【재고조사결과 과부족처리】 ① 재고조사 결과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 계좌별로 설치된 유별 내에서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부족액은 제46조의 규정에서 정한 인정감모율 이내에서 감모처리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부족액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액이 제46조의 규정에서 정한 인정감모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손실처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 외 부족액이 제46조의 규정에서 정한 인정감모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자가 판매(예정)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사업규정」제7조 제2항에 의거 현물 또는 판매원가로 변상할 수 있다.

④ 재고조사 결과 과잉액 및 관련자의 변상에 따른 판매원가와 차액은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제46조 【인정감모율】 ①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재고조사결과 과부족 처리의 기준이 되는 인정감모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수삼
5/1,000	5/1,000	5/1,000	5/1,000

단,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인정감모율을 적용하는 재고조사 기준일은 전(前) 재고조사 기준일 다음 날부터 현(現) 재고조사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원장관리】 ① 매취한 물품의 원장계좌는 유별로 설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품목별·규격별·등급별로 개별원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단가산출은 재고조사를 매입원가(수량)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이동평균법, 판매예정가격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매가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8조 【회계 처리】 ① 물품의 매입 또는 판매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및 포장 제비용은 「회계업무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포전매취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방법」의 생장물사업 관련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다. 다만, 비교적 단기간의 포전매취사업으로서 생장물사업 회계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49조 【매취사업시 면책범위】 ① 매취사업 실시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경제사업규정」 제7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취급자의 재산상·신분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매취사업과 관련한 외상거래시의 면책범위는 제3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0조 【사고 및 불만처리】 매취사업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겸영사업과 관련된 사고 및 거래처 불만처리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공제와 생산물 배상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고 또는 공제처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판장장의 승인을 받아 영업외비용(잡손실)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거래인, 경매사

제51조 【거래인】 공판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거래인을 둘 수 있다.

제52조 【거래인의 자격】 ① 거래인은 판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또는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운 자라야 한다.

② 거래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공판장의 세무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중도매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약정이 해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판장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공판장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형태의 중도매인
 6. 월간 최저거래금액 또는 거래담보물 등 공판장장이 정한 중도매인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자
- ④ 법인형태의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3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⑤ 중도매인이 공판장과 거래하여야 하는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품목별,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감안하여 공판장장이 정한다.

제53조 【거래약정 등】 ① 거래인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필요서류를 받는다.

구 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약정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담보관계서류 • 세금완납증명원 • 중도매인허가증(매매참가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공판장에 한하여 징구 • 기타 필요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약정서 • 인감증명서(본인, 보증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인 지정 후 징구 보완) • 담보관계서류 • 세금완납증명원 • 중도매인허가증(매매참가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공판장에 한하여 징구 •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거래인에게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항상 게시 또는 지참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 【보증인】 신용거래를 할 때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운다. 다만,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 【신용조사】 거래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을 제공한 거래인에 대하여는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 【담보물의 감정, 취득, 채권보전 등】 담보물의 감정, 취득, 채권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사업채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경매참가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인에 대하여는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매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2. 미수채권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3. 공판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공판장장이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58조 【거래약정 해지】 ① 거래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거래약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제52조의 규정에 저촉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거래를 중단하였을 때
3. 거래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담합하거나 거래과정에 있어 거래관계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끼치는 등 판매 업무 질서를 저해하였을 때
5. 담보물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통지서가 발송된 때(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가능) 또는 파산·회사정리절차 개시 등 거래인에 대해 법적수속이 개시되었을 때
6. 기타 채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약정해지 거래인에 대한 미수금은 조속히 회수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약정 해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절차를 실행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59조 【장려금·수수료 거래인지원 등】 ① 공판장 사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장려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원, 준회원
2. 거래인
3. 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중 당해 공판장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자
4. 연합마케팅사업조직(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를 통한 공동출하를 포함한다)
5.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장려금 및 수수료는 공판장장이 지급대상자의 출하 또는 판매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판장장은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본부 공판장 담당부서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거래



인에게 점포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 방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④ 수집기능 확대를 위해 공판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출하조직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2. 9. 17 신설>

1. 계통조직(공선출하회, 작목반 포함)
2.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연간 1억원 이상 출하하는 산지유통인 또는 개인

제60조 【경매사】 ① 공판장장 등은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경매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당해 공판장의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농안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농안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공판장장 등은 경매사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시켜야 한다.

③ 공판장장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안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도매시장공판장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 <2012. 9. 17 개정>

제7장 가격보전

제61조 【출하자가격보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출하자에게 가격을 보전할 수 있다.

1. 공판장 경락가격이 동일자·동일품종·동일규격품의 여타 공인시장(계통 기관 및 유사도매 시장을 포함한다) 평균 판매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판매 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판매 사례가 없을 때에는 계통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발표한 해당품목 도매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



2. 계절별 초출하품 또는 타 도매시장에 비하여 출하가 부진한 품목의 출하유치를 위하여 판매예정가격을 출하자에게 제시하고 출하를 유치하였으나 실제 판매가격이 제시가격보다 낮았을 경우 그 차액 범위 내
3. 그 밖에 공판장장이 가격을 보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2조 【중도매인가격보전】 중도매인이 매입한 농산물이 견본품과의 차이로 경락가격의 90%에 미달된 가격으로 하매(경락시로부터 24시 간 이내의 하매분에 한한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경락가격의 90% 해당액 과의 차액 범위안에서 가격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공판장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63조 【가격보전절차】 ① 가격보전을 하는 경우 정한 기일 내에 다음 필요서류를 갖추어 실시한다.

다만, 출하자가가격보전의 경우 농산물가격보전신청서(또는 출하자의 구두전화요청 기록)를 생략할 수 있다.

구 분	출하자가가격보전	중도매인가격보전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격보전신청서 (또는 출하자의 구두, 전화요청 기록) • 해당품목 판매원표 사본 • 타 공인시장 가격자료 • 기타 필요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격보전신청서 • 손실발생경위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정한기일	가격보전신청일부터 3일 이내 판매일부터 15일 이내	

② 가격보전은 공판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장이 보전신청 내용을 심사·결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출하자 가격보전에 대한 사항은 경매담당 직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출하자가가격보전금은 출하자에게 전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판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자(계통조합을 통해 출하한 생산자 포함)에게 계좌입금 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가가격보전의 경우 신속한 가격보전을 위해 가격보전금액을 판매(경락)대금과 함께 출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가격보전을 하는 경우 가격보전금은 해당 중도매인 거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부 칙

이 준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선급금에 대한 위약금 계산방법

구 분		계산 방법
전량 출하	약정기일이내	무이자
	약정기일 경과	선급금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출하일까지}}{365}$
일 부 출 하	약정기일 이내 일부출하, 현금상환	① + ② ① = 선급금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지급일부터 출하일까지}}{365}$ × $\frac{\text{미출하액}}{\text{약정금액}}$ ② = 선급금잔액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출하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365}$
	약정기일 이내 일부출하, 약정기일 이후 현금상환	① + ② + ③ ① = 선급금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지급일부터 출하일까지}}{365}$ × $\frac{\text{미출하액}}{\text{약정금액}}$ ② = 선급금잔액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출하일 다음날부터 약정기일까지}}{365}$ ③ = 선급금잔액 × 소정의 연체이자율 × $\frac{\text{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365}$
	약정기일 이후 일부출하, 현금상환	① + ② + ③ + ④ ① = 선급금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약정일수}}{365}$ × $\frac{\text{미출하액}}{\text{약정금액}}$ ② = 선급금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출하일까지}}{365}$ × $\frac{\text{출하액}}{\text{약정금액}}$ ③ = 선급금 × 소정의 연체이자율 × $\frac{\text{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출하일까지}}{365}$ × $\frac{\text{미출하액}}{\text{약정금액}}$ ④ = 선급금잔액 × 소정의 연체이자율 × $\frac{\text{출하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365}$ * 약정일수 : 선급금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 일수
전량 미출하		① + ② ① = 선급금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약정일수}}{365}$ ② = 선급금 × 소정의 이자율 × $\frac{\text{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365}$

주) “소정의 이자율” 또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기한내 이자율 또는 연체이자율을 말함.



별첨 11.

일본 도매시장 제도의 변화

□ 일본 도매시장제도의 변천

구 분	주요 내용
중앙도매시장법 대정12년 3월 30일 공포 (1924년) 동년 11월 1일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를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구역의 지방공공단체 및 공익법인(특별한 경우)에 한정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인가제와 주무대신에 대한 재래시장의 폐쇄명령권 부여 3. 중앙도매시장정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4. 도매업자에 대하여 지방장관의 영업허가제 5. 경매의 원칙
소화31년 개정 (1956년) 소화31년 6월 22일 공포 동년 9월 20일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지정구역의 기준(정령-인구15만명 이상)의 설정 2. 개설자를 지방공공단체로 한정 3. 도매업자의 허가권한을 농림대신에게 변경 4. 개설자에 대한 도매업자의 최고한도 설정권을 부여하고 도매업자의 허가를 담당하는 개설자의 의견 존중의무 5. 농림대신의 인가를 받은 도매업자의 합병, 영업양도 및 협정의 체결에 관해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6. 중매업자의 매매참가에 관한 규정의 신설 7. 유사시장의 신고제 신설
소화33년 개정 (1958년) 소화33년 5월 1일 공포 동년 6월 30일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도매시장의 명칭사용 제한 2. 개설자에 대한 도매업자의 거래방법 제한권 부여 3. 도매인의 순자산액에 관한 규정의 신설
소화36년 개정 (1961년) 소화36년 11월 16일 공포 37년 1월 15일 시행 (1962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과 그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권고 및 재무원조)에 대한 규정의 신설 정비 2. 도매업자의 겸업업무 신고제의 신설 3. 도매업자의 업무회계에 관한 개선조치명령, 임원의 해임명령 등 도매업자에 대한 감독규정의 정비 4. 중앙도매시장심의회의 설치



구 분	주요 내용
도매시장법 소화46년 4월 3일 공포 동년 7월 1일 시행 (1971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 및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농림대신)과 함께 도 도부현 도매시장 정비계획(도도부현지사) 2. 도매시장정비에 대한 정부의 조성 3. 중앙도매시장 개설구역의 지정과 농림수산대신에 의한 개설 인가제 4. 농림수산대신에 의한 도매업자 허가제와 도매업자에 대한 감독규정의 정비 5. 개설자에 의한 중도매업자 허가제와 매매참가자의 승인제 6. 경매·입찰 및 위탁집하의 원칙, 상대거래, 매수집하, 견본거래 등의 규정 정비 7.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및 도매업자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제와 거래 규정의 정비
평성11년 개정 (1999년) 평성11년 7월 26일 공포 동년 7월 26일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관계업자의 경영본질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중매업자의 경영본질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 양수·합병에 의한 대형화 ② 중도매업자의 공동사업에 의한 업자수의 적정화 ③ 이를 위한 금융상의 지원조치 (2) 도매업자의 재무 건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동비율 등의 지도기준의 명확화 ② 도매업자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2. 거래방법의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공개·효율의 원칙 확립 (2) 시장·품목들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개설자가 거래방법을 업무 규정(조례)으로 설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대의 가격·수량을 공표 ② 최저경매수량의 설정 ③ 시장거래위원회에 의한 개선조치 (3) 시장관계자로 규정하는 시장거래위원회의 설치 (4) 도매업자에 의한 거래결과의 공표 등 (5) 확실한 결제확보의 명시 (6) 상물일치·위탁집하규제의 완화 3. 도매시장 재편의 원활화 개설자를 보다 광역적인 주체로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



구 분	주요 내용
<p>평성16년 개정 (2004년) 평성16년 6월 9일 공포 동년 6월 9일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食의 안전·안심에의 대응 도매시장에 있어서 품질관리 철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에 대해 품질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조치를 규정 ②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대해 품질관리의 방법을 규정 2. 규제의 탄력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물일치규제의 완화 규격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경우,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지 않고 도매를 행하는 것이 가능 (2) 매수집하의 자유화 (3) 제3자판매·집하의 탄력화 (성령 대응) 생산자와 외식·가공·소매업자 등과, 도·중도매업자와의 제휴강화와 지방 도매시장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3. 시장기능의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 재편의 촉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 지역의 특성·요구에 충분히 배려하고 시장들의 자유성을 기본에, 운영의 광역화 또는 지방도매시장에의 전환이 필요한 시장의 위치 ② 도매시장의 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수속규정을 정비 (2) 도매수수료의 탄력화 (평성 21년 4월부터 시행) (3) 업무내용의 다각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겸업 등의 신고제를 폐지 ② 시장 외에서의 판매활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 (4) 중도매업자의 재무기준 명확화 (5) 거래정보공표의 충실



일본의 공설공영 도매시장제도 급변화의 배경과 이후 방향¹⁾

(日本における公設公営卸売市場制度急転回の背景と今後の方向)

I. 시작하며

일본에서의 도매시장제도는 1923년에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전의 問屋制(도매상제) 도매시장에서 公設公營의 중앙도매시장을 핵으로 하는 도매시장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앙도매시장법제정에서부터 82년이 경과한 지금 公設公營을 축으로 한 일본의 도매시장제도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도매시장 경유율이 하락하는 경향에 있고 도매시장에서의 취급량과 금액 또한 하락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취급량이 줄어드는 중앙도매시장은 개설허가자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중앙도매시장 자격이 박탈되고, 여기에 자주적인 중앙도매시장의 지위를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매시장 간의 격차확대, 폐업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도매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 도매시장제도 하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많은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 쉽사리 폐업할 수 없는 지자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제까지 도매시장제도의 안정성을 붕괴시켜, 공설공영제를 축으로 하는 현행 도매시장제도는 커다란 전환점에 와있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을 축으로 하는 도매시장제도가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는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도매시장의 이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일본에서의 공설공영제 도매시장 제도의 특징

1. 중앙도매시장법 제정의 배경

일본에서의 현행 도매시장제도는 1923년에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으로부터 시작한다. 중앙

1) 동 자료는 식품유통학회지 22권 3호 (2005년 9월)에 실린 내용을 발췌하였습



도매시장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의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넓은 면적의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도매시장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큰 규모의 도매시장을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것은 자금적인 면에서나 용지취득 면에서 모두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공설제로 지자체가 용지와 시설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이 시장에 참여하여 도매기능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 ② 구 도매상 시대의 그릇된 상거래(출하자에게 거래가격을 낮게 보고하고 차액을 사취하는 사기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매원칙의 확립과 그 감시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감시체제는 민간기업으로는 곤란한 것으로 공설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자체가 상주 하면서 감시하는 공영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2. 중앙도매시장법의 기본원칙

중앙도매시장법에서의 중앙도매시장 기본원칙은 이하와 같다.

- ① 공설공영제 : 개설자는 都道府県이나 인구 20만명 이상인 市/市町村에서 만든 일부사무조합으로, 제3섹터나 기업은 개설자가 될 수 없다. 중앙도매시장의 인가는 정부(당시에는 농상무대신, 현재는 농림수산대신)가 한다.
- ② 거래는 경매·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거래는 개설자의 허가·승인절차가 필요하다. 경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은 이하와 같다.
 - ㉠ 경매·입찰의 원칙
 - 경매시 三聲의 원칙 : 구매자측의 가격의사표시에 대해 경매사가 그 가격을 3회 호창하고, 그 사이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가 없으면 그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규정(보다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경매사가 계속 호창을 하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 가격정정사유의 제한 : 예견할 수 없었던 하자, 중량미달(量目) 등으로 제한
 - 하자품의 수탁품 검사 의무 : 품질의 하자, 중량부족 등을 개설자 직원이 확인한 증명서 발행을 받지 않으면, 가격변경과 관련하여 출하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 경매순서는 입하순서의 원칙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설자의 업무규정으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 ㉡ 전량반입원칙(상품분리 금지)
 - ㉢ 즉일 전량 상장원칙



- ④ 차별적 거래금지의 원칙
- ⑤ 수탁거부 금지의 원칙
- ⑥ 무조건 판매위탁 원칙 : 생산자·출하자는 희망 경매가를 붙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최저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제시가격(指し値)」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경매사가 경매전에 제시가격이 붙어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구매자 측에 고지하고, 만약 경매 가격이 제시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중지하고 출하자로부터의 지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⑦ 거래 원시기록(판매원표)작성 의무 : 개설자에게는 사본 1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정정시 방법과 정정할 경우의 개설자로부터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 원시기록의 수정 방지 규정 등을 두고 있다.
- ⑧ 도매대금의 신속한 지불
- ⑨ 도매법인의 판매담당자 자격제도(경매사)
- ⑩ 구매자측 업자의 인가제(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⑪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시장 내에서의 소매행위 금지
- ⑫ 도매시장 밖에서의 거래행위 금지(예외적으로 물건보관은 인정된다 - 장외 지정보관장소제도)
- ⑬ 출하자(생산자)의 출하처 도매시장 선택 자유
- ⑭ 공설도매시장의 유통권 한정(개설지역 제도)
- ⑮ 개장시간의 규정(다만, 동경도 등은 24시간 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도매시장은 새벽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나, 저녁에 이루어지는 도매시장도 있다)
- ③ 도매법인은 경매·입찰의 위탁수수료 이외의 보수 수수 금지. 즉, 매취집하행위에 의한 매입과 판매에 의한 차액의 이익을 얻는 것은(차익상인)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차별적 취급 금지를 축으로 한 세세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중앙도매시장법이 도매시장법으로 변경되었어도 기본적인 성격에는 큰 변화는 없다.



3. 공설제가 채택된 배경

원칙적으로 개설지자체는 용지와 시설을 확보하고, 도매법인에게 임대한다. 유지관리 및 시설정비는 개설자의 역할이고, 도매법인은 면적할 사용료와 매출액 대비 사용료를 지불한다. 중도매인은 면적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4. 공설이 필요한 조건

국토 가운데 평지가 적어 많은 부지를 기업이 확보하기 곤란한 일본에서는, 행정이 비교적 넓은 용지를 소유하거나 용지를 매수함으로써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도매시장은 지역주민의 신선식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과 같이 토지대가 싸고 유통업무 단지 등 기업에 따른 용지 취득이 가능한 곳에서는 대형 民設시장도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東京多磨青果(동경도 내의 三鷹市, 東村山市, 国立市), 大宮青果·浦和青果(さいたま市) 렌고우青果·長印(長野県), 熊本大同青果(熊本市) 등이 있다.

5. 공영이란

개설자가 지자체인 경우 도매시장의 운영도 개설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형식

일반적으로 관리부문과 업무부문이 있는데, 관리부문은 시설의 유지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과 같은 사무 이외 지자체 예산당국과의 절충과 의회 대응 등의 업무 등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부문은 중앙도매시장법의 거래공정원칙 실현을 위한 거래감시지도와 절차, 거래내용의 파악,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허가·승인, 통계업무 등을 한다.

6. 중앙도매시장의 전국전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은 1923년 京都市 중앙도매시장을 시작으로, 大阪市, 神戸市, 横浜市, 高知市, 東京都, 鹿児島市, 佐世保市 등으로 이어졌다. 그 이 후 戰時통제로 도매시장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와같은 상황은 몇 년간 계속되었다. 1950년에 통제가 해제되고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법의 본래 규정에 기초하여 운영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부는 중앙도매시장을 전국 주요도시에 분포시키는 것을 목표로, 건설시에는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장려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부 지방의 중심 도시(예를들면 旭川市, 水戸市, 前橋市, 高崎市, さいたま市(大宮市, 浦和市), 長野市, 松本市, 熊本市 등)를 제외하고 도매시장을 설치하였다. 개설중앙도매시장수는 1946년~55년에는 広島市, 名古屋市 등 7개 시장을, 56년~65년에는 17개 시장, 66년~70년에는 7개 시장, 71년~75년에는 21개 시장,



76년~80년에는 10개 시장, 81년~85년에는 5개 시장이었고, 이후에는 이전 설치가 증가하였으며 신규설치는 없었다. 즉, 중앙도매시장은 포화상태를 맞이하였고 과당경쟁과 제살각기 경쟁으로 퇴출단계에 들어갔다 하겠다.

III. 유통의 변화와 도매시장법 제정의 길

일본 중앙도매시장 제도는 제2차세계대전 후 일본의 통제경제가 해제되고 난 이후의 15년이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패전 후 15년 즉, 1960년대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이시기에 일본에서는 슈퍼마켓 형태의 소매 체인기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① 대량구매를 통해 구매가격의 덤핑(규모화를 통한 메리트)과, ②예약주문시 하자없는 납품을 도매시장(중도매인)에 요구하였다. 이제까지의 개인경영 소매상은 이른 아침에 도매시장으로 가서 그날의 입하상황을 보고 매입 상품을 결정하는 방식이었고, 중앙도매시장법의 경매원칙은 이에 적합한 것이었다.

슈퍼마켓의 매입방식은 경매참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낙찰받기 위해 다른 매수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경매 구조와는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꼭 필요한 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미리 선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예약제도는 중앙도매시장법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도매시장법제도는 어디까지나 시장 내로 현물을 가져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은 동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에 이기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규격품을 갖추려하였고, 이르기 위해 슈퍼마켓의 바이어는 중앙도매시장법 제도는 무시한 채 상품의 하자가 없는 납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난처해진 중도매인은 위법인줄 알면서 「선취」행위를 자행하게 되었다. 본래 경매종료 후 낙찰자(落札した業者)가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나 「선취」란 경매전에 원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인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 「선취」가 시작된 것은 1960년경 당시 일본 내에서 최대의 물량을 취급하던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神田(간다)시장의 K중도매인(현재 大田시장에서 영업)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로 다른 중도매인에게 퍼지면서, 「선취」물건에 대해서는 동종물품의 최고가격을 붙여주는 룰이 생겼고,



1963년 동경도는 「선취전송요령(先取り転送要領)」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이러한 물을 추진함과 동시에 「선취」 가능한 수량을 입하량의 20% 이내(후에 30% 이내로 확대)로 제한하였다.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없는 규정을 개설자인 지자체가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1970년 제정된 도매시장법으로 이어진다. 동경도의 「선취전송요령」의 「전송」에 대해서도 커다란 내용변화가 나타났다. 원래 옛날 동경 神田시장과 같이 전국으로부터 물품이 모이는 시장은 집산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경매원칙하에서는 경매 후에 전송업자가 지방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패전후의 식량 확보와 농업재건정책으로 생산현장에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의 대형화가 추진되어 농협을 창구로 한 공선공판체제(共選共販体制)에서는 대형 도매시장으로 집중출하 되게 되었고, 이것이 대형 도매시장으로의 집중출하 경향을 강하게 하였다. 직접 산지로부터 받을 수 없는 도매시장은 집산시장(중심적인 시장)으로부터의 전송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것은 고속도로 등의 수송환경 개선으로 단시간에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송을 받은 도매시장은 아침의 경매 시간에 물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도매시장에서는 빠른 시간대에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선취」행위의 배경이 되었다. 가령, 동경의 옛날 神田시장에서는 약 350km떨어진 동북지방 미야기현(東北地方・宮城県)의 센다이시(仙台市) 중앙도매시장으로 전송되는 물품은 대체로 오전 0시에 출발했다. 이는 현재의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大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넓어진 만큼 옛날의 神田시장보다도 상당한 대규모로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슈퍼마켓으로의 납품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거리 수송은 적기 때문에 슈퍼마켓의 배송센터로 오전 5시전후에 도착하면 되니까 보통 오전 3시경이 「선취」배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와 같이 지방전송과 슈퍼마켓으로의 납품이 「선취」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1970년 제정된 도매시장법에서는 「예약상대거래」로 제도화 되었다. 즉, 도매시장법은 산지와 소매업체 측의 유통대형화와 유통망 확대에 맞는 거래제도를 확립하였는데, 바꿔 말하면 경매원칙의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 할 것이다.

IV. 도매시장법제정과 그 후의 전개

1. 도매시장법의 특징



도매시장법은 중앙도매시장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제정된 법률이다. 도매시장법의 골자는 이제까지 서술한 유통의 대형화와 유통망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완화(경매거래의 예외로서 상대거래규정, 즉 「선취」(정확히는 판매개시 시각 이전의 도매)의 인정, 예약상대거래 제도의 신설)를 담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정부는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과 도매시장정비계획을 10년 간격에서 5년마다(즉, 계획 후반 5년은 차기 계획의 전반과 중복) 제정하는 것으로 하여 전국적인 도매시장의 정비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기능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都道府県 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도매시장으로 함으로써 도매시장법 제의 테두리 내로 흡수하였고, 이제까지 도매시장 영역이 아니던 화훼에 대해서도 도매시장의 부류로 설정하였다.

2.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 변천과정

1971년을 기점으로 한 제1차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1980년까지 계획) 이 후, 1981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3차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까지 정부의 방침은 지방도매시장의 통합을 통한 대형화·數의 감소와 중앙도매시장의 전국적인 고른 배치였으나, 이 중 중앙도매시장의 전국 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제4차(1986년)~제5차(1991년)에서는 저온시설 등의 시설기능 충실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제6차(1996년) 이 후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도매시장 간 경쟁격화에 따른 경영체력 저하와 업자간 격차의 확대 등과 같은 도매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체질의 강화와 중앙도매시장의 재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농림수산물 내에서도 도매시장에 대한 행정방향을 변화시켜, 도매시장 담당과를 종래의 식품유통국 시장과에서 종합식료국 유통과 시장반으로 하고, 신선식료품 유통행정은 도매시장 중심에서 유통기능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중점을 옮겼다. 현재는 제7차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으로(2009년 현재는 제8차 기본방침) 정부는 도매시장의 경영체질 강화와 획일적인 지도에서 지역 사정에 충실한 도매시장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도매시장의 구조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V. 도매시장법 체제하에서의 유통환경 변화

1. 슈퍼마켓의 진출에 따른 영향

슈퍼마켓은 그날의 도매시장 출하상황을 보고 구매하는 일반 소매상과는 다르게, 계획적인 판매와 그에 따른 사전발주를 한다. 도매시장측은 슈퍼마켓이 소매부분 최대의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주문품 확보가 최대 과제로, 산지와와의 출하협약과 타시장과의 상품조달연계 그리고 입하품의 사전확보를 위해 예약형거래(「선취(先取り)」, 「선구매·선판매(先付け·先売)」 등)를 하고 있다.

가격에 대해서도 슈퍼마켓은 도매시장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잘 팔리는 상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 매입가격을 설정하고 있기에 시장가격의 조정은 중도매인의 역할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중도매인으로써는 도매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높고 슈퍼마켓으로의 납품가격은 싼 경우도 있다. 또한 슈퍼마켓으로부터의 판매대금이 늦어짐에 따른 자금곤란과 슈퍼에서의 특판에 대한 강요, 특판시 싼 가격납품 요청 등 슈퍼마켓 측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라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매시장제도의 원칙 준수가 곤란하게 되었다.

도매법인이 직접 슈퍼마켓과 핫라인을 갖고 수주와 납품을 병행하는 예도 증가하고 있으나, 슈퍼마켓으로부터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는 그대로 이어져서 경영에 압박을 받은 예도 나타나는 등 도매법인으로서도 슈퍼마켓과의 「공생방법」이 과제가 되고 있다.

도매법인으로서는 ①중도매인을 통한 판매가 안전하기는 하지만, 중도매인의 경영규모가 작아 판매확대가 곤란하고, ②도매법인이 직접 슈퍼마켓 등과 같은 대형구매자와 거래하게 되면 판매확대는 가능하나 경영위험이 크다.

2. 「선취(先取り)」의 증가

「선취」(정확하게 말하자면 「판매개시시각 이전의 도매」)는 舊법인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었으나, 청과의 경우 슈퍼마켓의 증가에 따라 1960년경부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슈퍼마켓으로의 납품(納入)을 위해 납품업자들로부터 이를 인정해 줄 것이 계속해서 요구되었다.

「선취」의 증가와 대세화는 행정당국으로서도 해결해야할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즉, 1990년 시점에도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오타시장에서는 채소의 「선취」비율이 90%이상으로 추정될



정도였다.

도매시장법에서도 경매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원칙거래 비중이 작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또한 커다란 흐름을 다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였기에 정부는 1999년에 도매시장법을 개정하면서 거래방식에 대해 '경매거래', '경매거래+상대거래', '상대거래' 이렇게 3가지 범주로 품목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재량은 개설자에게 맡겨두게 되었다. 결국 상대거래도 원칙적인 거래방식이 됨에 따라(이 상대거래에는 「선취」도 포함됨에 따라) 이 때부터 「선취」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3. 경매의 축소와 상대거래 중심화

도매시장의 기능은 출하자가 출하한 물품을, 아침에 물건구매를 위해 시장에 온 구매자가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당일거래가 원래의 방식으로 경매는 이에 적합한 거래방식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경매는 축소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경매·입찰비율의 추이(중앙도매시장)

(단위 : %)

연도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채소	과일		선어	냉동	염간가공			
1989	67.4	70.7	64.3	35.9	62.7	19.3	14.5	82.5	97.4
1990	64.9	67.1	63.2	35.2	61.5	19.5	14.5	85.0	92.8
1995	55.1	57.5	53.3	32.2	54.6	18.5	10.0	89.8	79.7
1996	52.4	54.5	50.7	30.8	53.3	16.7	9.4	89.7	75.8
1997	50.6	52.6	48.8	30.8	52.8	16.9	10.3	90.1	79.3
1998	49.3	51.0	47.6	29.5	51.2	16.5	8.7	89.6	74.4
1999	46.3	48.0	44.8	29.4	50.8	17.3	8.3	89.7	74.1
2000	34.3	35.3	33.7	26.4	45.3	16.0	6.8	83.0	68.5
2001	29.9	30.2	30.3	25.4	43.0	15.5	7.3	88.6	63.9
2002	28.5	28.4	29.4	24.6	42.0	14.6	7.7	90.9	60.7
2003	26.5	26.2	27.7	24.6	40.8	16.6	6.6	90.7	58.0

※ 특히 동경 오타시장(청과), 츠키지시장(수산)의 경매비율 저하는 현저하다.

- ① 대형 구매자의 사전주문과 산지와와의 출하조정 등에 따라 사전에 출하와 판매처가 정해져 있어, 경매참가자는 감소하였다.
- ② 기준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을 타 도매시장에서도 채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기준시장 이외에서는 주체적인 경매가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었다(기준가격보다 높게되면 구매자측이



불만, 낮게되면 출하자측이 불만). 현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도매시장에서 밖에는 출하되지 않는 해당 지방산물이 대부분이다.

4. 매취(買付)집하의 증가

청과에서는 산지가 대형화함에 따라 해당 산지출하단체는 출하처인 도매법인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출하(지정산지제도)하고 있는데, 상대 도매법인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취급량이 많고 가격이 잘 나와야 한다. 또한 정말로 필요한 물건의 경우에는 위탁이 아닌 매취집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표2참조)

【표2】 매취집하비율의 추이(중앙도매시장)

(단위 : %)

연도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채소	과일	선어	냉동	염간가공				
1989	19.0	12.3	28.1	60.7	32.6	85.7	74.8	12.6	1.0
1990	19.0	13.2	27.2	61.1	32.7	86.3	74.9	9.9	1.3
1995	22.2	17.4	29.0	61.7	37.5	86.0	75.9	9.0	2.3
1996	22.8	17.9	29.4	62.7	39.0	86.3	76.4	9.2	2.5
1997	22.9	18.1	30.6	63.1	40.0	85.7	77.0	9.9	2.7
1998	23.9	20.1	29.9	64.0	41.2	86.3	77.8	9.0	3.0
1999	25.2	20.6	32.1	64.8	43.2	85.8	78.8	8.4	3.0
2000	25.0	21.0	31.0	65.9	44.8	86.5	79.8	8.4	2.6
2001	26.1	21.5	32.8	66.8	46.0	86.9	80.6	8.5	2.7
2002	26.5	22.6	32.9	67.7	46.9	87.2	81.2	6.9	3.0
2003	27.7	23.4	35.0	67.9	48.0	87.1	81.9	6.3	3.6

또한 매취집하인 경우 가격안정제도의 대상이 아니기에, 서류상은 위탁집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산지에 가격을 보증하는 매취집하로 하는 행위가 많다(위탁매취행위는 위법). 감사에서는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중소도매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도매법인의 경영은 더욱더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도매수수료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도매법인은 집하를 위해 산지에 일정한 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취집하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도매법인으로서는 경영체력의 승부이기도 하며 한층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5. 대형도매시장으로의 집하 집중

사전예약형 거래는 대형 양판점 등이 대상이기에, 거래하는 도매시장이 한정되어 있기에 슈퍼마켓의 웨어 확대와 더불어 대형 도매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 소매상인(개인 경영)을 상대로 하는 도매시장의 경우는 지방 소매상인의 급격한 감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로 도매시장의 쇠퇴는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대형 도매시장은 개설 구역(가령,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은 동경도가 개설구역)을 훨씬 넘어 都道府県の 경계를 넘는 광역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오타시장 혼자 다해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6. 중도매 기능의 변화

중도매인의 기능은 본래 경매에서 구매하는 쪽으로 경매의 축소와 도매법인의 대형 구매자와의 직접적인 정보교환(루트 세일즈)부분 설치 강화, 여기에 상물분리로 중도매인이 현물을 취급할 기회가 감소하는 유통변화 속에서, 중도매인의 기능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중도매인은 ①슈퍼마켓 등 대형거래처로의 납품기능을 담당하는 대형 중도매인, ② 중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 중도매인, ③음식점이나 일반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중도매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후자쪽으로 갈수록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 현재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의 과반수 이상이 적자경영이다. 비교적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대형 중도매인의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등의 영향을 받아 경영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여서 도매법인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유능한 중도매인은 산지로부터 직접 매취집하를 늘리는 등 신기능을 발굴하여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도매인의 신기능 사례

- ①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오타시장 N社 : 시장의 인접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패스트 푸드의 재료(토마토와 양상추)의 신상품 개발과 계약재배를 통해 상품을 확보하여, 도매 시장으로부터 매입에도 잘 활용하고 있다 → 상품·기획제안
- ②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오타시장 M社 : 평소 산지를 돌면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매입하여 백화점 등에 고급품으로서 납품하는 루트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는 수량이 많지 않고 섬세한 상품 판매이기에 도매법인으로서의 좀처럼 진출하기 힘들다.



7. 중도매인의 자금순환 악화에 따른 도매시장 결제기능의 약체화

도매법인으로서는 판매처인 중도매인 등의 경영악화로 대금결제 기능이 잘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류였던 중도매인조합을 통한 대불방식에서 결제센터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금지불이 연체된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중지(거래참가 자격 정지)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치바시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 C社(청과)의 갑작스런 도산으로 출하자에 대해 2억엔의 대금 미지불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자경매와 은행계좌를 통한 정산을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도 화훼분야에서는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8. 전자시스템의 보급

도매시장에서의 컴퓨터 시스템의 보급도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거래결과의 경리처리가 초기단계에서 컴퓨터화 되어, 청과물의 베지후루시스템(ベジフルシステム)과 같이 도매법인으로부터 판매결과 데이터를 산지출하단체에 온라인으로 송신하는 시스템도 일반화 되어있다.

또한 화훼부나 축산부에서는 경매거래의 컴퓨터화가 진행되어, 거래결과가 즉시 컴퓨터 데이터화됨에 따라 경리처리가 보다 합리화되었다. 더욱이 수산물부에서는 경매 데이터를 현장에서 음성입력하는 시스템이 센다이시장과 츠키지시장 등에 실용화되어 있다.

화훼부에서는 경매거래의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여 외부선과 연결하여, 전국 구매자로부터 온라인으로 경매에서 주문을 받는 시스템도 실용화되고 있다. 장래에는 경매자체를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참가하는 시스템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태그(IC태그, IC칩이라고도 함)의 기술발전에 따라, 상품별로 전자태그를 붙인 물류 관리에 이용하려는 실험이 시작되었고, 장래 도매시장의 장내외에서의 물류관리와 생산자이익의 고도화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9. 상품분리의 증가

최종수요자(슈퍼마켓과 외식업체, 식품가공기업 등)에게 납품하는 수량이 커서 트럭1대분에 되는 경우에는, 商談은 도매법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물류는 산지에서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것이 상품분리이다. 또한 현물이 산지 등 도매시장 외에 있는 것을 정보거래로 인터넷상에 상장한 경우에도 주문자에게 직접 배송하면 상품 분리인 것이다. 원래 도매시장에서는 현물주의로 상품분리는 위법이었으나, 1999년 개정도매시장법에서 합법화 되었다. 다만, 동일 개설구역 내의 장소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만 합법화



하였기에, 그 효과가 미미하였고 확인도 어려웠다. 상품분리가 많아지면 도매시장의 현물기 능이 축소되고, 도매시장의 존속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전면적인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 시장 유통인의 통합 움직임

① 동경의 청과부문을 중심으로 동일 시장 내의 도매법인끼리 합병 추진(대부분 단일화)
→ 世田谷市場, 北足立市場, 葛西市場, 築地市場, 淀橋市場, 豊島市場 등 9개 시장 중 6개 시장이 실시

② 수산에서는 大阪市중앙도매시장의 大水(도매법인)에 의한 神戸市중앙도매시장, 京都중앙도매시장의 수산 도매법인 흡수·합병 사례

유통의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법인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경영악화로 인한 도매법인의 갑작스런 도산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山形市중앙도매시장의 청과도매시장에서는 山果의 도산)

〈표3〉 도매시장 경유율의 변화

(단위 : %)

년도	구분	청과		수산물	축산			화훼	
		야채	과실		소	돼지			
1985		85.2	87.4	81.4	76.9	22.2	37.6	156	776
1989		83.0	85.8	78.0	746	235	434	135	830
1990		81.9	85.2	76.1	721	226	382	140	823
1991		80.6	82.9	76.2	767	196	341	123	866
1992		79.6	85.5	69.9	756	179	288	117	831
1993		80.0	84.8	72.0	70.2	16.3	22.7	12.1	85.8
1994		74.7	82.7	62.8	70.2	16.0	22.5	11.5	85.1
1995		74.2	80.8	63.4	67.6	15.5	21.5	11.1	81.9
1996		74.8	82.6	61.7	69.4	14.9	21.5	10.6	84.1
1997		74.7	83.0	61.6	71.0	15.1	20.4	11.2	85.5
1998		74.8	82.8	61.7	71.6	15.5	20.3	12.1	85.6
1999		71.4	83.0	57.2	68.6	16.7	22.5	12.8	83.7
2000		70.9	79.2	57.6	66.2	17.1	23.3	12.6	79.1
2001		69.3	79.4	54.1	62.5	14.3	18.5	11.8	79.6
2002		70.3	80.0	55.5	61.2	13.4	17.7	11.0	79.7
2003		69.5	79.2	54.0	63.2	12.2	15.8	10.3	80.9
2004		65.8	76.8	49.0	62.9	11.6	17.3	9.0	82.6
2005		64.8	75.4	48.6	61.3	10.3	16.4	7.5	82.8

※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을 경유한 비율이다.



11. 도매시장 경유율의 저하

근래 도매시장의 커다란 특징은 도매시장 경유율이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3> 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과물에서는 채소, 과일 모두 도매시장 경유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채소에서 감소한 이유는 슈퍼마켓 등이 특정 산지로부터 대량 구매를 한 것과 직판소 등을 통한 산지 현장에서의 유통이 확대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VI.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과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

1.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에 이르게된 경위

2004년에 개정된 도매시장법은, 1923년 이 후 공설공영을 축으로 이어져온 일본 도매시장제도를 크게 변화시킨 내용이다.

이제까지의 경위는 이하와 같다.

- 1923년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 1970년 중앙도매시장법의 폐지와 도매시장법의 제정
- 1994년 도매시장법 개정(예약상대거래의 확대를 통한 「선취」의 감소 목적)
- 1999년 도매시장법 개정(경매·입찰 뿐만 아니라 상대거래도 원칙적인 거래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각 도매시장의 선택에 맡겼다. 시장회계 약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설자의 교대(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제도화
- 2004년 도매시장법 대폭 수정

2. 2004년 개정 도매시장법의 내용

A. 취지

최근에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생산·소비 양측의 기대에 맞는 「안전·안심」에서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도매시장에서의 거래규제 완화 및 적정한 품질관리의 추진, 도매시장의 재편 원활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B. 법안의 개요

- 1) 도매시장에서의 품질관리 고도화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신선식료품 유통의 확보를 이루기 위해, 농림수산 대신은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 등에서 품질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개설자가 업무규정에서 품질관리의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2) 상물일치 규제의 완화

전자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거래방법으로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도매를 할 경우에는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지 않고 도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도매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완화

도매법인 등의 사업활동 자유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매법인 등의 매취집하, 시장의 예서의 판매, 기능·서비스에 맞는 위탁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4) 도매시장의 재편 촉진

유통의 광역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발맞추어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서는 지역의 특성·요청을 충분히 배려한 시장별 자주성을 기본으로, 운영의 광역화 또는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중앙도매시장을 선정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의 재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절차규정을 정비하였다.

5) 중도매인에 대한 재무기준의 명료화

중도매인의 업무 적정과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자가 업무규정에서 중도매인의 재무기준을 정하여 이에 기초한 경영 개선을 이루도록 하였다.

6) 거래정보 공표의 충실

도매법인이 행하는 거래정보의 공표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성 높은 시장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경매·상대거래 등의 구분별로 판매예정수량을 공표하는 등 공표 내용의 충실을 기하였다.

C. 시행일 등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탁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도매시장법에 기초한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A. 식의 안전·안심에 대한 대응

→ (예)품질관리책임자의 설치 / 도매장으로서의 트럭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역체제 정비 /



재활용 용기의 세척살균 철저

B. 도매시장의 재편

→ 이하의 ①~②의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앙도매시장은 재편을 실시한다.

- ① 취급수량이 개설구역의 수요량 미만
- ② 취급수량이 일정규모 미만
- ③ 취급수량이 직전 3년연속 감소하고 할 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 취급량이 현저하게 감소
- ④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a. 시장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繰越金(회계감정을 다음 회계로 넘기는 것)이 3년 연속하여 총무성의 기준 초과
 - b. 주된 도매법인이 3년간 연속해서 경영개선 명령의 요건에 해당

재편기준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하의 조치 중 하나를 검토

- ① 시장운영의 광역화
- ②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
- ③ 타 도매시장과의 연계·통합 등

Ⅶ. 공설공영제의 붕괴와 민영화하는 일본 도매시장

1. 공설제에 대하여

도매시장법 제정시에는 공설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공설제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 배경에는 1980년대 중앙도매시장의 전국 배치가 끝나면서, 노후 된 시장의 재건축과 시장통합에 따른 시장의 대형화와 시장의 수가 늘어나면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도매시장의 수를 줄이자는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공설도매시장은 개설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식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설명되지만, 대형도매시장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이용하더라도 상기의 목적은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유통인의 경영상태도 나쁘고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이고, 개설 지자체로서도 시장회계가



적자로 재정부담이 된다. 또한 유통권이 광역화한 도매시장의 개설 지자체는 유통권이 개설 구역을 훨씬 넘는 규모가 되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곤란하다.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에서는 지정관리자제도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시설·설비의 유지관리와 사용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기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개설 지자체가 이러한 업무(시장관리업무)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공설제가 흔들리는 이유의 하나이다.

2. 민영화의 전망

이러한, 공설도매시장에서의 개설지자체 업무 가운데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거래의 감시·감독에 대한 것이다. 중앙도매시장에서의 각종 허가나 인가업무는 행정고유의 책임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간기업에게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이는 1923년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에서의 거래원칙과 그 준수를 위한 감시체제의 근간부분이다.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에서는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 후에도 거래의 허가 및 인가업무는 그대로 공영제가 유지될 방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의 인허가 업무는 1970년의 도매시장법 제정 이래 거듭되어온 규제완화로 매일같이 경매 개시시각 이전에 인허가 해야 할 필요성은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다. 즉, 거래의 인허가 업무가 形骸化되어있다. 이러한 점을 모순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매법인 등 도매시장 업계에서의 거래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제를 도입하여 행정은 사후검사로 부적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지도·감독하는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도매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3. 도매시장건설의 PFI방식 도입

이제까지는 도매시장의 시설정비계획, 설계 등은 개설 지자체가 하여왔으나, 이것을 외부기업이 하청받아 처리하는 PFI방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완성한 시설의 소유권은 개설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PFI방식의 이점이라면, 행정이 전체 계획 설계를 하는 경우 건축 단가기준이 높아져 비용이 많이 드는데 PFI방식으로는 경비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은 예산의 단년도 주의로 집행이 되지만, PFI방식에서는 다년도에 걸쳐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의 발상이 유연하고 확실적이지 않은 설계가 기대된다. 2004년말에 개항한 愛知県 중부국제공항(센토리아 공항)은 PFI방식에 따른 사업의 성공 사례라 할 것이다.



4. 광역거점 도매시장의 기능충실

이제까지 일본의 도매시장 모습을 보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이라는 분류는 사실상 의미를 잃고, 광역거점도매시장과 지역유통도매시장으로 구별된다. 이 중에서도 동경도 중앙도매시장·토요스시장계획(츠키지시장의 이전확대)는 40헥타의 용지를 갖는 현재 츠키지시장 용지면적의 2배로 기능이 강화된다. 2014년 개장예정이나 이전부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이곳은 친환경적이고 동선확보를 위한 IC기술도입과 전면폐쇄형 고층식 플랫폼, 팩가공시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동경도지사는 토요스시장에 대해 수도권 3000만명의 거점시장으로 공언하는 만큼, 수도권 타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부가 중심이기는 하나 청과물부도 전국 3위의 거대시장이다.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오타시장과 합쳐 광역거점시장으로 현재의 도매시장 기능을 넘는 유통기능을 보이고 있다.

5. 품질관리 강화와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

품질관리 강화는 2004년 개정도매시장법의 중점사항 중 하나이다. 2001년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식품의 안전·안심 시스템의 구축이 농수산행정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도매 시장으로서는 저온시설의 충실과 도매장 전체를 저온화하는(폐쇄형 구조), 소독·위생기능의 강화, 시장 내로의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물류동선의 확보,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의 도입 등의 추진이 과제가 되고 있다.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방식이 기업에서 검토되어왔다. 현재에는 점두에 있는 컴퓨터로 고객이 검색하는 시스템 보다도 QR코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의 바코드리더 기능을 통해 생산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그비키타스(유비쿼터스) 食의 안전·안심 시스템 개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안심이라고 한다면 채소 등의 농약사용정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그 정보개시 시스템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표기된 농약정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6. 시장간 네트워크 시스템

전국적인 규모의 도매법인간 정보교환 시스템 기능도 검토되고 있다. 청과에서 상위 5개 법인이 만든 네트워크 시스템은 현재 참가자 모집중이다. 필요한 물품의 정보교환 등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동북네트 등 여러 가지 시장간 네트워크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일부 품목에 한정했고 전체적인 실시는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시장분산에 따른 물류(배송)비용과 시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이후에는 동아시아를 범위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가능할지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하겠다.

Ⅷ. 일본의 도매시장 제도변천에 대한 고찰

이상과 같이,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면 제1단계는 1923년의 중앙도매시장법 제정까지로 17세기 이후의 도매상제 도매시장이었고, 제2단계는 1923년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을 출발점으로하는 공설공영제 도매시장 시대로 이것은 중앙도매시장법체제하의 전반기와 도매시장법체제하의 후반기로 나뉜다. 제3단계는 공설공영제 도매시장체제와 도매시장개설과 관련한 지역주의의 붕괴, 광역거점시장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 할 것이다. 현재는 제2단계의 후기에서 제3단계로 이행되는 과도기라 보면 될 것이다. (그림-1참조)



【그림 - 1】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변천과정

구분		특징
제 I 기	에도시대~다이쇼시대 問屋制 도매시장	【民設民營의 상인제(다수의 問屋 집합체)】 사기적 행위의 횡행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공설도매시장에 대한 필요성 대두 공평·공정거래의 담보로 公設公營制와 경매원칙 대두
제 II 기	1923년 중앙도매시장법	【公設公營制】 중앙도매시장의 우선(중앙시장개설구역내의 시장 제한) 도매법인의 영업제한 (위탁수수료 이외의 보수수수 금지) (매취집하 - 자기계산에 따른 도매 금지) 거래의 공평·공정제 확보 (경매·입찰원칙) (차별적 취급 금지)
제 III 기	1970년 도매시장법	(현물주의 - 선취, 선관매 금지) 【公設公營制의 붕괴과정】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규제완화 (「선취」·상대거래의 용인·규제완화) (예약상대거래 제도의 신설)
	1999년 도매시장법 개정	도매시장 재편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 제도) (지방도매시장의 통합과 중앙도매시장의 전국전개)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	상대거래의 원칙 거래화 상물분리의 허용 개설자의 지위 승계(변경) 허용 시장재편의 가속(중앙 → 지방도매시장화의 용인) 정보거래의 용인(상물분리와 연동) 중도매인의 경영 체크와 퇴출 제도 정액 위탁수수료제 재검토 품질관리의 강화(시장간 격차 확대 원인)
제 IV 기	이후의 도매시장	【公設公營制의 붕괴와 시장기능의 확대·시장의 기능과 융합】 민영화 추진 / 도매시장의 도태와 재편 개서구역제의 애매화 거래의 규제완화 시장의 유통과의 경계 불명확화와 통합화 대형 도매시장의 유통센터화



별첨 12.

농수산물 시장유통용어 2)

❓ 객주(客主)

전국 각지의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매매를 주선하며, 그에 부수되는 창고업·화물수송업·금융업 등 여러 기능을 겸하는 중간상인을 말한다.

그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나 고려시대에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좁게는 행상, 넓게는 객지 상인의 모든 거래를 주선하여 주는 사람의 뜻을 갖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약자이다. 주된 업무는 위탁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 간접 매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위탁 매매업을 담당하였다. 그 이외에도 부수 업무로서 위탁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숙박을 제공하는 여숙 업무, 화물을 가진 사람이나 살 사람에게 대해 대금입체(貸金立替)·자금 제공 등의 금융 편의를 위한 금융 업무, 각종 물화(物貨)를 무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 업무, 그리고 화물 운반을 위한 마차나 마방(馬房) 또는 선박을 알선하는 수송 업무를 맡았다. 말하자면 객주는 상품의 위탁 판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던 상인이었다.

❓ 거간(居間)

거간은 과거 모든 상품 유통에 개입하여 갖가지 흥정을 도맡아서 하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중개인이었다. 현행 상법상 중개인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더 포괄적인 뜻을 갖는다. 거간은 중개인의 전신(前身)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활동 범위는 오늘날의 중개인보다 넓었고, 그 유형 또한 복잡하고 다채로워 “거간 없이는 거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 계류(繫留)

농장에서 수송되어 온 가축을 도살 전 12~24시간 동안 머물러 있도록 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하게 하는 조치이다. 계류를 통하여 육색을 좋게 하고 저장성이 높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2) 해당 내용은 「新 농산물 유통(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09)」의 내용을 인용
법령관련 내용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행주체 등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통 출하(系統出荷)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지 않고, 단위 농협 또는 작목반 등에 위탁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출하에서 최종 정산 시까지 생산자 개개인의 명의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공동 선별이나 공동 계산 등을 하는 공동 출하와 구별된다.

❓ 공동 출하(共同出荷)

공동 출하란 공동 선별, 공동 수송, 공동 계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래 영세한 다수의 농민이 판매시기, 판매방법, 판매처를 통일하여 개개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소량 상품을 대량 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 출하와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업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단위당 비용을 감소시키며, 영세한 출하 농민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채소류와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은 공동 계산을 통해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 관련상품 상인(關聯商品商人)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무·배추·오이 등 산물 상태의 1차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 이외에 된장·고추장·간장 등 농수산물의 2차 가공 식품이나 절임 식품류 또는 제수용품이나 포장재 등을 취급하는 상인으로서 도매시장에서 각종 식자재를 일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 구색(具色)

취급 상품의 계열 수를 다양화하고, 규격·스타일·색깔·무늬·크기·상표 등 상품의 깊이를 더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을 말한다.

❓ 기록 상장(記錄上場)

농안법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농수산물 중 경매 지정 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경매 절차를 거쳐 판매하여야 하나, 서류상으로만 상장경매 절차를 거친 것처럼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하자가 중도매인 명의로 물건을 올리면 중도매인이



서류상으로만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고 물건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한 후 상장수수료를 출하자 물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허위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냉장육(冷藏肉)

냉장육이란 소나 돼지를 도축한 뒤 저온(0℃~4℃)에서 보관한 “얼리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냉동육에 비하여 육질에 큰 손상을 주지 않아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냉장 온도에 따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 농산물 표준 규격화(農産物標準規格化)

농산물 표준 규격화란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 출하 규격에 맞도록 품질·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 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은 품종·재배 여건 등이 다양하여 생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부패·변질 등으로 선도 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상품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통 농산물의 표준 규격화가 필수적이다. 농산물이 표준 규격화되면 ① 신용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②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의 정확성 제고로 공정 거래 촉진 ③ 수송, 적재 등 물류 비용 절감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④ 선별·포장 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 다이

과일의 거래 단위로 한 다이는 10개를 말한다. 즉, 0다이는 1~10개, 1다이는 11~20개, 2다이는 21~30개 등이다.

❓ 대판, 중판

대판은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인으로 대부분 비허가 상인이다. 중판은 대판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상인을 말한다. 가락시장의 경우 주로 수산부류 상인을 의미하는데 2004년도에 선어·활어 중판·대판129명을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선어나 활어 취급대판·중판상인은 없으며 냉동물을 취급하는 대판·중판 상인이 다수 있을 뿐이다.

❓ 도리

경매 진행 시 복수의 동일 호가(같은 가격)가 나왔을 때 직전 낙찰자에게 낙찰시키는 것. 즉 첫 번째 경매에서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두 번째 경매 진행 시 A와 B 두 사람이 같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A라는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것을 말한다.

❓ 도매상제(都賣商制 ; 농안법상 “시장도매인제”)

우리 나라에서는 상장 경매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명칭으로, 농안법에서 정의한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시장도매인은 집하와 분산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성·신속성을 도모하고 상대 매매에 따른 가격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 도매업(都賣業)

재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 즉, 소매 이외의 모든 거래가 포함된다. 도매는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물 판매를 위해 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생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가 도매업이며 전자의 경우에도 판매를 위한 사업소(지점, 영업소)는 도매업으로 취급된다. 도매업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산물의 수집·중개·분산이고, 그를 위해서 상거래 활동(탐색, 접촉, 교섭, 계약, 결제 등)과 유통 활동(수송, 보관, 포장, 선별, 구색 갖추기 등)이 행해지며 나아가 정보 전달이나 금융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 도체(屠體)

소, 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과 정육을 말한다.



❓ 떴다방

소형 차량(트럭)을 이용하여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아파트나 도시 주거지역 등으로 다니면서 순회 판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도부꾼이라고도 한다.

❓ 매취 판매(買取販賣 ; 매수 판매)

자기 계산으로 출하자에게 물품 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한 후 물품을 사들이고 마진을 붙여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반출상(搬出商)

수집상이 매집(買集)한 상품을 대량으로 집하·포장하여 소비지, 집산지 또는 가공 공장으로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금융 및 위험 부담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배송(配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쓰이는 의미로는 상품의 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즉,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상품이 시장 밖의 소매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 보부상(褫負商)

신라 시대 이후 자유 경제의 기반 위에 물물 교환을 매개하던 행상인으로 그 발생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려 말에는 보부상을 이용해 소금을 운반한 기록이 있다. 정기 시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유통시켰던 보부상들은, 조선 중기 이후 규율이 엄격한 조직체로 발전했으며, 특히 개성 상인들은 보부상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보부상은 직물·금·은·화장품·가죽 세공품 등 비교적 값비싼 잡화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던 붓집 장수인 보상(褫商), 그리고 도기·소금·담배·어류·해초류 등 일용품을 지게에 지고 다니던 등짐 장수인 부상(負商)을 함께 지칭한다. 이들은 정기 시장에서 유통의 왕자로 군림했으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 교통이 발달하고, 상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또한 시장 경제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정기 시장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 부산물(副産物)

축산물 도축 후 도체에서 분리되는 생산물로서, 소 부산물은 “두·족·내장·간·염통·허파·지라·우랑·등골·쓸개·지방·우피”이며, 돼지 부산물은 “두·족·내장·지방·돈피” 등이 있다.

❓ 선물 거래(先物去來)

매매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대상물의 인도와 대금 결제는 미래의 약속된 일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농축산물의 경우는 실물 상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품 선물 거래라 하고 통화, 금리, 주식, 주가지수 등의 금융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금융 선물 거래라 한다. 주로 생산에서 운송에 시간이 걸리는 물건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선어(鮮魚)

신선한 어류를 지칭한다. 품질 면으로 보아 원상태로부터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며, 시장 용어로는 저온으로 보존되어 있는 미동결어를 지칭하고 있다.

❓ 소매(小賣)

소매업자와 상품 소비자 간의 상품 매매 거래를 보통 소매 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소비자 중에는 산업용품 소비자로서의 상품 생산자가 포함되기도 하며 또 다량으로 일용품을 수용하는 상품 소비자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까지도 소매 거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거래 객체를 표준으로 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판매를 소매 거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상품 특히, 소비자용품을 최종의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상업을 소매업이라고 한다.



Ⅰ 소매업태의 유형 Ⅰ

구분	개념	특징
백화점	□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서 한 건물 내에서 일괄 구매와 비교 구매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소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종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 각 상품군을 전문화, 대면판매를 기초로 일괄 구매 • 정가 판매와 통신 판매
백화점	□ 제품 범주별로 다양한 상표와 모델이 판매되며, 고급 실내 장식과 점포 내 재고가 유지되며, 다양한 대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윈스톱 쇼핑의 이점이 최대한 보장되는 소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적 경영수행, 점포는 대도시를 중심, 부도심 및 철도역, 터미널 등 교통소통이 원활한 곳에 입지 • 정찰 판매, 현금 판매, 할부 판매 및 소비자 신용을 통해 신용도 제고 • 독립 재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각 부문별로 상품의 매입·구색·가격·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 위험 분산
수퍼마켓	□ 대부분의 일반 상표 및 판매 회전율이 높은 제품 모델을 취급하고, 재고 상품과 신선 상품 등 일용품과 편의품을 주로 판매하며 비교적 편리·저렴한 가격대의 생필품을 취급하는 현대화된 소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관리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식품계 종합점 • 셀프서비스와 초염가 판매 • 비교적 넓은 매장 보유와 대규모화 • 중앙 집중 구매 방식의 채택
할인점	□ 대중적이고 실용적으로 상품을 구성하며, 상품 가격의 상한·하한 간격을 좁혀 chain operation 경영을 주로 하는 박리다매형 셀프서비스 업태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저가격 판매 • 셀프서비스로 제품 판매 • 낮은 마진율(20~30%)로 박리다매에 의한 대량 판매
편의점	□ 대규모 소매상이 제공할 수 없는 편리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미니슈퍼와 같은 형태로 시작된 근린형 소형 소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영업으로 시간적 편리성 • 근린형으로 거리상의 편리성 • 점포 레이아웃의 콤팩트화로 쇼핑시간 단축 • 상품 구색 테마가 명확하여 이용 편리 • 배송 시스템 정비로 신속한 상품 공급의 편리 • 상품 배치 단순화로 상품 선택의 편리
하이퍼마켓	□ 수퍼마켓과 할인점의 개념을 조합하여 식품과 비식품 매장을 통상 3배 이상 확대하는 대형 소매업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교외에 입지하며 넓은 주차장과 셀프 서비스를 채용하고 비회원도 출입 허용 • 기존 회원제 창고점의 상품 진열에서 취약했던 식품 비율을 강화하고 저마진·고회전 경영 지향 • 매장 구성은 창고 형태로 운영



구분	개념	특징
쇼핑센터	□ 백화점 및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 입주점으로 하고 각종 전문점을 비롯하여 문화교실, 레저 스포츠 시설, 공공시설 및 금융시설 등이 복수 입주하는 종합 생활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동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편의성, 일괄 구매, 다수 점포, 풍부한 상품 • 다양한 여가 업종, 오락의 24시간성 • 패션, 윈도우 쇼핑, 현대적 감각과 장식, 도시적 무드, 점포의 개성 • 휴식 공간 확대
아울렛	□ 메이커와 백화점의 비인기 상품, 재고품, 하자상품 및 이월상품 등을 자사 명의로 대폭적인 할인가격(30~70%)으로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동종 점포가 출점하여 쇼핑센터를 이루는 형태 • 대부분 물류 창고나 관광 단지 등에 입지

❓ 속박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박스 상단에는 좋은 품질의 것을 담고 하단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담는 것을 말한다

❓ 수직적 통합(垂直的統合 ; 종적 통합)

이는 특정 유통 기관이 유통 단계상 앞쪽이나 뒤의 단계에 있는 다른 유통 주체가 수행하던 유통 기능을 통합·수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종적 통합”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도매상이 소매상을 통합하면 전방 통합이고, 반대로 생산 기능을 통합하면 후방 통합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른 유통 기관을 매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거나 혹은 계약에 의해 지배력을 가짐으로써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수집상(蒐集商)

소량의 생산품을 매집(買集)하여 이를 반출상에 인도하거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통 자본력이 약한 소상공인으로서 농안법에서는 “산지유통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기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나 전보로 시장의 상품 동향 및 가격을 연락받고 농민들에게 구매 가격을 제시하며 대체로 운송에 적합한 양이 수집될 때까지 혹은 중앙시장의 시세가 호전될 때까지 보관하는 시설을 가진다. 수집상은 출하 업무 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 수평적 통합(水平的 統合 ; 횡적 통합)

다른 입지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다른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것과 같이 특정 유통 기관이 수행하는 유통 기능의 횡적인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차원에서 인식되는 개념이며 “횡적 통합”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어떤 철물점이 다른 비슷한 철물점에서는 보통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여 폭넓은 상품 구색을 갖추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의 동일한 기능이 중복되어 수행되거나 또는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하나의 유통 기관에 의해 수행될 때 이를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 아도

한 물건을 몽땅 사는 것을 말하며, 몽땅 사는 사람을 아도꾼이라 한다.

❓ 앞자리상

중도매인 점포 앞에 좌판을 깔아놓고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비허가 상인을 일컫는다. 보통 중도매인이 팔고 남은 물건을 싼값에 받아서 판매한다.

❓ 염건(鹽乾)

원료어를 염장(鹽藏)한 다음 건조한 것. 전갱이·정어리·꽂치·고등어 처럼 알맞게 짠맛을 붙여 식미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간대구처럼 염장함으로써 수분을 일부 탈수시키는 동시에 식염의 방부력으로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 염장(鹽藏)

식품 보관법의 하나로 어류, 육류, 채소 등의 식품에 다량의 식염을 뿌리든가(마른간법), 식품을 진한 식염수에 침지(물간법)해서 저장하는 것이다.

❓ 오대

큰손을 의미하는데 농수산물의 경우 한 품목에서 거래규모가 5걸 또는 10걸안에 드는 거상을 일컬어 오대라 한다.



❓ 예냉(豫冷)

신선 농산물의 품질 및 저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작물마다 수확 후 최적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작물을 수확 즉시 저온 저장 또는 수송에 적합한 저온으로 예냉을 실시한다. 예냉을 실시하면 중량 감소를 억제하여 산물을 신선하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채소류에 풍부한 비타민이나 다른 기능성 물질의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 예냉 온도는 각 농산물마다 다르나, 딸기의 경우 예냉 온도는 5℃ 이하이다.

Ⅰ 예냉의 종류 Ⅰ

냉각실 냉각 (Room Cooling)	산물을 저온 저장고 내에 보관함으로써, 대류에 의해 산물로부터 주변의 찬공기로 열이 방출되는 방식
차압 통풍식 (Force-air cooling)	과일, 채소류, 절화의 예냉에 널리 사용되며, 포장 용기 내부의 산물 사이로 찬 공기를 강제로 통과하도록 장치가 가동되어 산물로부터 열을 뺏으므로써 냉각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식
수냉식 (Hydro-cooling)	산물을 냉각수에 직접 담군 채로 이동시키거나, 적재된 상자 위로 냉각수를 샤워기처럼 뿌리는 방식
얼음 냉각식 (Package icing)	조각난 얼음이나 가루 얼음을 직접 또는 주머니에 담아서 원예산물 위에 치상하는 방식
진공식 예냉 (Vacuum cooling)	신선 농산물을 밀폐된 용기 내에 두고, 외부에서 펌프로 용기 내부의 압력을 낮춤으로써 조직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방식

❓ 위탁 판매(委託販賣)

상품이나 증권의 매매를 자기가 스스로 행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위탁 판매라 하고, 구매를 위탁하는 것을 위탁 구매라 한다. 예컨대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경우 농수산물을 위탁 받는 수탁자는 도매시장법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이 된다. 이러한 위탁매매를 간접 매매라고도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를 해야 하는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에게 직접 판매를 의뢰하는 불법거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위탁상(委託商 ; 객주)

불특정 다수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 중간상으로 위탁 판매를 업으로 하며, 위탁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과거에 객주라고도 불리던 이들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흥정을 하는 대리상으로, 위탁자와 장기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는다. 대체로 농수산물의 경우 자신의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려 하지 않거나, 농·수협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민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다. 위탁상은 한 트럭 분 정도의 상품을 중앙시장에 반출하여 그것을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수료와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한다. 중개상과의 차이는 계약 이행 시의 구속성 유무 및 판매 상품의 직접 취급 유무이다. 즉 중개상은 위탁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으며, 판매 상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관리를 하지 않음에 반해 위탁상은 위탁 조건에 따른 제약을 받으며 위탁 상품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 유사 도매시장(類似都賣市場)

특정 장소에 자연 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었거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개설된 시장 또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주변으로 상권이 확장, 형성되어 농수산물의 도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개인 위탁상에 의한 수탁 판매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 유통 단지(流通團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유통 시설”과 “지원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유통 시설”은 상품의 수송, 보관, 포장, 하역, 가공, 통관, 판매, 정보 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규모 점포, 공동 집매송 단지 및 전문 상가 단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및 물류센터, 농·수협의 구매·판매 관련 시설과 화물터미널 등을 의미한다. “지원 시설”은 유통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 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농수산물 종합처리장, 가공품 생산 공장, 미곡 건조 보관·가공 시설, 정보 처리 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유통 단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예외적으로 100만㎡이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송(移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쓰이는 의미로서 ‘이송’이란 경락된 상품을 경매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로 이동하거나, 중도매인 점포와 점포 사이에 상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주로 시장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의 이동 과정을 말한다.

❓ 입도 선매(立稻先賣)

궁핍한 미작(米作)농가가 현금 취득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수확 전에 미곡 상인이나 고리대금 업자에게 미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적인 농업 경영이나 금융의 길을 갖지 못한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농가 경제의 궁핍을 이용하여 염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전송(轉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용되는 의미로서의 ‘전송’이란 도매시장 간 상품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A라는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상품이 B라는 도매시장으로 재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 중개상(仲介商 ; 거간 ; 중개인)

특히 시황에 밝아 시장 정보 기능을 겸한 중간상으로서, 매매 당사자의 중간에 개재하여 거래를 매개하며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소개 상인이다.

따라서 소유권에 수반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매 쌍방을 장기적으로 대표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중간에 개입하는 자로 중개 기능만 수행할 따름이다.

❓ 지육(枝肉)

식육 동물 도체 후 부산물(내장, 간, 염통 등)을 제외한 상태를 말한다.

❓ 주재 하주

도매시장에 출하자들이 농수산물을 출하하면 출하자들을 대신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상장



하거나 상장외의품목을 중도매인에게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민들이 지방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시장정보도 부족하고 가격 교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친척이나 동네별로 믿을만한 대표를 뽑아 도매시장에 상주시키면서 출하업무를 전담시키는데, 출하뿐만 아니라 가격홍정 및 가격 결정 관리 감독, 시장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직송 도매상(直送都賣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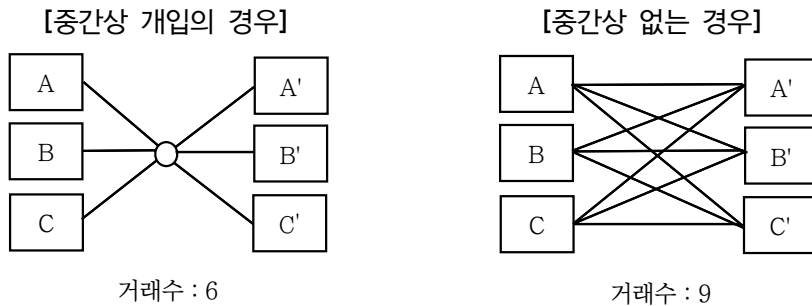
생산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대상 상품은 생산자의 창고에 보관하여 둔 채 소매 상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주는 도매상이다.

❓ 직판 상인(直販商人)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종의 소매상인을 말한다.

❓ 총 거래수 최소의 원리(principle of minimum total transaction)

유통 경로에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거래수가 결과적으로 크게 단순화·통합화되어 실질적인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출하 선도금(出荷先渡金)

조합원이 사전에 농산물 출하를 약정했을 때 예상 판매 가격의 80%까지 미리 지급하여 줌으로써 수확기에 집중 출하하여 “궁박(窮迫)판매”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 출하 장려금(出荷獎勵金)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상장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칼질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격을 높게 해주어 출하자를 유인한 다음 성출하기에는 가격을 낮추는 것을 뜻한다.

❓ 트럭 도매상

소매상에 대해 판매와 배달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판로를 확대해 가는 도매상으로서 주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부패성이 강한 한정된 상품 계열만을 취급하면서 슈퍼마켓, 소규모 야채상점, 병원, 음식점 및 호텔 등을 순회하면서 판매한다.

❓ 판매 장려금(販賣獎勵金)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상장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 포전 매매(圃田賣買)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 하매인

중도매인에게 직접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소매상인을 말한다.



? 하인(荷印)

포장 화물의 표면에 기입하는 특정한 기호, 목적지, 취급상의 문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의 목적은 화물 취급자로 하여금 다른 물건과 구분하여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에 편의를 주는 데 있다.

? 하주

출하주를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 후려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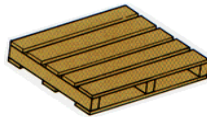
청과물 또는 수산물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행위로서 출하주에 대해서 매입자가 가격을 흑독하게 깎아내려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 Pallet

화물을 일정 수량 단위로 모아 하역, 보관,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역 받침이다. Pallet(팔레트)는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 목재 Pallet, 철제 Pallet, 플라스틱 Pallet, 종이 Pallet 등으로 나누어 진다. 사용하는 측면 수에 따라 단면형과 양면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게차가 Pallet를 들어 올릴 수 있기 위해 지게차 팔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수에 따라 2차입식과 4차입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KS 표준 팔레트 규격은 가로 세로 1.1미터의 정방형 팔레트이다.



1) 단면형, 2방향 차입식



2) 양면형, 2방향 차입식



3) 단면형, 4방향 차입식

? PPS(Pallet Pool System)

Pallet의 규격, 척도 등을 표준화하고 상호 교환성이 있도록 한 후 이를 서로 Pool로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기업의 물류 합리화를 달성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 농산물 통용어 |

품 목	품종의 통용어	용어 해설
감자	수미	수미(秀美) 감자
	조풍	봄, 여름 1기작용 품종
	대지	대지(大地) 감자
	남작	재배 역사가 가장 긴 식용 감자
호박	쥬키니	비딩굴성, 장원통형의 과형
	단호박	암록 반점의 편원형 서양계 호박
	늙은 호박	건강식 수요로 쓰이는 숙과용 호박
	애호박	성숙이 덜된 재래종 어린 호박
딸기	육보(레드필)	과육은 부드러우나 과피가 단단한 딸기
	여봉	저장성 및 당도가 높은 딸기
	여홍	저장성이 떨어지는 대과형 딸기
	수홍	원추형이며 당도가 높은 딸기
고추	한초 (조선고추)	재래종 건고추
	호초(호고추)	개량종 건고추
	건고추 양건	햇볕에 말린 고추
	건고추 화건	화력에 의해 건조한 고추
	푹고추	푹고추
	붉은 고추	건조되지 않은 붉은 고추
	파리 고추	모양이 찌글찌글한 소형 푹고추
	청양 고추	광택이 나는 매운 고추
	색초	모양이 가늘고 길며 색택이 짙은 건고추
	얼치기	재래종과 개량종 중간 정도의 크기인 건고추
	희나리	건조 상태가 나빠거나 병해로 인해 흰색 또는 푸른색이 혼합되어 건조된 품질이 낮은 고추
	백통	80% 이상이 흰색으로 건조된 고추
	땡초 (대추 고추)	파키스탄산 수입 고추
	하늘초	하늘 방향으로 열리는 아주 작은 고추
	지렁이초	인도산 수입 고추, 국내 재배분으로 가늘고 길며 모양이 꾸불꾸불한 고추
불갱이	서리를 맞아 착색이 불안정한 건고추	



품 목	품종의 통용어	용어 해설
마늘	올마늘	조생종(早生種) 햇마늘
	별마늘	쪽이 많고 열구가 심한 난지형 마늘
	육쪽 마늘	한지형, 재래종 마늘
	토종 마늘	재래종 마늘
	아까 마늘	구(球)의 색택이 얇은 붉은색의 재래종 마늘
	암마늘	열구된 마늘
	백마늘	수입산 마늘의 국내 재배분으로 외형이 크고 백색인 마늘
	통마늘	줄기를 제거한 상태의 마늘
	쪽마늘	쪽을 분리한 상태의 마늘
	간마늘	껍질을 벗긴 마늘
양파	옥파	구(球)가 작고 둥근 양파
	하스끼	있달린 상태로 거래되는 조생종 햇양파(주로 제주산 햇양파를 일컬음)
	하기리	있을 제거한 후 망 단위로 거래되는 양파
	숫양파	추대가 된 양파
파	대파	길이가 40cm 이상으로 큰 파
	가랑파(중파)	길이가 30cm 정도의 파
	당파	쪽파
	로스파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대파
	냉이파	제주도산 대파
	실파	있이 가는 파
	할로파	줄기와 잎이 연한 파
사과	후지	부사
	홍로	숙기가 9월 중하순경인 조생종 사과
	양광	숙기가 10월 상순인 중·만생종 사과
	아오리	여름 부사, 쓰가루
감	부유	숙기가 11월 상순인 만생종감
	서촌조생	숙기가 9월 하순인 극조생감
	차랑	숙기가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인 만생종감
	하지야	외관상 팽이 모양을 한 짧은감
	약시	과육이 부드러운 원형 모양의 짧은감



품 목	품종의 통용어	용어 해설
고구마	밤 고구마	붉은 색으로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으며 속이 밤처럼 견실한 고구마
	물 고구마	색택이 얇으며 수분 함량이 많은 큰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약간 누런 색으로 당도는 높지 않으며 속이 호박과 같음
오이	가시 오이	가시가 많고 주름이 많은 장과형(長果型) 오이
	청풍 오이	백침계 오이
	백다다기	반백색의 단과형 오이
	취청	겨울에 재배되는 오이 중에서 검푸른색 계통의 오이
	노각 오이	절임용 오이



Ⅰ 수산물 통용어 Ⅰ

품 목	품종의 통용어	용어 해설
고등어	생고	생물 고등어
	냉고	냉동 고등어
	염장	염장 고등어
	고돌이	고등어 새끼
	망치	일반 고등어의 별칭
갈치	풀치	성장이 덜된 어린 갈치
조기	석어	일반 조기의 별칭
	참조기	이마 부분에 ◇표시가 있음
	수조기	빨간색 조기
	부세	중국산 수입 조기
	굴비	참조기를 엮어 말린 것
명태	생태	냉장된 상태로 출하된 명태
	동태	얼린 명태
물오징어	이까	물오징어의 별칭
꽁치	삼마	꽁치의 별칭
돔	구로다이	검은 돔
	아까다이	붉은 돔
	배돌래기	적당한 크기의 돔
전갱이	아지	전갱이 큰 것(전갱이의 사투리)
	메가리	전갱이 새끼
임연수어	이면수	임연수어의 별칭
	새치	임연수의 새끼
방어	메지	방어 새끼
삼치	삼돌이	삼치 새끼
적어	열갱이	적어의 사투리
도루묵	은어	몸의 배쪽이 은빛이 남



품 목	품종의 통용어	용어 해설
건멸치	오바	가장 큰 멸치로 황백색에 6~8cm 이상
	쭈바	중간 정도 크기의 멸치
	혼쭈바	쭈바 중에서 크기가 균일한 멸치
	오쭈바	크기가 5~6cm 정도의 멸치
	고쭈바	쭈바보다 약간 작은, 길이 3~6cm 정도 의 황백색 멸치
	고바	고쭈바보다 약간 작은 멸치
	죽방	국물용으로 쓰이는 큰 멸치
	가이리	길이 2cm 정도의 멸치, 세멸치
	가이리고바	길이 2.5cm 정도의 멸치
	까나리(까네기)	몸통이 가늘고 긴 멸치
	실치	갈치 새끼를 건조한 것
	지리멸	길이 1cm 정도로 작은 애멸치
	지리 가이리	지리멸 보다 약간 큰(1.5cm 정도)소멸치
	오사리	7~8월 성어기 사이에 어획된 멸치
	중사리	8~9월 사이에 어획된 멸치
	만사리	10~11월 사이에 어획된 멸치
	늦사리	12월에 어획된 멸치
	건오징어	대이까
중이까		중간 정도 크기의 건오징어
소이까		작은 크기의 건오징어
근해산 오징어		동해안 근해에서 어획 건조한 건오징어
덤장 오징어		정치망으로 어획하여 건조한 건오징어
서해안 오징어		서해안에서 어획하여 건조한 건오징어
냉동 오징어		냉동 후 건조한 오징어
물하사끼		일본 홋카이도 근해에서 어획하여 건조한 오징어
얼룩이		건조 과정에서 변색된 건오징어
떡통		갑오징어



품 목	품종의 통용어	용어 해설
김	노랭이	누른 색을 띤 김
	하동 노랭이	하동 지방에서 출하되는 누른색을 띤 김
	광양 노랭이	광양 지방에서 출하되는 누른색을 띤 김
	청김	파래
	검청김	검청색을 띤 김
	흑김	검은색을 띤 김
	돌김	자연산 채취분으로서 햇볕에 건조한 김
	화입김	화력에 의해 건조한 김
	깔깔이	자연산 김
	오리	개량종 김
	히라	재래종 김
건명태	복어	말린 명태
	노가리	복어 새끼
	황태(노랑태, 언태, 동지태)	1. 5~5개월 간 얼렸다 말렸다 20회 이상 거듭한 것
	영태황태	4~5개월 정도 높은 산에서 말린 것
	바닥태황태	45~75일 정도 바닷가 덕장에서 바닥에 깔아 말린 것
	반황태(반노랑태, 얼바람태, 반얼태)	35~45일 정도 말린 것
	흑태, 먹태	5~30일 정도 말린 것
	코달이	흑태 중에서 5~7일 정도 말린 것으로 코를 끼운 것
	엮걸이	흑태 중에서 5~7일 정도 말린 것으로 코달이 중 작은 것을 5~10마리를 옆으로 엮은 것
	골태	건조 도중 비를 맞은 흑태
	바닥태	눈 속에서 조금 얼게 한 후 건조한 것
	추태	가을에 건조한 흑태
	춘태, 신태	봄에 건조한 흑태
	바람태	주로 바람에 의존해서 건조한 흑태
	동건품	얼렸다 말리는 작업을 반복해서 건조한 것
	일건품	햇빛에 의해 건조한 것
	열풍 건조품	화력에 의해 건조한 것
	대태	크기가 큰 건명태
중태	크기가 중간 정도의 건명태	
소태	크기가 작은 명태	



품 목	품종의 통용어	용어 해설
미역	화포	건미역
	울진각	울진 근해에서 생산되는 건미역
	절입미역	염장미역
굴	석화	반만 깬 것
새우젓	오젓	음력 5월에 담은 새우젓
	육젓	음력 6월에 담은 새우젓
	추젓	가을에 담은 새우젓
	동백하	겨울에 담은 새우젓
	잡젓	여러 종류의 고기를 섞어 담은 것
쥐치	쥐포	쥐치를 벗겨 얇게 썰어 말린 것
	알포	쥐치 껍질을 벗겨 가공시킨 것
	꾼포	쥐치 껍질을 벗겨 구운 후 눌린 것
	줄포	여러 마리를 붙여 길이가 긴 쥐포



용어	용어 해설	비고
해래기	동죽(조개)을 깬 것	
물동죽	물에 담아 놓은 동죽	
것동죽	물에 담지 않은 동죽	
고니	동태 내장	
모시=가무락	모시 조개	
물바	물바지락	
간바	간바지락	
오알	오징어 알	
오피	갑오징어 껍질	
희라=날개	키조개(가이바시)에서 날개를 떼어 낸 것	
게지	키조개를 깬 것	
꼬록=꼬르기	꼰뚜기	
개우렁	바다 우렁	
H. S=석화	굴 종류로서 반만 깬 것	
A. K. S	석화 껍질 반만 깬 것	
참미	자연산 미더덕	
왕왕	대합의 크기 용어	
시바새우	껍질이 하얀 새우	
백살 (백새우살)	시바새우 깬 것	
소망	홍합망의 크기(대망, 중망, 소망)	
홍살	홍합살	
석굴	굴 종류로서 안깬 것	



< 보기 >

- ㄱ.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ㄴ. 도매시장의 대지·건물 배치계획
- ㄷ.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 ㄹ.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ㄱ. 저온창고 ㄴ. 냉장실 ㄷ. 주차장
- ㄹ. 오물처리장 ㅁ. 하주대기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9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도매시장법인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그 업무를 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도매시장법인은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을 위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농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곡물생산, 수출입 동향 등을 조사하여 국제선물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소비가 많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농업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ㄱ.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 ㄴ.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ㄷ.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ㄹ. 직전 회계년도의 재무제표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조정을 신청 받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단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자조금의 사용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산량 증대를 위한 비료사업
- ② 품질향상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 ③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 ④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가. 공공출자법인 나.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지방공사 리. 농협중앙회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리
- ③ 가, 다, 리 ④ 나, 다, 리

15.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보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 ①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 ② 농수산물물류센터
- ③ 농수산물집하장
- ④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에도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영사업으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겸영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선별·포장·운송업·수출입 등의 사업을 경영사업으로 할 수 있다.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장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도매인은 매수, 위탁, 중개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수산물이 매매되면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출하자에게 결제해야 한다.
- ②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을 경우 시장도매인은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경우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 ④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한다.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응자 또는 대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 농산물의 수출 촉진
- ② 농산물의 보관 및 가공
- ③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④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 ① 도매시장·공판장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중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 ③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 ④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1.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농촌진흥청 ②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본부
- ③ 산림청 ④ 식품의약품안전청

22.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축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 ②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④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3.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해당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이 아닌 경우
- ②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 ③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으나 생산 또는 가공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경우
- ④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본 내용은 농안법 개정(2012. 8. 23) 시행 이전 내용으로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유형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회 경매사 자격시험(2010년 3월)
도매시장 관계 법령 B-8-1-2교시 (청과)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답 1개만을 고르시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도매시장법인 ② 시장도매인
- ③ 매매참가인 ④ 중도매인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자조금의 적립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수산물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갖추어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 ②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 ③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 ④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반출예정일 경과되기 전에 반출

지연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라도 반출예정일을 반출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 ② 농림수산물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 거래물량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물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소속 경매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은 그를 면직하여야 한다.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수산물의 (가) 또는 수산물의 (나)시기 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안에 들어갈 단어로만 올바르게 묶인 것은?

- | | |
|-------|------------|
| (가) | (나) |
| ① 파종기 | 종묘입식(種苗入植) |
| ② 수확기 | 채취 |
| ③ 생육기 | 성장 |
| ④ 저장기 | 저장 |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 ②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 ③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 운영
- ④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에 들 수 없는 자는?

- ① 중도매인
- ② 시장도매인
- ③ 매매참가인
- ④ 경매사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낙찰가격의 분쟁에 관한 사항
- ②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료 등 제반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 ③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④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은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는 ()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에 알맞은 금액은?

- ① 1,000만원
- ② 1,500만원
- ③ 2,000만원
- ④ 3,000만원

1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매시장이 아닌 것은?

- ① 중앙도매시장
- ② 공영도매시장
- ③ 지방도매시장
- ④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1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 ① 1개월 금지 ② 보완명령
- ③ 3개월 금지 ④ 6개월 금지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물
수농산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물수농산물 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② 물수농산물 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대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물수농산물 등의 처분업무를 다른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물수농산물 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조
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
도록 할 때 비교·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① 최근 1년간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 ② 입지조건
- ③ 시설현황
- ④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21.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 ㄴ. 등록명칭 : (영문등록명칭)
- ㄷ.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 ㄹ. 지리적표시등록 제 호
- ㅁ. 생산자 :
- ㅂ. 주소(전화)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ㅂ

**22. 농산물품질관리법상“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
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의 표시기
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되었을 것임”으로 표시
- ②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우려가 있음”으로 표시
- ③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염려가 있음”으로 표시
- ④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23.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
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이어야 한다.
-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품목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③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



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④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24.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 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 ④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25.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산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한다.
- ② 수입농산물 등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 ③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은 혼합비율이 높은 원산지 1개지만 표시한다.
- ④ 국내가공품은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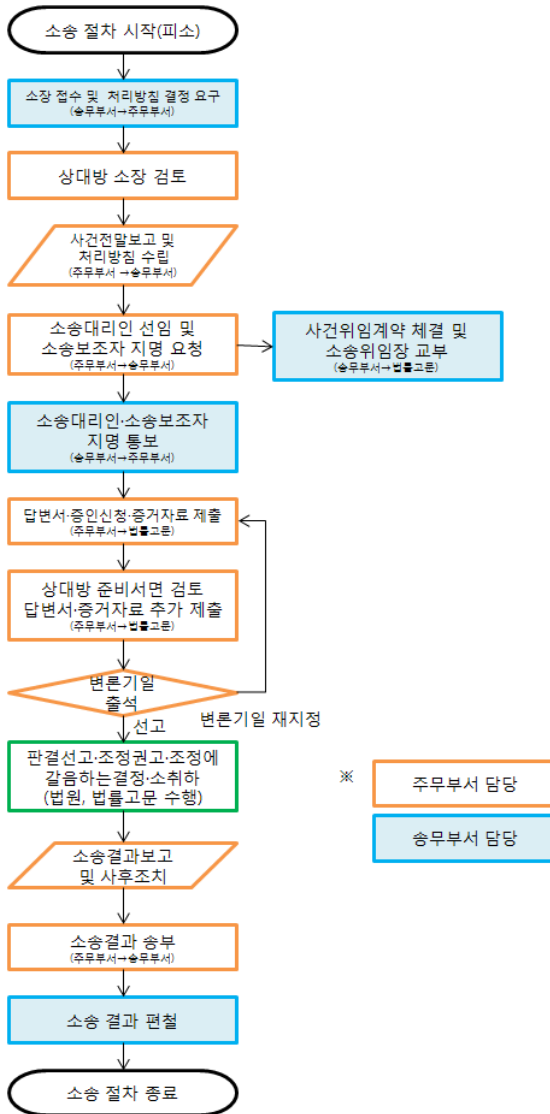
정 답 2교시 청과 도매시장 관계법령 B형

1. ② 2. ③ 3. ① 4. ③ 5. ① 6. ③ 7. ④ 8. ② 9. ① 10. ①
 11. ② 12. ④ 13. ② 14. ③ 15. ④ 16. ④ 17. ④ 18. ② 19. ③ 20. ①
 21. ④ 22. ④ 23. ② 24. ① 25. ③



서울시 소송업무 절차

1. 절차 흐름도





2. 절차 해설

□ 소송절차 시작(피소)

□ 소장 접수 및 처리방침 결정 요구

- 공사가 피소된 경우,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문서가 접수된 즉시 이를 검토하여 피소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에게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을 통보(소송업무처리내규 제11조 제1항)

□ 상대방 소장 검토

- 주무부서장은 상대방의 소장을 검토하여 (i)소송당사자, (ii)소송의 대상(상대방이 공사에 대해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iii)소송절차를 통해 처리할 경우의 승소가가능성, (iv)소송 이외의 대안(조정·화해 가부) 등 제반 사항을 검토

□ 사건전말보고 및 처리방침 수립

- 주무부서장은 상대방 소장을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피소사건의 전말을 확인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침을 결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소송업무처리내규 제11조 제2항)
- 주무부서에서 응소하기로 처리방침을 정할 경우, 방침에는 (i)소송당사자, (ii)소송의 대상(상대방이 공사에 대해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iii)소송절차를 통해 처리할 경우의 승소가가능성, (iv)소송 이외의 대안(조정·화해 가부)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및 (v)소송보조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응소방침 수립 후 즉시 증거자료 수집 및 증인확보절차 개시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보조자 지명 요청

- 주무부서장은 응소방침에 따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보조자 지명을 요청

□ 사건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위임장 교부

- 송무담당부서장은 공사 법률고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건을 위임하되,



중요하거나 전문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방침 또는 송무담당부서 자체 방침으로 법률고문이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위임 (소송업무처리내규 제6조)

□ 사건을 위임할 법률고문과 협의하여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에 불리하거나 추후 변경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

□ 법률고문이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소송위임장을 교부

※ 사건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에는 법인인감도장을 날인

□ 소송대리인·소송보조자 지명 통보

□ 송무담당부서장은 주무부서장에게 사건을 위임한 법률고문 및 주무부서의 소송보조자로 지정된 직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 답변서·증거자료·증인신청 제출

□ 주무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송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소송 진행 방향, 사실관계 등 답변서 내용 확정

□ 주무부서장은 증거자료·증인신청 및 소송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출

□ 상대방 준비서면 검토 및 답변서·증거자료 추가 제출

□ 소송의 상대방이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 주무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를 수령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공격·방어방법을 결정

□ 공격·방어방법이나 소송추진방향이 당초 소송방침에서 변동될 경우 주무부서장은 변경방침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 진행상황을 보고

□ 주무부서장이 보고한 문서는 반드시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주무부서-송무담당부서 간 소송진행상황 공유

□ 추가적인 답변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

□ 주무부서장은 답변서·상대방 준비서면의 내용에 따라 증거자료 추가 제출



□ 변론기일 출석

-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진행상황을 보고(소송업무처리내규 제22조 제1항 제2호)
- 주무부서장은 소송진행상황 보고서를 반드시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진행상황 공유
-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된 경우 주무부서장은 상대방 준비서면 검토, 답변서 제출, 증거자료 추가 제출의 절차를 반복 수행
-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힌 경우 소송보조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 결과를 확인하여 이를 주무부서 및 송무담당부서에 보고(소송업무처리내규 제28조 제1항)
- ※ 소송대리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판결문이 송달된 뒤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소송보조자 단독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소송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 판결선고, 조정권고, 조정갈음결정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주무부서장은 사장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계획을 수립·시행
- 소송결과보고 및 향후 처리계획은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반드시 송부하여 소송결과를 공유
- 판결문이 접수된 경우, 송무담당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서장은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소 여부 등 처리방침을 결정(소송업무처리내규 제29조)

□ 소송 결과 편철

-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 결과를 편철하고 사후에 동일·유사 사례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색인을 갖추어 결과 정리(소송업무처리내규 제53조)

3. 상소심에서의 절차

- 항소심(2심) 및 상고심(3심)은 원심(1심)과 독립된 소송이므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며 소송대리인도 다시 선임하여야 함. 단,



상고심은 법률판단만 하므로 증거자료 수집·제출 절차는 없음

- 원심(1심)또는 항소심(2심)에서 승소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당한 경우는 피소 시의 절차와 같으며, 반대로 패소하여 항소 또는 상고를 할 경우는 제소 시의 절차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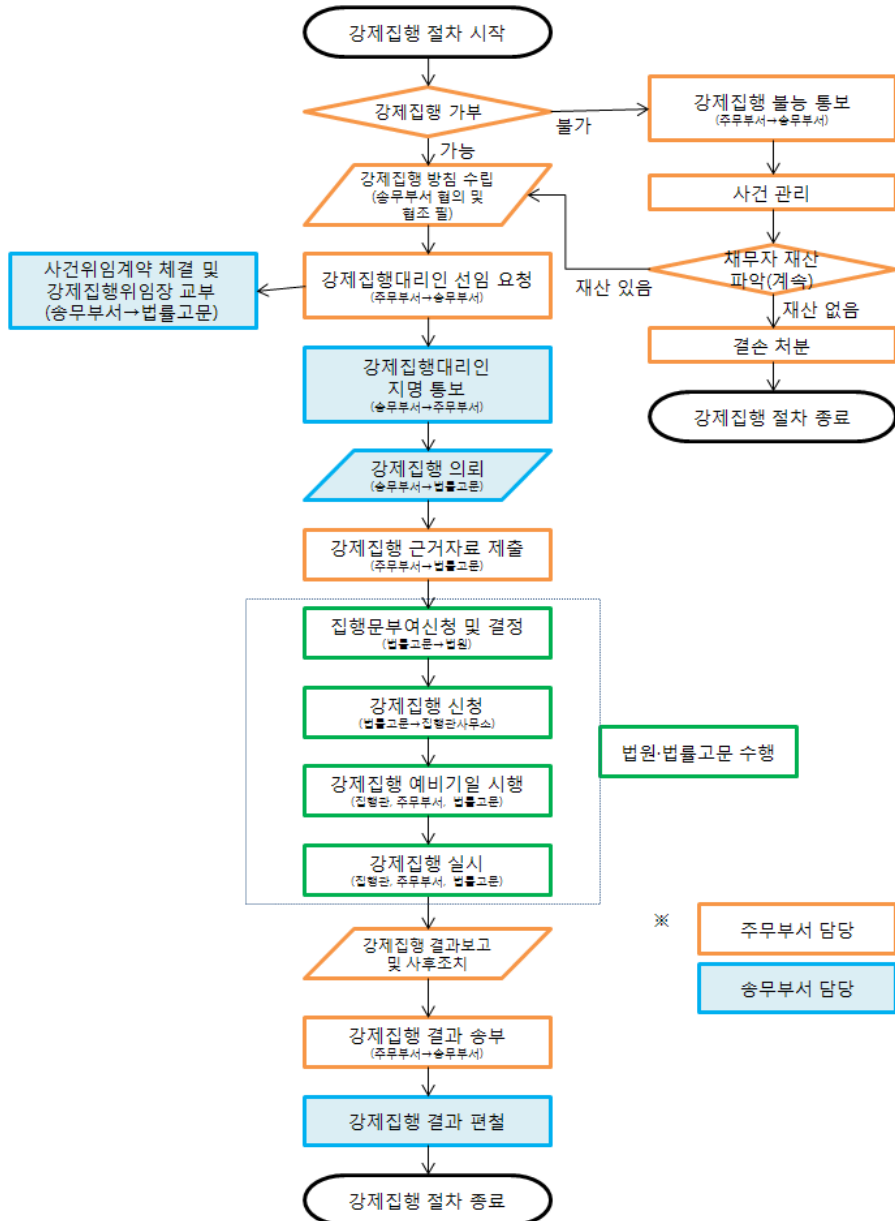
4. 소송진행에 따른 상황보고 시기

- 주무부서장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진행에 따라 수시로 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이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소송진행상황을 공유(소송업무처리내규 제18조 제2항)
- 다음의 상황 또는 단계에서는 필수적으로 상황보고를 실시
 - 소장(답변서)을 확정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제1차 변론기일을 통보 시
 - 상대방 답변서 내용 검토 후 공격·방어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 시
 -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는 경우(수회 제출할 경우 병합하여 1회로 같음)
 - 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 시
 - 보전처분 집행 시
- 상황보고는 위임전결내규에 따라 결재권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되, 모든 문서는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소송진행에 따른 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업무협조 및 소송자료의 보존이 가능하도록 조치



강제집행 진행 절차

1. 절차 흐름도





2. 절차 해설

□ 강제집행 절차 시작

- 주무부서장은 승소 확정된 사건 또는 가집행선고를 부가한 선고 사건에 대하여 패소 당사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시행(소송업무처리내규 제39조)

□ 강제집행 가부 판단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필한 재산이나(금전지급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필한 목적물(동산·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

※ 강제집행 불능 시 조치

- (i)적절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ii)보전처분 집행에도 불구하고 집행 당사자의 재산이 손·망실되었거나, (iii)집행 대상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iv)집행 당사자의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집행이 불가할 경우,
 - 주무부서장은 해당 소송결과 및 강제집행 불능 정도와 그 사유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소송업무처리내규 제41조 제1항)
 - 주무부서장은 당해 사건을 지속 관리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을 파악하는 즉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속행(소송업무처리내규 제41조 제2항)
 - 주무부서장은 (i)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이 불가하거나 장르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iii)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 등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소송업무처리내규 제42조)
- 결손처분은 「수입징수사무처리 시행내규」 제2절 각 조에 의함



□ 강제집행 방침 수립

- 강제집행 방침 수립 시, (i)강제집행 채무자(집행 당사자), (ii)집행 목적물(금전·동산·부동산), (iii)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이유, (iv)강제집행 이외의 대안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
- 강제집행 방침 수립 당시의 집행 목적물 실태를 재조사하되, (i)금전의 경우 재산조회 방법으로, (ii)동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황 파악의 방법으로 시행
- 강제집행 방침 수립 시 주무부서장과 송무담당부서장 간의 협의 및 협조 필

□ 강제집행대리인 선임 요청

- 주무부서장은 강제집행 방침에 따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대하여 강제집행 대리인 선임 요청

□ 사건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위임장 교부

- 송무담당부서장은 공사 법률고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건을 위임하되, 중요하거나 전문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방침 또는 송무담당부서 자체 방침으로 법률고문이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위임 (소송업무처리내규 제6조 준용)
- 사건을 위임할 법률고문과 협의하여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에 불리하거나 추후 변경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
- 법률고문이 유효한 강제집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교부
 - ※ 사건위임계약서 및 위임장에는 법인인감도장을 날인

□ 강제집행대리인 지명 통보

- 송무담당부서장은 주무부서장에게 사건을 위임한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을 통보

□ 강제집행 의뢰 및 강제집행신청

- 주무부서장은 강제집행 방침에 의거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 대해 강제집행 의뢰(소송업무처리내규 제13조 준용)
- 송무담당부서장은 강제집행대리인에 대해 강제집행 지시



- 주무부서장은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강제집행 대리인이 작성한 집행문부여신청서를 검토하고 강제집행 진행 방향, 사실관계 등 집행문부여신청서의 내용 확정
- **강제집행 근거자료 제출**
 - 주무부서장은 확정된 판결서(화해권고결정서, 조정결정서 등 포함) 및 강제집행 목적물의 현황자료를 강제집행대리인에게 제출
- **집행문부여신청 및 결정**
 - 강제집행대리인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집행문을 수령
- **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대리인은 수령한 집행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제출
- **강제집행 예비기일 시행**
 - 강제집행의 목적이 동산·부동산 인도인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 예비기일을 시행하며, 담당 집행관과 강제집행대리인은 강제집행 기일을 결정하여 집행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임의이행 촉구
 - ※ 집행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성인 2인 이상의 참관이 필요하므로 주무부서장은 담당 직원 2인으로 하여금 현장 출석 지시
- **강제집행 실시**
 - 강제집행 기일까지 집행 당사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관 주관 하에 강제집행을 실시
 - 강제집행의 목적이 금전지급인 경우 집행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
 - 강제집행의 목적이 동산·부동산 인도인 경우 집행 당사자(또는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부동산의 점유를 공사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진행
 - ※ 집행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내에 집행 당사자 소유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을 반출하여 보관하되, 보관비용은 집행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 당사자가 집행 현장에 없거나 수령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보관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추후에 집행 당사자에게 청구

□ 강제집행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주무부서장은 사장에게 강제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시행
- 강제집행 결과보고 및 향후 처리계획은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반드시 송부하여 강제집행 결과를 공유

□ 강제집행 결과 편철

- 송무담당부서장은 강제집행 결과를 관련된 소송사건과 함께 편철하고 사후에 동일·유사 사례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색인을 갖추어 결과 정리(소송업무처리내규 제53조 준용)



별첨 15.

농산물유통정보 제공처

Ⅵ 물가 및 농산물가격 정보제공 웹사이트 목록 Ⅵ

기관 및 단체	주소	주요내용
aT유통정보	www. kamis. co. kr	도·소매가격, 유통실태, 동향 및 전망
aT식품수출정보팀	http://fis. foodinkorea. co. kr	식품가격, 식품산업 정보 및 동향
농협	www. nonghyup. com	농산물 유통정보 및 가격정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정보	www. garak. co. kr/youtong	경매 및 도매시장 유통정보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http://market. affis. net	출하자 및 전자경매정보, 도매시장 거래동향 파악
농정원 농어업·농어촌 종합정보포털	www. okdab. com	농식품동향 및 도·농업관련 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통계	www. krei. re. kr/kor/statistics	농축산물 주요통계 및 거래동향
소비자원	http://price. tgate. or. kr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
행안부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	www. mulga. go. kr	지방물가정보 및 통계
한국물가협회	www. kprc. or. kr	물가 및 적산자료 원가조사 정보
한국물가정보	www. kpi. or. kr	물가 및 적산자료 원가계산



별첨 16.

정가·수의매매 추진방법

2012. 10

 사단
법인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목 차

1. 정가·수익매매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7
2. 일본의 매매방법 결정방식과 매매방법별 운영실태와 성과 11
가. 도매시장의 실질 경유율 유지와 그 원인	
나. 경매·입찰 감소와 수익매매의 확대	
다. 경매·입찰과 수익매매의 일반적인 업무추진 절차	
라. 경매·입찰과 수익매매 간의 성과 비교	
3. 매매방법별 특징과 효과적인 활용방안 17
가. 집단적 거래의 특징	
나. 비 집단적 거래방법별 특징과 대응방안	
4. 일본의 (예약)수익매매 추진방식과 사례 23
가. 일본의 (예약)수익매매 추진방식	
나. 중도매인과 소매점과의 거래방식	
다. 경매사의 일상 업무와 강조되는 기능	
라. 수익매매 확대를 위한 도매시장 법인의 대응방향	

그림 및 표 목차

<그림1> 경매·입찰시의 업무내용과 진행절차	15
<그림2> 수의매매시의 업무내용과 진행절차	15
<그림3> 경매·입찰과 수의매매시의 일반적인 거래가능시간	15
<그림4> 일본의 경매·입찰과 수의매매의 가격추이(양배추)	16
<그림5> 수량불일치와 상품화불일치 해소를 통한 유통비용절감 구조	19
<그림6> 예약수의매매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교환 타임스케줄	26
<표1>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추이	12
<표2> 일본 지방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추이	12
<표3> 일본의 매매방법 결정방식과 특징	13
<표4> 경매·입찰과 정가·수의매매의 장단점 비교	17
<표5> 청과물의 수의매매를 위한 일반적 절차	21
<표6> 예약수의매매를 위한 일반적 절차(1주일 단위로 거래)	22
<표7> 각 농협이 동경청과에 출하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대(일일상황)	24
<표8> 중도매인(A사)과 중도매인 거래처(B사)간 거래의 일별 업무흐름(예시)	28
<표9> 경매사의 하루 일정(오타시장 동경청과의 경우)	29
<표10> 이토요카도에 제안하는 거래제안표(후지사과 36개입의 경우 예시)	32



1. 정가·수의매매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 정가·수의매매 정의

〈정가매매(定價賣買)〉

- 출하자가 미리 판매예정가격을 정한 상장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해당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매매방법
- 상대적으로 규격화된 상품이나 저장성이 높은 상품과 가공식품 등의 거래에 적합

〈수의매매(隨意賣買)〉

- 도매시장법인이 대상물품의 판매예정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와 1대 1로 협의하여 가격과 수량 및 기타 거래조건을 정하는 매매방법

〈전자거래(電子去來)〉

- 재화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
- 농안법에서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할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시키지 않고 직접 공급처로 보내는 상·물분리거래 허용
-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설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전자거래에 대하여 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함



○ 관련법규

〈농안법〉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

-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매 또는 입찰
 -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제2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화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의3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정가·수의매매 확대 배경

- 정부는 농안법 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를 거래원칙에 편입시켜 산지 및 소비자 간의 안정적 거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시간적제약과 공간적 제약에 따른 유통의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 수집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에 대한 상품화지도는 범용적인 수준의 상품화지도로써 특정 수요처를 염두에 둔 상품화지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거래가 대부분 경매·입찰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특정 수요처를 염두에 두고 상품화지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특정 수요처가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반드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었다.



- 따라서 정가·수의매매를 거래원칙으로 편입시킨 것은 도매시장이 소비자 구매자와 산지 출하자(단체)와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이로써 도매시장의 거래경직성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2. 일본의 매매방법 결정방식과 매매방법별 운영실태와 성과

가. 도매시장의 실질 경유율 유지와 그 원인

○ 일본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채소 및 과일 모두 하락 추세

- 채소는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과일도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005년 기준 채소와 과일의 총 유통량 중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23%와 약 46%이다.
 - 도매시장 경유율은 국내 총유통량(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에서 도매시장으로 유통된 양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 따라서 신선채소와 과일만을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본 도매시장의 취급량은 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채소와 과일이 도매시장으로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채소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77%, 과일은 54%이다.
- 현재 도매시장 경유율이 2008년 기준으로 채소 73.8%, 과일이 45.7%임을 고려하면, 실제 도매시장유통이 가능한 신선채소 및 과일 중 도매시장을 유통하는 비중은 채소가 약 90%대, 과일이 약 80%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일본 내에서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 취급품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나. 경매·입찰 감소와 수의매매의 확대

- 이처럼 도매시장이 여전히 신선채소 및 과일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도매시장의 기능(구색기능, 위험부담기능, 수급조정기능 등)을 강화하면서, 도매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온 경매·입찰원칙을 폐지하고, 수의매매를 통해 도매시장거래의 유연성을 부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유도 도매시장을 통한 수급조정기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1〉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추이

구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5	2006	2008	2009
청과물 평균	62.2	58.2	50.6	34.3	26.5	24.9	21.6	18.7	17.7
채소	64.9	60.5	52.6	35.3	26.2	24.1	20.6	17.3	16.7
과일	59.9	56.9	48.8	33.7	27.7	26.4	23.8	21.4	19.8

〈표2〉 일본 지방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추이

구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4	2005	2008
청과물 평균	66.7	59.2	52.2	47.9	42.1	41.5	37.7	33.2
채소	70.3	61.9	54.6	50.8	44.5	43.6	39.5	34.2
과일	61.2	54.8	47.8	43.0	37.5	37.6	34.3	31.3

- 일본은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도매시장법을 개정하여 거래와 관련된 상당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 오던 정가·수익매매를 거래원칙으로 편입시켰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방법도 매수집하를 전면 허용하였다.
 -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제3자 판매와 직접집하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효율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대해서도 경합 금지원칙이 대폭 완화되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도매시장법인과 통합하는 사례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 다만 일본은 정가·수의매매를 거래원칙으로 편입시키면서, 도매시장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경매를 의무화하는 보완조치를 두었다.

〈표3〉 일본의 매매방법 결정방식과 특징

<p>■ 중양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도매물품을 세 가지(일명 1~3호 물품)로 구분 (일본 도매시장법 제3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물품의 매매방법 : 경매·입찰 ■ 2호 물품의 매매방법 : 개설자가 품목별로 정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입찰,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경매·입찰 또는 수의매매 ■ 3호 물품의 매매방법 : 경매·입찰 또는 수의매매 <p>■ 경매·입찰 대상물품(1호 물품 및 2호 물품)을 선정하는 목적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목적 : ① 품질·향상의 개체격차가 커서 현물평가가 필요한 품목 ② 희소가치가 큰 품목 ③ 경매실적이 많은 품목 ■ 선정방법 : 시장거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이때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요청 등도 배려하여 결정 <p>■ 2호 물품의 경매·입찰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 또는 시장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비율을 결정하여, 업무규정과 요령 등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 ■ 시장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품목별로 결정(1년 단위 수정)하는 방법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익월 경매비율(수량기준)을 시장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
--



▣ 거래방법과 가격형성 관계상의 특징

- 경매·입찰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며(중도매인 중심 시장은 경매비율이 높고, 매매참가인 중심 시장은 수의매매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 식육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경매·입찰비율은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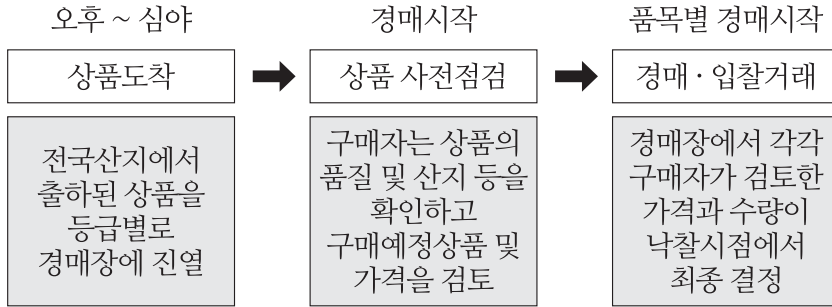
▣ 도매시장 반입농산물의 거래방법별 정보공개방식(도매예정·결과정보)

- 도매예정정보는 산지별·품목별·거래방법별(경매·입찰, 수의매매, 제3자 판매, 상·물분리거래)로 수량을 기준으로 공개
- 수의매매정보는 산지별·품목별·거래방법별로 당일 14:00~15:00경에 상·중·하 가격(kg당 가격)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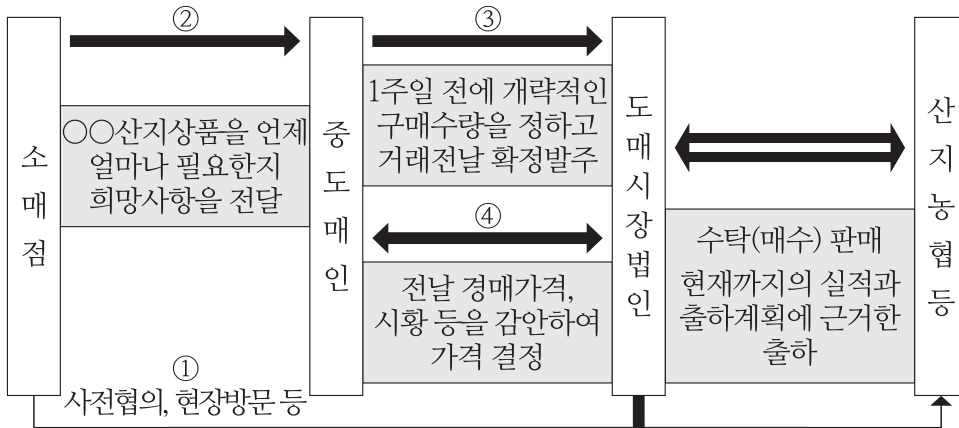
다. 경매·입찰과 수의매매의 일반적인 업무추진 절차

- 경매·입찰은 거래 전날부터 당일 사이에 입하된 물품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래가 실시되며, 수량과 가격은 낙찰된 시점에서 결정된다.
 - 선취거래시 수량은 시간제약이 없으나, 가격은 경매 이후에 결정된다.
- 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과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간의 개별적 거래로써 교섭조건에 따라 거래수량·가격은 사전에 결정될 수 있다.
 - 가격은 거래당일에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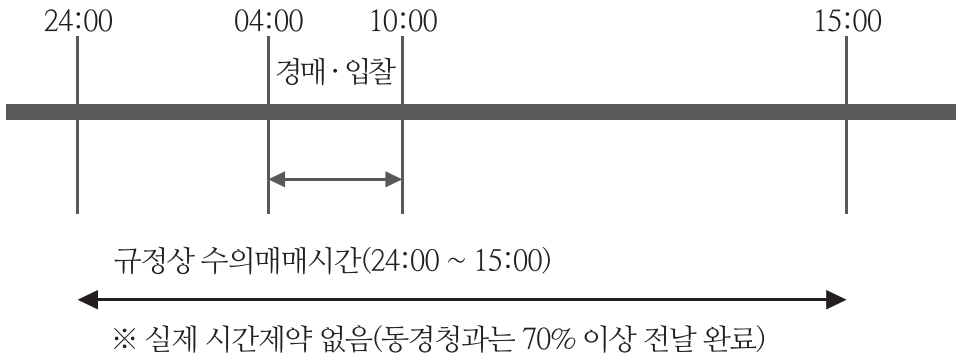
〈그림1〉 경매·입찰시의 업무내용과 진행절차



〈그림2〉 수의매매시의 업무내용과 진행절차



〈그림3〉 경매·입찰과 수의매매시의 일반적인 거래가능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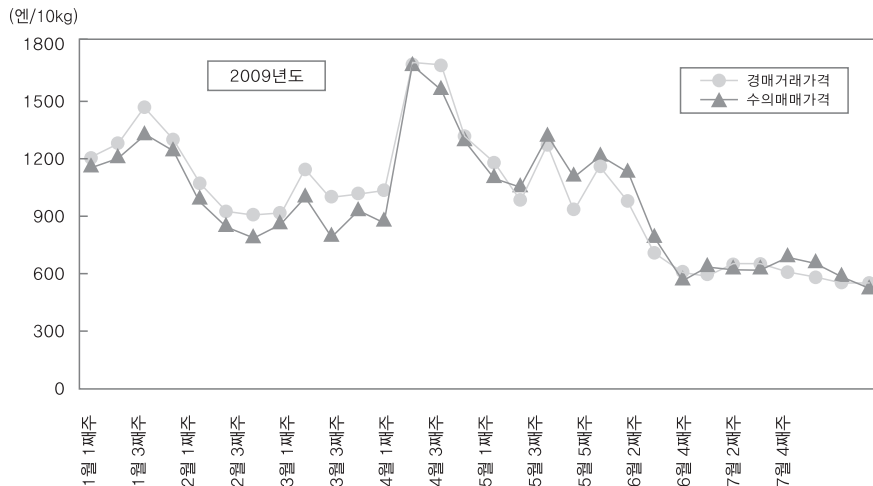




라. 경매·입찰과 수의매매 간의 성과 비교

- 경매·입찰과 수의매매의 가격에 대한 사례를 보면(그림 4의 양배추를 참고) 경매·입찰가격과 수의매매가격은 거의 연동하는 추세로, 어느 쪽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 다만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경매·입찰이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반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의매매가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일본에서는 특수한 품목으로 공급량이 적은 경우나 단가가 높은 상품에는 대부분 경매를 적용하고 있다.(가령 고급 멜론, 고급 포도, 망고 등과 같이 평균 단가가 높은 상품)

〈그림 4〉 일본의 경매·입찰과 수의매매의 가격추이 (양배추)



자료 :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청과물 주간시황으로」 농림수산성 작성



3. 매매방법별 특징과 효과적인 활용방안

가. 집단적 거래의 특징

○ 경매와 수의매매의 장점과 단점

- 수요와 공급관계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중, 경매·입찰은 다수의 구매자가 경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과 구매자가 1대 1로 교섭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 경매·입찰은 규격화가 진행되지 않는 다양한 상품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반면, 수급 실세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고 거래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 정가·수의매매는 거래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거래과정이 폐쇄적이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표4〉 경매·입찰과 정가·수의매매의 장단점 비교

경매·입찰	장점	- 공개성이 높고, 거래 및 분배 효율성이 우월 - 다수의 집합적 거래이며 처리가 매우 신속함
	단점	- 수급관계에 따라 가격변동이 큼 - 구매자가 참가 가능한 거래시간에 한정됨
정가·수의매매	장점	- 거래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음
	단점	- 거래과정이 폐쇄적임 - 적정한 가격결정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경매·입찰의 장점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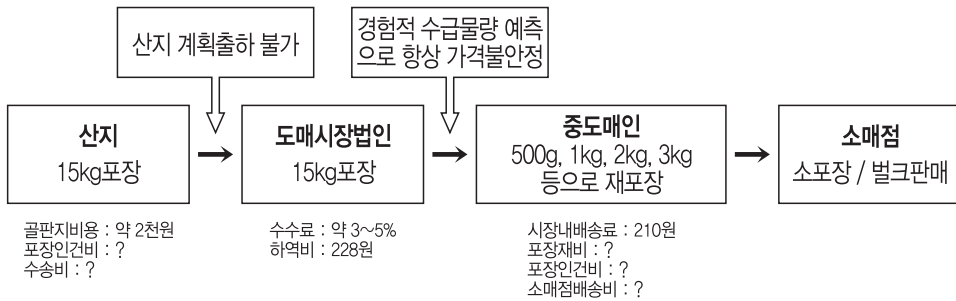
-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인 경우라야 수급 실세를 반영한 경쟁가격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판매자별 상품품질과 수급 실세를 반영한 가격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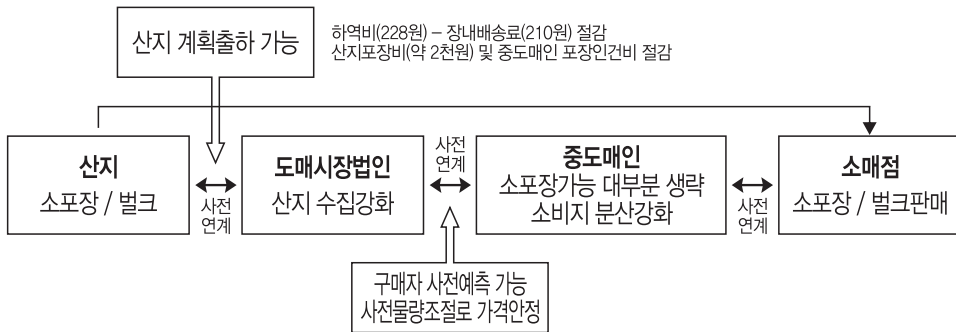
- 그러나 출하자는 사전에 수요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예상가격을 기대하고 출하하며, 구매자측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현물의 품질과 입하량 등을 파악하여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수준을 예상하는 정도로써 거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 경매거래는 특정주체간의 판매와 구매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구매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응이 곤란하다.
- 출하자는 도매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다음 출하를 조정하기 때문에 수급 실세를 고려한 출하조정에는 일정한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하며, 이러한 시간차에 따른 ‘수량불일치 문제’와 ‘상품화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 수량불일치 문제는 계획적 구매를 하는 소매점 등의 구매량에 맞추어 출하량 조정이 곤란하여 공급의 과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이것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 상품화불일치 문제는 각각의 수요처가 원하는 상품형태를 산지와 연계시키지 못함에 따라 산지 및 유통단계에서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 중도매인이 파악한 실수요자의 사전 상품화요구를 바탕으로 산지에 실수요자별 상품화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예약형 거래를 통해 사전에 상품화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생략할 수 있다.
- 가령 예약적인 거래를 통해 사전에 수량 및 상품화불일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인 상품 품질관리 이외에도 포장비용이나 운송비용 등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크다.<그림 5>
- 사전에 수량과 상품화를 조정하여 유통단계에서의 재포장비용을 절감하거나, 정확한 수량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직송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과 선도유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림 5〉 수량불일치와 상품화불일치 해소를 통한 유통비용절감 구조

〈현행〉



〈미래〉





나. 비 집단적 거래방법별 특징과 대응방안

(1) 정가매매

- 정가매매라도 실제 사례에서는 경매사가 중도매인 등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재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수익매매와 다르지 않다.
- 정가매매의 원형은 전자상거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즉 웹상에서 판매가격과 판매가능수량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구매예정수량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가능수량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되어 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 일반적으로 정가매매는 규격화된 상품이나 저장성이 높은 상품과 가공식품 등의 거래에 적합하다.
- 정가매매의 활용은 도매시장이 산지와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경우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량을 배분하는 방법에 주로 활용할 수 있다.

(2) 수익매매

- 정가·수익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양쪽 모두가 납득한 가격이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도 상대방과의 거래조건에 따라 가격은 당연히 다르다.

※ 경매·입찰과 달리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이 성립되지 않고, 거래과정이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매사가 위법·편법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도매시장 종사자 및 관리자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수익매매는 <표5>와 같이 거래 전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경에 다음 주의 요일별 거래물량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두고, 거래전날 거래수량과 가격을 확정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 도매시장법인은 거래 전주에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지에 출하를 요청하고, 거래전날 산지로부터의 확정된 출하정보와 중도매인의 주문정보를 바탕으로 분배지시서를 작성하여 판매처를 확정한다.

〈표5〉 청과물의 수의매매를 위한 일반적 절차

요일	거래 전 주일		거래 주일
	수	목	월 ~ 일
중도매인과 협의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주(월~일)의 거래조건(수량·가격)을 개략적으로 결정 ◆ 경매사·중도매인간의 회의(경우에 따라서는 중도매인 거래처 바이어도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익일 거래조건(수량 및 가격)을 확정 ◆ 중도매인은 팩스,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주문수량 확정
산지와 협의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사가 다음 주 거래물량과 가격 등에 대해 개략적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사는 산지와 당일 판매가격을 통보(보통 오전 10시경)하면서 다음날 거래조건을 협의

(3) 예약수의매매

○ 예약수의매매의 도입배경과 유형

- 예약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과 미리 예약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수탁·매수한 상품을 그 계약상대방에게 일정기간 계속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 가령 소매점으로부터 판매계획이 결정되어 중도매인의 구매예정량을 판매 1주일 이전에 확정하고 산지에는 1주일 전에 다음 주의 요일별 출하물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이 주도하여 산지와 소비자 사이에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약속을 사전에 해놓아야 한다.



〈표6〉 예약수의매매를 위한 일반적 절차 (1주일 단위로 거래)

요일	거래 전 주일		거래 주일
	수	목	월 ~ 일
중도매인과 협약하는 사항	◆ 다음 주(월~일)의 거래조건(수량·가격)을 확정		◆ 현물인도 ※ 현물가격과 계약가격과의 편차가 심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재조정
산지와 협약하는 사항	◆ 다음 주 거래물량과 가격 등을 확정		◆ 현물인도 ※ 현물가격과 계약가격과의 편차가 심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재조정

(4) 선취매매

○ 선취매매란

- 선취매매는 시장에 현물이 반입되고 나서 현물을 확인한 후에 경매시간 이전에 매매하는 거래방식이다.
 - 이는 시장에 대한 입하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규격화가 진행되지 않고, 대도시와 지방도매시장 간의 정보격차가 심한 경우에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 선취매매는 금번 농안법 개정으로 수의매매가 거래원칙으로 편입됨에 따라 본래의 선취매매라는 용어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일부 경매품목에 대해(최저경매율 설정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이다.



4. 일본의 (예약)수의매매 추진방식과 사례

가. 일본의 (예약)수의매매 추진방식

(1) 수의매매의 특징

- 수의매매는 규격성과 저장성이 있고 공급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경매에 비해 거래가격을 안정시키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과일의 경우 사과, 배, 감귤류, 단감 등이며, 채소의 경우 양파, 감자, 고구마, 당근, 무 등을 들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과의 기존 거래관계, 판매수량, 교섭력 정도가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일본의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은 수의매매 추진의 이점으로 ① 집하량이 늘어났다는 점 ②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 ③ 매출액이 향상되었다는 점(다만 도매시장법인 간 차별화 심화)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수의매매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은 ① 판매업무가 번잡해진다는 점 ② 재고량이 많아졌다는 점 ③ 위험부담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수의매매의 추진 절차(현물거래)

- 수의매매는 ① 사전에 일정기간 동안 거래조건(산지, 품위, 수량, 가격결정방법 등)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예약형 거래(예약수의매매로 해석할 수도 있음) ② 중도매인이나 산지와 특별한 약속 없이 상장매매 전날이나 당일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 ②의 경우는 대부분 중도매인이 예약수의매매를 통해 필요한 일정물량을 확보해 놓고 그날그날 주문량에 맞추어 물량을 보충할 때 활용한다.
 - 따라서 중도매인으로부터 전날 또는 당일에 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가격을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현물을 먼저 넘겨주고 가격은 사후에 도매시장법인이 통보하는(일방적 가격통보가 아닌, 사전에 교감하고 있던



범위 내의 가격) 일종의 선취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 도매시장법인 경매사도 예약수의매매 물량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중도매인의 주문 물량에 맞추어 배분작업을 한다.
- 전일까지의 중도매인의 주문 물량에 맞추어 배분작업을 끝내고, 나머지는 경매와 수의매매를 통해 판매하게 되는데,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 따라서 경매사는 경매 당일 입하량 등을 고려하여 중도매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판매, 적정 경매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
- 이 경우에는 다소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판매하는, 소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경매사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표7〉 각 농협이 동경청과에 출하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대 (일일상황)

현(縣)명	2일 전	전날 오전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4시	당일
岩手			12			17				17
茨城			7							10
群馬		14			6	12				
埼玉					1	3			2	
長野	1	12	37	50	33	3	15			22
鯖岡		13	19		5					
愛知			29							
愛媛	13	3								
高知		29	5	3						
宮琦	9								1	
鹿兒島	2									

주 : 동경청과 반경 1백km 이내는茨城, 群馬, 埼玉, 1천km 이상은 宮琦, 鹿兒島

- 도매시장법인이 산지로부터 출하 확정정보를 제공받는 시간은 산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 이는 가령 산지가 동경지역으로 차량을 출발시켜 놓고 시장별로 경매시간 직전까지 유리한 가격을 실현하기 위해 최종 출하처를 동경지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보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산지로부터 최종확정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산지와 그렇지 못한 산지가 있는 관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매 당일에 적정경매물량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나머지를 격리해야 하는지 고심하게 되는 것이다.

(3) 예약수의매매 추진절차

- 일본의 산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량 변동 등을 고려하여 예약수의매매(계약거래) 물량의 상한을 출하량의 30%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만,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주도의 예약수의매매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이 크며, 최고 70%를 예약수의매매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연간계약은 매년 4월경(일본은 4월이 회계연도 출발지점), 출하자(단체)와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이 거래회의를 통해 연간 거래기간·규격·수량·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규격과 거래기간은 연간이지만 수량과 가격은 주 단위부터 연 단위까지 다양하다.
 - 일반적으로 거래수량은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일일수량을 고정한다.
- 시즌계약은 매 시즌별 관계자(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가 거래회의를 통해 시즌별 거래기간, 규격, 수량, 가격을 결정한다.
- 월간계약은 매 월별 관계자(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가 거래회의를 통해 월별 거래기간, 규격, 수량, 가격을 결정한다.
- 주간거래는 매주 수요일에 다음 주 거래수량 및 가격을 일별로 결정하는 예약수의매매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 거래규격은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가령 대파의 경우 8규격(2L, L, M, S, 2S, 2본 결속, 3본 결속)이 일반적이나, 예약수익매매시에는 규격이 3규격(대, 중, 소)로 간소화되는 경우도 많다.

(4) 예약수익매매시의 일반적인 정보교환 절차

- 일반적인 예약수익매매 절차와 이를 위해 산지와 도매시장법인, 그리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정보교환 절차는 다음 <그림 6>와 같다.
- 산지는 도매시장법인에게 개략 2주에서 3일 전에 출하예정정보를 제공하며, 도매시장법인은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거래물량과 가격을 확정시킨다.
 -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의 주문정보와 도매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하면, 산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출하정보를 다시 제공한다.
 - 산지출하정보를 바탕으로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부터 최종 주문을 받아 취합하고, 산지와 중도매인에게 취합한 정보를 최종 확인한다.
 - 최종 정보 확인이 끝나면 산지와 중도매인에게 거래예약 확정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6> 예약수익매매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교환 타임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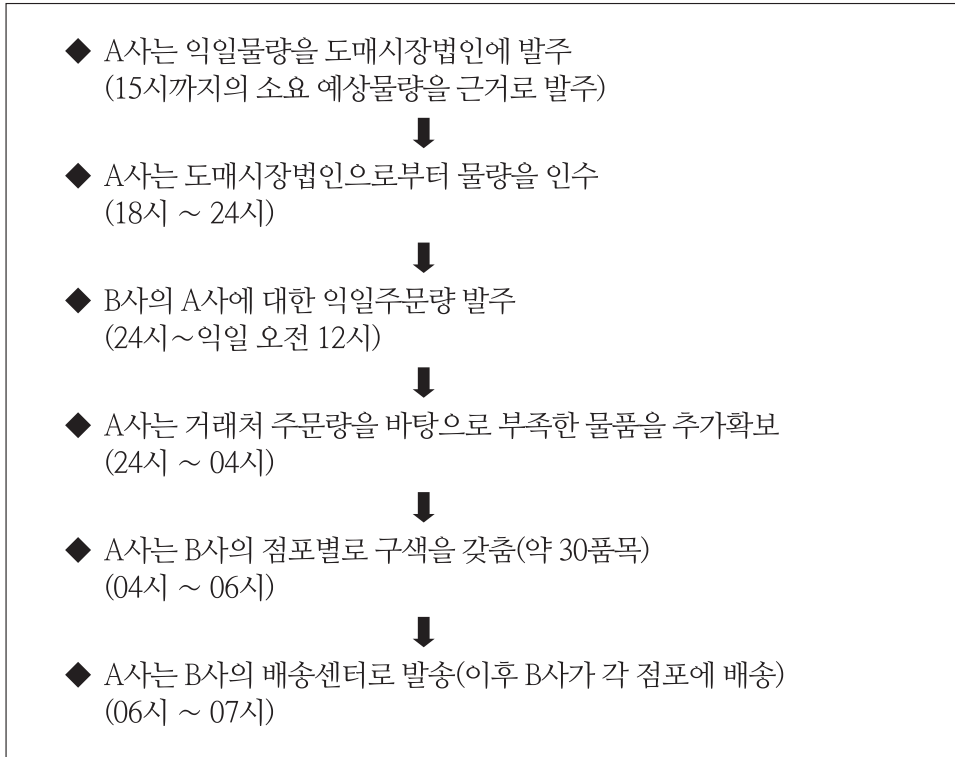
정보발신주체	2주전	3일전	전날	상장당일
산지	품목별 출하예정수량		등급별 출하예정수량 출하확정수량 수 · 배송정보	
도매시장	주문접수작업		주문접수결과정보 장내배분작업	시황정보
중도매인	주문정보		수요동향정보	
운송업자			배송정보	

나. 중도매인과 소매점과의 거래방식 (오타시장 A중도매인 사례)

- 여기에서는 중도매인이 소매점 등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대응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A사는 B사와 매월 25일 거래회의를 가지며,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두로 약속한다.
 - 가격결정은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거래처 B사와는 1개월 단위로 가격을 결정(산지와는 시즌 계약)한다.
 - 가격은 다음 달 예상 시장가격을 기본으로 운임과 중도매인의 각종 경비를 바탕으로 교섭한다.
 - 예상 시장가격은 도매시장법인의 산지 작황정보 및 수입량 정보 등을 바탕으로 중도매인에게 제시한 가격이다.
 - 도매시장법인의 가격예측이 빗나갈 경우 중도매인에게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납품 1주일 전에 가격을 정하며 납품수량은 당일 0~4시에 확정(발주)하기 때문에 산지와 계약수량과 B사의 주문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A사가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사는 총 취급량의 30% 정도만을 계약판매한다.
 - A사가 경매구매비율을 30% 정도 유지하는 이유는 구매계약 물량과 판매계약 물량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A사는 계약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경매(선취구매를 포함) 구매량을 늘리고, 계약물량이 남는 경우는 경매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연간 단위(시즌별, 월별, 주별, 일별)의 수급예상정보를 제공(소요물량 예상정보)하고, 중도매인의 요청물량을 고려하여 일별 출하요청물량을 산지에 제공한다.



〈표 8〉 중도매인(A사)과 중도매인 거래처(B사)간 거래의 일별 업무흐름 (예시)



주1 : A사는 도쿄 오타(大田)시장에서 엽경채류와 근채류를 중심으로 식당, 도시락업체, 일반 소매점 (전문점) 등과 거래하며 연 매출은 약 20억엔

주2 : A사는 취급물량의 약 30%를 경매로 구매하며, 도매시장과의 거래가격은 시즌 또는 연간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격은 상자 또는 1kg단위로 결정하며, A사의 계약판매비율은 취급량의 약 30%로, 통상 가격과 규격 및 납품방법으로 수량은 대부분 고정하지 않음.

주3 : A사가 연간 또는 시즌단위로 고정거래가 가능한 산지는 일반적으로 4~5년 정도의 거래경험을 통해 신뢰관계가 구축된 산지가 대상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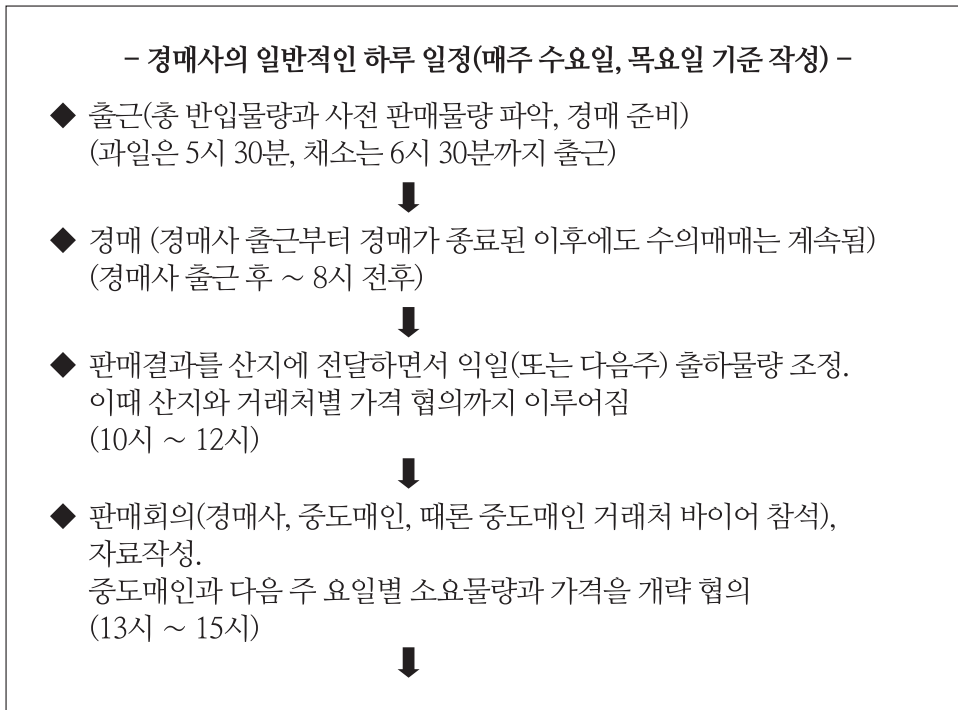
다. 경매사의 일상 업무와 강조되는 기능(오타시장 동경청과의 경우)

- 경매거래가 일반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수의매매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 경매사의 일상 업무와 요구되는 기능도 변해가고 있다.

- 기존에 경매가 주를 이룰 때는 보통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30분경에 출근하여 오후 1시면 대부분 모든 업무가 마감되었고, 업무도 아침 경매시간 전후가 가장 바쁜 시간대였다.
- 수의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는 경매시간 전후 시간대보다는 경매 이후에 산지와 중도매인 등과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분배지시서를 작성하는 오후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대가 되었으며, 퇴근시간도 밤 8시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표 9〉 경매사의 하루 일정(오타시장 동경청과의 경우)





- ◆ 출하정보와 중도매인의 구매정보를 바탕으로 분배지시서를 작성하며, 이때 중도매인 등과 익일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는 등 가장 번잡한 시간대가 됨.
 - 중도매인으로부터 익일 발주정보 접수는 전화, 팩스, 메일 등으로 하며, 분배지시서 작성을 마쳐야 퇴근(분배지시가 완료되지 않으면 퇴근 이후에 집에서 최종 분배지시를 완료) (15시 ~ 20시)



- ◆ 시장 상품반입 이후 분배지시서를 바탕으로 분배작업 진행. 사전에 분배지시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거래당일 판매 이후에 분배지시서 추가 작성 (20시 ~ 익일 09시)

- ※ 회사 밖에 있는 경우 원격접속, 팩스, 전화 등으로 분배지시서 작성
- ※ 야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대응
- ※ 경매사가 외근 중인 경우 사무실전화를 경매사 휴대전화로 자동 연결

- 일반적으로 경매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에서의 판매업무 이외에, 각각의 산지로부터 출하가 종료되면 산지를 방문하여 산지판매 경과보고회의(시장 평가, 경합산지 차년도 생산량이나 출하시기 등)에 참여하여 산지별로 당해 출하 기간의 좋았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설명하고, 다음 출하시에 참고할 작형, 품종, 재배면적, 상품화방법까지 제안한다.
 - 산지에서 출하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규격과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별교육(소위 생산자의 선별규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을 주도하여 지도하기도 한다.
- 또한 산지에 소매점의 바이어를 데리고 가서 농협직원, 작목반장 등과 함께 물량을 계약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이때 바이어와 산지와와의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소매점이 산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가끔 산지를 소개하면 산지와 소매점이 직거래로 옮겨가는 경우도 아주 적은 경우지만 존재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개선과제로 채택하여 회사단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직거래로 옮겨간 경우에 과거에는 대개 산지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소매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거래처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일본은 약 15년 전부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 그러나 현재는 비록 비중은 적지만 거래규모 성장속도가 빠른 가공(절임, 샐러드 등), 외식관련 업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 동경청과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매점을 중심으로 바이어 초청행사를 해오고 있었으나, 점차 벤더회의(가공, 외식업체에 납품하는 벤더)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일본의 경우 경매사가 담당하는 거래상담(商談 : 판매회의)에는 교섭력이 강한 산지의 희망가격을 의식하여 산지와 구매자를 모두 포함시킨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때 각 지역을 담당하는 산지의 소비지 판매사무소 담당직원과 사전에 가격 및 수량 조건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 동경청과의 영업담당자는 산지가 희망가격을 제시할 때, 1개월 전쯤에 수량과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산지의 희망가격과 소비지의 구매가격을 조정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고 현물을 두고 양측의 판매 및 구매 희망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면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도매시장법인이 주관하는 판매회의(商材회의)에는 ① 경매사, 중도매인, 해당 중도매인 거래처인 소매점 바이어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소매점에 판매가격 공개)



② 소매점을 배제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만이 교섭하는 패턴(소매점에 판매가격 미공개)으로 구분되지만, 최근에는 ①의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

- ①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하는 가격에서 중도매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더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 경매사가 산지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해 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경매사가 임의로 장래의 시장가격을 예상하고 가격을 제시하여 차액이 발생했을 때 도매시장법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

- 다만 산지와 협의된 가격이라도 산지와 최종 가격결정은 경매사의 설득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클 경우에는 산지나 중도매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경매사가 제시한 가격대로 장래의 시장가격이 움직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경매사의 상당한 부담으로 남게 된다.

※ 도매시장법인이 개최하는 판매회의는 중도매인별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도매인 간 거래가격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이때 중도매인 사이에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중도매인으로부터 사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없다.(서로 협의 하에 결정한 가격이기 때문)

■ 경매사는 거래 1주일 전에 거래처별로 <표10>와 같은 거래제안표(商材提案表라고 함)를 작성하여 거래상담회를 개최하게 된다.

<표10> 이토요카도에 제안하는 거래제안표 (후지사과 36개 들이의 경우 예시)

경매사 제시 예상가격	1000상자 2600엔	1200상자 2600엔	1500상자 2600엔	600상자 2600엔	2500상자 2000엔	3000상자 2000엔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바이어 제시	2,500	2,500	2,500	2,500	2,100	2,000

- 이때 경매사는 2~3주 전에 산지와 사전에 가격을 결정해 놓는다.

- 매주 수·목요일에는 경매사가 거래하는 바이어를 불러놓고 다음 주 판매와

관련된 판매회의를 개최(이때 거래제안표를 제시)한다.

- 동경청과의 판매회의는 개발1부(대형소매점 개발)와 개발2부(외식, 가공, 편의점 개발)의 주관 하에, 품목별 담당경매사가 정해진 시간에 회의장에 방문하여 5~10분 정도 설명하는 방식이다.
 - 일반적으로 수량과 예측가격은 경매사가 제시하지만 가격은 바이어에게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가격을 경매사가 숨겨두고 바이어의 반응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 경매사는 일별 주문접수와 중도매인에 대한 가격설명 등의 활동과 담당산지의 작황동향이나 담당소매점의 세일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파악한다.
 - 동경청과의 경우 대형소매점을 담당하는 전담경매사가 있으며, 사과의 경우 현재 5명의 전담경매사가 배치되어 있다.
 - 매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판매회의에는 기본적으로 중도매인과 소매점이 함께 참여하지만, 대부분 점포 20개 이상을 보유한 소매점의 경우에는 중도매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최종 확정된 거래가격 정보를 소매점의 담당바이어와 공유한다.
 - 이는 중도매인뿐만 아니라 소매점의 바이어와도 직접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도매인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 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대응방향

- ※ 예약적인 요소를 가미한 수의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는 확인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 산지의 이동시점, 산지의 작황정보, 구매자의 수요정보를 확인하고, 조기에 준비해 두는 자세가 중요하다.



-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상품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하나하나 상의해 두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에는 항상 불확실한 요인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현물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상·물분리 거래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 파종기에는 수확기를 생각하고, 수확기에는 파종기를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수확기의 수요량과 수요형태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종기에 산지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하고, 판매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산지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결국은 도매시장법인의 우량산지를 육성하는 지름길이다.
 - 생산된 농산물을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기능이다.
 - 얼마든지 팔아줄 수 있지만 얼마에 팔아줄 수 있는지는 모른다는 도매시장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품과 가격의 순서를 틀려서는 안 된다.
 - 경매사가 1000원을 이야기하면 산지는 1100원을, 중도매인은 900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 산지, 중도매인, 소매점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상품의 품질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서로 납득하는 가격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
 - 특히나 기후조건에 따라 생산량이나 품질의 등락이 심한 것이 농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왜 이 시기에 품질도 좋지 않은데 가격은 비싼지에 대한 시비는 항상 있기 마련이며,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설득은 모두 감언이설 내지는 변명으로만 비춰질 것이다.

- 거래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도매시장법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예약수의매매와 같이 계약적 요소가 매우 강한 거래방법은 결국 산지와 중도매인 등이 모두 만족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하지만 산지가 손해 보면 예약수의매매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고, 중도매인이 손해 보면 그 또한 예약수의매매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 안정적인 거래를 성립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도매시장법인의 설 자리는 없어져간다.
 - 결국 도매시장법인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농안법을 알면 농산물 유통이 보인다.

발행일 : 2013. 1.

발행인 : 서 규 용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유통정책과 TEL : 044-201-2222

편집인 : 유통정책관 이천일
과 장 서해동
사무관 안유영
주무관 박해청

인쇄처 : (주)디앤비애드 (02-2273-9700)